

미국장로교 헌법 제II부



규례서

큰활자판

2013-2015 Korean Book of Order, PDS #OGA-13-045

2013-2015

규례서



미국장로교
헌법
제 II부

큰활자판

OGA-13-045

미국장로교

헌법

제II부

규례서

미국장로교 헌법

THE CONSTITUTION OF THE
PRESBYTERIAN CHURCH (U.S.A.)

제 II 부 규례서

PART II
BOOK OF ORDER
2013–2015

공식 한국 번역판

(교회 또는 일반 법정의 소송이 있을 경우 영문판을 공식판으로 함.)

총회 사무처 발행

PUBLISHED BY
THE OFFICE OF THE GENERAL ASSEMBLY
100 Witherspoon Street
Louisville, KY 40202-1396

판권 ©2013
미국장로교
총회 사무처 소유

표지 디자인 판권 ©2013
미국장로교
총회 사무처 소유

본 출판물은 어느 부분도 발행인의 사전 승인 없이 어떤 형태로나 어떤 방법으로, 전자를 사용해서나 기계적으로나 사진 복사나 녹음으로나 또는 다른 방법으로(잡지나 신문 평론에 사용되는 간략한 인용은 제외하고) 복사하거나 재생계통에 저장하거나 송신할 수 없다.

미국장로교의 당회, 노회와 대회는 발행인의 사전 서면 허락을 받지 않고도 본 출판물의 항목들을 사용할 수 있다.

미국에서 인쇄

본 책자는 다음 처소에서 \$10.00(권당)에 구입할 수 있음
Presbyterian Distribution Service (PDS)
100 Witherspoon Street
Louisville, KY 40202-1396
1-800-524-2612 (PDS)

PDS 주문번호 #OGA-13-045

한글 번역에 부치는 글

2011년 7월, 미국장로교 규례서에서 “정치 형태” (Form of Government)가 전면적으로 새로이 개정됨에 따라, 한글 번역판도 새로운 번역이 필요하게 되었다. 특히 영어 규례서에서 새로운 용어들이 채택/사용됨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한글용어들의 개발과 문장의 재정리가 필요하게 되었다. 영어 규례서의 새로운 용어 채택이란 그동안 사용되어 오던 주요 용어들이 아래와 같은 새로운 개념의 단어들로 바뀌었음을 말하며, 이에 따라 한글 용어도 영어용어 변경에 상응하는 새로운 단어로 번역하게 되었다.

이전 규례서 주요 영어용어와 한글용어들

Governing Body [치리회]
Minister of the Word and Sacrament [목사]
Elder [장로]
Office [직분 또는 사역]
Church Officer [제직]
Commissioned Lay Pastor [평신도 목회자]

새로운 규례서 주요 영어용어와 한글용어들

Council [공의회]
Teaching Elder [교역장로(목사)]
Ruling Elder [사역장로 (장로)]
Ordered Ministry [직제사역]
Persons in Ordered Ministry [직제사역자]
Ruling Elder Commissioned in Pastoral Service
[전과 동일]

이외에도 한글용어 번역에 변화가 필요했던 경우, 이번 기회에 새롭게 교정하였다 (예: Certified Christian Educator를 전에는 “기독교 교육자”로, 이번에는 “기독교 교육사”로 번역).

이번 번역/감수 과정에서 문장을 새로 번역하거나 용어를 정리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였다.

- 규례서 영어 원문에 가깝도록 번역한다.
- 규례서적인 용어의 뜻을 살리도록 한다.
- 한인교회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선택한다.
- 교단 규례서의 개정 정신을 살리도록 한다.
- 새로운 한글 맞춤법을 적용한다.

한글 번역/감수 위원:

위원장: 이유신 교역장로 (목사), Davis, California

위원: 천방옥 교역장로 (목사), North Hollywood, California

지인순 사역장로 (장로), Lexington, Kentucky

문정선 교역장로 (목사), Palisades Park, New Jersey

조남홍 교역장로 (목사), Bethesda, Maryland

이귀호 사역장로 (장로), Los Angeles, California

자문위원: 김선배 교역장로 (목사), GAMC, Louisville, Kentucky

임혜환 교역장로 (목사), OGA, Louisville, Kentucky

2011년 9월 1일
한글 번역/감수 위원회

서 문

미국장로교 헌법은 정치형태 F-3.04에 규정된 바와 같이 신앙고백서(제1부)와 규례서(제2부)로 구성된다.

신앙고백서는 니케아 신조, 사도신경, 스콧 신앙고백,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2스위스 신앙고백,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 바르멘 신학선언, 1967년도 신앙고백과 간추린 신앙고백-미국장로교를 포함하고 있다.

규례서는 장로교 정치제도의 기초, 정치형태, 예배모범과 권징조례를 포함한다.

이 규례서에서

- (1) “ 해야 한다” 와 “ 되어야 한다” 는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조항을 의미한다.
- (2) “ 해야 할 것이다” 는 강하게 권장하는 조항을 의미한다.
- (3) “ 적절하다” 는 적합하다고 권장되는 조항을 의미한다.
- (4) “ 해도 좋다” 는 의무적이 아닌 허용되는 조항을 의미한다.
- (5) 자문서(ADVISORY HANDBOOK)는 총회 산하의 기관들이 목회감독과 관련된 절차에서 대화와 노회를 인도하기 위해 만든 지침서이다. 그러한 안내서에 제안된 절차들은 권장되는 것들이나 의무화된 절차는 아니다.

제219차 총회(2010)의 결정으로 종전의 정치형태를 새로운 장로교 정치제도의 기초와 새로운 정치형태로 대체하였다. 장로교 정치제도의 기초를 추가하고 정치형태를 수정함에 따라 (2011), 예배모범과 권징조례에 나오는 다음의 용어들을 새로 개정된 문서에서 쓰인 용어들로 바꾸었다. 즉, “ 목사” 혹은 “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 를 “ 교역장로” 로, “ 장로” 를 “ 사역장로” 로, “ 치리회” 를 “ 공의회” 로, “ 평신도 목회자” 는 영어로는 바뀌었지만, 한글로는 종전과 동일하게 사용되었고, “ 직분” 또는 “ 안수직” 은 “ 직제사역” 으로, “ 제직,” “ 교회 제직” 또는 “ 안수된 제직” 은 “ 직제사역자” 로 바꾸었다.

이 책에 포함되어 있는 정치형태와 예배모범과 권징조례에 대한 개정안들은 제219차 총회(2010)가 노회들에게 제안하였고 과반수의 노회가 승인한 것이다. 이들 개정된 말들은 해당 문단 안에 굵은 글씨체로 표시되어 있다. 이들 개정안은 2011년 7월 10일부로 발효된다. 아래의 조항들이 개정되었다.

규례서	회의록, 2012	규례서	회의록, 2012
G-1.0503	26, 27, 591-92	D-3.0101b(2)	26, 28, 612
G-3.0104	26, 28, 614	D-5.0101	20, 23, 342
G-3.0109a	20, 23, 341	D-5.0106	20, 23, 342
G-3.0109b(6)	20, 23, 341-42	D-5.0203	20, 23, 342
G-3.0301	26, 578	D-5.0206	20, 23, 342-43
G-3.0302d	72-73, 241	D-6.0101	20, 23, 343

<i>규례서</i>	<i>회의록, 2012</i>	<i>규례서</i>	<i>회의록, 2012</i>
G-3.0305	26, 28, 614	D-6.0202a(6)	20, 23, 343
G-3.0404	20, 23, 342	D-10.0106	26, 27, 590
W-4.4002	12, 13, 1496-1497	D-10.0202	26, 572-73

2013 년 6 월
Gradye Parsons
미국장로교(PCUSA) 총회 정서기

규례서 참조 번호제에 관한 설명

규례서의 네 부분은 대문자들을 사용해서 약자화했다.

F-장로교 정치제도의 기초

G-정치형태

W-예배모범

D-권징조례

본문에 있는 각 참조 조항은 해당하는 약자로 시작한다. 약자 다음의 소수점 왼쪽에 나타난 숫자는 해당 장수를 지적한다. 소수점 오른쪽에 네 개의 숫자가 있다. 첫 두 숫자는 절을 나타내는 숫자이고, 두 번째 두 숫자는 소절의 숫자를 나타낸다.

각 페이지는 그 페이지에 나타나는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적절한 약자에 이어 숫자로 표기되어 있다. 예를 들면, **장로교 정치제도의 기초**에서, 제1장의 첫 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은 기호 표시가 있다:

F-1.01-F-1.02

F-1.0201-1.0202

이것은 장로교 정치제도의 기초의 제1장이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과 이 페이지는 1.01과 1.02의 두 절이 있고, 1.02절에는 제목이 붙은 두 개의 소절, 1.0201과 1.0202이 있다는 것을 말한다.

규례서의 장과 절이 이처럼 표기되었으므로 현재의 숫자 표시를 변경시키지 않고서 개정을 통하여 장과 절을 추가할 수 있다.

페이지 번호를 피함으로, 이 기호법은 회의록, 보고서, 교신에 있어서 규례서를 인용하는 것이 영어, 한글, 스페인어와 점자판에 매년 동일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준다.

[이 항목은 ...에 의해 삭제되었다.]란 문장을 몇 곳에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규례서의 인용에 혼란을 주게 될 번호를 다시 매기는 일을 피하기 위함이다.

목 차

장로교 정치제도의 기초

제1장 교회의 선교

하나님의 선교	F-1.01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다.....	F-1.02
그리스도의 권위.....	F-1.0201
그리스도는 교회를 부르시고 온전케 하신다.....	F-1.0202
그리스도는 교회에 생명을 주신다.....	F-1.0203
그리스도는 교회의 희망이다.....	F-1.0204
그리스도는 교회의 기초이다.....	F-1.0205
교회의 소명	F-1.03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F-1.0301
교회의 표지.....	F-1.0302
개혁 교회의 특징.....	F-1.0303
교회의 큰 목적.....	F-1.0304
성령의 인도하심에의 개방성.....	F-1.04
연속성과 변화.....	F-1.0401
에큐메니시티.....	F-1.0402
다양성 속의 일치.....	F-1.0403
개방성.....	F-1.0404

제2장 교회와 신앙고백

신앙고백서들의 목적.....	F-2.01
부차적인 표준으로서의 신앙고백.....	F-2.02
보편적 교회의 신앙 진술로서의 고백.....	F-2.03
개신교 신앙의 진술로서의 고백.....	F-2.04
개혁 전통의 신앙 진술로서의 고백.....	F-2.05

제3장 규례와 정치의 원리

교회 규례의 역사적 원리.....	F-3.01
하나님이 양심의 주인이다.....	F-3.0101

집단적 판단.....	F-3.0102
제직.....	F-3.0103
진리와 선함.....	F-3.0104
상호 관용.....	F-3.0105
사람들에 의한 선출.....	F-3.0106
교회의 권한.....	F-3.0107
교회 권장의 가치.....	F-3.0108
장로교 정치의 원리.....	F-3.02
하나의 교회.....	F-3.0201
장로에 의한 치리.....	F-3.0202
공의회로 모임.....	F-3.0203
그리스도의 뜻을 구하고 대표함.....	F-3.0204
과반수에 의한 의사 결정.....	F-3.0205
검토와 감독.....	F-3.0206
공의회에 의한 안수.....	F-3.0207
공유된 권한, 공동 행사.....	F-3.0208
공의회에 의한 일반적인 권한.....	F-3.0209
기초 선언문	F-3.03
미국장로교 헌법의 정의.....	F-3.04

정치형태

제1장 개체교회와 교인

개체교회	G-1.01
개체교회의 선교적 사명.....	G-1.0101
개체교회의 교제.....	G-1.0102
미국장로교 헌법에 따라 다스려짐.....	G-1.0103
개체교회의 조직	G-1.02
조직 계약.....	G-1.0201
개체교회의 교인	G-1.03
교인과 세례의 의미.....	G-1.0301
환영과 개방성.....	G-1.0302

교인 가입.....	G-1.0303
교인들의 목회.....	G-1.0304
교인의 분류	G-1.04
세례교인.....	G-1.0401
활동교인.....	G-1.0402
관련교인.....	G-1.0403
기타 참석자들.....	G-1.0404
공동의회	G-1.05
연례회의와 임시회의.....	G-1.0501
공동의회 소집.....	G-1.0502
공동의회에 적절한 안건.....	G-1.0503
의장.....	G-1.0504
서기와 회의록.....	G-1.0505

제2장 직제사역, 위임, 인증

교회의 직제사역	G-2.01
그리스도의 사역.....	G-2.0101
직제사역.....	G-2.0102
직제사역에 부름.....	G-2.0103
은사와 자격.....	G-2.0104
양심의 자유.....	G-2.0105
집사: 연민과 봉사의 사역	G-2.02
집사의 정의	G-2.0201
당회 권위하에 놓임.....	G-2.0202
사역장로(장로): 분별과 다스림의 사역.....	G-2.03
사역장로(장로)의 정의	G-2.0301
사역장로(장로)와 집사에 대한 일반 조항	G-2.04
사역장로(장로)와 집사의 선출	G-2.0401
사역장로(장로)나 집사로서 사역준비	G-2.0402
안수와 취임 예식.....	G-2.0403
임직 기간.....	G-2.0404
관계의 해소.....	G-2.0405
사역장로(장로)나 집사로서 사역 해제	G-2.0406

관할권의 파기선언.....	G-2.0407
교역장로(목사):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	G-2.05
교역장로(목사)의 정의.....	G-2.0501
노회와 교역장로(목사).....	G-2.0502
회원권의 분류.....	G-2.0503
목회 관계.....	G-2.0504
타 교단 목사의 이명.....	G-2.0505
사역기간 동안 노회의 임시 회원권.....	G-2.0506
교역장로(목사)로서 사역 해제.....	G-2.0507
인정된 목회 활동의 불이행.....	G-2.0508
관할권의 파기선언.....	G-2.0509
목회 준비.....	G-2.06
준비의 성격과 목적.....	G-2.0601
시간 요구사항.....	G-2.0602
지망의 목적.....	G-2.0603
후보의 목적.....	G-2.0604
감독.....	G-2.0605
계약관계에 있는 동안의 봉사.....	G-2.0606
사역을 위한 최종 평가와 교섭.....	G-2.0607
관계의 이전.....	G-2.0608
관계의 취소.....	G-2.0609
예외.....	G-2.0610
안수.....	G-2.07
안수.....	G-2.0701
안수 장소.....	G-2.0702
안수 예식.....	G-2.0703
안수 기록.....	G-2.0704
청빙과 위임.....	G-2.08
목사 공석.....	G-2.0801
목사 청빙위원회 선출.....	G-2.0802
청빙 절차.....	G-2.0803
청빙 조건.....	G-2.0804
위임 예식.....	G-2.0805

목회 관계의 해소.....	G-2.09
공동의회.....	G-2.0901
담임목사, 동사무사 또는 부목사가 요청 시.....	G-2.0902
개체교회가 요청 시.....	G-2.0903
노회의 결정.....	G-2.0904
초청에 의해서만 직무 수행.....	G-2.0905
특정한 목회 봉사에 사역장로(장로) 파송.....	G-2.10
기능.....	G-2.1001
훈련과 시험 및 파송.....	G-2.1002
파송 예식.....	G-2.1003
감독.....	G-2.1004
유자격 교회 사역.....	G-2.11
유자격 교회 사역의 형태.....	G-2.1101
노회와 유자격 교회 사역.....	G-2.1102
기독교 교육사.....	G-2.1103

제3장: 교회 공의회

공의회의 일반원칙.....	G-3.01
교회일치의 표현으로서 공의회.....	G-3.0101
교회 관할권.....	G-3.0102
참여와 대표성.....	G-3.0103
제직원.....	G-3.0104
회의.....	G-3.0105
선교 행정.....	G-3.0106
기록.....	G-3.0107
행정적 검토.....	G-3.0108
위원회와 전권위원회.....	G-3.0109
행정 직원.....	G-3.0110
공천 절차.....	G-3.0111
보험.....	G-3.0112
재정.....	G-3.0113
당회.....	G-3.02
구성과 책임.....	G-3.0201

다 공의회와의 관계.....	G-3.0202
회의.....	G-3.0203
회의록과 기록.....	G-3.0204
재정.....	G-3.0205
노회.....	G-3.03
구성과 책임.....	G-3.0301
대회와 총회와의 관계.....	G-3.0302
당회와의 관계.....	G-3.0303
회의와 정족수.....	G-3.0304
회의록과 기록.....	G-3.0305
노회의 회원권.....	G-3.0306
교역장로(목사)들과 회중에 대한 목회자, 상담자와 조언자.....	G-3.0307
대회.....	G-3.04
구성과 책임.....	G-3.0401
총회와의 관계.....	G-3.0402
노회와의 관계.....	G-3.0403
기능 축소.....	G-3.0404
회의와 정족수.....	G-3.0405
회의록과 기록.....	G-3.0406
총회.....	G-3.05
구성과 책임.....	G-3.0501
다 공의회와의 관계.....	G-3.0502
회의와 정족수.....	G-3.0503

제4장 교회 권한과 민사 권한

법인체와 재단이사.....	G-4.01
법인체와 권한.....	G-4.0101
법인체의 회원.....	G-4.0102
교회 재산.....	G-4.02
선교를 위한 도구로서 재산.....	G-4.0201
재산에 관한 결정.....	G-4.0202
신탁된 교회 재산.....	G-4.0203
헌법에 어긋나는 재산의 사용.....	G-4.0204

해소되었거나 없어진 교회의 재산.....	G-4.0205
교회 재산의 매각, 저당 혹은 임대.....	G-4.0206
분열 시의 개체교회의 재산.....	G-4.0207
예외.....	G-4.0208
비밀보장과 특권.....	G-4.03
신뢰와 비밀보장.....	G-4.0301
의무적인 보고.....	G-4.0302

제5장 에큐메니시티와 연합

에큐메니컬 참여.....	G-5.01
에큐메니시티.....	G-5.0101
종교 간 관계.....	G-5.0102
세속적 기관들.....	G-5.0103
타 교단과의 관계.....	G-5.02
통신관계.....	G-5.0201
완전교류.....	G-5.0202
에큐메니컬 선언.....	G-5.0203
완전한 조직적 연합.....	G-5.03
연합노회.....	G-5.04
헌법적 권한.....	G-5.0401
연합 계획.....	G-5.0402
선교를 위한 교회 연합.....	G-5.05

제6장 헌법 해석 및 개정

개혁.....	G-6.01
헌법 해석.....	G-6.02
신앙고백서 개정.....	G-6.03
규례서 개정.....	G-6.04
예외 조항.....	G-6.05
특별조항의 개정.....	G-6.06

예배모범

서 문

제1장 크리스천 예배의 활력	W-1.0000
1. 크리스천 예배: 서론	W-1.1000
2. 예배의 언어	W-1.2000
3. 시간, 장소, 물질	W-1.3000
4. 예배의 책임과 책임 소재.....	W-1.4000
제2장 크리스천 예배의 구성 요소	W-2.0000
1. 기 도	W-2.1000
2. 성경봉독과 선포	W-2.2000
3. 세 례	W-2.3000
4. 주의 만찬	W-2.4000
5. 자신을 드림	W-2.5000
6. 상호간,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	W-2.6000
제3장 크리스천 예배의 순서	W-3.0000
1. 순서의 원칙과 자료.....	W-3.1000
2. 날과 절기	W-3.2000
3. 주일예배	W-3.3000
4. 매일 기도회	W-3.4000
5. 그 밖에 정기적으로 드리는 예배.....	W-3.5000
6. 특별한 모임	W-3.6000
제4장 특별한 목적을 위한 예배순서	W-4.0000
1. 특별한 행사와 인정.....	W-4.1000
2. 환영과 영접예배	W-4.2000
3. 제자직의 특별 위임행위.....	W-4.3000
4. 안수, 취임, 파송	W-4.4000
5. 사역에 있어서 변화.....	W-4.5000
6. 책벌과 회복	W-4.6000
7.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 인정.....	W-4.7000

8. 용납과 화해의 예배.....	W-4.8000
9. 결 혼	W-4.9000
10. 장례식	W-4.10000
제5장 예배와 개인의 제자직.....	W-5.0000
1. 개인예배, 제자직, 신앙공동체.....	W-5.1000
2. 매일 개인예배 훈련.....	W-5.2000
3. 개인예배 때의 성경.....	W-5.3000
4. 개인예배 때의 기도.....	W-5.4000
5. 개인예배와 제자직을 위한 기타 훈련.....	W-5.5000
6. 크리스천의 직업	W-5.6000
7. 가정과 가족예배	W-5.7000
제6장 신앙공동체 내에서의 예배와 목회.....	W-6.0000
1. 교회 내에서의 상호 목회.....	W-6.1000
2. 기독교 양육	W-6.2000
3. 목회적 돌봄	W-6.3000
제7장 세상 속에서의 교회의 예배와 사역.....	W-7.0000
1. 예배와 선교	W-7.1000
2. 복음 선포와 전도.....	W-7.2000
3. 불쌍히 여김	W-7.3000
4. 화해: 정의와 평화	W-7.4000
5. 창조계와 생명의 돌봄.....	W-7.5000
6. 교회와 하나님의 통치.....	W-7.6000
7. 찬양으로서의 예배	W-7.7000

권징조례

제1장 교회 권징의 원리.....	D-1.0000
(전문)	
교회 권징.....	D-1.0101
그리스도의 교회에 부여된 권한.....	D-1.0102
조정과 중재.....	D-1.0103

제2장 사법절차의 정의	D-2.0000
1. 사법절차.....	D-2.0100
교회권징.....	D-2.0101
a. 변칙과 비행의 방지와 시정	D-2.0101a
b. 범법의 시정.....	D-2.0101b
교회 공의회들.....	D-2.0102
해결의 대안형식.....	D-2.0103
2. 사건의 형태.....	D-2.0200
교정 혹은 징계.....	D-2.0201
교정사건.....	D-2.0202
a. 변칙.....	D-2.0202a
b. 비행.....	D-2.0202b
징계사건.....	D-2.0203
a. 직제사역자.....	D-2.0203a
b. 범법.....	D-2.0203b
 제3장 사법절차 관할권	 D-3.0000
관할권	D-3.0101
a. 당회.....	D-3.0101a
b. 노회.....	D-3.0101b
c. 노회, 대회, 총회.....	D-3.0101c
d. 교회해산.....	D-3.0101d
더 이상 사법적 결의 못함.....	D-3.0102
하위 공의회가 결의 못함.....	D-3.0103
이명한 교역장로(목사)의 관할권	D-3.0104
판결과 결정의 집행 및 인정.....	D-3.0105
관할권의 종결시.....	D-3.0106
 제4장 위임	 D-4.0000
1. 위임	D-4.0100
정의	D-4.0101
적절한 내용.....	D-4.0102
하위 공의회 의무.....	D-4.0103

2. 위임의 결의.....	D-4.0200
상위 공의회 의무.....	D-4.0201
접수.....	D-4.0202
거부.....	D-4.0203
제5장 상임사법 전권위원회.....	D-5.0000
1.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에 봉사.....	D-5.0100
선출.....	D-5.0101
임기.....	D-5.0102
연조.....	D-5.0103
공석.....	D-5.0104
자격.....	D-5.0105
위원회 비용.....	D-5.0106
2. 회의.....	D-5.0200
임원.....	D-5.0201
권한의 근거.....	D-5.0202
회의.....	D-5.0203
정족수.....	D-5.0204
참여치 못할 자.....	D-5.0205
정족수 부족.....	D-5.0206
a. 정족수 확보 불능.....	D-5.0206a
b. 전임 위원의 명단.....	D-5.0206b
c. 참석자 비용.....	D-5.0206c
제6장 교정사건.....	D-6.0000
1. 교정사건의 착수와 집행유예.....	D-6.0100
착수방법.....	D-6.0101
고소의 정의.....	D-6.0102
집행유예.....	D-6.0103
a. 유예신청 접수 시간제한.....	D-6.0103a
b. 위원장과 서기에게 전달된 신청서.....	D-6.0103b
c. 예비조사를 위한 시간 소요.....	D-6.0103c
d. 집행유예를 시행하기 위한 시간 소요.....	D-6.0103d
e. 유예의 사본 배포.....	D-6.0103e
f. 유효기간.....	D-6.0103f

g. 집행유예에 대한 반대	D-6.0103g
2. 교정사건의 고소 제기	D-6.0200
당사자들	D-6.0201
고소 제기자	D-6.0202
a. 노회, 대회나 동등한 수준의 공의회 상대	D-6.0202a
b. 당회, 총회 선교사역부/기관 상대	D-6.0202b
3. 사전 심리 절차	D-6.0300
고소 진술	D-6.0301
변호인단	D-6.0302
a. 규칙에 따라 마련	D-6.0302a
b. 봉사 못함	D-6.0302b
고소에 대한 답변서	D-6.0303
심리 이전 절차	D-6.0304
서류검사	D-6.0305
예비 질문 결정	D-6.0306
응답자의 의무	D-6.0307
등록 절차	D-6.0308
심리 요약서	D-6.0309
사전 심리 회의	D-6.0310
제7장 교정사건의 재판	D-7.0000
1. 재판의 집행	D-7.0100
재판 - 교정사건	D-7.0101
정식으로 집행	D-7.0102
2. 소환과 증언	D-7.0200
당사자와 증인 소환	D-7.0201
a. 소환받는 회원	D-7.0201a
b. 요청받는 타인들	D-7.0201b
c. 타 공의회의 증인	D-7.0201c
d. 비용	D-7.0201d
소환장 전달	D-7.0202
이차 소환	D-7.0203
증인의 증언 거부	D-7.0204
선서 증언	D-7.0205

3. 재판 절차.....	D-7.0300
변호인	D-7.0301
자료의 배포	D-7.0302
재판 진행 통제	D-7.0303
a. 절차에 관한 질문.....	D-7.0303a
b. 결석	D-7.0303b
정족수 미달	D-7.0304
4. 재 판.....	D-7.0400
교정사건의 절차.....	D-7.0401
a. 위원장에 의한 선포	D-7.0401a
b. 전권위원의 자격	D-7.0401b
(1) 부적격성.....	D-7.0401b(1)
(2) 이의 제기.....	D-7.0401b(2)
c. 절차에 대한 이의	D-7.0401c
d. 고소 개정.....	D-7.0401d
e. 개정 진술	D-7.0401e
f. 증거의 규칙.....	D-7.0401f
g. 증 거.....	D-7.0401g
h. 최종 진술.....	D-7.0401h
판결	D-7.0402
a. 심 의	D-7.0402a
b. 판결.....	D-7.0402b
c. 서면 판결문	D-7.0402c
d. 즉시 접수.....	D-7.0402d
e. 공 개	D-7.0402e
5. 상소의 규정	D-7.0500
상소 시기	D-7.0501
상 소	D-7.0502
6. 절차의 기록.....	D-7.0600
절차의 기록	D-7.0601
a. 축어적 기록	D-7.0601a
b. 증거물	D-7.0601b
c. 회의록	D-7.0601c
d. 기 록.....	D-7.0601d

e. 보 존	D-7.0601e
f. 등 본	D-7.0601f
기록에 추가	D-7.0602
7. 서기의 임무	D-7.0700
판결문의 보고	D-7.0701
제8장 교정사건의 상소	D-8.0000
1. 상소의 착수	D-8.0100
정 의	D-8.0101
상소의 착수	D-8.0102
상소의 효력	D-8.0103
상소의 철회	D-8.0104
상소의 근거	D-8.0105
2. 상소 과정의 접수	D-8.0200
서면 상소장 접수기간	D-8.0201
서면 상소장 내용	D-8.0202
상소장을 임원들에게 전달	D-8.0203
3. 청문 이전 절차	D-8.0300
서류 검사	D-8.0301
예비질문 결정	D-8.0302
상소 기록	D-8.0303
a. 기록의 목록	D-8.0303a
b. 추가 기록	D-8.0303b
c. 상소 기록의 접수	D-8.0303c
d. 기록의 교정	D-8.0303d
e. 접수 일자의 통보	D-8.0303e
f. 사본 제공 비용	D-8.0303f
g. 연장	D-8.0303g
상소인의 적요서 접수	D-8.0304
a. 상대방에게 사본 전달	D-8.0304a
b. 연장	D-8.0304b
c. 적요서 접수 실패	D-8.0304c
피소인의 적요서 접수	D-8.0305
a. 상대방에게 사본 전달	D-8.0305a

b. 연장	D-8.0305b
c. 적요서 접수 실패	D-8.0305c
기록 및 적요서 전달	D-8.0306
사전 청문회	D-8.0307
4. 상소의 청문	D-8.0400
청문 통보	D-8.0401
출두 실패	D-8.0402
청문	D-8.0403
a. 새 증거	D-8.0403a
b. 청문	D-8.0403b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결정	D-8.0404
a. 만일 오류가 발견 안되면	D-8.0404a
b. 만일 오류가 발견되면	D-8.0404b
c. 서면 결정서	D-8.0404c
d. 각 오류의 판결	D-8.0404d
e. 즉시 접수	D-8.0404e
f. 공개	D-8.0404f
제9장 결백 입증의 요청	D-9.0000
결백 입증의 요청	D-9.0101
a. 공의회에 의한 검토	D-9.0101a
b. 조사위원회	D-9.0101b
사건의 종결	D-9.0102
제10장 징계사건	D-10.0000
1. 징계사건에 대한 예비절차	D-10.0100
예비절차의 착수	D-10.0101
범법의 진술	D-10.0102
a. 고소	D-10.0102a
b. 공의회	D-10.0102b
c. 자책	D-10.0102c
조사위원회에 회부	D-10.0103
타 공의회에 고소	D-10.0104
이명 불가	D-10.0105
직위정지	D-10.0106

2. 조사	D-10.0200
조사 위원회	D-10.0201
a. 회원권	D-10.0201a
b. 규칙대로 임명	D-10.0201b
c. 비용	D-10.0201c
조사위원회 책임	D-10.0202a-l
인권	D-10.0203
a. 고소인의 권리	D-10.0203a
b. 피해자의 권리	D-10.0203b
c. 가해 용의자의 권리	D-10.0203c
전권위원회에 절차 검토 청원	D-10.0204
3. 결정의 전달	D-10.0300
결정의 전달	D-10.0301
만일 고발이 접수되면	D-10.0302
검토 청원	D-10.0303
기록의 처리	D-10.0304
4. 고소	D-10.0400
시간제한	D-10.0401
사건의 기소	D-10.0402
a. 당사자들	D-10.0402a
b. 두 당사자들만	D-10.0402b
고소의 형식	D-10.0403
a. 여러 가지를 함께	D-10.0403a
b. 고소의 명세서	D-10.0403b
c. 함께 심리	D-10.0403c
고소의 접수	D-10.0404
a. 당 회	D-10.0404a
b. 노 회	D-10.0404b
사전 심리 회의	D-10.0405
a. 시간과 장소	D-10.0405a
b. 참석자들	D-10.0405b
c. 아무 일도 못함	D-10.0405c
증인 공개	D-10.0406

제11장 징계사건의 재판.....	D-11.0000
1. 재판의 집행.....	D-11.0100
재판 — 징계사건.....	D-11.0101
정식으로 집행.....	D-11.0102
2. 소환과 증언.....	D-11.0200
당사자와 증인 소환.....	D-11.0201
a. 소환받는 회원.....	D-11.0201a
b. 요청받는 사람들.....	D-11.0201b
c. 타 공의회의 증인.....	D-11.0201c
d. 비 용.....	D-11.0201d
소환장 전달.....	D-11.0202
a. 이차 소환.....	D-11.0202a
b. 피소인이 출두 아니함.....	D-11.0202b
증인의 증언 거부.....	D-11.0203
선서 증언.....	D-11.0204
3. 재판 절차.....	D-11.0300
변호인.....	D-11.0301
변호인을 얻지 못함.....	D-11.0302
자료의 회람.....	D-11.0303
재판집행 통괄.....	D-11.0304
a. 절차에 대한 질문.....	D-11.0304a
b. 결 석.....	D-11.0304b
정족수 미달.....	D-11.0305
비공개 회의 절차.....	D-11.0306
4. 재 판.....	D-11.0400
무죄의 추정.....	D-11.0401
징계사건의 절차.....	D-11.0402
a. 위원장에 의한 선포.....	D-11.0402a
b. 전권위원의 자격.....	D-11.0402b
(1) 부적격성.....	D-11.0402b(1)
(2) 항 의.....	D-11.0402b(2)
c. 예비적 반론.....	D-11.0402c
d. 변 론.....	D-11.0402d

e. 개정진술	D-11.0402e
f. 증거의 규칙.....	D-11.0402f
g. 기 소.....	D-11.0402g
h. 반 론.....	D-11.0402h
i. 반 박.....	D-11.0402i
j. 최종 진술.....	D-11.0402j
판결	D-11.0403
a.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D-11.0403a
b. 2/3 투표에 의한 유죄판결	D-11.0403b
c. 서면 결정서	D-11.0403c
d. 공개회의에서 공포	D-11.0403d
e. 책벌의 정도	D-11.0403e
f. 즉시 접수.....	D-11.0403f
g. 당사자들에게 통보	D-11.0403g
h. 공개.....	D-11.0403h
5. 상소의 규정	D-11.0500
상소의 시일	D-11.0501
상 소	D-11.0502
6. 절차의 기록.....	D-11.0600
절차의 기록	D-11.0601
a. 구두기록	D-11.0601a
b. 증거물	D-11.0601b
c. 회의록	D-11.0601c
d. 기 록.....	D-11.0601d
e. 기록의 보존	D-11.0601e
f. 등 본.....	D-11.0601f
기록에 추가	D-11.0602
7. 서기의 임무	D-11.0700
결정 보고	D-11.0701
8. 집 행.....	D-11.0800
공의회에 의한 집행.....	D-11.0801

제12장 징계사건의 책벌과 회복.....	D-12.0000
1. 책 벌.....	D-12.0100
교회 책벌의 등급.....	D-12.0101
기도가 따른 견책.....	D-12.0102
감독 복권 상담의 견책.....	D-12.0103
a. 기도.....	D-12.0103a
b. 복권 상담의 목적 전달.....	D-12.0103b
c. 평가와 복권 상담의 진술.....	D-12.0103c
d. 다른 사람을 성희롱한 범법행위와 관련된 자발적 회개행위.....	D-12.0103d
일시 정지.....	D-12.0104
a. 기도.....	D-12.0104a
b. 감독 복권 상담.....	D-12.0104b
c. 다른 사람을 성희롱한 범법행위와 관련된 자발적 회개행위.....	D-12.0104c
d. 직제사역 수행의 자제.....	D-12.0104d
e. 투표권이나 직책 못 가짐.....	D-12.0104e
f. 교역장로(목사)의 일시 정지의 영향.....	D-12.0104f
g. 일시 정지의 통지.....	D-12.0104g
h. 일시 정지 책벌의 종료.....	D-12.0104h
i. 조기 복권.....	D-12.0104i
직제사역이나 회원권 박탈.....	D-12.0105
a. 직제사역 박탈.....	D-12.0105a
b. 회원권 박탈.....	D-12.0105b
c. 기도.....	D-12.0105c
d. 직제사역 박탈의 결과.....	D-12.0105d
e. 박탈 통지.....	D-12.0105e
2. 회복.....	D-12.0200
공의회결정.....	D-12.0201
박탈후 직제사역 회복 양식.....	D-12.0202
a. 양식.....	D-12.0202a
b. 명부에 회복.....	D-12.0202b
박탈후 회원권 회복 양식.....	D-12.0203
a. 양식.....	D-12.0203a
b. 명부에 회복.....	D-12.0203b
c. 직제사역 회복.....	D-12.0203c

제13장 징계사건의 상소	D-13.0000
1. 상소의 착수	D-13.0100
정의	D-13.0101
상소의 착수	D-13.0102
항소 판결의 상소	D-13.0103
상소의 효력	D-13.0104
상소의 철회	D-13.0105
상소의 근거	D-13.0106
2. 상소 과정의 접수	D-13.0200
서면 상소장의 접수 기간	D-13.0201
서면 상소장의 내용	D-13.0202
임원들에게 상소장 전달	D-13.0203
3. 청문 이전 절차	D-13.0300
서류 검사	D-13.0301
예비 질문 결정	D-13.0302
상소 기록	D-13.0303
a. 기록의 목록	D-13.0303a
b. 추가 기록	D-13.0303b
c. 상소기록의 접수	D-13.0303c
d. 기록의 교정	D-13.0303d
e. 접수일자 통지	D-13.0303e
f. 사본제공 비용	D-13.0303f
g. 연장	D-13.0303g
상소인의 적요서 접수	D-13.0304
a. 상대방에게 사본 전달	D-13.0304a
b. 연장	D-13.0304b
c. 적요서 접수 실패	D-13.0304c
피소인의 적요서 접수	D-13.0305
a. 상대방에게 사본 전달	D-13.0305a
b. 연장	D-13.0305b
c. 적요서 접수 실패	D-13.0305c
기록과 적요서 전달	D-13.0306
사전 청문회	D-13.0307

4. 상소의 청문	D-13.0400
청문통보	D-13.0401
출두실패	D-13.0402
청문	D-13.0403
a. 새 증거	D-13.0403a
b. 청문	D-13.0403b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결정	D-13.0404
a. 만일 오류가 발견 안되면	D-13.0404a
b. 만일 오류가 발견되면	D-13.0404b
c. 서면 결정서	D-13.0404c
d. 각 오류의 판결	D-13.0404d
e. 즉시 접수	D-13.0404e
f. 공개	D-13.0404f
징계사건에 있어 상소에 의한 번복 효력	D-13.0405

제14장 교정사건이나 징계사건의 증거..... D-14.0000

1. 증거	D-14.0100
증거의 정의	D-14.0101
2. 증인	D-14.0200
이의 제기	D-14.0201
남편이나 아내	D-14.0202
상담자	D-14.0203
당사자들의 변호인	D-14.0204
증인의 신빙성	D-14.0205
3. 증언	D-14.0300
분리심문	D-14.0301
증인의 심문	D-14.0302
a. 선 서	D-14.0302a
b. 확 약	D-14.0302b
증언의 기록	D-14.0303
증언녹취에 의한 증언	D-14.0304
a. 타 공의회에서 온 사람	D-14.0304a
b. 증언의 취득	D-14.0304b
c. 증거 제공	D-14.0304c
d. 허용성의 질문	D-14.0304d

증인으로서 회원.....	D-14.0305
4. 증거로서의 기록.....	D-14.0400
기록의 허용성.....	D-14.0401
증언의 허용성.....	D-14.0402
5. 새 증거.....	D-14.0500
새 재판의 청원.....	D-14.0501
상소의 고려.....	D-14.0502

부록 A: 사법절차 양식

부록 B: 합의 조항 (남북장로교의 통합시의)

부록 C: 합의 약정서 (교단간의 완전교류를 위한)

부록 D: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들의 가시적 표시

부록 E: 미주한인장로회와 미국장로교 간의 계약관계

부록 F: 한국어 어휘

색인:

 성서적 언급의 색인

 색인

장로교 정치제도의 기초

The Foundations of Presbyterian Polity

장로교 정치제도의 기초

제 1 장 교회의 선교¹

F-1.01 하나님의 선교

복음의 기쁜 소식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만물과 만민을 창조하시고, 구속하시고, 다스리시고, 변화시키신다는 것이다. 성경이 전하는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억압에서 해방하셨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로 언약하셨다. 이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권능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육신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오셔서 사셨고, 세상을 위해 죽으시고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며,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억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며, 만물 위에 주의 은혜를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음을 알려준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교는 교회의 삶과 사역의 형태와 본질을 제공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사랑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고, 모든 사람에게 세례와 성찬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제공하며,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직에 초청하므로써 피조물과 인간의 변화를 위한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한다. 인간에게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 한 분으로 즐거워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언약 안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것보다 더 높은 삶의 목적은 없다.

F-1.02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다

F-1.0201 그리스도의 권위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셨고 모든 통치와 권세 위에 두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세대뿐만 아니라 또한 오는 세대에도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다.^a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하에 두셨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몸 된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b 교회의 삶과 선교는 지속적인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에 기쁨으로 동참하는 것이다.

F-1.0202 그리스도는 교회를 부르시고 온전케 하신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불러 세우사 세상에서의 교회의 선교, 교회의 성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교회의 봉사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다. 그리스도께서는 성령과 말씀 안에서 교회와 함께 계신다. 그리스도만이 홀로 그의 뜻대로 교회를 다스리시고, 부르시고, 가르치시며, 사용하신다.

F-1.0203 그리스도는 교회에 생명을 주신다

그리스도는 교회에 믿음과 생명, 일치와 선교, 직제와 계율을 주신다. 성경은 마땅히 순종해야 할,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예배와 하나님 섬김, 그리고 교회의

¹ 이 문서와 정치형태 전반에 걸쳐 첫 글자를 대문자로 쓴 “Church”(교회)는 그리스도 안으로 부름받은 보편적 교회를 의미한다. 이 단어가 제목 (예: 미국장로교, Presbyterian Church USA)의 일부로 쓰인 경우는 예외이다.

치리에 있어서 모든 문제는 다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이성과 건전한 판단에 의해 말씀에 따라서 다스려져야 한다.

F-1.0204 그리스도는 교회의 희망이시다

‘예수는 주님이시다’ 라고 한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을 확인하면서, 교회는 예수님이 교회의 희망이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의 권위에 속해 있으며, 생동적이고 환희에 찬 하나님 은혜의 실재 가운데 자유하는 삶을 누린다는 사실을 고백한다.

F-1.0205 그리스도는 교회의 기초이시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그리스도 안에 기쁘게 거하시며,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을 화목하게 하신다(골 1:19-20).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이웃과 모든 피조물과 화해하는 기쁜 소식을 증거하도록 보냄을 받았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진리와 호소, 그 거룩함과 일치로 받아들인다.

F-1.03 교회의 소명

F-1.0301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c.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몸이 되기에 필요한 모든 은사를 교회에 주신다. 교회는 세상에서 공동체로서의 삶 가운데서 이러한 은사를 나타내도록 힘쓴다(고전 12:27-28):

교회는 그 생명을 잃는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하나님 한 분께만 의탁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를 하신다는 확실하고 분명한 지식 안에서 즐거워하는 소망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이 새로운 창조는 인간의 생명과 만물의 새로운 시작이다. 교회는 그 약속된 새로운 창조의 힘으로 오늘을 살아간다.

교회는, 죄가 용서되고, 화해가 이루어지고, 원수 된 분열의 벽이 허물어지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교회는 말씀과 사역을 통하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의 기쁜 소식을 교회를 넘어 세상에 증거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F-1.0302 교회의 표지²

우리는 보편적인 교회의 기독교인들과 함께, 교회는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이다”임을 확신한다.

a. *교회의 일치*

일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한 구주이신 것처럼, 교회도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했기 때문에 하나이다. 교회는 모든 사람을 포용하기를 추구하며, 결코 저 스스로만을 위한 기독교인 공동체의 유익을 누리는데 만족하지 않는다. 교회는 하나다. 왜냐하면, 성령이 하나요 소망도 하나이며,

² 니케아 신조, 신앙고백서 1.3 참조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엡 4:5-6).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는 하나이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 되기 위해 힘쓴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자신과 관계를 맺도록 부르시는 모든 사람과 연합하는 것이다. 이처럼 서로 간에 하나로 연합한다는 것은 세상과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고, 하나님께서 공동체 전체의 유익을 위해 각 기독교인에게 허락해 주신 각양 은사를 나누는 제사장들이 되는 것이다. 여러 다른 교단으로의 분파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일치로 흐리게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의 일치를 파괴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장로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체교회와 역사적 연속성을 확인하면서, 그 모호성을 줄이고,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그리스도 교회 안에서 다른 교파의 모든 교회와의 교제를 기꺼이 추구하며 깊게 하는데 힘쓸 것이다^d.

b. 교회의 거룩함

거룩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 성령의 권능으로 세상의 죄를 도말하여 주신다. 교회의 거룩함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도록 교회를 성별하신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것이지, 그 교리의 순수함이나 그 행위의 의로움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는 거룩하므로, 교회와 교인들 및 직제사역에 종사하는 이들은 우리가 선포하는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힘쓴다.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각 신앙인과 각 공동체를 형성함에 있어서, 우리는 성경과 은혜의 수단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하심에 의지한다 (W-5.5001). 우리는 공동의 삶과 개인의 삶 속에서 실재하는 죄의 집요성을 고백한다. 동시에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고 다시 부르심을 받았으며,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계시되었고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가운데 모든 사람에게 약속된 순결과 의와 진리를 위하여 힘써야 함을 고백한다.

c. 교회의 보편성

보편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 안에서 성령의 권능으로 소외를 극복하시고, 분열을 고치신다.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는 보편적이기 때문에,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시대, 장소, 인종, 국가, 나이, 조건, 계층의 남자와 여자와 어린이들을 품으신다는 것을 어디서나 증거하기를 힘쓴다. 교회의 보편성은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면서, 더 깊은 믿음과 더 큰 소망과 더 완전한 사랑으로 나아가도록 권고한다.

d. 교회의 사도성

사도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은 만물과 만민에게 구속의 복음을 나누게 하기 위하여 교회를 세상에 보내신다.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는 사도적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신실하게 전파하기를 힘쓴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사람들, 즉 우리가 사도라고 부르는 사람들과 교회의 오랜 역사를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사람들의 증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복음의 기쁜 소식을 받는다. 교회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 증언을 전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세상에 보냄을 받았으며 지금도 보냄을 받고 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가 시작되었다는 것과, 생명을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또한 얽매인 자를 자유롭게 하시고, 죄를 용서하시며, 깨어진

관계를 화해시키고,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는 것과 지금도 여전히 세상 속에서 역사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말과 행위를 통하여 증거한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선교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새 창조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에 임하게 하도록 보냄을 받는 것이다. 미국장로교는 예언자들과 사도들을 통하여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인하며, 모든 시대에 걸쳐 계속되는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한다.

교회는 교회가 받은 복음에 충실하기 위해 힘쓰며, 또한 신앙고백의 표준에 대해 책임지기 위해 힘쓴다. 교회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을 구주요 주님으로 영접하며 그의 제자로서 새 삶에 이르게 하는 그리스도의 명령을 전하기를 힘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전도자가 되도록 부름을 받았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일;
예배와 기도, 친교와 봉사의 깊은 삶을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는 일;
병든 자, 가난한 자, 외로운 자들의 필요를 돌보고; 사람들을 죄와 고통과 압제로부터 해방하며; 세상에 그리스도의 정의롭고 사랑스럽고 평화로운 통치를 이룩하는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일.

F-1.0303 개혁 교회의 특징³

그리스도가 계시는 곳에 참된 교회가 있다. 종교 개혁의 초기 이래 개혁 교인들은 어디에 있든지 참된 교회의 표지를 나타냈다:

하나님 말씀이 참되게 선포되고 들려지며,
성례전이 올바르게 집행되고,
교회 권징이 바르게 행사되었다.

현시대에서 우리는, 교회가 성령의 권능으로 그리스도 선교에 신실하다는 것을 다음과 같은 일을 함으로써 확인한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듣는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새 창조의 약속에 응답하고,
그러한 새 창조에 참여하도록 모든 사람을 초대한다;

성례전을 집행하고 받는다,
그리스도에게 접목이 된 이들을 환영하고,
그리스도의 구원하는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며,
앞으로 다가올 천국의 잔치를 고대하면서,
오늘 소외되고 굶주린 자들과의 연대를 다짐한다;

그리스도 제자들의 계약 공동체를 양육한다,
하나님의 약속의 힘 안에서 살고,
하나님의 선교에 헌신한다.

³ 스코트 신앙고백서 제 18 장 참조 (신앙고백서, 3.18)

F-1.0304 교회의 큰 목적

교회의 큰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인류 구원을 위한 복음의 선포;
- 하나님 자녀들의 안식처, 양육과 영적 교제;
- 거룩한 예배의 유지;
- 진리의 보존;
- 사회정의의 촉진; 그리고
-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나타내는 것.⁴

F-1.04 성령의 인도 하심에의 개방성*F-1.0401 연속성과 변화*

미국장로교 헌법에 명시된 장로교 정치형태는 성경에 근거하며, 참된 교회의 표지들을 중심으로 세워져 있다. 그것은 모든 점에서 교회의 주님에게 종속되어 있다.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배하는 공동체와 개개인의 신자들을 모든 시간과 장소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 안으로 이끄신다. 교회는 개혁과 참신한 방향을 추구할 때, 우리의 앞장을 서가시며 당신을 따르라고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 성령의 권능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교회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지 분별하기를” (롬 12:2) 구한다.

F-1.0402 에큐메니시티

미국장로교 헌법의 장로교 정치제도는 성경에 비추어 세워진 것이지만⁵, 이것이 기독교 교회의 존재에 본질적이라거나, 모든 기독교인에게 요구되는 것이라고 간주하지 않는다.

F-1.0403 다양성 속의 일치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갈 3: 27-29).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들의 일치는 교회 교인들의 풍부한 다양성에 반영되어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인종, 종족, 나이, 성별, 장애, 지리적 위치 혹은 신학적 입장의 구별없이 세례를 통하여 사람들을 하나로 연합시키신다. 그러므로 교회의 삶 속에서 어떤 누구를 상대로 차별하는 행위는 있을 수 없다. 미국장로교는 장로교 회원권을 가진 모든 사람과 모든 그룹에게 예배, 정치, 그리고 새로 나타나는 삶에의 완전한 참여와 대표성을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 누구도 이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어떤 이유로 참여나 대표의 권리를 거부당해서는 안 된다.

⁴ 교회의 큰 목적에 대한 이 선언은 북미연합장로교회에서 나온 것을 약간 수정한 것이다. 동 교단은 1958년에 미국장로교회와 통합하였고 이 선언은 통합된 교단의 명칭인 미국연합장로교회 교단 헌법의 일부가 되었다. 지금은 고전이 된 이 선언은 1904년과 1910년 사이에 여러 번의 결의를 거쳐서 동 교단 헌법의 개정을 앞두고, 1910년에 북미연합장로교회에 의해 채택된 것이다.

F-1.0404 개방성

모든 피조물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교에 새로운 개방성을 추구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가장 작은 자를 돌보시고, 인간의 죄로 인한 저주를 마음 아파하시며, 새로운 인간을 일으키시고, 모든 피조물에 새로운 미래를 약속하신다. 그리스도 안에서 교인들은 모든 인류와 더불어 피조물됨의 실존, 죄성, 깨어진 관계, 고통을 나누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끄시는 미래를 함께 나눈다. 하나님의 선교는 교회에는 물론이고 모든 곳에 있는 사람들과 모든 피조물에도 해당한다. 미국장로교는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면서 다음과 같이 추구한다.

교회와 세상에서 하나님의 주권적 활동과 그리스도에 대한 보다 철저한 순종 및 예배와 사역에서 더욱 기쁨에 찬 축제를 드리는 일에 대한 새로운 개방성;

새로운 인간성의 가시적인 표징으로서, 모든 나이, 인종, 민족, 그리고 다양한 계층의 여자와 남자들이 신앙과 실제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공동체의 회원이 됨에 대한 개방성;

장로교의 제도적 형태가 하나님의 세상 안에서의 활동에 신실성과 유익성을 보장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그 형태가 주는 가능성과 위험을 볼 수 있는 새로운 개방성;

보다 효과적인 선교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에큐메니컬 교회로 끊임없이 개혁 하심에 대한 새로운 개방성.

제2장 교회와 신앙고백

F-2.01 신앙고백서들의 목적

미국장로교는 *신앙고백서* 가운데 있는 신조와 고백을 통해서 그 신앙을 선언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한다. 미국장로교는 이러한 고백서들을 통하여 교인과 세상을 향해, 이 교회는 누구이며, 무엇을 믿으며, 무슨 일을 하려고 결심하는가를 선언한다. 이 고백서들은 이 교회가 어떤 확신과 행동으로 살아가는 공동체인지 그 정체성을 확실하게 해준다. 이 고백서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해석하는 데 교회의 지침서이고; 개혁 기독교 전통의 본질을 요약해 주며; 교회가 건전한 교리를 유지하도록 지도해 주고; 복음 선포의 사역을 위하여 교회를 준비시켜 준다. 이 고백서들은 개인적인 헌신과 신자들의 공동체의 삶과 증거를 강화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이 교단의 신조와 신앙고백은 하나님 백성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특정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생겨났다. 그 고백들은, 그 고백서를 쓴 저자들이 진리가 위태로워졌음을 깨달았던 그러한 역사적 시점에서 복음의 진리를 공언한 것이다. 그것들은 살아 있는 전통 속에서 기도와 사색과 체험의 결과로 나온 고백들이다. 그 고백들은 그들이 쓰여졌던 당시의 사회적, 문화적 상황 속에서 복음의 진리를 표현하면서 동시에 복음의 보편적인 진리를 호소하고 있다. 그것들은 공통적인 신앙 전통을 확인하면서도, 때로는 신앙고백들 서로 간에 긴장이 있기도 하다.

F-2.02 부차적인 표준으로서 신앙고백

이 신앙고백적 진술들은 성경이 예수를 증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종속되는 교회의 부차적인 표준이다.^a 고백적 표준이 성경에 부차적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신앙의 표준이다. 그것들이 소홀히 작성되었거나 동의된 것이 아니므로 무시되거나 경솔히 다루어져서는 안 된다. 교회는 신앙고백서에 표현된 신앙을 심각하게 거부하는 안수받은 자를 가르치고, 상담하고, 징계까지라도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교회의 신앙고백서를 변경하는 절차는 의도적으로 어렵게 되어 있는데, 즉 교회 전체의 높은 의견의 일치여야 한다. 그렇지만, 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가운데, 그 치리와 교리의 표준을 개혁하는 데 개방적이다. 교회는 “*Ecclesia reformata, semper reformanda secundum verbum Dei*”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성령의 권능에 힘입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개혁했고 또 항상 개혁하는 교회”임을 확인한다.

F-2.03 보편적 교회의 신앙 진술로서의 고백

미국장로교는 그 신앙고백에서 보편적 교회의 신앙을 증언한다. 그 신앙고백은 정경에 포함된 성경과 에큐메니컬 신조들, 특히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의 성육신의 신비를 기술한 니케아 신조와 사도신경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하나이며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전체 교회의^b 신앙을 나타내고 있다.

F-2.04 개신교 신앙의 진술로서의 고백

미국장로교는 그 신앙고백들에서 개신교 종교개혁 선언들을 지지한다. 이 선언들의 초점은 성경에 계시된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이다. 개신교의 슬로건 - 오직

은총,^c 오직 믿음,^d 오직 성경^e - 은 신앙생활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고 고무하는 기본적인 이해의 원리를 구체화한 것이다.

F-2.05 개혁 전통의 신앙 진술로서의 고백

미국장로교는 그 신앙고백에서 개혁 전통의 신앙을 표현한다. 이 전통의 중심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성령의 권능으로 창조하시고,ⁱ 보존하시고,^j 통치하시고,^k 주권적인 공의와 사랑으로^m 자유로이 이 세상을 속량하시는^l 하나님의 위대하심,^f 거룩하심,^g 섭리하심^h에 대한 확증이고 선언이다.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대한 이 핵심적 선언과 관련하여 또 다른 개혁 전통의 큰 주제들이 있다:

구원^o 과 섬김을 위한 하나님 백성의 선택ⁿ;

하나님 말씀에 따라 교회 안의 질서를 위해 훈련된 관심으로 표현된 계약의 삶;

겉치레를 피하고, 하나님 창조의 선물을 유효 적절히 사용하는 충실한 청지기직;

인간에게는 우상숭배^p와 독재^q의 성향이 늘 있기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고 정의를 추구함으로써 사회 변혁을 위하여 일하도록 하나님의 백성이 부름 받았음을 인정하는 일.

제 3 장 규례와 정치의 원리

F-3.01 교회 규례의 역사적 원리¹

본 *규례서*를 제시하면서, 미국장로교는 우리의 공통 유산의 일부가 되어왔고, 장로교 정신과 교회 정치제도의 기본이 되어 온 교회 규례의 역사적 제 원리를 재확인한다. 즉:

F-3.0101 하나님 양심의 주인이시다

a. “하나님만이 홀로 양심의 주인이시며, 인간의 교리와 계율²이 신앙이나 예배의 문제에서 하나님 말씀에 반대되거나 벗어난 것이면 양심은 그 인간 교리와 계명으로부터 자유한다.”³

b.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종교문제에서 개인적인 판단의 권리를 보편적이며 양도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우리는 어떤 종교적 헌법이 다른 모든 사람의 보호와 안전을 위해 필요하고, 동시에 누구에게나 동등하며 공통되는 것 이상으로 공권력의 도움을 받는 것을 보기 원치 않는다.

F-3.0102 집단적 판단

위에 적은 보편적 권리의 원칙에 전적으로 입각하여, 모든 기독교 교회나 개체교회들의 연합체는 각자의 교제 안으로 받아들이는 목사와 회원의 자격을 설정할 권리는 물론이고, 그리스도께서 임명한 교회 내부의 치리에 관한 전체 제도를 선언할 권리가 있다. 그럼에도, 교회조직이 이러한 권리의 행사에서 그 자격 규정을 너무 해이하게 혹은 너무 협소하게 만드는 잘못이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럴 때에도 다른 사람의 자유나 권리를 침해한 것이 아니고, 다만 교회가 자신들의 권리를 잘못 사용했다고 보아야 한다.

F-3.0103 제직

우리의 복되신 구주께서는 그의 몸인 가시적 교회를 온전하게 하려고 복음을 전하고 성례전을 집행할 뿐 아니라, 진리와 의무를 보존하기 위하여 권징을 실시하도록 제직을 임명하셨다.⁴ 이것은 모든 제직과 전체 교회에 주어진 의무로서, 그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행동하고, 모든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에 내포되어 있는 규율을 준수하면서 잘못을 범하는 자들과 불명예스런 자들은 견책하거나 축출시킨다.

¹ 이 조항은, 첫 구절만 제외하고 뉴욕과 필라델피아 대회가 처음으로 1788년에 만들어 낸 정치형태 서문에서 따온 것이다. 그 해에 그 대회는 네 대회로 분리하여 미국장로교 총회를 구성했고, 그다음 해에 첫 총회로 모였다. 그 네 대회는 뉴욕과 뉴저지, 필라델피아, 버지니아, 캐롤라이나 대회로 구성되었다. 이 네 대회가 총회에 총대를 보내서 1789년 5월 21일에 필라델피아에서 첫 총회로 모였다. 1788년에 만들어진 총괄적 계획이 미국남장로교회와 미국연합장로교회의 계속적인 정치원리가 되어 왔다.

² 여기 인용한 ‘인간들’ 과 ‘인간의’ 란 말은 18세기에서 따온 것인데,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³ 이 인용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있는 것인데, 신앙고백서 6.109에 있다.

⁴ “제직”과 “직분”의 용어는 정치원리의 역사적 용어의 일부로서 여기에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이 *규례서* 정치형태 전반에 걸쳐서 “직제사역자”와 “직제사역”의 용어들이 “제직”과 “직분” 대신에 사용되었다.

F-3.0104 진리와 선택

진리는 선에 이르기 위한 것이다.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 것이다”라고 하신 구주의 법에 따라 성결을 증진하는 것이 진리의 큰 시금석이며 그 의도다. 진리와 거짓을 같은 수준에 놓고 이렇게 말하나 저렇게 말하나 사람의 의견은 어떤 중요성도 없다고 주장하는 것보다 더 해롭거나 더 부조리한 것은 없다. 그와는 반대로 우리는 신앙과 실천, 진리와 의무 사이에는 불가분의 관련이 있다고 확신한다. 그렇지 않다면 진리를 찾거나 그것을 받아들여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F-3.0105 상호 관용

이상의 원칙에 입각한 확신에서 교사로 인정되는 사람들은 신앙이 건전해야 한다는 실효성 있는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또한, 좋은 품성과 생활 원칙을 가진 사람들일지라도 진리와 형식에 대한 이해에 견해를 달리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경우에라도 피차에 상호 관용하는 일이 기독교인 개인과 단체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F-3.0106 사람들에 의한 선출

교회 제직의 품성, 자격, 권위만이 아니라 그 직분 부여와 임명의 적절한 방법까지 성경에 명시되었을지라도, 어느 특정 조직의 권한을 수행할 제직을 선출하는 권리는 그 단체에 속한다.

F-3.0107 교회의 권한

모든 교회 권한은 전체 교회가 총체적으로 하든지 혹은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가 하든지 간에, 오직 목회적이며 선언적일 뿐이다^a; 즉 성경이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법칙이고; 교회의 어떠한 치리회⁵도 스스로 권위를 세우기 위하여 양심을 억압하는 법을 제정하려 해서는 안 되며; 치리회의 모든 결정은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바탕으로 내려져야 한다. 모든 대회와 협의회가 인간성 속에 내재하는 약점 때문에 잘못을 범할 수 있지만, 이미 제정되었고 복음을 선포하는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법을 판단하는 권리보다는 법을 만들겠다는 억지 주장에 더 큰 위험성이 있다. 그럴지라도, 이 권리는 현 상태에서 필요하기에 오류를 범할 수 있는 인간에게 맡긴 것이다.

F-3.0108 교회 권징의 가치

끝으로, 위에서 언급된 성서적이고도 합리적인 원칙들이 확고하게 준수된다면 교회 권징의 구속력과 엄격성은 교회의 영광과 행복에 이바지할 것이다. 교회의 권징은 오로지 도덕적이거나 영적인 데 그 목적이 있으며,^b 공권력 효력을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는 어떤 강제성도 있을 수 없다. 권징은 다만 그 자체의 공의로움으로부터 공정한 대중의 찬동과 보편적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의 지지와 축복을 얻는다.

⁵ 장로교 원칙의 역사적 용어의 일부로서 여기에 사용되고 있는 “치리회”는 이 규례서의 정치형태 전반에 걸쳐 “공의회”라는 용어로 바뀌었다.

F-3.02 장로교 정치의 원리⁶

미국장로교는 보편적 교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맥락 속에서 장로교 정치의 기본 원칙에 대한 특별한 결의를 재확인한다:

F-3.0201 하나의 교회

미국장로교의 개체교회들은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미국장로교라고 부르는 하나의 교회를 이룬다.

F-3.0202 장로에 의한 치리

이 교회는 장로들에 의해서 즉 사역장로(장로)와 교역장로(목사)들에 의해서 치리된다. 사역장로(장로)는 그들이 회중 위에 “군림”하기(마 20:25)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신실한지를 분별하고 축정하며 교회의 신앙과 삶을 강화하고 양육하기 위하여 회중에 의해서 선택받은 것이다. 교역장로(목사)는 그들의 모든 일에서 하나님 백성을 사역과 증거하는 일을 위해 준비시키는 데 헌신해야 한다.

F-3.0203 공의회로 모임

이들 장로는 여러 단계의 공의회에서 함께 모인다. 이들 공의회를 당회, 노회, 대회, 그리고 총회라고 부른다. 교회의 모든 공의회들은 교회의 본질상 하나로 연합되어 있고, 이 헌법에 제정된 것처럼 서로 간에 책임과 권리와 권한을 공유한다. 공의회들은 별개이지만, 서로 상호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어느 한 공의회는 전체 교회의 결정이 된다. 교회의 상위 공의회는 하위 공의회를 다스린다.

F-3.0204 그리스도의 뜻을 구하고 대표함

장로들은 단순히 교인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는 그리스도의 뜻을 함께 구하고 대표해야 한다.

F-3.0205 과반수에 의한 의사 결정

공의회는 의사결정은 토의와 분별의 기회를 가진 후에 투표로 하며, 과반수로 결정한다.

F-3.0206 검토와 감독

상위 공의회는 하위 공의회를 검열하고 통제할 권리를 가지며, 조회나 불평이나 탄원이 들어왔을 때 이들 논란에 대해 결정할 권한을 가진다.

⁶ 이 조항은 1797년에 미국연합장로교회의 총회가 채택한 교회 정치의 역사적 원리와 장로교 정치의 원리에서 유래된 것이며 이를 다시 언급한 것이다. 여기 인용구 중 “급진적”이란 말은 “근본적이고 기초적”이라는 뜻이고 “상소”라는 용어는 사법절차 상에 쓰는 뜻이 아니라 일반적인 뜻으로 탄원 혹은 간청을 의미한다. “장로교 정치제도와 권징의 근본적 원리는: ‘신자들이 모인 여러 다른 개체교회들이 총합적으로 보편적 교회라고 부르는 하나의 그리스도 교회를 만든다. 교회의 더 큰 부분(상회)이나 그 대표가 작은 부분(하회)를 다스리고 또 하회에서 생기는 논쟁을 결정한다; 또 이와 마찬가지로, 전체의 대표가 전체를 구성하는 각 부분이나 연합된 부분들을 다스리고 결정한다: 즉, 다수가 다스리고; 따라서 상소는 하위 치리회(공의회)에서 상위 치리회(공의회)로 이행되는바, 최종적으로는 전체 교회의 집합된 지혜와 통일된 발언에 의해 결정된다. 이러한 원리와 절차에 대해서, 사도들의 본보기와 초대 교회가 행했던 관례를 권위로 삼는다.’”

F-3.0207 공의회에 의한 안수

장로(사역장로와 교역장로)와 집사는 오로지 공의회의 권위에 의해서만 안수를 받는다.

F-3.0208 공유된 권한, 공동 행사

교회 관할권은 공유된 권한이며, 공의회에 모인 장로들에 의해 공동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F-3.0209 공의회의 일반적인 권한

공의회는 교회 헌법이 정한 의무와 권한의 발효에 필요한 모든 행정적 권위를 가진다. 각 공의회의 관할권은 헌법의 명시적인 조항에 의해 제한받는다. 다만, 언급되지 않은 권한은 노회에 유보된다.

F-3.03 기초 선언문

이 단원 “장로교 정치제도의 기초”에 포함된 선언문들은 미국장로교 정치체제의 기틀을 제공하는 교회적 및 역사적인 결단들을 기술하고 있다. 이 헌법의 어느 조항이든지 전체 헌법에 비추어 해석되어야 한다. *규례서*의 어느 조항도 그 자체로서 어떤 다른 조항을 무효화 시킬 수 없다. 조항들 사이에 긴장과 모호성이 있을 때, 모든 조항에 효력을 주는 그러한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은 공의회와 사법전권위원회의 임무이다.

F-3.04 미국장로교 헌법의 정의

미국장로교 헌법은 *신앙고백서*와 *규례서*로 구성된다.

*신앙고백서*는 다음의 고백들을 포함한다:

- 니케아 신조
- 사도신경
- 스콧 신앙고백서
-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 제2 스위스 신앙고백
-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 바르멘 신학선언
- 1967년도 신앙고백
- 간추린 신앙고백 - 미국장로교

*규례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 장로교 정치제도의 기초
- 정치형태
- 예배모범
- 권징조례

정치형태

The Form of Government

정치형태

제 1 장 개체교회와 교인

G-1.01 개체교회

G-1.0101 개체교회의 선교적 사명

개체교회는 특정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고 있는 교회이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개체교회가 되는데 필요한 모든 복음의 은사를 주신다. 개체교회는 교회의 기본 형태이지만, 그 자체로서는 교회가 되기에 충분한 형태가 아니다. 따라서 여러 개체교회가 서로 결속되고, 책임과 의무의 관계에서 연합되고, 전체 유익을 위해 각자의 힘을 보태는, 그러한 개체교회들을 집단적으로 교회라고 부른다.

개체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성례전을 나누고^a, 하나님과 그리고 상호 간에 계약의 삶을 살면서, 복음 선포의 사역들을 수행해 나간다. 교회의 삶 속에서, 각 신자는 세상 안에서 그리고 세상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는 사역을 하도록 준비된다. 개체교회는 사람들과 지역사회와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나누고, 예배를 위하여 모이며,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고 양육하며, 사회 정의와 의를 외치며, 진리와 세상 속으로 도래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증거하기 위하여 나아간다.

G-1.0102 개체교회의 교제

미국장로교 정치제도는 남녀 신자들과 어린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그리고 서로 간에 계약관계로 연합되는 교제를 전제로 한다. 이 조직의 기틀은 교제에 바탕을 두며, 신뢰와 사랑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다.

G-1.0103 미국장로교 헌법에 따라 다스려짐

미국장로교 정치형태에서 사용되는 “개체교회”는 이 헌법에 명시된 대로, 노회에 의해 설립되고 인정을 받은 공식적으로 조직된 공동체이다. 미국장로교의 각 개체교회는 이 헌법의 처리를 받는다. 개체교회의 회원들은 당회의 지도, 그리고 상위 공의회(노회, 대회, 총회^{b,c})의 지도를 받는다. 당회는 개체교회 삶을 인도하고 치리하는 책임을 진다. 당회는 모든 사람의 섬김과 전체 교회의 발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책임을 이행해 가도록 개체교회를 이끌어 간다. 노회에 의해 수립된 다른 형태의 공동체적 증거 역시 이 헌법의 처리를 받으며, 노회의 권한에 종속된다.

G-1.02 개체교회의 조직

미국장로교 내의 개체교회는 노회의 권한에 의해서만 조직될 수 있으며 본 헌법의 조항에 따라 그 기능을 한다.

G-1.0201 조직 계약

한 개체교회를 조직할 때, 노회는 새 개체교회를 세우고자 연합하기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회원권 신청을 받는다. 이 사람들은 함께 다음과 같이 서약하여야 한다:

“아래 서명한 저희는 하나님 은총에 대한 응답으로서 미국장로교 소속의 _____ 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조직하고 세우고자 합니다. 저희는 이 장소에서 미국장로교의 신앙과 선교와 규례의 원칙에 따라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상호 연합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함께 일치하여 살고 함께 사역에 힘쓸 것을 약속하고 서약합니다.

“(서약자들 서명)”

그런 다음, 노회는 단독 재량으로, 그들이 노회 안에 조직된 개체교회라고 선언할 수 있다. 그런 다음에 사역장로(장로)의 선출과 원하는 경우 집사 선출의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노회는 새로 선출된 이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심사하고 안수하여 취임시켜야 한다. 노회는 목회 지도자를 확보하는 일, 교회의 섬김과 증거를 계획하는 일, 다른 개체교회들과의 사역을 조정하는 일, 미국장로교 헌법에 따르는 법인체 조직과 개체교회 내규에 관해 자문하는 일, 그리고 교단 전체의 삶 속에서 그 개체교회의 선교를 강화할 수 있는 기타 형태의 지원과 격려하는 일에 그 개체교회와 긴밀한 협력을 계속해야 한다.

G-1.03 개체교회의 교인

G-1.0301 교인과 세례의 의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은 사람들을 신앙으로 부르시고, 그리스도 몸인 보편적 교회의 회원이 되도록 부르신다. 세례는 그러한 부름과 인간 생명의 요구와 교회의 회원으로 입교됨을 나타내는 가시적 표시이다. 어린이 세례는 그들이 신앙으로 응답할 수 있기 이전에도 하나님에게 사랑받고 있는 백성이라는 진리를 증거하는 것이다. 주님이시고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스스로 고백하면서 회원의 계약에 들어가는 자들이 받는 세례는 하나님 은총의 선물에 대해 충성을 다할 것을 응답하는 진리를 증거해 준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교회에 그 선교적 사명뿐만 아니라, 교회의 회원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이해도 제공한다.

G-1.0302 환영과 개방성

개체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은총을 믿고, 성도의 교제와 교회 사역에 참여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을 환영해야 한다 (F-1.0403). 신앙고백과 관련되지 않는 한, 그 어떤 이유로나 교회 회원권을 거부 받는 사람이 한 명도 있어서는 안 된다. 복음은 그리스도의 교제가 모든 사람에게 확대되도록 교인들을 인도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 자신을 거부하는 것이며, 복음에 대해 비방을 가져오는 일이다.

G-1.0303 교인 가입

누구든지 다음의 방법으로 활동교인이 될 수 있다:

- a. 공적인 신앙 고백: 회원의 의미 및 책임에 대해 당회의 신중한 심사를 받은 다음, 공적인 신앙고백을 함으로써; 아직 세례를 받지 않았을 경우, 신앙고백을 한 사람은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한다.
- b. 이명: 다른 기독교 교회의 교인일 때는 이명증서에 의해서,
- c. 신앙의 재확인: 이전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고, 자기들의 신앙을 공적으로 고백한 사람은 신앙을 재확인함으로써.

G-1.0304 교인들의 목회

a.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이 된 것은 기쁨이고 특권이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선교에 참여한다는 결단이기도 하다. 신실한 교인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증거하고, 그리스도 교회의 목회 활동에 책임 있게 참여한다는 약속을 한다. 그러한 참여에 다음이 포함된다:

- 언행으로 복음을 선포하는 일,
- 개체교회의 공동생활과 예배에 참여하는 일,
- 기도와 상호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서로 세워주는 일,
- 성경과 기독교 신앙과 삶에 관한 것들을 공부하는 일,
- 물질과 시간과 재능을 바쳐서 교회의 목회사역을 지원하는 일,
-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를 통해 새로운 삶의 질을 나타내는 일,
- 타인의 섬김을 통해, 세상 속에서 하나님 활동에 응답하는 일,
- 개인적, 가족적, 직업적, 정치적, 문화적, 그리고 사회적인 삶의 관계에서 책임 있게 살아가는 일,
- 평화, 정의, 자유, 인간 성취를 위해 세상에서 사역하는 일,
- 교회의 치리하는 책임에 참여하는 일, 그리고

교인으로서 자신의 신실성에 대해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평가하며, 교회의 예배와 사역에 자신의 참여를 증진하고 보다 의미 있게 하는 방법을 깊이 생각하는 일 등이다.

G-1.04 교인의 분류

미국장로교의 개체교회 교인은 세례교인, 활동교인, 관련교인을 포함한다.

G-1.0401 세례교인

세례교인은 세례의 성례를 받았으며(현 교회에서든 다른 교회에서든), 당회에 의해 세례교인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는 신앙고백을 하지 않은 교인이다. 그러한 세례교인은 목회적 보살핌과 교회의 가르침을 받으며 주님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다.

G-1.0402 활동교인

활동교인은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고 그 교회의 교인이 된 후, 그 교회의 치리에^d 자발적으로 순응하고, 또 교회의 활동과 예배에 참여하는 교인이다. 활동교인은 또한 교회 치리에 참여하고 직제사역에 선출될 수 있다 (G-2.0102 참조). 활동교인은 정기적으로, 기도로 깊은 성찰을 하면서, G-1.0304 에 적혀 있는 교인의 책임과 실천에 재결단을 해야 한다. 개체교회의 활동교인이 되고자 하는 자를 준비시키는 책임은 당회에 있다.

G-1.0403 관련교인

관련교인은 본 교단의 다른 교회의 교인이거나 혹은 다른 교단이나 기독교 조직에 속한 회원인데, 소속 교회가 있는 지역사회에서 임시로 이사 온 사람으로서 소속 교회의 공의회나 치리회로부터 무효한 교인이라는 증명서를 받아 제출하고 당회에 의해 관련교인으로 입교한

사람이다. 관련교인은 개체교회의 삶에 활동교인과 같은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나, 공동의회에서 투표권이 없고, 그 개체교회의 직제사역이나 다른 직분에 선출될 수 없다.

G-1.0404 기타 참석자들

미국장로교의 교인이 아닌 사람들이나 적극적인 교회 참여를 중지한 사람들도 환영하며, 그들도 교회의 생활과 예배에 참여하고 목회적 보살핌과 가르침을 받을 수 있다. 세례를 받은 사람은 누구나 성만찬에 초대된다. 성만찬 상에 나오는 것은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권리가 아니고, 믿음과 회개와 사랑으로 나아오는 받을 가치가 없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임을 기억해야 한다 (W-2.4011). 타 교파의 신앙고백을 하는 교인들은 W-2.3014 조항에 따라 어린이 세례를 요청할 수도 있다.

G-1.05 공동의회

G-1.0501 연례회의와 임시회의

개체교회는 연례 공동의회를 개최해야 하며, 또한 공동의회에서 논의하기에 합당한 어떤 목적이 있을 때,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임시회의에서 다루어지는 안건은 그 회의가 소집된 사안으로 국한되어야 한다.

교회의 연례회의나 임시회의에 참석한 모든 활동교인은 투표권을 가진다. 개체교회들은 의사일정 진행에 필요한 정족수 규칙을 마련해야 한다.

G-1.0502 공동의회 소집

공동의회는 당회나 노회에 의해 소집되어야 한다. 또는 교인 명부에 들어있는 활동교인 1/4의 서면 요청이 있을 때 당회에 의해 소집되어야 한다. 모든 공동의회 소집은 적절히 공고되어야 한다. 사전 공고에 관한 최소 요건 규칙을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하고, 회의소집의 사전 공고를 예배 중에 적절하게 해야 한다.

G-1.0503 공동의회에 적절한 안건

공동의회에 다루어질 안건은 다음에 관련된 사안으로 국한되어야 한다:

- a. 사역장로(장로)들, 집사들, 그리고 재단이사들을 선출하는 일;
- b. 담임목사, 동사목사, 부목사를 청빙하는 일;
- c. 기존의 목회관계를 변경하는 일 - 목사(들) 청빙 조건의 적절성에 대해 검토함으로써, 또는 해소를 요청하거나, 해소에 동의하거나 동의하길 거절함으로써;
- d. 부동산의 구매, 저당, 또는 매각하는 일;
- e. 헌법에 허락된 바에 따라 면제 청원을 노회에 하는 일 (G-2.0404).

민사법에 따라 허용되는 한, 교회의 업무와 법인적 업무 둘 다 같은 공동의회에서 처리될 수 있다.

f. 연합선교 교회 (선교를 위한 교회 연합)를 조직하기 위한 계획의 승인 혹은 연합선교 교회의 개정이나 해체 (G-5.05).

G-1.0504 의장

위임받은 담임목사가 보통 그 교회의 모든 회의를 사회한다. 담임목사가 사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이나 그녀는 노회의 회원인 다른 교역장로(목사)나 노회의 허락을 받은 사람을

의장으로 칭해야 한다. 위임된 담임목사가 없을 경우나, 위임된 담임목사가 사회를 진행할 수 없거나 다른 의장을 지명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하여 노회는 의장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G-1.0505 서기와 회의록

당회 서기는 교회에서 개최되는 모든 회의에서 서기로 봉사한다. 당회 서기가 임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교회는 그 회의를 위한 서기를 선출해야 한다. 서기는 반드시 교회의 결정을 회의록에 기록해야 한다.

제 2 장 직제사역, 위임, 인증

G-2.01 교회의 직제사역

G-2.0101 그리스도의 사역

교회의 사역은 전체교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사다. 그리스도만이 홀로 그의 뜻대로 교회를 다스리시고 부르시고 가르치시고 사용하시며, 하나님의 새 창조를 확립하시고 확장하시기 위해 남녀의 사역활동을 통해 그의 권위를 행사하신다. 그리스도의 사역이 모든 사역의 토대이고 기준이며 “섬김을 받으려 하심이 아니라, 섬기려고” 오신 분(마 20:28)이 모범이다. 사역의 기본 형태는 하나님의 온 백성의 사역이고, 그들의 일부가 부름을 받고 특정 직제사역을 수행하는 것이다. 교인들과 직제사역에 있는 이들은 다 같이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섬긴다.

G-2.0102 직제사역

교회의 직제사역은 신약에 서술되어 있으며 본 교회가 유지해 온, 집사들^a과 장로들(교역장로들^b과 사역장로들^c)을 말한다. 직제사역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번성할 수 있도록 교회의 삶에 질서를 주는 은사이다. 이러한 직제사역이 존재한다고 해서 교회의 총체적 사역에 대한 모든 회원의 헌신의 중요성이 절대 감소하지 않는다.

본 교회의 정치는 대의정치이며^d, 장로들과 집사들을 선출하는 일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부여된 양도할 수 없는 권리이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도 그 조직의 선출을 받지 아니하고는 개체교회의 직제사역이나 공의회에서 직분을 받지 못한다.

교역장로(목사), 사역장로(장로) 또는 집사의 사역을 위한 안수는 그 직제의 사역에 고유하게 주어진다.

G-2.0103 직제 사역에 부름

본 교회 직제사역에 부름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행위이다. 이러한 부름은 개인의 양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의 승인과 본 교회 공의회의 일치된 판단에 의해 명백해진다.

G-2.0104 은사와 자격

a. 교회 안의 특별한 직분을 수행하도록 부름 받은 이들— 집사들, 사역장로(장로)들, 교역장로(목사)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다양한 직책에 적절한 은사를 주신다. 특정한 사역을 맡은 사람들은, 필요한 은사와 능력을 보유하는 것 외에도, 강한 믿음과 헌신적인 제자직, 그리고 구주와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사람이라야 한다. 이들의 생활 방식은 교회와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타내는 것이어야 한다. 이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승인과 교회 공의회의 일치된 판단을 받아야 한다.

b. 안수 사역의 표준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에 기쁨으로 순복하려는 교회의 열망을 나타낸다 (F-1.02). 안수와/또는 취임을 책임지는 공의회 (G-2.0402; G-2.0607; G-3.0306)는 각 후보자의 소명, 은사, 준비와 직제사역 책임의 적합성을 반드시 심사해야 한다. 그 심사는 후보자의 안수와 취임에 관한 헌법 질문들 (W-4.4003)에 명시된 모든 요구 사항을 이행할

능력과 결단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일을 반드시 포함하지만, 여기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공의회가 각 후보자에게 표준을 적용함에 있어 성경과 신앙고백서의 지침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

G-2.0105 양심의 자유

직제사역에서 교회를 섬기는 사람은 본 헌법에 명시된 개혁 신앙과 정치 체제의 본질에 충실해야 하는데 이는 교회의 순결성과 건전성을 위해 필요한 일이다. 이런 표준에서 심각하게 이탈하지 않고 타인의 권리와 의견을 침해하지 않으며 또한 본 교단의 헌법적 관할을 어기지 않는 한, 성경해석에 관하여 양심의 자유가 유지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미국장로교의 직제사역에 참여하려면 그 사람은 양심의 자유를 특정 범위 내에서 행사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그이나 그녀가 직제사역을 추구하거나 계속 봉사하는 동안에는, 교회의 제 표준에 해석된 대로 그들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예속되어야 한다. 개혁 신앙과 정치체제의 본질로부터 떠났는지의 결정은 먼저 관계된 개인이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 결정의 책임은 그이나 그녀가 회원으로 있는 공의회에 있다.¹

G-2.02 집사: 연민과 봉사의 사역

G-2.0201 집사의 정의

성경^e에 제시된 집사직은 연민과 증거와 섬김의 직분으로서, 가난한 자, 배고픈 자, 병든 자, 길 잃은 자, 외로운 자, 압제 받는 자, 부당한 정책이나 제도에 억눌린 자, 괴로워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적 사랑을 나누는 것이다^f. 영적 인품, 정직한 평판, 모범적인 삶, 형제자매 애, 진심 어린 연민과 건전한 판단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 사역에 선출되어야 한다.

G-2.0202 당회 권위하에 놓임

집사들은 개별적으로 위임받을 수도 있고 집사회로 조직될 수 있다. 어느 경우이든지 그들의 사역은 당회의 감독을 받으며 당회 권위하에 놓인다. 집사들은 개체교회 내의 특별 직무, 즉 궁핍한 교인들을 돌보는 일, 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일, 자선의 넉넉한 마음을 함양하는 일, 특정한 사람들이나 대의를 위해 헌금을 모금하고 분배하는 일, 또는 개체교회의 건물이나 재산을 감독하는 일을 맡을 수 있다. 집사들은 주의 만찬에서 보조하는 일을 포함하여 당회가 위임하는 다른 임무를 맡을 수 있다 (W-3.3616). 개체교회는 다수결에 의하여 집사의 직제사역을 두지 않는 결정을 할 수도 있다. 만일 개체교회가 집사회나 개별적으로 위임한 집사들을 두지 않는 경우, 이 직제사역의 기능은 사역장로(장로)나 당회가 책임져야 한다.

¹미국연합장로교회 역사의 아주 초기, 총회가 생기기도 전에, 뉴욕 대회와 필라델피아 대회의 재연합 계획 속에 다음의 문장이 포함되어 있다: ‘어떤 사안이 다수결의 투표로 결정되면, 모든 회원은 그 결정에 능동적으로 동의하든지, 아니면 그 결정에 수동적으로 복종해야 한다; 만일 자신의 양심이 그 어느 것도 허락하지 않으면, 온당하게 논의하고 항의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가진 후, 분열을 시킬려고 시도하지 말고 우리들의 교제에서 평화롭게 탈퇴해야 한다. 다만, 이 조항은 장로교 정치의 교리에 있어 필수적인 사안이라고 교회가 판단하는 그런 결정에만 해당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역사적 개요 (P) p. 1310) (1758 년의 연합계획, par. II.)

G-2.03 사역장로(장로): 분별과 다스림의 사역*G-2.0301 사역장로(장로)의 정의*

구약시대에 백성을 다스리는 장로들이 있었던 것처럼, 신약시대에도 하나님의 영을 분별하고 하나님 백성을 다스리는 사역에 참여하도록 특정한 은사를^g 받은 사람들이 있었다.

따라서 개체교회들은 지혜 있고 성숙한 믿음이 있는 자들, 탁월한 지도력을 갖춘 자들,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선출해야 한다. 사역장로(장로)는 그들이 회중 위에 “균립하기”(마 20:25)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신실한지를 분별하고 측정하며 회중의 신앙과 삶을 강화하고 양육하기 위하여 회중에 의해 선택받은 것이다. 교역장로(목사)들과 더불어 사역장로(장로)들은 지도력을 발휘하고 다스림과 영적 분별을 하며 규율^h을 실행하며, 그들은 또한 에큐메니컬 관계를 포함하여 전체교회와 더불어 개체교회의 삶을 책임 진다. 개체교회에서 선출될 때, 그들은 당회 회원으로서 충실하게 섬겨야 한다. 차상위 공의회에 총대로 선출되었을 때 사역장로(장로)들은 교역장로(목사)들과 동일한 권위를 가지고 참여하고 투표하며, 어떤 직책에도 피선될 자격이 있다.

G-2.04 사역장로(장로)와 집사에 대한 일반 조항*G-2.0401 사역장로(장로)와 집사의 선출*

사역장로(장로)들과 집사들은 개체교회에 의해 남녀 교인들 가운데서 선출된다. 사역장로(장로)들과 집사들의 공천과 선출에 교회 회원들의 풍부한 다양성이 반영되어야 하고, 참여와 포괄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F-1.0403). 사역장로(장로)들과 집사들은 교인들 가운데서 선발되고, 그들을 대표하는, 회중이 선출한 위원회에 의해 공천을 받아야 한다. 개체교회는 공천위원회 구성에 관한 자체적인 규정을 마련할 수 있는데, 그 위원회 위원들 가운데 적어도 세 명은 활동교인이어야 하고, 적어도 한 명은 현재 당회에서 시무하는 사역장로(장로) 이어야 한다. 담임목사는 직무상 위원이며 투표권이 없다. 선거가 개시되었을 때, 개체교회 활동교인 중 누구라도 공동의회 현장에서 공천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회를 항상 주어야 한다. 출석하여 투표한 전체 활동교인의 과반수에 의해 선출이 이루어져야 한다.

G-2.0402 사역장로(장로)나 집사로서 사역 준비

교인들이 사역장로(장로)와 집사의 직제사역에 선출되었을 때, 당회는 그들이 공부하고 준비하는 기간을 마련해줄 것이며, 그런 다음에 그들의 개인적 신앙, 교회의 헌법에 내포된 교리, 정치, 권징에 대한 지식, 그리고 사역의 의무에 대해 시취해야 한다. 당회는 또한 직분에 합당한 사역을 그들이 기꺼이 담당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그들과 협의해야 한다. 만일 이 시험에서 통과되면, 당회는 안수식과 취임식 날짜를 정해야 한다.

G-2.0403 안수와 취임 예식

안수식과 취임식은 그 초점을 그리스도와 교회의 선교와 사역을 통해 그리스도를 섬기는 기쁨과 책임에 맞추어야 하며, 이에 적절한 설교를 포함해야 한다. 당회장이나 권한을 받고 집례하는 사람은 사역장로(장로)와 집사의 사역의 본질을 간략히 진술해야 한다. 안수식과 취임식은 예배의 맥락에서 거행되어야 한다. 예배모범 (W-4.4000)에 나와 있는 그 예배의 순서를 따라야 한다.

G-2.0404 임직 기간

사역장로(장로)들과 집사들은 삼 년을 넘는 임기로 당회와 집사회에 선출될 수 없으며, 개체교회의 규칙에 따라 재선 자격이 주어질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사역장로(장로)나 집사도 연속 육 년을 넘는 기간 동안 시무할 자격을 갖지 못하며 연속 육 년 시무한 사역장로(장로)나 집사는 최소한 일 년간 당회나 집사회에 선출될 자격이 없다. 각 연조에 선출된 인원을 가능한 한 동수가 되게 하며, 매년 한 조만이 임기를 마친다. 노회는, 서면 요청과 과반수 투표에 의해, 임기제한의 면제를 개체교회에 허용할 수 있다.

안수 받고 본 교단에 속한 개체교회에서 활동교인으로 있는 한, 사역장로(장로)들이나 집사들은 당회나 집사회에 시무하지 않더라도 그들이 받은 안수 사역의 책임이 지속된다. 단, G-2.0406, G-2.0407 조항이 적용될 경우나 권징조례에 의거한 경우는 예외다.

G-2.0405 관계의 해소

사역장로(장로)나 집사는 당회 동의를 얻어 당회나 집사회에서 사임할 수 있다. 개체교회의 활동교인을 그만둘 때, 사역장로(장로)나 집사는 그 당회 회원이나 집사회 회원을 그만두는 것이다. 사역장로(장로)나 집사가 거주지 변경이나 신체 부자유 이유로 취임한 개체교회에서 맡은 직분을 일 년간 수행할 수 없을 때, 그이나 그녀의 시무 관계는 당회에 의해 해소되어야 한다. 다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이며, 그 예외 사유가 기록되어야 한다.

G-2.0406 사역장로(장로)나 집사로서 사역 해제

만일 지금까지 어떠한 조사 대상이 되거나 혐의에 대한 공소 제기를 받아본 적이 없는 무흠의 사역장로(장로)나 집사가 직제사역으로부터 직분 해제를 소속 당회에 청원한다면, 그이나 그녀의 회원권을 보유한 개체교회의 당회는 그러한 직무해제를 허락하고 동시에 사역장로(장로)나 집사 명부에서 그 사람의 이름을 삭제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가 사역장로(장로)나 집사 편에 잘못이 있다는 판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사역장로(장로)나 집사의 직분 수행의 해제는 그 사역에 포함된 모든 기능의 중단을 요구한다. 직분에서 해제된 그러한 사람의 신분은 어느 교인과도 동일하게 해야 한다. 만일 본 조항에 의해 해제된 어느 사람이 후에 직제사역에 복원되기 원하면, 그 사람은 해제를 허락했던 당회에 복원 신청을 해야 하며, 그 당회의 승인을 받으면, 다시 안수 받는 일없이 그 해제된 사역을 수행할 수 있도록 회복되어야 한다.

G-2.0407 관할권의 파기선언

사역장로(장로)나 집사가 본 교단의 관할권 파기를 선언하는 서면 진술서를 당회 서기에게 제출할 때, 그 파기선언은 접수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당회가 승인하지 않은 사역을 사역장로(장로)나 집사가 고집할 때, 그 당회는 그이나 그녀와 상담하고 당회의 불승인을 정식 통고해야 한다. 만일 상담의 기회가 주어지고 당회의 서면 불승인 통고를 받은 다음에도 사역장로(장로)나 집사가 불승인한 사역을 고집한다면, 당회는 그 사역장로(장로)나 집사가 본 교단의 관할권을 파기한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관할권의 파기선언은 그 사역장로(장로)나 집사를 회원권과 직제사역에서 제명하는 것이며, 사역의 수행을 종결시키는 것이다. 파기선언의 사실은 차기 당회 모임에서 당회 서기가 보고해야 하고, 당회는 그 파기를 기록해야 하고, 사역장로(장로)나 집사의 이름을 해당 명부에서 삭제해야 하며, 그 밖의 행정적 조치들을 본 헌법의 규정대로 취해야 한다.

G-2.05 교역장로(목사):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G-2.0501 교역장로(목사)의 정의*

교역장로(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라고도 칭함)는 신앙을 가르치고 성도들을 목회 사역에 준비시키는 일에 전적으로 헌신해야 한다 (엡 4:12). 또한, 노회가 권한을 부여한 다양한 목회 사역에서 봉사하기도 한다. 그들이 말씀의 설교자이며 가르치는 교사로서 시무할 때, 교회의 신앙을 설교하고 가르쳐야 하며, 이로써 교인들이 복음의 모범에 맞추어 살고 증거와 봉사를 위해 강건해지도록 해야 한다. 그들이 세례반과 성찬상에서 봉사할 때, 그들은 하나님 은혜의 신비를 해석하고 하나님의 새 창조의 소망을 향해 교인들의 비전을 고양해야 한다. 그들이 담임목사의 직분ⁱ으로 섬길 때는 일상 삶의 투쟁 속에서 신앙의 훈련을 받도록 교인들을 지원해야 한다. 그들이 노회원으로 섬길 때는, 그들은 항상 그리스도의 정신을 분별하고, 헌신과 토론과 의사결정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일에 힘쓰면서 다스리는 책임에 참여해야 한다.

G-2.0502 노회와 교역장로(목사)

주님께서 특정한 회원들을 교역장로(목사)로 불러 따로 세우실 때, 교회는 노회의 결의를 통해 그 부르심을 확인한다. 노회는 특정 사역이 교회의 선교에 유익한 일인지, 교역장로(목사)로서 안수를 요구하는 인정된 목회의 부름인지, 결정해야 한다. 교역장로(목사)는 그 사역의 수행에 있어서 노회에 책임을 진다. 교역장로(목사)는 노회 자체의 결의에 의해 노회 회원권을 가지며, 어떤 목회관계도 노회의 승인 없이 수립되거나 변경되거나 해소될 수 없다.

G-2.0503 회원권의 분류

교역장로(목사)는 노회 회원이며, 그 노회 인준을 받은 목회 활동을 해야 하고, 그 노회가 결정하는 대로 보통회원이 되거나 명예은퇴 회원이 된다.

a. 인정된 목회에 참여

인정된 목회는 반드시

- (1) 성경과 본 교단의 *신앙고백서*와 *규례서*에 명시된 대로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의 선교와 부합됨을 나타낸다;
- (2) 타인을 섬기고 도우며, 타인의 목회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 (3)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학적 지식의 충실한 증거를 보인다;
- (4) 봉사하는 조직체와 기관과 단체뿐만 아니라 노회에 대해서도 그 목회의 성격과 운영에 책임을 지면서 수행해 간다.
- (5) 노회의 심의와 예배와 사역에서 책임 있는 참여를 하고, 본 교단의 개체교회의 삶이나 미국장로교와 교류관계에 있는 교회 삶에서도 책임있는 참여를 하는 것을 포함한다 (G-5.0201).

교역장로(목사)들이 교단 관할권 밖의 인정된 목회에 부름 받을 때, 그들은 복음의 사역을 함께 나누는데 도움을 주는 삶의 질을 나타내 보여야 한다. 그들은 개체교회와 노회, 그리고 에큐메니컬 관계에 참여해야 하고, 교단의 차상위 공의회들과 그 공의회들의 이사회와 기관에 피선될 자격을 가진다.

노회는 모든 교역장로(목사)들이 개체교회 밖에서 활동하는 인정된 목회활동의 사역에 대해 연례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b. *보통회원*

보통회원은 이전에 인정된 목회에서 활동했으나 현재는 목회직 수행을 포기할 의도는 없지만, G-2.0503a의 모든 기준에 부합하는 목회를 하지 않는 교역장로(목사)를 말한다. 노회가 알고 있는 가정에 대한 책임이나 다른 개인 사정 때문에, 인정된 목회의 제반 기준을 다 만족하게 하는 목회를 할 수 있는 능력에 제한을 받고 있는 교역장로(목사)는 보통회원으로 지명될 수 있다. 보통회원은 G-2.0503a 기준의 가능한 한 많은 부분에 부합해야 하며, 개체교회의 삶에 활동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보통회원은 노회 회의에 참여하고 발언하고 투표하고 직책을 맡을 권리가 있다. 보통회원의 신분은 매년 재검토되어야 한다.

c. *명예은퇴 목사*

노회는 어떤 노회 회원의 요청에 의해, 고령이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회원을 명예은퇴 목사로 지명할 수 있다.

G-2.0504 *목회 관계*

교역장로(목사)들이 개체교회의 담임목사나 동사목사 또는 부목사로 청빙 받을 때,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권하고 기쁨과 정의를 알리는 삶의 질과 관계에 책임을 진다. 그들은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전파하며, 세례와 주의 만찬을 거행하고, 회중과 더불어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책임이 있다. 그들은 사역장로(장로)들과 더불어, 교인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도록 고무하고; 교회 내에서 그들의 과제와 세상에서 그들의 선교적 사명을 수행할 수 있게 그들을 준비시키며; 가난한 자, 병든 자, 어려움에 부딪친 자, 죽어 가는 자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쏟음으로써 목회적 보살핌을 수행하고; 개체교회의 의사결정에서 참여와 포용성의 원칙을 수행할 회중의 지도력을 세우며 관심과 봉사정신으로 전체 인간 공동체의 삶에 미치는 과제를 포함한 제반 다스리는 책임에 참여하도록 한다. 그들은 집사들과 더불어 연민과 증거와 섬김의 사역을 함께 나눈다. 이러한 목회적 임무에 더하여, 그들은 당회보다 상위인 공의회에서와 에큐메니컬 관계에서도 교회의 사역을 함께 나눌 책임이 있다.

a. *위임 목회 관계*

위임 목회관계란 담임목사와 동사목사와 부목사를 말한다. 교역장로(목사)는 무기한 임기로 또는 개체교회와 협의하여 노회가 결정하고 청빙에 명시된 대로 지정된 기간 목회관계에 위임될 수 있다. 개체교회가 말씀에 따라 선교 전략상 필요하다고 결정할 때, 그 교회는 추가로 목사들을 청빙할 수 있다. 이처럼 추가로 청빙 받은 목사들을 동사목사나 부목사라 부르며, 각 목사의 임무와 목사들 간의 관계는 노회의 승인을 받아서 당회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개체교회에 두 명의 목사가 동사목사로 있을 때, 그 중 한 명의 목회관계가 해소되면 남은 목사가 그 교회의 담임목사가 된다. 개체교회에 대한 부목사 관계는 담임목사의 관계에 종속되지 않는다. 부목사는 그 교회의 차기 담임목사가 될 자격을 통상적으로 갖지 못한다.

b. *임시 목회 관계*

임시 목회관계는 노회의 승인을 받으며, 공식 청빙이나 위임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교회에 담임목사가 없거나 담임목사가 그 직분을 수행할 수 없을 때, 당회가 노회의 승인을 얻어 교역장로(목사)나 후보생이나 사역장로(장로)를 임시 목회관계로 세울 수 있다. 어떠한 공식 청빙이나 공식 위임이 거행되어서는 안 된다.

임시 목회관계의 칭호와 임기는 노회가 결정해야 한다. 임시 목회관계로 시무하는 사람은 12 개월을 넘지 않은 특정 기간 초청되며, 노회의 승낙을 얻어 그 임기를 갱신할 수 있다. 임시 목회관계로 시무하는 교역장로(목사)는 차기 담임목사나 동사목사나 부목사가 될 자격을 통상적으로 갖지 못한다.

c. 예외 조항

노회는, 선교 전략상 현재 부목사로 청빙 받은 교역장로(목사)에게 차기 담임목사나 동사목사 자격을 허용하거나, 임시 목회관계로 시무하는 교역장로(목사)에게 차기 담임목사나 동사목사나 부목사의 자격을 허용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이 자격을 허용하는 노회는 노회에 출석하여 투표한 회원의 3/4 표결에 의해 그러한 관계를 수립해야 한다.

G-2.0505 타 교단 목사의 이명

a. 타 기독교 교단의 목사가 한 노회의 관할권하에서 사역하도록 적절하게 청빙 받을 때, 그 노회는 제반 헌법적 조건들이 충족된 후, 그 목사가 전에 받은 안수를 그대로 인정해야 한다. 그러한 목사들은 학력증서와 무흠하다는 증거를 노회에 제시해야 하고, 또한 교단 후보생에게 요구되는 인격과 학문적 자질을 보유하고 있다는 만족스러운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G-2.0607 과 G-2.0610 참조). 예외적 상황에서는 다음의 조항들이 적용될 것이다:

(1) 이민자들의 펠로쉽과 이민 교회를 담당하는 목사들의 경우에 있어서, 만일 노회가 그 이민그룹과 더불어 갖는 선교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노회는 비록 그 목사가 등록 당시에 후보자에게 요구되는 교육 경력이 부족할지라도, 소속 교단에서 무흠하다는 증거를 제시하는 새 이민 목사의 안수를 인정하고 노회 회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며, 그 이민 목사가 노회에서 성공적인 목회를 하는 데 필수적이고 유익할 것으로 간주되는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2) 다른 개혁교회의 안수 목사로서 오 년이나 그 이상이 지난 경우, 노회의 2/3 표결에 의해 안수를 위해 후보생에게 요구되는 시험의 일부나 전부의 면제를 허용할 수 있다.

b. 등록할 때 그 목사는 이전에 유대관계가 있었던 모든 타 기독교 교단의 회원권을 포기했다는 증거를 노회에 제시해야 한다.

G-2.0506 사역기간 동안 노회의 임시 회원권

노회는, 타 기독교 교단의 목사가 본 교단의 인정된 목회에서 현재 임시로 사역하고 있거나, 협정조항에 따라 위임 목사로 임시적으로 사역할 때 (규례서, 부록 C; G-5.0202), 그 목사가 노회의 자체 규칙에 따라 세워진 그러한 사역의 준비에 대한 요구사항을 충족할 때, 그를 노회원으로 등록할 수 있다.

G-2.0507 교역장로(목사)로서 사역 해제

교역장로(목사)가 D-10.0101 과 D-10.0201 에 의거하여 어떠한 조사를 받은 적이 없고, 어떠한 죄목으로도 피소된 적이 없으며 무흠 목사로서 교역장로(목사)의 직제사역 수행에서 해제되기를 청원할 때, 노회는 그 사람의 이름을 해당 명부에서 삭제하고, 당회의 요청에 따라 그 사람을 일반 교인 자격으로 남게 한다. 직제사역 수행으로부터의 해제는 그 목회에 관한 모든 기능의 정지를 요구한다. 교역장로(목사)에게 속하는 호칭들이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그와 같이 직무가 해제된 사람은 개교회의 모든 활동교인이 분담하는 사역에 참여해야 한다. 만일 본 문항에 따라 해제된 어떤 사람이 후에 교역장로(목사)로서 직제사역에의 복원을 원할 경우, 해제를 허락한 그 노회에 복원 신청을 내야 하며 그 노회의 승인에 따라 안수 질문의 재확인을 하고 그 사람에게 회원권

자격을 부여하는 노회에서 목회를 재개함으로써, 재안수를 받지 않고 교역장로(목사)로서 직제사역의 수행이 복원된다.

G-2.0508 인정된 목회 활동의 불이행

어느 교역장로(목사)가 더 이상 인정된 목회에 간여하지 않거나 (G-2.0503a), 그가 보통회원의 기준을 더 이상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G-2.0503b), 명예은퇴 목사 (G-2.0503c)가 아니라고 노회가 결정할 때, 그 사람은 노회 회의에서 발언권이나 투표권을 가질 수 없다. 단, 회의에서 고려 중인 사안이 그이나 그녀와 노회 사이에 관계된 경우는 예외이다. 그러한 사람들의 명단을 노회 서기가 노회에 매년 보고해야 한다. 만일 교역장로(목사)가 인정된 목회의 기준이나 보통회원 기준을 삼 년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노회는 그 사람의 이름을 회원명부에서 삭제할 수 있고, 또한 당회의 요청에 따라 그 사람을 일반교인 자격으로 남게 한다.

G-2.0509 관할권의 파기선언

교역장로 (또는 권한 대행자)가 소속 노회 서기에게 본 교단 관할권을 파기하는 서면 진술서를 제출할 때, 그 파기는 접수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교역장로(목사)가 노회가 불승인하는 일을 고집하여 행할 때, 그 노회는 그 교역장로(목사)와 상담하고, 그런 다음 노회의 불승인을 통고한다. 만일 상담의 기회를 주고 불승인을 서면으로 정식 통고한 후에도 그 교역장로(목사)가 그 일을 고집한다면, 노회는 그이나 그녀가 본 교단의 관할권을 파기한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어느 교역장로(목사)가, 본 헌법의 예외를 제외하고, 타 교단에서 어떤 성격의 회원권을 받아들이거나 이를 지속할 때, 노회는 그 사실을 기록해야 하며, 그 교역장로(목사)를 명부에서 삭제해야 한다.

관할권의 파기는 그 교역장로(목사)를 회원권과 직제사역에서 제명하고 그 목회직 수행을 종결시키는 일이어야 한다. 그 파기는 노회 서기에 의해 차기 노회 회의에 보고되어야 하고, 그 파기는 기록되어야 하고, 그이나 그녀의 이름은 해당 등록명부에서 삭제되어야 하며, 그러한 파기의 공개적 통보를 포함하여 본 헌법이 요구하는 기타 행정적 조치를 해야 한다.

G-2.06 목회 준비

G-2.0601 준비의 성격과 목적

교역장로(목사)로서 안수를 받고자 하는 이들은 노회 지도하에서 그들의 직분을 위한 충분한 준비를 하는 일이 중요하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노회는 교역장로(목사)가 되기 위해 준비하는 이들과 소속 당회와 지교회와 계약관계를 맺어야 한다. 이 관계는 지망과 후보의 두 단계로 나누어져야 한다.

G-2.0602 시간 요구사항

지망생으로 등록하려면 그 지원자는 후원 교회의 회원이어야 하고, 최소한 육 개월간 그 교회의 사역과 예배에서 활동하고 있어야 하며, 그 후원 교회의 당회 추천을 받아야 한다. 지망과 후보 단계는 최소한 이 년 이상이어야 하며, 그 중 적어도 일 년은 후보생으로 있어야 한다.

G-2.0603 지망의 목적

지망 단계의 목적은 교역장로(목사)로서 직제사역에 부름을 받았다고 스스로 믿는 이들과 교회에 그 부름을 함께 탐사해 보는 기회를 마련해 주며, 그리하여 노회로 하여금 그 지망생의 직제사역에 대한 적합성에 관해 확실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G-2.0604 후보의 목적

후보 단계의 목적은 교역장로(목사)로서 교회를 섬길 후보생들에게 충분한 준비기간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일은 노회의 지원과 지도, 그리고 목사안수¹를 요구하는 사역의 부름에 대한 후보생의 적성과 준비상태를 평가함으로써 이루어져야 한다.

G-2.0605 감독

지망과 후보 단계의 기간에 그 개인은 계속해서 그이나 그녀가 속한 교회의 활동교인이어야 하고 당회의 배려와 훈육에 순복한다. 목회 준비와 관련된 사안에 있어서 그 개인은 계약관계의 맥락에서 노회의 감독 아래에 속한다.

G-2.0606 계약관계에 있는 동안의 봉사

지망생과 후보생은 돌보는 노회의 승낙을 받아서 어떤 형태의 감독을 받는 교회 봉사에 참여해야 한다. 이전에 사역장로(장로)로서 안수 받지 않은 지망생이나 후보생은 누구도 당회장으로 봉사하거나 성례전을 거행하거나 결혼식을 주례할 수 없다. 이전에 사역장로(장로)로서 안수 받은 지망생이나 후보생은 당회의 요청을 받으면 주의 만찬을 집례하도록 노회에 의해 허락받을 수 있다.

G-2.0607 사역을 위한 최종 평가와 교섭

후보생은 노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교역장로(목사)로서의 사역을 위한 교섭을 해서는 안 된다. 청빙 대기 중인 후보생이 안수를 위한 고시를 치를 준비가 되었다고 인증할 때, 노회는 이를 기록해야 한다. 교역장로(목사)로서 직제사역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증거로서 다음이 포함되어야 한다:

- a. 후보생의 지혜와 믿음의 성숙성, 지도력 자질, 연민의 마음, 정직성의 평판, 건전한 판단력;
- b. 지역적으로 인가받은 대학이나 대학교에서 만족할만한 학점으로 졸업한 성적증명서;
- c. 히브리어와 헬라이어 과목, 히브리어와 헬라이어 본문을 사용한 구약과 신약의 주석, 전 과목에 만족한 학점, 그리고 졸업이나 졸업 예정임을 제시하면서, 신학교 협의회가 인가하고 노회가 합당히 여기는 신학 교육기관에서 발행한 성적 증명서;
- d. 총회의 승인을 받은 표준 안수 고시에 의해 다루어진 분야의 시험 답안지와 함께 만족한 성적. 그러한 고시는 노회들이 설립한 기관에 의해 준비되고 관장되어야 한다.

G-2.0608 관계의 이전

지망생이나 후보생의 요청과 당회와 감독 노회의 승인을 받을 때, 노회는 지망생이나 후보생의 계약관계를 이전할 수 있다.

G-2.0609 *관계의 취소*

지망생이나 후보생은 당회와 노회와 협의한 후 계약관계를 취소할 수 있다. 노회는 또한 충분한 사유가 있을 때 지망생이나 후보생 명부에서 그 개인의 이름을 제명할 수 있으며, 이 결정과 그 사유를 당회와 그 개인에게 보고하며, 만일 적절하다면, 그 개인이 등록된 그 교육기관에도 보고할 수 있다. 그러한 결정을 취하기 전에, 노회나 노회의 지정을 받은 기관은 후보생이나 지망생에게 제명에 관해 자신들의 의견을 말할 기회를 주도록 합리적인 시도를 해야 한다.

G-2.0610 *예외*

노회는 G-2.0607d 의 요구사항만은 제외하고 G-2.06 에 있는 안수의 요구사항의 어느 것이라도 3/4 의 표결로 면제해 줄 수 있다. 만일 노회가 후보생에게 G-2.0607d 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도록 요구하지 않을 만한 충분하고 합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노회는 표준 안수 고시에 의해 다루어진 분야에 목회 후보생의 준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대안을 3/4 표결로 승인해야 한다. 예외를 허용한 사유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노회 회의록에 기록되어야 하며, 지망생이나 후보생이 이전해 갈 수 있는 노회에도 전달되어야 한다.

G-2.07 안수

G-2.0701 *안수*

교역장로(목사)로서의 직제사역의 안수는, 한 사람을 직제사역에 성별하여 세우는, 노회를 통해 수행되는 전체 교회의 행위이다. 그러한 사람은 감독 노회의 안수 요건을 반드시 수행해야 하며, 개체교회의 섬김에 또는 후보생과 청빙 노회가 합당히 여기는 교회의 다른 선교 사역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한다.

G-2.0702 *안수 장소*

목회 후보생에게 청빙을 제공하는 노회가 통상적으로 그 후보생을 심사하고 안수하며 위임시킨다.

G-2.0703 *안수 예식*

예배모범 (W-4.4000)에 있는 예식의 순서를 따라야 한다.

G-2.0704 *안수 기록*

청빙 노회는, 새 교역장로(목사)가 안수 질문에서 의무를 이행하기로 서약한 서면 확인서와 더불어 안수와 위임 사실을 기록해야 하며, 그 교역장로(목사)를 노회의 회원으로 등록해야 한다. 그 노회 서기는 이러한 조치들을 총회와 양육 노회에, 그리고 후보생이 이전에 회원이었던 개체교회에 반드시 알려야 한다.

G-2.08 청빙과 위임

G-2.0801 *목사 공석*

개체교회의 목사직이 공석이거나 노회가 현존하는 목회관계 해소의 발효일을 승인한 다음에, 개체교회는 노회의 지도와 승낙을 받아서 다음의 방법으로 그 공석을 채우는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G-2.0802 목사 청빙위원회 선출

당회는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전체 개체교회를 대표하는 목사 청빙위원회를 선출한다. 그 위원회의 임무는 회중에 의해 선출되도록 목사 한 명을 공천하는 일이다.

G-2.0803 청빙 절차

노회의 절차에 따라서 그리고 공동의회에 보고하기 전에, 목사청빙위원회는 청빙 고려 대상자들의 장점과 적합성과 청빙 수락 가능성에 대해 노회의 자문을 받고 이를 숙고해야 한다. 그 위원회는 회중에게 보고할 방향이 분명할 때, 당회에 통보해야 하며, 당회가 공동의회를 소집한다.

G-2.0804 청빙 조건

청빙 조건은 항상 청빙할 때 사실상 효력이 있는 노회의 최소 요구사항을 충족하거나 능가해야 한다. 당회는 목사의 청빙 조건을 매년 검토해야 하고 당회가 적절하다고 간주하면, 그 변경안이 노회의 최소 요구사항을 충족한다는 조건하에, 그 제안을 공동의회 결의(G-1.0501)에 부쳐야 한다. 그 청빙은 연금과 의료 혜택이나 총회가 승인한 추가 플랜이 포함된 미국장로교 혜택제도의 가입을 포함해야 한다.

G-2.0805 위임 예식

개체교회와 노회와 교역장로(목사 또는 후보생)가 모두 영구적 목사직이나 임명 목사직의 청빙에 동의하였을 때, 그 노회는 위임 예식을 준비하고 거행함으로써 청빙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위임은 목회관계를 수립하는 노회의 행위이다. 위임 예식은 예배의 맥락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예배모범(W-4.4000)에 있는 예식의 순서를 따라야 한다.

G-2.09 목회 관계의 해소

G-2.0901 공동의회

위임 목회관계는 노회에 의해서만 해소될 수 있다. 관계해소 절차가 교역장로(목사)나 회중이나 노회 중 누구에 의해 주도되든 간에, 항상 공동의회에서 그 사안을 고려해야 하며, 해소에 동의하거나 동의하기를 거부한다.

G-2.0902 담임목사, 동사무사, 또는 부목사가 요청 시

담임목사나 동사무사 또는 부목사가 목회관계 해소를 노회에 요청할 수 있다. 그 목사는 또한 자신의 의사를 당회에 진술해야 한다. 당회는 그 요청에 대응하고 노회에 제안하기 위해 공동의회를 소집해야 한다. 만일 회중이 관계해소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노회는 반드시 교회에서 선출한 총대들을 통해 왜 노회가 목회관계 해소를 해서는 안 되는지 그 이유를 들어야 한다. 만일 회중의 대표가 나타나지 않거나, 그 관계 유지의 사유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면, 그 요청이 허가되고 그 목회관계는 해소될 수 있다.

G-2.0903 개체교회가 요청 시

만일 개체교회에서 목회관계 해소를 원할 경우에는, 상기 G-2.0902 조항과 유사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 교인들이 목사와 관계해소를 추구하는 공동의회 소집을 당회에 요청할 때, 당회는 그 회의를 소집하고, 공동의회 의장을 임명해주도록 노회에 요청해야 한다. 만일 목사가 관계해소

요청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그 노회는 왜 그 관계를 해소해서는 안 되는지 그 이유를 그이나 그녀에게서 직접 청문해야 한다. 만일 목사가 나타나지 않거나 관계 유지의 사유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면 그 관계는 해소될 수 있다.

G-2.0904 노회의 결정

노회가 개체교회에서 보고된 문제점들을 조사할 수 있으며, 노회는 그 목사와 당회, 그리고 개체교회와 협의한 후에, 말씀에 따라 교회의 선교가 그 해소를 단호히 요구한다고 판정할 경우, 그 목회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

G-2.0905 초청에 의해서만 직무 수행

목회관계가 해소된 후, 전직 담임목사들과 부목사들은 당회장의 초청을 받지 않고서는 이전 교회의 교인들을 위한 목회적 봉사를 해서는 안 된다.

G-2.10 특정한 목회 봉사에 사역장로(장로) 파송

G-2.1001 기능

노회가 당회나 다른 책임소관 위원회와 협의하여, 선교 전략상 필요하다고 결정할 때, 노회가 지정한 제한된 목회적 봉사에 사역장로(장로)의 파송을 허가할 수 있다. 그와 같이 임명된 사역장로(장로)는 노회의 인정된 목회를 섬기도록 위임받을 수 있다. 그 노회는 그 위임에 있어서 개체교회에 파송한 사역장로(장로)로 하여금 당회를 사회하고, 성례전을 집례하며, 주 법이 허락하는 곳에서 결혼을 주례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이러한 파송에도 임기가 명시되어야 하고 이 임기는 삼 년을 초과할 수 없으나 갱신될 수 있어야 한다. 노회는 파송을 최소한 연례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G-2.1002 훈련과 시험 및 파송

G-2.1001 조항의 조건에서 봉사하기를 바라는 사역장로(장로)는 특정한 파송에 적절하다고 노회가 결정하는 대로 그러한 준비와 지도를 받아야 한다. 그 노회는 사역장로(장로)의 개인 신앙과 파송 받기 원하는 동기와 노회가 결정한 지도 분야들에 대해 심사를 해야 한다. 파송을 받았으나 그 이후 명시된 목회를 그만두는 사역장로(장로)는 사역자로서 계속해서 명단에 남을 수 있으나, 노회에 의해 다시 지교회나 목회 사역에 노회의 파송을 받을 때까지는 G-2.1001 조항에 명시된 기능을 수행할 권한이 주어지지 않는다.

G-2.1003 파송 예식

앞서 언급한 봉사를 제공하면서 개체교회를 섬길 사역장로(장로)의 자격에 만족할 때, 노회는 W-4.4000 에 명시된 질문들을 사용하여 그 사역장로(장로)를 노회가 지정하는 목회 업무에 파송해야 한다.

G-2.1004 감독

G-2.1001 조항에 의해 파송 받은 사역장로(장로)는 노회의 감독하에 사역해야 한다. 노회는 합당하고 충분한 사유가 있다면 어느 때라도 그 파송을 철회할 수 있다. 교역장로(목사) 한 사람을 멘토 겸 감독자로 지정해 주어야 한다.

G-2.11 유자격 교회 사역*G-2.1101 유자격 교회 사역의 형태*

사람들은 개체교회와 공의회, 그리고 교단 관계기관에서 직원으로 봉사할 수 있는 자격을 인증받고 부름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개인들은 그들의 업무를 통해 개인의 신앙을 반영시키며, 그들의 헌신을 통해 교회를 강화시키려고 힘쓴다. 그들이 총회에 의해 승인받은 전국 인증기관에서 제공하는 핸드북에 나오는 인증 요건들을 충족하거나 충족시킬 준비를 하도록 그들의 당회와 노회는 격려해야 한다. 전국적인 인증기관을 통해 인증서를 취득한 이들의 명단은 총회의 적절한 기관으로 보내져야 하고, 거기서 그 명단을 이들이 사역하는 노회의 정서기에 전달되어야 한다.

G-2.1102 노회와 유자격 교회 사역

노회는 당회로 하여금 인증서를 얻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계속 교육 기금과 시간을 마련하도록 격려해야 하며, 또한 인증서 교부 시에 인정예식을 거행하여 줌으로써 인증받은 이들의 기술과 헌신을 추인해 주어야 한다. 노회는 유자격 교회 사역을 하는 사람들에게 모든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수 있다.

*G-2.1103 기독교 교육사**a. 기술과 훈련*

유자격 기독교 교육사들은 개체 교회나 공의회에서 교육목회에 봉사할 수 있는 자격증을 받고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들은 성서해석, 개혁 신학, 예배와 성례전, 인성개발, 신앙개발, 종교교육의 이론과 실천, 미국장로교의 정치제도와 프로그램 및 선교 분야에서 기술을 갖추고 훈련을 쌓아야 한다.

b. 노회의 책임

노회는 유자격 기독교 교육사들과 유자격 기독교 부교육사들의 보수와 혜택에 관한 최저 기준을 수립하고, 목회를 관장하는 노회의 제 분야에 접근하도록 마련해 주어야 한다 (G-3.0307). 노회의 관할 하에서 교육 목회에 사역하는 임기 동안에는, 유자격 기독교 교육사들은 모든 노회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며, 사역장로(장로)인 유자격 기독교 교육사들은 모든 회의에서 발언권과 투표권을 부여받는다.

제 3 장 교회 공의회

G-3.01 공의회의 일반원칙

G-3.0101 교회일치의 표현으로서 공의회

공의회를 통한 교회의 상호 연관성은 교회일치의 표시이다. 미국장로교의 개체교회들은 교회가 되는 데 필요한 모든 은사를 보유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그들 자체로서는 교회가 되기에 충분하지 않다. 그보다는, 그들은 개체교회 안팎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세상에 증거하는 과제를 다른 사람들과 서로 나누도록 부름을 받았다. 이처럼 증거하도록 부름 받은 일은 모든 신자의 사역이다. 교회 공의회들의 특정한 책임은 미국장로교의 일부분이 되어 증거하는 사람들을 양육하고 지도하고 다스리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그러한 증거가 전체 교회를 강화시키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

미국장로교는 회중에 의해 선출 받은 장로들로 구성된 공의회들에 의해 다스려진다(F-3.0202). 이들 공의회를 당회, 노회, 대회, 그리고 총회라고 부른다. 교회의 모든 공의회들은 교회의 본질상 일체를 이루며, 이 헌법이 부여하는 책임과 권리와 권한을 공유한다. 공의회들은 각기 독특하지만, 어느 한 공의회의 행위가 전체 교회의 행위가 된다는 점에서 상호 관련성을 가진다. 각 공의회의 관할권은 헌법의 명시적 조항에 의해 제한을 받고, 각 공의회의 행위는 차상위 공의회의 검토 대상이 된다. 본 헌법에서 언급되지 않은 권한들은 노회들에 유보된다.

교회의 공의회들은, 그리스도의 선교에 더욱 충실하게 참여하도록 개체교회와 전체 교회를 돕기 위해 존재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공의회들은

하나님 말씀이 참되게 선포되고 들려지도록 하는 일을 마련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새 창조의 약속에 응답하면서,
모든 사람을 그러한 새 창조에 참여하도록 초대하면서;

성례전이 올바르게 집행되고 받아들여지도록 하는 일을 마련한다,

그리스도에게 접목된 이들을 환영하면서,
그리스도의 구원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증거하면서,
앞으로 다가올 하늘의 만찬을 고대하면서,
오늘 소외된 자들과 굶주린 자들과 연대를 다짐하면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계약 공동체를 양육한다,

하나님의 약속의 능력 안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선교에 봉사하면서.

G-3.0102 교회 관할권

본 교단의 공의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진리와 봉사, 규례와 권징에 관련하여 그의 뜻을 선포하며 복종하는 목적으로만 교회적 관할권을 가진다. 공의회들은 신앙 선언의 틀을 만들고, 교리의 오류와 삶의 부도덕성에 반대하는 증언을 하며, 교리와 권징에 관한 이슈를 해결하고, 양심 문제에서 조언하며, 그들 앞에 제기된 이슈들에 대해 본 *규례서*의 조항에 따라 적절히 결정을 내린다. 공의회들은 예배모범에 따라 성례전의 집례를 허가할 수 있다. 또

공의회들은 교회의 예배, 선교, 정치와 권징에 대한 계획과 규칙을 수립할 권한이 있고,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교회의 평화, 순결, 일치와 발전에 필요한 일들을 수행할 권한이 있다. 공의회들은 각 관할권하에 있는 해당 교회의 지도력과 지도와 치리를 책임진다.

G-3.0103 참여와 대표성

교회의 공의회들은 교회 회원권의 풍부한 다양성을 온전히 반영해야 하며, 의사결정과 고용정책에 있어서 대표성을 갖는 일에 전적인 참여와 접근책을 마련해야 한다(F-1.0403). 이러한 위임사항을 수행함에 있어서, 공의회들은 사역의 은사와 요구사항(G-2.0104)에 대해, 그리고 개체교회와 공의회 회원들의 제직원 선출권(F-3.0106)에 대해, 합당한 배려를 해야 한다.

각 공의회는 포용성과 대표성에 관한 교단의 위임 사항이 공의회 자체에서 실행되도록 고무하고 검토하는 절차와 장치를 개발해야 한다. 당회 위의 상위 공의회들은 다음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자체적인 규칙에 따라 대표위원회를 수립해야 한다. 즉, 일치와 다양성 원칙의 수행에 관해 공의회를 자문하고, 지도력의 다양성을 주창하며, 일치와 다양성의 원칙(F-1.0403)에 일치하는 인사채용에 관해 공의회를 자문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대표위원회는 다른 위원회로 병합되거나 다른 위원회에 속한 소위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G-3.0104 제직원

개체교회의 담임목사가 그 교회 당회의 당회장이 되어야 한다. 동사목사들이 있는 교회에서는, 두 목사 다 당회장으로 간주되며, 따라서 특정 회의의 사회를 누가 맡을 것인지 규정하는 조항이 마련되어야 한다. 담임목사가 사회하기 어려운 경우, 그이나 그녀는 노회의 회원인 다른 교역장로(목사)나 노회가 허락한 사람을 당회장으로 청해야 한다. 만일 담임목사가 없을 경우나 담임목사가 다른 사회자를 초청할 수 없을 때는 노회가 당회장을 마련해야 한다.

공의회 의장은 공의회 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사일정을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데 필요한 권한을 보유한다. 그이나 그녀는 그 공의회 자체의 결정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 폐회해야 한다.

당회보다 상위에 있는 각 공의회는 그 공의회가 결정한 임기로 의장을 선출해야 한다. 선출 시, 의장은 그 공의회 의 계속회원이거나 총대여야 한다. 그들은 재임 기간 공의회 회의를 주재한다. 공의회는 의장 부재 시에 누가 회의를 사회할 것인지 규칙을 마련해야 한다.

“각 공의회는 서기를 선출해야 하며, 그는 공의회 의 업무 활동을 기록하고, 회원 명부와 출석부를 보관하며, *요구되는 기록부들을 유지하고*, 기록을 보존하며, 교회의 다른 공의회 의 요구가 있을 때 기록을 발췌하여 제공해야 한다. 당회 서기는 당회가 결정한 임기 동안 시무하도록 당회에 의해 선출된 사역장로(장로)라야 한다. 노회와 대회와 총회의 서기는 정서기라 칭하며, 그들은 공의회가 결정한 임기 동안 공의회에 의해 선출되며, 반드시 사역장로(장로)나 교역장로(목사)라야 한다. 정서기는 G-3.0110 에 설명된 절차를 사용하여 그이나 그녀의 직무기간 완수 이전에 직책에서 해임될 수 있다.

공의회들은 공의회가 필요한대로 다른 제직원들을 선출할 수 있다.

G-3.0105 회의

공의회는 회의를 기도로 개최하고 기도로 폐회해야 한다.^a 회의는, 본 헌법에 반하지 않는 한, *최신판 로벌의 의사진행 규칙*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공의회들은 그 공의회 의 합의에 따라서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깊이 숙고하기 위하여 통찰의 과정을 사용할 수도 있다.

공의회가 어떠한 결정을 내릴 때, 그 결정에 반대투표를 한 회원은 반대나 항의를 제기할 권리를 가진다. 반대나 항의의 제기는 사법절차를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막는 것도 아니다.

a. 반대란 공의회의 결정에 불찬성을 표명하는 선언이다. 그것은 그 결정이 이루어진 특정한 회의 중에 제기되어야 한다. 반대하는 회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야 한다.

b. 항의란 서면 선언을 말하는데, 이는 공의회의 결정이 변칙 또는 직무태만이거나 그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사유를 제기하는 것이다. 항의의 서면통보는 그것이 발생한 공의회의 특정 회의 중에 제출되어야 하고, 폐회 전에 서기에서 접수해야 한다. 만일 그 항의가 예의 바르고 정중한 언어로 표명되었을 경우, 그것은 그 회의의 회의록에 기재되어야 하고, 여기에 그 공의회가 준비한 답변이 수반될 수 있다. 그 이상 추가적인 결의는 요구되지 않는다.

G-3.0106 선교 행정

선교는 교회 사역에 필요한 형태와 구조를 결정한다. 행정은 공의회가 자체적으로 결정한 것을 실행하는 절차이다. 행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새 창조를 교회가 세상에서 효과적으로 증거할 수 있게 하며,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교회의 증거를 강화시킨다.

당회 위의 상위 공의회들은 정책과 절차의 실례들을 제공하기 위하여 이들을 모아 자문 핸드북으로 만들 수 있다. 이러한 실례들은 헌법이 요구하는 실천사항들을 밝혀주지만, 특정된 실행 사항은 공의회들에 맡겨진다. 그러한 핸드북은 특정한 공의회의 사역을 향상하거나 확고하게 하는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다.

각 공의회는 그 공의회의 선교사역 형태를 명시하고 그 사역을 인도해 주는 행정운영 지침서를 개발해야 한다.

모든 공의회들은 성적 비행 방지 정책을 채택하고 시행해야 한다.

공의회는 합당하다고 간주하면, 어느 기구들에 그 과제를 위임할 수 있으나 이들 기구가 그 공의회에 책임을 진다는 조건하에 그렇게 할 수 있다.

선교 행정은 교회의 일치와 상호 의존을 나타내는데, 이는 공의회들이 상호 간에 책임, 권리와 권한을 나눔으로 이루어진다 (F-3.0203). 그들의 회원들과 선출된 총대들을 통하여 하위 공의회들은 상위 공의회의 사역 계획과 행정에 참여하고, 선교, 예산, 인력관리, 공정고용정책과 적절한 보수 문제에 관한 기구 간의 협의에 참여한다.

선교의 자금조달 역시 교회의 일치와 상호의존을 나타낸다. 교단의 어느 일부가 전체 교회 선교를 위한 청지기직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그러한 일치와 상호의존을 약화시킨다. 모든 선교 자금조달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새 창조에 대해 교회로 하여금 세상에서 효과적으로 증거하도록 해야 하며, 하나님 선교에 대한 교회의 증거를 강화시켜야 한다.

당회 위의 상위 공의회는 행정직원을 포함한 운영비의 예산을 작성하며, 그 구역 내 지교회들이 내는 상회비로서 이 예산을 조달할 수 있다. 노회들은 자체 기금을 모금할 책임과 상회비를 모금하여 해당 대회와 총회에 적시에 보낼 책임이 있다. 노회들은 그들 구역 내의 당회들에 상회비를 할당할 수 있으나, 어떤 경우에도 상회비를 포함한 기타 기금을 당회가 결정하는 권한을 침해할 수 없다.

G-3.0107 기록

각 공의회는 자체 절차들에 대한 완전하고 정확한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공의회 회의록과 그 밖의 모든 공식 기록은 그 공의회나 그 법적 후계자에게 속하는 영구 재산이다. 어느 공의회가 존속하지 않게 될 때, 그 기록들은 종결 이전에 하위 공의회가 속해있던 구역의 차상위 공의회 재산이 된다. 각 공의회 서기는 자체 기록을 장로교역사협회나 미국장로교 신학교 내의 온도와 습도가 조절된 환경에 영구보존하는 사안을 자체 공의회에 건의해야 한다.

G-3.0108 행정적 검토

상위 공의회는 하위 공의회 사역을 다음의 방식으로 검토해야 한다:

a. 일반 행정적 검토

각 공의회는, 자체 모임의 빈도에 따라서, 그 공의회에 관련된 모든 기구와, 공의회를 대표해서 활동하는 모든 제직원들과 그 관할권 내의 하위 공의회들이 취한 절차들과 결정들에 대해 일 년이나 이 년에 한 번씩 검토해야 한다. 상위 공의회는 하위 공의회가 취한 절차들을 검토하면서, 그 절차들이 정확하게 기록되었는지, 본 헌법에 일치하는지^b, 신중하고 형평성이 있는지, 전체교회의 선교에 충실했는지를 결정해야 한다. 또한, 상위 공의회 합법적인 명령이 준수되었는지도 결정해야 한다.

b. 특별 행정적 검토

만일 상위 공의회가 하위 공의회 변칙이나 비행을 알게 되는 경우 어느 때라도, 그 하위 공의회에 어떠한 기록이든 제출하도록 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c. 지시된 응답

만일 사안들이 규칙에 어긋나게 결정되었다고 판단되면, 상위 공의회는 하위 공의회에 재고하여 교정 조치를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행정적 검토 외에, 검토와 교정은 권징조례에 기술된 대로 사법절차를 개시하여 시행할 수도 있다.

G-3.0109 위원회와 전권위원회

공의회들은 자체 규칙에 따라 교회 선교의 달성을 위해 필요하고 유익하다고 간주하면, 그러한 위원회와 전권위원회를 임명할 수 있으며, 차상위 공의회와 협의하에 다른 공의회들과 공동으로 그러한 기구를 만들 수도 있다. 그러한 위원회와 전권위원회를 임명할 때, 공의회들은 본 헌법의 규정 (F-1.0403, G-3.0103)에 따라 ‘다양성 속의 일치’ 원칙을 명심해야 한다.

위원회는 연구하고 시행방안을 제시하거나, 공의회에서 이미 결정한 사항을 실행에 옮겨야 한다. 그 위원회는 그것을 조직한 공의회에 정식 보고를 해야 하고, 위원회의 제안들은 공의회 결의를 요구한다. 당회 위의 상위 공의회 위원회들은 교역장로(목사)들과 지교회 교인들로 구성되어야 하고, 위원 수의 적어도 절반이 교인들이어야 한다.

전권위원회는 공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안을 숙고하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 임무를 부여한 공의회는 그 전권위원회에 부여되는 권한의 범위와 권한의 제한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공의회는 두 종류의 전권위원회를 임명할 수 있다:

a. 사법전권위원회

사법전권위원회는 권징조례에 따라 그 공의회 혹은 **공의회들**을 위한 절차의 사례를 고려하고 결정해야 한다. 당회는 개체교회의 사법전권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고, 당회 위의 각 상위 공의회는 상임사법전권위원회를 선출해야 한다 (D-5.0000 참조). **협력하는 대회들은 G-3.0404 와 D-5.0101 의 규정에 따라 연합 상임사법전권위원회를 선출할 수 있다.**

b. 행정전권위원회

행정전권위원회가 맡은 임무는 교회의 사법절차에 포함되지 않은 사안들을 숙고하고 결론을 내리는 일이다. 단, 그들이 위임받은 책임을 수행하는 중에 공의회의 사법결정을 요하는 사안을 발견할 때에는 임무를 부여한 그 공의회에 이를 보고하는 일은 예외다.

행정전권위원회에 위임된 기능들은 다음을 포함하지만, 여기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1) (당회에 의해) 사역장로(장로)와 집사의 안수와 취임, 교인을 받아들이고 제적하는 일, 개체교회내의 조직을 방문하여 내부 분쟁을 해결하는 일;

(2) (노회에 의해) 교역장로(목사)들의 안수와 위임하는 일;

(3) (노회에 의해) 청빙조건의 승인, 안수와 위임을 위한 행정전권위원회를 승인하는 것을 포함하여 노회에 입회를 원하는 교역장로(목사)들을 심사하여 회원으로 받아들이는 일; 후보생의 돌봄을 맡는 일;

(4) (노회에 의해) 이민 펠로십을 발전시키거나, 새 교회를 조직하거나, 개체교회들을 합병하거나, 연합교회나 연방교회를 형성하는 일 (G-5.05);

(5) (노회와 대회와 총회에 의해) 혼란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 직접 관할권을 가진 공의회, 개체교회, 기관들을 방문하여^c 분쟁을 조사하고 해결하는 일; 단, 임무 부여한 공의회로부터 명시적으로 권한을 부여받지 않는 한, 노회의 전권위원회는 목회관계를 해소할 권한이 없다 (G-2.0901);

(6) (모든 공의회에 의해) 피소자의 사망이나 관할권 파기에 의해 피소자에 대한 사법절차의 관할권이 종료되었을 때, 성희롱 혐의를 받은 그 피소자에 대한 목회적 조사 (D-10.0401c)를 하는 일; 그러한 조사가 사법절차로 이해되어서 안 되지만, 고발에 관련된 진상을 파악하고, 그 임무 부여한 공의회에 적절한 제안을 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노회나 대회, 또는 총회의 전권위원회는 그들의 임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숫자로 구성하되 사역장로(장로)들과 교역장로(목사)들의 구성이 거의 동수가 되어야 한다. 전권위원회의 정족수는 임명한 공의회 **혹은 공의회들**에 의해 확정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과반수 이하가 되어서는 안 된다 (D-5.0204 조항에 의해 제한될 때는 예외).

당회의 전권위원회는 최소한 두 명의 사역장로(장로)와 한 명의 교역장로(목사)로 구성되는데, 교역장로(목사)는 당회가 다스리는 개체교회와 위임 목회관계이거나 임시 목회관계일 수 있으며, 또는 평신도 목회자일 수도 있다.

전권위원회는 그 절차의 전체 기록을 보관하고, 그 기록을 공의회 **혹은 공의회들**에 제출하여 공의회 자체 기록에 병합되도록 해야 한다. 전권위원회의 결정 조치는 그 위원회를 만든 공의회 **혹은 공의회들**의 결정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전권위원회는 위원회로서 추가 임무를 할당받을 수 있고, 그 임무는 위원회 보고로 처리되어야 한다. [마지막 두 문단은 변동없음]

행정전권위원회의 결정은 임무를 부여한 공의회에 서기에게 보고되어야 하고, 서기는 다음 정기회의 때 이를 그 공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공의회는, 공의회에서 결정들을 변경할 때와 동일한 방식으로, 행정전권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행정전권위원회가 특정한 조직이나 공의회 내부에서 일어나는 이견을 조정할 임무를 부여받았을 때, 전권위원회는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그 결정으로 말미암아 영향을 받을 모든 사람에게 공정한 통보를 보내어서 그 쟁점에 대해 청문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G-3.0110 행정 직원

당회 위의 상위 공의회는 ‘다양성 속의 일치’ 원칙 (F-1.0403)에 따라 그 조직의 선교에 필요한 인원을 채용할 수 있다. 공의회들은 차상위 공의회와 협의하여, 그 조직의 선교에 필요한 직원을 공유할 수 있다. 공의회는 행정운영지침서 (G-3.0106)에 행정 책임 직원의 선출과 기타 직원 채용 절차, 직책 책임의 설명서, 업무평가 방식과 고용해제 방식의 규정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 (G-3.0104).

G-3.0111 공천 절차

당회 위의 모든 상위 공의회는 선출이 요구되는 모든 직책에 사역할 사람들을 공천하는 절차를 가져야 한다. 그 절차는 공의회 구성원을 광범위하게 대표하는 기구에 의해서, 그리고 ‘다양성 속의 일치’ (F-1.0403)를 강조하는 교회의 결단에 따라서 공천이 이루어지도록 보장해야 한다.

G-3.0112 보험

각 공의회는 그 시설, 프로그램, 직원, 그리고 선출직과 임명직 임원을 보호하도록 재산보험과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G-3.0113 재정

각 공의회는 구역 내에서 교회의 선교를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우고 채택해야 한다.

모든 재정장부와 기록은 일 년에 한 번씩 공인회계사나 회계절차에 정통한 사람들로 구성된 위원회에 의해 철저한 재무검토를 받아야 한다. 검토자들은 회계(들)과 인척관계이어서는 안 된다. 본 항에 있는 용어는 일반적 지침을 마련해 주고자 하는 데 그 뜻이 있고, 전문 회계업계에서 이해되는 특정감사의 절차나 실행을 요구하거나 요구하지 않는다는 의도가 아니다.

G-3.02 당회

G-3.0201 구성과 책임

당회는 개체교회를 위한 공의회이다. 당회는 모든 위임목사들과 부목사들과 더불어, 교인들에 의해 선출되어 시무하는^d 사역장로(장로)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모든 당회원들은 투표권이 있다. 담임목사가 당회장이 되어야 하며, 당회는 담임목사나 임명받은 당회장이 없이는 소집될 수 없다. 만일 위임목사가 없거나 위임목사가 다른 당회장을 초청할 수 없을 경우에, 노회는 당회장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 두어야 한다. 노회는 당회에 당회장이 비어 있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당회장이 나올 수 없을 때, 규칙에 따라 당회장을 제공해야 한다.

당회는 개체교회를 다스리는 일^e과 하나님의 주권적 활동을 세상에서 증거하도록 지도하는 책임을 진다. 그리하여 개체교회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증거의 공동체로 존재하며 그러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다. 개체교회의 증거사역을 지도하고 안내하여 나갈 때, 당회는 교회의 표지들(F-1.0302), 장로교회들과 개척교회들이 역사적으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인했던 문서들(F-1.0303)과 교단의 여섯 가지 큰 목적(F-1.0304)을 늘 기억하고 간직해야 한다.

이러한 책무에 비추어 당회는 다음의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a. *하나님 말씀이 참되게 선포되고 들려지도록 하는 일을 마련한다.*

이러한 책임은, 개체교회가 예배와 교육과 영적 양육을 위해 모일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 교역장로(목사)들이나 그 사역을 위해 준비하고 승인받은 다른 사람에 의해 말씀을 설교하는 일을 정기적으로 제공하며; 구원의 메시지와 헌신적인 제자직에 참여하도록 초청하면서 지역사회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지속적인 노력을 계획하고 주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적 증거에 따라서 사회적 치유와 화해의 목회를 지역사회에서 계획하고 주도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는 에큐메니컬 노력을 시작하고 응답하는 일을 포함해야 한다.

b. *성례전이 올바르게 집행되고 올바르게 받아들여지도록 하는 일을 마련한다.*

이러한 책임은, 최소한 매 분기마다 주의 만찬을 축하하는 일과 예배모범의 원칙에 따라서 세례를 적절하게 집행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일; 회중 가운데서 목회적 돌봄을 시행하는 일; 그리하여 성례전이 은혜의 수단으로 받아들여지고, 회중이 성례전에서 표현된 일치 안에서 살도록 하는 것을 포함해야 한다.

c. *그리스도 제자들의 계약 공동체를 양육한다.*

이러한 책임은, 교인의 입회와 제적; 적어도 일 년에 한 번씩 활동교인 명단을 검토하는 일; 교인의 책임을 소홀히 하는 이들과 상담하는 일; 양육과 교육과 친교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일; 교인들에 의해 선출된 사역장로(장로)들과 집사들에 대한 훈련, 시취, 안수와 취임하는 일; 관대한 품성과 개인적 및 재정적 자원의 충실한 청지기직을 장려하는 일; 선교사역의 확장에 쓰일 수 있도록 개체교회의 물적 재산을 관리하는 일; 개체교회 집사와 재단이사사와 모든 조직의 사역을 지도하는 일; 교회의 행정 직원을 채용하는 일; 전체교회의 사역에 참여하도록 회중을 지도하는 일; 개체교회와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교리의 오류나 행위의 부도덕성에 반대하는 경고와 증언을 하는 일; 그리고 권징조례에 따라서 사법절차에서 봉사하는 일을 포함해야 한다^f.

G-3.0202 타 공의회와의 관계

당회는 타 공의회에 참여함으로써 전체 교회의 삶에 참여하는 특정한 책임을 가진다. 당회가 하는 다음 일들은 특별히 중요하다:

a. 개체교회의 사역장로(장로)들을 최소한 일 년 임기의 노회 총대로 선출하고, 그들의 보고를 받는 일;

b. 교회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포용성과 공정한 대표의 원칙을 명심하면서(F-1.0403), 대회와 총회에 총대로 선출될 수 있고, 대회나 총회의 위원회나 전권위원회에서 봉사할 것을 고려해서 개체교회 사역장로(장로)들을 노회에 공천하는 일;

c. 노회와 대회와 총회의 지시와 통지내용이 숙고되는지, 그리고 구속력 있는 결정들이 준수되고 시행되는지 살피는 일;

- d. 노회 대표가 방문할 때 환영하는 일;
- e. 지교회 선교에 대해 공동 관심사가 될 만한 안건들을 노회에 제안하거나, 또는 노회를 통해서 대회나 총회에 제안하는 일; 그리고
- f. 노회^e와 총회의 요구에 따라서 통계자료와 기타 정보와 자발적 재정 지원금을 그 공의회들에 보내는 일.

G-3.0203 회의

당회는 정기회의를 최소한 분기별로 개최해야 한다. 당회장^h은 그이나 그녀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나 당회원 두 명이 서면으로 요구할 때 임시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임시회의에서 처리될 의제는 그 회의 소집 시 확실하게 기술한 안건에 국한되어야 한다. 모든 임시회의는 회의 전에 적절한 시간을 두고 통보하여야 한다. 당회는 노회의 지시가 있을 때도 소집되어야 한다. 당회는 규칙으로 회의 정족수를 마련해야 하며; 그러한 정족수는 당회장과 특정 수의 사역장로(장로)들이나 당회에서 현재 시무 중인 사역장로(장로)들의 특정 비율을 포함해야 한다.

G-3.0204 회의록과 기록

당회 회의록은 G-3.0107 조항에 따라야 한다. 거기에는 교회에서 갖는 모든 회의, 그리고 집사들과 재단이사들과 더불어 갖는 합동회의 회의록을 포함해야 한다.

각 당회는 다음의 명부와 기록부를 유지해야 한다:

a. 교인명부

G-1.0401, G-1.0402, G-1.0403 조항들에 따라서 세례교인, 활동교인, 관련교인의 명부가 있어야 한다. 당회는 교인이 사망하거나 타 교회나 노회로 회원권을 옮기거나 관할권의 파기선언을 하는 경우 교인명부에서 이름을 삭제해야 한다. 당회는 교인이 명부에서 삭제되기를 요청했거나 이사했거나 또는 개체교회의 사역과 예배에 적극적인 참여를 이 년간 중단했을 때, 해당 교인의 이름을 교인명부에서 삭제할 수 있다. 당회는 교인들에게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회복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회원의 비활동 사유 때문에 이름을 삭제하기 전에 서면 통보를 보내야 한다.

b. 기록부

당회가 허락한 세례교인의 기록부, 시무 날짜를 포함한 사역장로(장로)들과 집사들과 위임받은 목사들의 기록부, 그 외에 당회가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그 밖의 기록부들이 있어야 한다.

G-3.0205 재정

G-3.0113에 기술된 책임사항들에 부가하여, 당회는 예산을 수립하고 채택하며 개체교회 헌금의 분배를 결정해야 한다. 당회는 헌금이 기독교적 목적으로 사용되도록 허락하고 그러한 헌금 수입과 그 지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당회는 그러한 사안들에 관한 전체 내용을 교인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당회는 당회에서 결정한 임기로 회계를 선출하며, 그이나 그녀의 업무를 당회가 감독하거나, 그 감독을 집사회나 재단이사회에 일임해야 한다. 교회의 각종 기금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은 당회에 최소한 일 년에 한 번 보고하고, 요청이 있으면 더 자주 해야 한다. 당회는 교회의 표준 재무실행에 대한 규정을 마련할 수 있으나, 어떤 경우에라도 다음의 절차들이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

- a. 모든 현금은 최소한 정식으로 임명된 두 사람이나 신용보증인 한 사람에 의해 계수되고 기록되어야 한다;
- b. 모든 재정거래를 적절히 반영하는 재정장부와 기록이 보관되어야 하며, 합리적인 시기에 권한 받은 교회 제직의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개방되어야 한다;
- c. 모든 재무활동은 당회나 재무감독 권한이 있는 기구에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하며, 어떤 경우에라도 그 보고는 연 한 번 이하가 되어서는 안 된다;

G-3.03 노회

G-3.0301 구성과 책임

노회는 특정 구역 내에서 교회의 집합적 표현을 하는 공의회이며, 그 구역 내의 모든 지교회들ⁱ과 교역장로(목사)들로 구성된다. 노회는, 교역장로(목사)들과 사역장로(장로)들의 숫자가 동수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해서, 각 당회가 몇 명의 사역장로(장로)들을 노회 총대로 선출해야 하는지 계획안을 채택하고 이를 당회에 알려야 한다. 이 계획안은 각 당회에서 최소한 한 명의 노회 총대를^j 선출하도록 요구해야 하며 개체교회의 크기와 함께 F-1.0403 과 G-3.0103 에 나오는 ‘참여와 대표’의 원칙을 이행할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 노회의 임원으로 선출된 사역장로(장로)들은 봉사기간 동안 노회 회원으로 등록되어야 한다. 노회는 노회나 노회에 속한 교회에 특정한 봉사를 위해 선출된 사역장로(장로)들을 그 봉사 기간 동안 노회의 회원으로 등록하거나 또는 자체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허용할 수 있다.

노회의 최소한 구성은 정당하게 조직된 열 개 당회들과 열 명의 교역장로(목사)들로 이루어진다.

노회는 구역을 통괄하여 교회치리를 책임지며, 세상에서 하나님의 주권적 활동에 대한 개체교회들의 증거하는 일을 돕고 지원하는^k 책임을 지며, 그리하여 모든 개체교회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증거의 공동체가 되도록 한다. 개체교회들의 증거사역을 지도하고 안내하면서, 노회는 교회의 표지들 (F-1.0302), 장로교회들과 개혁교회들이 역사적으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인했던 문서들 (F-1.0303)과 교단의 여섯 가지 큰 목적 (F-1.0304)을 늘 기억하고 간직해야 한다.

이러한 책무에 비추어 노회는 다음의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 a. *하나님 말씀이 참되게 선포되고 들려지도록 하는 일을 마련한다.*

이러한 책임은 회원들과 협의하에 개체교회를 조직, 영입, 합병, 해산, 해소하는 일; 담임목사가 없는 개체교회를 감독하는 일; 목회관계를 수립하고 해소하는 일; 교역장로(목사)가 되기 위해 준비하는 이들을 지도하는 일; 그 구역 내에서 교회의 삶과 선교사역이 확대되도록 에큐메니컬 관계를 수립하고 유지하는 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세상에 전달되도록 하는 데

궁극적인 목표를 두고서 선교사역, 예언적 증거, 지도력 개발, 예배, 전도와 책임행정의 분야에서 개체교회들에 격려와 지침과 자원을 제공하는 일을 포함해야 한다.

b. *성례전이 올바르게 집행되고 받아들여지도록 하는 일을 마련한다.*

이러한 책임은, 노회 모임에서 주의 만찬을 최소한 일 년에 한 번 거행하고, 펠로쉽 그룹들과 개척교회와 그 구역 내 비회중 조직들의 모임에서 주의 만찬을 축하하도록 허락하는 일; 성례전 집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주의 만찬을 집행하거나 주관할 특정 사역장로(장로)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훈련하는 일; 그리고 성례전이 은혜의 방편으로 받아들여지고 노회가 성례전으로 표현되는 일치 속에서 삶을 이끌어 가도록 하기 위해 개체교회들과 노회원들에게 목회적 돌봄을 마련하는 일을 포함해야 한다.

c. *그리스도 제자들의 계약 공동체를 양육한다.*

이러한 책임은, 교역장로(목사)들인 노회원들의 안수, 입회, 해소, 위임, 제명과 권징하는 일¹; 평신도 목회자들을 파송하는 일; 개체교회의 평화와 조화를 추구하고 교회불화의 원인을 조사하는 일; 관대한 품성과 칭지기직과 봉사를 개발하는 일에 개체교회를 지원하는 일; 개체교회의 선교사역 개발을 지원하고 전체교회의 선교에 참여하는 일; 해산된 개체교회의 교인들에 대한 관할권을 맡고 그들에게 타 교회로 이명을 허가하는 일; 그 구역 내에서 일어나는 교리의 오류와 행위의 부도덕성에 반대하는 경고와 증언을 하는 일; 권징조례에 따라서 사법절차에서 봉사하는 일을 포함해야 한다.

G-3.0302 *대회와 총회와의 관계*

노회는 다음의 분야에서 대회와 총회와의 관계를 정기적이고 계속적으로 유지할 책임이 있다:

- a. 대회와 총회에 보낼 총대들을 선출하고, 그들의 보고를 받는 일;
- b. 사역장로들(장로)과 교역장로(목사)들을 표준 안수 고시의 채점자로 선출하는 일;
- c. 대회와 총회의 지시와 통지 내용이 숙고되는지, 그리고 구속력이 있는 결정들이 준수되고 시행되는지 살피는 일;
- d. 교회의 선교적 공동 관심사가 될 만한 안건들을 대회에 제안하는 일, **그리고/혹은 최소한 한 개의 다른 노회로부터 동의를 얻은 현의안을 총회에 제안하는 일, 그리고**
- e. 대회와 총회의 요구에 따라서 통계자료와 기타 정보를 그들에게 연례적으로 보내는 일.

G-3.0303 *당회와의 관계*

교역장로(목사)들과 그 구역 내 당회에 의해 선출된 총대들로 구성되는 노회는 폭넓은 지역사회에 가장 효과적 증거를 할 수 있도록 개체교회들의 사역을 조정하고 지도하며 격려하고 지원하고 자원을 공급하는 특정한 책임을 진다. 이러한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 노회는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 a. 그 지역 내에서 교회의 선교를 위한 전략을 개발하는 일;
- b. 새 개체교회의 위치와 회원들과 협의하에 개체교회들의 이전, 분할, 해소나 해산을 조정하는 일;
- c. 노회 내의 목사 청빙과 유자격 기독교 교육사들과 유자격 기독교 부교육사들에 대한 최저 보수 기준을 책정하는 일;
- d. 개체교회 내에서 보고된 어려운 일들에 관련하여 당회와 상담하는 일로서 다음을 포함한다:

- (1) 보고된 어려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당회에 조언하며,
- (2) 중재자로서 지원 제공을 제의하며,
- (3) 당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나 당회가 해결할 능력이 없거나 해결할 의도를 보이지 않을 경우, 권징조례의 절차적 보호조항을 따라서 문제를 교정할 행동을 취하는 일;

e. 당회가 그 직권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상황에서 원 관할권을 인수한다. 철저하게 조사하고 충분한 청문 기회를 당회에 허용한 후, 노회는 개체교회의 당회가 자체 문제를 현명하게 처리할 능력이 없거나 처리하려는 의도가 없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고, 당회의 전권을 가진 행정전권위원회를 임명할 수 있다. 이 전권위원회는, 만일 당회가 있다면, 현존 당회의 관할권을 인수하며 그 당회는 노회가 달리 지시할 때까지 그 활동을 중지해야 한다.

f. G-4.0206 에 명시된 부동산에 관해 개체교회가 결정을 취할 수 있도록 허가를 요구할 때 이를 숙고하고 결정한다.

G-3.0304 회의와 정족수

노회는 정기 회의를 일 년에 최소한 두 번 열어야 하고, 대회의 지시에 따라 회집해야 하며, 자체 규정에 따라서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노회는 자체 정족수를 정할 수 있으나^m, 그 수가 노회 회원들인 교역장로(목사) 세 명과, 세 개의 다른 개체교회의 사역장로(장로) 총대 세 명 이하여서는 안된다.

G-3.0305 회의록과 기록

노회의 회의록과 다른 공식 기록들은 노회의 재산이고, G-3.0108 명시된 대로 검토의 대상이 된다. 노회 정서기는 노회 회의록과 기록을 보존하는 책임을 진다. 이러한 기록에는 노회의 회원 명부와 모든 유자격 기독교 교육사들, 유자격 기독교 부교육사들, 그리고 평신도 목회자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G-3.0306 노회의 회원권

각 노회는 회원인 교역장로(목사)를 확정하고, 그들이 관여할 목회사역을 인준한다. 노회는 그 구역 내의 목회 인준을 위해 개발한 서면 기준을 이 결정의 지침으로 삼아야 한다 (G-2.0503a).

노회는 노회에 입회를 바라는 각 교역장로(목사)나 후보자에게 그이나 그녀의 기독교 신앙, 신학과 성례전 및 본 교단 정치제도에 대한 견해에 관하여 심사해야 한다.

노회는 교역장로(목사)들을 교사, 복음전도자, 행정가, 기관목사, 그리고 노회가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다른 형태의 목회사역에 임명할 수 있다. 이처럼 임명된 이들은 노회가 허락한 시간과 장소에서 성례전을 집례할 수 있다.

각 교역장로(목사)는 통상적으로 그이나 그녀의 사역이 위치한 곳이나, 그이나 그녀가 거주하는 지역의 노회에 입회해야 한다.

미국 밖에 있는 교단에서 일하는 교역장로(목사)는, 노회의 승인을 받아서, 그 사역을 하는 동안, 본 교단 노회의 회원 자격에 영향을 받지 않고 그 교단의 회원권을 수락할 수 있다.

G-3.0307 교역장로(목사)들과 회중에 대한 목회자, 상담자와 조언자

노회는 구역 내 지교회들의 삶과 목회사역에 관해 통신교류의 문호를 항상 열어놓아야 한다.

각 노회는, 교역장로(목사)들, 평신도 목회자와 노회의 유자격 교육사들에게 목회자와 상담자로서 봉사하는 일; 노회 안의 지교회들, 교역장로(목사)들, 평신도 목회자들, 그리고 유자격 기독교 교육사들과 노회 사이의 관계를 촉진하는 일; 가능하고 적절하다면 노회를 대신하여 어려움을 해결하는 일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장치와 절차를 개발하고 유지해야 한다.

각 노회는 교역장로(목사)가 되는 준비 절차를 지도하고 양육하고 감독하는 장치와 절차를 개발하고 유지해야 한다.

지방생들과 후보생들에 대한 노회의 감독, 교역장로(목사) 회원들의 입회와 감독, 목회사역 청빙의 승인과 임시목회 사역에 초대, 담임목사 없는 개체교회의 감독, 관계의 해소, 회원의 제적, 회원 지교회들 및 교역장로(목사)들과 더불어 갖는 노회와의 밀접한 관계를 촉진하는 일들을 위해, 노회는 그 권한을 노회 내의 임명된 기구들에 위임할 수 있다. 그러한 기구들은 F-1.0403 에 기술된 ‘다양성 속의 일치’의 원칙을 고려하면서, 대략 동수의 사역장로(장로)들과 교역장로(목사)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권한을 위임받아 수행한 모든 조치는 노회의 차기 정기회의에 반드시 보고되어야 한다.

G-3.04 대회^a

G-3.0401 구성과 책임

대회는 그 지역 전반에 걸쳐서 교회의 집합적 표현을 하는 중간급 공의회이다. 대회는 특정한 지리적 관할내에 적어도 세 개 이상의 노회로 구성되어야 한다.

대회가 회집될 때, 대회는 노회에서 선출된 총대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각 노회는 최소한 한 명의 사역장로(장로)와 한 명의 교역장로(목사)를 대회 총대로 봉사하도록 선출해야 한다. 대회는 대회에 보내는 총대 선출 계획안과 더불어 F-1.0403 과 G-3.0103에 나오는 ‘참여와 대표’의 원칙을 이행하는 방안을 수립해야 하며; 두 계획안은 대회 산하 노회들의 다수에 의해 승인받는 조건이어야 한다. 각 노회의 총대들은 사역장로(장로)들과 교역장로(목사)들 간에 동등하게 분할되어야 한다. 의장이나 그 밖의 임원으로 선출된 각 사람은 후임자가 선출되고 취임할 때까지 대회의 회원으로 등록되어야 한다.

대회는 그 지역 전반에 걸쳐서 교회의 삶과 선교 그리고 노회들이 지교회들의 증거 사역을 지원할 때 그들의 사역과 선교를 지원하는 책임을 지며, 궁극적으로 그 지역 전반에 걸쳐서 교회가 믿음, 소망, 사랑과 증거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한다. 대회는 그 지역 전반에 걸쳐서 교회의 증거사역을 지도하고 안내하면서, 교회의 표지들 (F-1.0302), 장로교회들과 개혁교회들이 역사적으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인했던 문서들 (F-1.0303)과 교회의 여섯 가지 큰 목적 (F-1.0304)을 늘 기억하고 간직해야 한다.

이러한 책무에 비추어 대회는 다음의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 a. *하나님 말씀이 참되게 선포되고 들려지도록 하는 일을 마련한다.*

이러한 책임은 노회와 협력하여, 그 지역 내에서 총회의 대국적인 전략에 일치되게 교회의 선교전략을 광범위하게 개발하는 일; 교역장로(목사)들의 청빙, 안수 및 배치의 관련 사안에 관해 요청받을 때 회원 노회들을 지원하는 일; 노회들과 협력하여 그 지역 내에서 교회의 삶과 선교를 확대할 에큐메니컬 관계를 수립하고 유지하는 일; 그 지역 내에 있는 타 교단 및 기관들과 선교의 공동 활동을 촉진하는 일; 그 지역 내의 노회들 간에 그리고 노회들과 총회 사이에 통신교류를 촉진하는 일; 광범위한 지역 기반에서 더욱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지역 노회들에 봉사를 제공하는 일을 포함할 수 있다.

b. 성례전이 올바르게 집행되고 받아들여지도록 하는 일을 마련한다.

이러한 책임은 대회의 회의와 관할권 내의 기타 행사나 모임에서 주의 만찬을 축하하도록 허락하는 일; 노회들 사이에서 목회적 돌봄을 수행하는 일; 성례전이 은혜의 방편으로 받아들여지고 성례전 안에서 표현되는 일치 속에서 대회의 삶을 이끌어 가는 일을 포함할 수 있다.

c. 그리스도 제자들의 계약 공동체를 양육한다.

이러한 책임은 노회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과 양육의 사역을 제공하는 일; 선교사역, 예언적 증거, 지도자 개발, 예배, 복음전도, 책임 행정의 분야에서 노회들에 격려와 지침과 자원을 제공하는 일; 노회들의 사역을 검토하는 일; 그 구역 내에서 일어나는 교리의 오류나 행위의 부도덕성에 반대하는 경고와 증언을 하는 일; 그리고 권징조례에 따라서 사법절차에서 봉사하는 일을 포함해야 한다.

G-3.0402 총회와의 관계

대회는 총회의 지침과 통지내용이 숙고 되는지와 구속력이 있는 결정들이 준수되고 이행되는지 확인하고, 전체교회의 선교에 공동관심사가 될 만한 방안들을 총회에 제안함으로써, 총회와의 규칙적이고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할 책임이 있다⁹.

G-3.0403 노회와의 관계

각 노회는 대회에 선출된 총대들을 통해 대회의 책임과 봉사에 참여해야 한다. 대회는 그 구역 내 노회들의 사역을 지원할 책임을 가지며 그 책임분야는 다음과 같다:

- a. 노회들과 협력하여 선교의 달성을 위한 공동계획과 목표를 개발하고 노회에 격려와 지도를 제공하고 노회 사역을 감독하는 일;
- b. 요청이 있을 때, 노회들의 선교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개발하고 제공하는 일;
- c. 새 노회를 조직하고, 이전에 존재한 노회들이나 노회들 일부를 분할이나 연합, 또는 합병하며, 기존 노회들의 동의를 얻어서 총회의 승인을 조건으로 비지역 노회를 신설하거나 소수민종그룹이나 이민교회의 선교적 필요의 충족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간주되는 어떤 다른 행동들을 취하는 일이다. 그러한 노회들은 G-3.0301의 요구사항과 합치되게 조직되어야 하며, 창설된 지역 내 대회에 책임을 져야 한다.

G-3.0404 기능 축소

대회는 소속 노회들의 2/3 다수 승인에 의해 자체 기능을 축소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대회의 기능이 사법절차의 규정과 노회들의 사역에 대해 행정검토를 하지 못할 만큼 축소될 수는 없다 (G-3.0401c). 이러한 대회는 예산을 편성하고, 상임사법전권위원회의 위원을 선출하며, 상임사법전권위원회와 행정전권위원회 결정을 기록에 등재하는 목적을 위해서 최소한 이 년에 한 번 소집되어야 한다. 이러한 대회의 소속 노회들은 상호 협의에 의해 노회들과 대회가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대회의 타 기능들을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

인접 지역에 있는 둘 또는 그 이상의 대회들은 각 대회 소속 노회들의 2/3 다수 승인에 의해 행정업무들을 공유할 수 있고 공유된 상임사법전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전권위원회의 구성원 수는, 가능한대로, 참여하는 각 대회에 소속된 노회의 숫자에 비례하도록 한다. 각 대회는 대회의 지경안에서 발생하는 권징 사건을 처리하는데 드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G-3.0405 회의와 정족수

대회는 최소한 이 년에 한 번 정기 회의를 개최해야 하고, 총회의 지시에 따라 회집해야 하며, 자체 규정에 따라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대회는 자체 정족수를 설정할 수 있으나, 최소한 세 노회를 대표하거나 회원 노회의 1/3 을 대표하는, 어느 편이던지 큰 편인, 동수의 사역장로(장로)들과 교역장로(목사)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G-3.0406 회의록과 기록

대회는 그 진행 절차에 관한 완전하고 정확한 기록을 보관해야 하고, 일반 검토와 통제를 위해 다음 총회에 제출해야 한다. 대회는 회원 노회의 숫자와 대체로 그 관할 지역 내에서 발생한 모든 중요한 변동사항을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G-3.05 총회

G-3.0501 구성과 책임

총회는^P 전체교회의 공의회이며, 미국장로교의 대회들, 노회들, 당회들과 개체교회들의 일치성을 대표한다. 총회는 노회에 의해 선출된 동수의 사역장로(장로)들과 교역장로(목사)들로 구성되어야 하며, 그들 지역의 다양성을 (F-1.0403, G-3.0103) 반영하는 가운데 아래 비율로 선출되어야 한다:

회원 8,000 명이나 그 이하:	사역장로(장로) 1 명, 교역장로(목사) 1 명
8,001-16,000:	사역장로(장로) 2 명, 교역장로(목사) 2 명
16,001-24,000:	사역장로(장로) 3 명, 교역장로(목사) 3 명
24,001-32,000:	사역장로(장로) 4 명, 교역장로(목사) 4 명
32,001-40,000:	사역장로(장로) 5 명, 교역장로(목사) 5 명
40,001-48,000:	사역장로(장로) 6 명, 교역장로(목사) 6 명
48,001 명이나 그 이상:	사역장로(장로) 7 명, 교역장로(목사) 7 명

총회장으로 선출된 사람은 후임자가 선출되고 취임할 때까지 총회의 회원으로 등록되어야 한다.

총회는 전체 교회가 믿음, 소망, 사랑과 증거의 공동체가 되는데 궁극적 목표를 두고서, 모든 개체교회들과 모든 공의회들 사이에 일치, 공동체, 선교의 결속을 이루어 간다. 전체교회의 증거사역을 지도하고 안내하면서, 총회는 교회의 표지들 (F-1.0302), 장로교회들과 개혁교회들이 역사적으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인했던 문서들 (F-1.0303)과 교회의 여섯 가지 큰 목적 (F-1.0304)을 늘 기억하고 간직해야 한다.

이러한 책무에 비추어 총회는 다음의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a. *하나님 말씀이 참되게 선포되고 들려지도록 하는 일을 마련한다.*

이러한 책임은 교회의 포괄적 선교전략과 우선순위를 세우는 일; 타 교단들과 에큐메니컬 관계와 교신을 수립하고 유지하는 일; 본 교단의 신앙과 직제에 일치하는 타 교단 기구와, G-5.02 와 G-5.03 조항의 조건에 따라, 연합하거나 그런 기구를 본 교단의 관할권 안으로 영입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고 하나님 백성의 성장과 발전을 촉진할 그러한 선교 사역자의 임명, 파송과 지원을 하는 일을 포함해야 한다.

b. 성례전이 올바르게 집행되고 받아들여지도록 하는 일을 마련한다.

이러한 책임은 총회 회의들과 관할권 내의 다른 행사나 모임에서 주의 만찬을 축하하도록 허락하는 일; 총회의 권한을 받은 대표자들이 참석하는 에큐메니컬 모임에서 주의 만찬의 축하에 참가하는 것을 허락하는 일; 그리고 성례전이 은혜의 방편으로 받아들여지고 교회가 성례전에서 표현되는 일치 속에서 살아가도록 전체 교회에 걸쳐서 목회적 돌봄을 수행하는 일을 포함해야 한다.

c. 제자들의 계약 공동체를 양육한다.

이러한 책임은 전국 수준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수행되는 그러한 봉사와 자원과 프로그램들을 제공하는 일; 공동의 관심 사안들을 전체 교회에 알리는 일; 교회와 세상에서 일어나는 교리의 오류와 부도덕성에 반대하는 경고와 증언을 하는 일; 노회들이 요구하는 교육과 양육의 봉사를 제공하는 일; 선교, 예언적 증거, 지도력 개발, 예배, 복음전도, 그리고 책임행정 분야에서 노회에 격려와 지도와 자원을 제공하는 일; 교회와 세상을 감화시키고 도전하고 교화하는 진리와 비전의 사안들을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분별하고 제시하는 일; 권징조례에 따라서 사법적 사건을 다루는 일; 본 헌법에 따라서 총회에 상정된 논쟁을 해결하고 거기에 제기된 사안들에 대해 조언과 지시를 하는 일; 현재 구속력을 가진 규례서의 최신 해석과 더불어, G-6.02 조항에 따르거나 교정사건이나 징계사건에서 내리는 총회 상임사법전권위원회의 결정을 통해서 전체 교회를 구속하는 방식으로 규례서의 최신판을 권위적으로 해석하는 일; 그리고 총회 정서기 사무처를 설치하고 유지하는 일을 포함해야 한다.

G-3.0502 타 공의회와의 관계

총회는 다음 사안에서 노회들 및 대회들과 관계를 유지할 책임이 있다:

- a. 노회들과 대회들이 헌법상의 책임을 수행함에 그들에게 조언과 자원을 제공하는 일;
- b. 대회들의 사역을 감독하는 일;
- c. 대회들이 본 헌법을 준수하는지 확인하면서 대회의 기록을 검토하는 일;
- d. 새 대회를 신설하고, 기존하는 대회들이나 대회 일부를 분할하거나 연합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합병시키는 일;
- e. 노회들이나 노회들 일부를 조직하거나 분할하거나 연합하거나 합병하는 대회의 결정을 승인하는 일.

G-3.0503 회의와 정족수

총회는 적어도 이 년에 한 번씩 정기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총회장이나, 총회장이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총회 정서기가 임시총회를 소집해야 하는데, 즉 최소한 다섯 개 대회에서 15 개 이상의 노회를 대표하고, 직전 정기총회의 사역장로(장로) 총대들 중에서 최소한 1/4 인원과 교역장로(목사) 총대들 중에서 최소한 1/4 인원이 요청하거나 동의할 때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임시총회의 총대들은 직전 정기총회에 선출된 총대들이나 부총대들이어야 한다. 임시총회는 개최 전 적어도 60 일 이상 공고되어야 하고, 회의의 소집 목적이 명시되어야 한다. 공고에 제시된 의안 외에는 처리될 수 없다.

총회의 정족수는 100 명의 총대들이어야 하는데, 그들 중 50 명은 사역장로(장로)들이고 50 명은 교역장로(목사)들이어야 하며 최소한 1/4 대회들에 속한 노회들을 대표해야 한다.

제 4 장 교회 권한과 민사 권한

G-4.01 법인체와 재단이사

G-4.0101 법인체와 권한

민사법이 허용한다면, 각 개체교회는 법인체를 조직하고 유지해야 한다. 법인체가 허용되지 않을 경우, 회중에 의해 개인 이사들이 선출되어야 한다. 이러한 재단이사들은 집사와 사역장로(장로)들의 직제사역 선출과 동일한 방식으로 교회의 교인 중에서 선출되어야 한다. 임기는 G-2.0404 조항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이렇게 조직된 법인체나 개인 이사들은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교회를 위한 동산 혹은 부동산을 접수, 보유, 저당, 관리 및 이전하되, 부동산의 구매, 매각, 저당에 관계된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재단이사회는 반드시 합법적으로 소집된 공동회의의 승인을 얻은 후에만 처리해야 하고; 이러한 재산을 받아 명의 변경을 하고; 그 재산의 명의를 보존하고 지키며; 교회의 목적을 증진하기 위한 영구 특별기금을 관리한다. 이 모든 권한 행사는 당회의 권위 아래 이루어지고 미국장로교 헌법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재단이사들의 권한과 의무가 당회나 집사회의 권한 및 의무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민사법이 허용한다면, 각 노회와 대회와 총회는 법인체를 조직하고 유지하며, 재단이사회를 구성하는 방식은 자체 규정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이렇게 조직된 법인체나 개인 이사들은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즉 공의회를 위하여, 공의회의 지시에 따라 동산 혹은 부동산을 접수, 보유, 저당, 관리 및 이전을 한다.

G-4.0102 법인체의 회원

교회 혹은 공의회의 회원권 자격자들만이 법인체의 회원이 되고, 이사로서 선출될 자격을 가진다. 법인체가 이사 선출 방식을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개체교회 당회의 사역장로(장로)들은 민사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법인체의 이사가 된다. 노회와 대회와 총회는 각 공의회의 회원권을 가진 사람 중에서 재단 이사를 선출하는 자체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G-4.02 교회 재산

G-4.0201 선교를 위한 도구로서 재산

미국장로교와 산하 공의회들 및 소속 기관들, 그리고 개체교회들의 재산은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를 달성하기 위한 도구이다.

G-4.0202 재산에 관한 결정

본 교단 내에서 결정이 내려지고, 검토되고, 교정되는 방식을 명시하고 있는 본 헌법의 모든 조항이 재산에 관한 모든 문제에 적용된다.

G-4.0203 *신탁된 교회 재산*

개체교회, 노회, 대회, 총회, 또는 미국장로교에 의해서 혹은 그들을 위하여 소유된 모든 재산은 그 법적 명의가 법인에 있는지 재단이사(들)나 비법인체에 있는지 간에, 또 그 재산이 개체교회나 상위 공의회 프로그램에 사용되든지 혹은 소득 창출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지 간에 모든 재산은 미국장로교의 사용과 유익을 위해 신탁 보관된다.

G-4.0204 *헌법에 어긋나는 재산의 사용*

미국장로교의 개체교회가 소유하고 있거나 그 교회를 위해 보유한 재산은 그 교회가 미국장로교의 개체교회로서 헌법대로 그 재산을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언제든지 노회의 규정에 따라 그 재산을 소유, 사용, 적용, 명의 이전, 매각되어야 한다.

G-4.0205 *해소되었거나 없어진 교회의 재산*

개체교회가 노회에 의해서 정식으로 해체되었거나 혹은 교인들이 흩어졌거나 교회 사역의 포기 혹은 그 밖의 이유로 말미암아 없어진 교회의 재산은 노회가 지시, 제한, 지명하는 용도, 목적, 신탁을 위해 보유, 사용, 적용되어야 한다. 아니면 그런 재산은 미국장로교 헌법에 따라 노회가 지시하는 대로 매각되거나 처분될 수 있다.

G-4.0206 *교회재산의 매각, 저당 혹은 임대*

a. *개체교회 재산의 매각 혹은 임대*

개체교회는 그 교회의 당회를 통하여 전달된 노회의 서면 허락없이 여하한 부동산을 매각, 임대, 저당하지 못하며, 저당이나 다른 조건으로 부동산 구매를 하지 못한다.

b. *개체교회 재산의 임대*

개체교회는 그 교회의 당회를 통하여 노회의 서면 허락을 받지 않고서는 예배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교회의 부동산을 임대하지 못하며, 교회의 다른 부동산도 5년 이상 임대하지 못한다.

G-4.0207 *분열 시의 개체교회의 재산*

개체교회의 미국장로교에 대한 관계는 오로지 노회가 헌법적인 절차를 걸쳐 관계 해소를 할 때에만 단절될 수 있다 (G-3.0303b). 개체교회의 교인들 간에 분열이 생겼을 때, 노회가 이를 화해시킬 수 없거나 미국장로교 안에 속하는 두 개의 교회로 나누지 못할 때에는, 노회는 분열된 파벌 중 어느 그룹이 미국장로교에 속하는 참된 교회인가를 밝혀서 그 그룹에 재산권을 허락하는 일을 결정해야 한다. 이 결정은 분열 당시 어느 쪽이 개체교회 내에서 다수표를 얻었는가에 의존하지 않는다.

G-4.0208 *예외*

본 장의 규정은 미국장로교에 속한 모든 개체교회에 적용된다. 단, 예외는 다음과 같다. 즉 미국남장로교(Presbyterian Church in the United States)와 미국연합장로교 (United Presbyterian Church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가 재연합하여 미국장로교 (Presbyterian Church U.S.A.)로 통합되기 이전, 그 교회가 속한 교단 헌법의 유사한 규정에 종속되지 않았던 어느 개체교회가 미국장로교의 설립 이후 8년 이내에 정식으로 소집된 공동의회에서 이런 규정으로부터 면제받기를 투표하고 그런 투표 내용을 소속 노회에 통보하면, 본 장의 규정으로부터 면제받게 된다. 그렇게 면제받도록 투표한 개체교회는 미국장로교 설립 직전에 종속된 헌법의 규정하에서

그 재산의 명의를 소유하며 법인체의 특권과 재산 소유권을 행사한다. 본 항은 개정될 수 없다 (G-6.05).

G-4.03 비밀보장과 특권

G-4.0301 신뢰와 비밀보장

목회적 돌봄을 이행하면서 교역장로들(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들로 칭하기도 함)과 제한된 목회사역에 위임된 평신도 목회자들은 (G-2.10) 신뢰와 비밀보장의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그러한 돌봄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모든 정보, 그리고 그러한 돌봄에 관련된 모든 정보에 대해 비밀을 보장해야 한다.

자신의 비밀이야기를 한 사람이 그 비밀을 공개해도 좋다고 명백하게 승낙을 하였으면, 교역장로(목사)나 평신도 목회자는 그 비밀을 공개할 수도 있으나 꼭 공개할 필요는 없다.

교역장로(목사)나 평신도 목회자는 어떤 사람이 신체적으로 해를 받을 가능성이 시급하다고 판단이 설 때에는, 비밀정보라도 공개할 수 있다.

G-4.0302 의무적인 보고

본 교단에서 직제사역에 종사하고 있는 모든 회원과 본 교단과 개체교회에서 종사하고 있는 모든 유자격 기독교 교육사들은, 미성년자나 정신능력이 박약한 성인에 대한 신체 학대, 유기, 또는 성적 희롱이나 학대의 위험을 알고 있을 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교회 당국과 민간 사법당국에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1) 이러한 정보를 G-4.0301에 명시된 비밀보장 커뮤니케이션이 아닌 방법으로 입수했을 때, 2) 보고해야 할 사람이 법에 따라 비밀 보장 커뮤니케이션 의무에 묶여 있지 않을 때, 또는 3) 보고해야 할 사람이 판단하기를 장차 신체적 위해나 학대의 위험이 있다고 믿을 때이다.

제 5 장 에큐메니시티와 연합

G-5.01 에큐메니컬 참여

G-5.0101 에큐메니시티

미국장로교는 모든 차원에서 그리스도 몸인 교회의 일치를 더욱 가시화하도록 추구하며, 다른 교단과의 대화, 협력, 그리고 행동을 같이 할 기회를 열어 두고 개방할 것이다. 또한, 다른 개혁파 교단과 기독교 교파들과의 관계를 주도하고 유지하고 강화하는데 힘쓸 것이다.

G-5.0102 종교 간 관계

미국장로교는 비기독교적 종교 단체들과 대화와 이해를 위한 새로운 기회를 모든 차원에서 추구할 것이다.

G-5.0103 세속적 기관들

미국장로교는 이 세상에서 교회의 선교에 도움이 주는 것이라면, 세속 기관들이나 조직들과 대화 및 공동행동을 위한 접근을 모든 차원에서 시도하고 대응하는데 힘쓸 것이다.

G-5.02 타 교단과의 관계

G-5.0201 통신관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일치를 추구하면서 (G-5.0101), 총회는 그러한 취지와 목적을 위한 약정서, 협정서 혹은 선언문을 타 기독교 교파와 함께 개발하는 것을 허락하고 지시할 수 있다. 총회에 의해 허락되고 승인되는 이러한 결정에는 세례의 상호 인정과 질서있는 목사의 교환 등이 포함되나 여기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본 교단의 모든 공의회가 다른 기독교 교파들과 상호 격려하고 권고하는데 함께 사역하는 모든 기회에 동참하도록 장려되고 있다.

미국장로교 총회는 총회 사무처(Office of the General Assembly)를 통하여 아래 교단들의 최고 공의회나 치리기관들과 통신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 a. 미국 밖에 있는 교단으로서 본 교단과 오랜 역사적 유대관계가 있는, 총회가 인정하는 교단들
- b. 미국장로교가 회원으로 있는 에큐메니컬 연합체의 회원 교단들
- c. 공식적인 에큐메니컬 대화를 하도록 총회가 승인한 교단들.

G-5.0202 완전교류

미국장로교의 총회는 총회가 인정하는 그러한 교단들과 완전 교류관계에 있다. 완전교류는 에큐메니컬 합의서에 의해 정의된 바와 같이, 세례의 상호 인정과 질서있는 목사들의 교환이 포함되어야 한다. 본 교단의 공의회들은 미국장로교와 완전 교류 관계에 있는 교단들과 상호 격려하고 권고하는데 함께 사역하는 모든 기회에 동참하도록 장려되고 있다.

G-5.0203 *에큐메니컬 선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의 일치성을 추구함에 있어 (F-1.0302a, G-5.0101), 총회 사무처는 위에 언급한 관계에 추가하여, 공식적인 합의서와 에큐메니컬 일치선언문을 타 기독교 교파들과 함께 개발해야 한다. 이러한 선언문과 약정서는 상호협력을 위한 안내책자로서 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고 노회가 이를 승인하거나 부결하는 수의 투표를 위해 노회로 보내져야 한다.

G-5.03 완전한 조직적 연합

타 교단과 미국장로교와의 완전한 조직적 연합은 다음과 같은 승인 절차를 거친 후에 그 효력을 가진다:

- a. 제안된 연합안에 대해 총회가 승인하고 그 권고안을 노회로 보냄;
- b. 노회의 2/3 가 서면으로 승인함;
- c. 차기 총회 또는 연합제안계획에 명시된 별도 총회에서 승인되고 완결시킴.

G-5.04 연합노회

미국장로교의 노회는 다른 개척과 교단에 속한 하나, 혹은 그 이상의 비등한 공의회 혹은 치리회와 연합회를 형성할 수 있으며^a, 각기 소속한 대회나 비등한 공의회 또는 치리회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G-5.0401 *헌법적 권한*

연합노회는 연합에 참여한 노회가 속한 각 교단의 헌법에 순복해야 한다. 양 교단의 헌법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두 개의 헌법 중에 의무규정을 허용규정에 항상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서로 상충하는 의무 규정이 있을 때는, 연합노회는 양 교단의 최고 공의회 혹은 치리회에 헌법적 유권해석이나 헌법개정을 통하여 상충하는 것을 해결해 주도록 헌의하여야 한다.

G-5.0402 *연합 계획*

연합노회는 연합에 참여하는 각 노회나 치리회에서 연합노회 계획을 2/3 의 표결로 채택하므로써 조직될 수 있다. 연합하는 각 조직의 관할권을 가지는 대회나 치리회가 그 연합계획을 승인해야 한다.

G-5.05 선교를 위한 교회 연합

본 교단의 개체교회가 선교 전략상 타 기독교 교파에 속한 개체교회와 함께 연합선교 교회를 만드는 것을 노회가 승인할 수 있다. 다만, 함께 연합선교를 하고자 하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인정하고, 성경의 권위를 받아들이며, 세례와 성만찬의 성례전을 집행하는 교회이어야 한다^b.

a. 이러한 연합선교 교회는 연합에 참여하는 각 교단의 헌법에 순복하여야 한다. 교단들의 헌법이 서로 다를 때에는, 헌법 중에 의무규정이 허용규정에 항상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한다. 서로 상충하는 의무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개체교회 공의회 (당회 혹은 대등한 치리회)는 차상위 공의회나 치리회에 상충하는 것을 해결해 줄 것을 청원해야 한다.

b. 이러한 연합선교 교회는 연합에 참여하는 개체교회가 합법적으로 소집한 공동의회에서 2/3 의 찬성으로 승인되고, 또 개체교회가 속한 노회 혹은 비등한 공의회나 치리기관에서 승인을

받은 계획에 따라 조직되어야 한다. 연합선교 교회 계획의 어떤 규정도 미국장로교의 헌법을 수정하거나 개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서는 안된다.

c. 연합선교 교회에 관계된 개체교회와 연합에 관련된 타 교단의 차상위 공의회 혹은 치리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노회는 미국장로교와 완전 교류 혹은 교신관계에 있는 교단으로부터 개체교회를 회원교회로 받아들이거나 그 교단으로 개체교회를 이전시킬 수도 있는데, 해당 개체교회의 선교 전략상 이러한 이전이 더 좋다고 판단될 때이다 (G-3.0303b).

제 6 장 헌법 해석 및 개정

G-6.01 개혁

미국장로교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개혁되었고, 또 항상 개혁되는 교회”가 되기를 추구한다 (F-2.02). 이러한 결단에 비추어, 다음의 헌법 해석과 수정 절차는 교회가 보다 충성스러이 되기 위한 수단으로 이해된다.

G-6.02 헌법 해석

총회는 규례서에 대한 권위적인 해석을 제공할 수 있는데, 이 항에 기술된 방식으로 또는 교정사건이나 징계사건에서 상임사법전권위원회의 판결에 의하여 권위적인 해석이 내려질 때에는 교회의 공의회들은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총회는 구 명으로 구성된 헌법자문위원회를 선출하되 가능한 한 교역장로 (목사) 와 사역장로 (장로)의 수가 동수가 되도록 한다. 총회 서기장은 투표권이 없는 당연직 위원이 된다. 헌법자문위원회 위원으로 만 육 년의 임기를 채운 사람은 육 년의 임기가 만료된 후, 사 년이 지나기 전에는 재선출될 수 없다. 총회는 헌법자문위원회의 위원 자격에 대해 자체의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규례서에 대한 총회의 해석을 요구하는 교단의 공의회들은 모든 질문을 다음 총회가 열리기 적어도 120 일 전까지 총회 서기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총회 서기장은 이 모든 질문을 헌법자문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 다만, 사법전권위원회에 계류 중인 현안에 관련된 질문들은 제외된다. 헌법자문위원회는 이에 대한 보고서와 권장안을 차기 총회에 제출하되 적어도 총회 개최 60 일 전까지 전달해야 한다.

G-6.03 신앙고백서 개정

본 교단의 신앙고백 문서들에 대한 개정은 ^a 다음 절차들을 완전히 이행했을 때에만 가능하다.

- a. 신앙고백서 개정안을 교회가 연구하도록 총회에서 승인한다.
- b. 총회는 개정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15 인 이상의 사역장로 (장로)와 교역장로 (목사)로 구성된 위원회를 임명하되, 한 대회에서 이 명 이상이 나와서는 안 된다. 이 위원회는 개정안을 발의한 위원회 혹은 공의회와 협의해야 하고 다음 총회에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 c. 차기 총회는 연구위원회의 보고를 심의하여 제안된 개정안을 승인하고, 이를 노회에 보내어 투표하도록 한다.
- d. 제안된 개정안이 2/3 노회들에 의해 승인되었다는 서면 통지를 받는다.
- e. 헌법 개정에 필요한 2/3 노회들의 승인이 접수된 다음에, 차기 회집되는 총회는 제안된 개정안을 승인하고 법문화한다.

G-6.04 규례서 개정

규례서의 개정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완전히 이행할 때에만 가능하다.

- a. 모든 규례서 개정안은 다음 총회가 열리기 적어도 120 일 전에 총회 서기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b. 총회 서기장은 그러한 모든 개정안을 헌법자문위원회(G-6.02)에 회부해야 하고, 이 위원회는 언어의 명확성과 일관성, 그리고 미국장로교 헌법의 다른 규정과의 모순이 없는지에 대해 개정안을 검토해야 한다. 총회 개회일로부터 적어도 60일 전까지, 자문위원회는 검토 결과와 함께 권장사항을 총회에 보고해야 하는데, 권장사항에는 제안된 개정안의 수정 버전 혹은 개정안에 대한 찬반 여부를 개정안을 다루는 위원회에 자문해 주는 것이 포함될 수 있다. 총회는 헌법자문위원회의 보고와 권장 사항을 듣고 참고하기 전에는 어떤 개정안도 고려해서는 안 된다.

c. 제출된 개정안은 동일한 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고, 각 노회에 회부하여 투표를 하도록 한다.

d. 노회들은 제안된 개정안을 노회에 회부한 총회가 산회한 후 1년 이내에 투표결과를 총회 서기장에게 전달해야 한다.

e. 총회 서기장은 규례서의 개정안에 대해 전체 노회의 과반수가 찬성하였다는 서면 보고를 받는다. 이렇게 승인된 개정안은 그 개정안을 노회에 회부한 총회가 산회한 지 1년이 될 때, 발효하게 된다.

G-6.05 예외 조항

이 헌법의 G-4.0208 조항들은 개정될 수 없다.

G-6.06 특별조항의 개정

신앙고백 문서들의 개정 및 완전한 조직적 연합(G-5.03)을 이루기 위한 절차는 해당 절차들이 기술하고 있는 동일한 방법에 의해서만이 개정될 수 있다.

예배모범

The Directory for Worship

예배모범¹

서문

a. 이 예배모범은 교회의 삶은 하나라는 확신과 교회의 예배와 증거와 섬김은 분리될 수 없다는 확신을 반영한다. 신학은 성경을 근거로 하고 있고, 미국장로교(PCUSA) *신앙고백서(The Book of Confessions)*의 가르침을 받으며, 에큐메니컬 논의에 민감하도록 힘쓴다. 장로교 전통의 풍부한 유산과 문화의 다양함이 이 예배모범에 반영되어 있고, 권장되고 있다. 예배모범은 고정된 틀의 예배질서를 제공하는 예식서가 아니고, 기도와 예식의 모음집이나 프로그램 안내책자도 아니다. 그 보다는 개혁예배의 기초를 이루는 신학을 기술하고, 그러한 예배를 위한 적절한 형식의 윤곽을 제공한다. 이 예배모범은 예배의 여러 가능성들을 제안하고, 예배의 계발을 권유하며, 예배의 지속적인 개혁을 권장한다. 이는 미국장로교(PCUSA)의 개체교회들과 **공의회**들의 삶에서 예배행위의 표준을 설정하고 그 모범을 제시한다. 미국장로교(PCUSA)의 예배의 지침을 제시하는 헌법상의 문서로서의 이 예배모범은 본 교단을 위해 권위를 가진다.

b. *규례서(Book of Order)*의 서문에 정의된 용어들에 더 부가하여, 이 예배모범은 예배에 관하여 단순히 서술적인 용어들을 사용하여 쓰여졌다.

c. 이 예배모범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께 귀를 기울려 듣고, *신앙고백서(The Book of Confessions)*의 인도를 받고자 의도적으로 노력하면서 쓰여졌다. 예배모범의 말들이 성경이나 고백서들에서 직접 인용된 것일 때는 주(註)를 달아 표시하였다. 또 이 예배모범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하여 예배모범의 다른 부문이나 (W-), 장로교 정치제도의 기초(F-)와 정치형태(G-) 및 권징조례(D-)를 참조할 수 있도록 참조조항을 본문의 괄호안에 삽입하였다. 페이지 하단에 달아놓는 주(註)는 이 예배모범 개발의 틀을 잡아준 성서적 또는 고백서의 출처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교회의 삶의 여러 단계에서 이 예배모범을 훈련 교재와 자료로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기 위하여 독자들이 성서와 고백서를 바로 참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들 주를 달아 놓았다.

¹본서 전체를 통해서 다음 약자가 쓰여진다:

F—장로교 정치제도의 기초

G—정치형태

W—예배모범

D—권징조례

W-1.0000

제1장 크리스천 예배의 활력

W-1.1000

1. 크리스천 예배: 서론

W-1.1001

크리스천 예배

크리스천 예배는 모든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삼위일체 하나님께 기쁨으로 돌리는 행위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에서 세상과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인정한다.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와 구속행위에 응답하면서 변화되고 새로워진다. 믿는 자들은 예배에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세상에서 하나님 사역을 할 수 있게 준비된다.

W-1.1002

하나님의 주도권

a. 하나님의 성령께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그들의 삶을 주장하심을 깨닫게 하신다. 성령께서는 그들이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구하며, 언행으로 자기 계시를 하신 하나님 행위를 기억하고 선포하며,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자신들의 삶을 헌신함으로써 응답하도록 그들을 감화시키신다.

하나님이 인간을 대면하심

b. 하나님 백성이 최초로 기억하는 것들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대면에 관하여 전한다. 하나님을 창조와 언약에서, 회개의 촉구와 용서를 주시는 일에서 주도권을 취하신다. 하나님은 심기도 하시고 뽑기도 하시며; 하나님은 심판도 하시고 축복도 하신다(예레미아서 1:10).

하나님이 인간 안으로 들어오심

c.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자기 계시, 구속, 용서의 행위로서 완전히 인간의 조건 안으로 들어오셨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서진 세계에 들어오셔서 죄를 속죄하시고 인간의 삶을 회복하셨다. 창조하신 세계에 그렇게 들어오심으로써 하나님은 인간들이 창조주를 알고 찬양하는 방편으로서 시간과 공간, 물질과 인간 생활을 완성케 하셨다.

W-1.1003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인간 응답

a. 예수의 인격과 사역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생활은 혼돈이 아니라 일치로 이루어졌고, 분리가 아니라 구별을 이루었다.

b. 나자렛의 예수는 하나님께 인간적 응답을 완벽하게 바치시었다. 구속하시는 생명이 구속받은 생명의 형태로 목적으로 나타나신다. 예수의 삶이 진정한 크리스천 예배의 본질을 표시한다.

W-1.1001: 사 6; 계 4:11; 스코트고백 3.01; 제2스위스고백 5.023, 5.135; 웨스트민스터고백 6.112, 6.113; 대요리문답 7.214, 7.215; 소요리문답 7.046, 7.047, 7.050, 7.051; 1967년도 고백 9.35-9.37

W-1.1002: 롬 10:13; 고전 11:26, 12:3; 스코트고백 3.02, 3.04-3.06, 3.12; 1967년도 고백 9.07-9.09, 9.18, 9.20

W-1.1003: 렘 33:1-9; 요 1:1-14; 빌 2:9-11; 히 1:2; 계 19:11-16; 스코트고백 3.06, 3.09-3.11; 제2스위스고백 5.062, 5.064, 5.146; 웨스트민스터고백 6.043-6.047; 1967년도 고백 9.07-9.11, 9.19

일상 생활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

c. 예수 그리스도는 일상생활에 임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신앙의 증거에서 선포된 그 분은

- (1) 창조 시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고,
- (2) 계약의 전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하시고 명령하신 말씀이고,
- (3)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분은
 - (a)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 (b) 십자가에 못 박시고, 권능으로 부활하셨으며,
 - (c) 승리하사 심판과 통치하시려 다시 오신다.

W-1.1004

말씀과 성례전의 예수 그리스도

기록된 말씀인 성경과 선포된 말씀인 설교, 그리고 행동화된 말씀과 인침된 성례전은 살아 있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한다. 성경과 말씀선포와 성례전을 통해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힘으로 변화시키고 권능을 부여하고 인간 삶을 지속시키심으로써 임재하신다. 크리스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은

- (1) 선포된 말씀을 들으며,
- (2) 성례전으로 행동화된 말씀을 받으며,
- (3)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발견하며, 그리고
- (4) 세상 안에서 말씀을 따르도록 보냄 받았다.

W-1.1005

공동체 내에서 하나님께 크리스천 응답

a. 태초부터 하나님은 공동체를 위하여 여자와 남자를 만드시기고 사람들을 언약 안으로 부르셨다. 예수는 백성들을 부르시고 위임하셨으며,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그들 가운데 계실 것을 약속하셨다. 성령은 계약의 새 공동체를 부르시고 모으시고, 질서를 유지케 하시고 능력을 부어주신다. 성령은 각 교인에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은사를 주시고, 이 은사를 목회 사역을 위해 준비케 하신다. 하나님께 드리는 크리스천의 개인 응답은 공동체 안에 있다.

예배와 봉사 안에서 응답

b. 하나님 백성은 찬양의 말과 행동으로써, 기도와 선포와 기념과 봉헌의 행위 안에서 감사를 드림으로써 응답한다. 그리스도

W-1.1004: 요 1:14-18; 롬 10:8; 고후 4:4b-6; 빌 2:5-11; 골 1:15; 바르멘선언 8.11, 8.14, 8.17; 1967년도 고백 9.07, 9.20, 9.27, 9.30, 9.35-9.37

W-1.1005: 마 28:20; 요 14:18-; 롬 12:6,8; 고전 12; 엡 4:12-; 벤전 4:10; 하이델베르크문답 4.055; 1967년도 고백 9.17-9.19, 9.20, 9.22, 9.31-9.33

의 이름으로, 성령의 힘에 의해 그리스천 공동체는 다음과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긴다:

- (1) 삶의 경험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 (2) 사적인 제자직으로,
- (3) 상호 목회 안에서, 그리고
- (4) 세상에서 공동 목회를 통해서.

W-1.2000

2. 예배의 언어

W-1.2001

하나님께 응답의 언어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물을 존재케 하신다. 하나님은 은혜의 말씀을 주시고, 백성은 예배의 언어를 통하여 그 절대적 주도권에 응답한다. 그들은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임재를 기원하며, 기도 안에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침묵과 명상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 하나님 앞에 서서 고개 숙이고, 손을 들어 찬양의 말을 하고, 음악을 연주하고 춤을 춘다. 마음과 영혼으로,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한 마음으로, 예배의 언어와 연극과 장려한 행렬에 백성들이 참여한다.

W-1.2002

상징적 언어

사람들이 하나님께 응답하고 하나님 체험을 서로 소통할 때는 반드시 상징적 방편을 사용해야 한다. 왜냐면 하나님께서는 창조물을 초월해 계시고, 피조물의 어느 것으로도 격하되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이다. 단순한 인간적 상징은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이해하는데 적절치 않으며, 하나님의 실재와 동일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이 세상에 아무 것도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사용하는 상징들은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활동을 이해하고 공유하고 응답하는데 적절할 수 있다. 이는 하나님이 자기 계시를 통해 인간들과 화해하시기로 선택하셨기 때문이다:

- a. 창조된 질서를 통해,
- b. 계약 역사의 사건들 가운데서, 그리고
- c. 성육신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이다.

말로, 행동으로 표현된 상징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에 충실할 때, 이것들은 그리스천 예배에 적절하고 참된 상징들이다.

W-1.2000: 제2스위스고백 5.217; 1967년도 고백9.50

W-1.2002: 사 40:18-25,55:8,9; 요 1:1-18; 롬 11:33-36; 골 1:15-20; 히 1:1-3

W-1.2003
구약의 상징들

하나님 백성들이 거룩하신 한 분을 예배하면서, 창조주, 계약을 만든 분, 해방자, 심판자, 구속자, 목자, 위로자, 최고통치자, 생산자, 담지자(擔持者)로서 하나님을 말함으로써 인간 체험의 상징을 구사하였다. 그들은 자연세계에 있는 바위, 생수, 불, 독수리, 암탉, 사자 또는 빛의 성격을 하나님께 귀속시켰다. 그들의 예배는 상징적 행동 언어로도 충만되어 있었다:

금식하고 풍족히 먹으면서,
즐거워하고 울부짖으면서
행진하고 휴식하는 가운데,
춤추고 손뼉을 치면서,
정결과 봉헌으로서,
할례와 기름부음으로써,
번제의식과 속죄제로서,
정의와 자비의 베품으로,
음악과 노래로 주를 경배한다.

W-1.2004
신약의 상징들

a. 예수는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에 관하여 구약의 상징들과 이미지를 사용하였다. 그는 이스라엘 예배의 상징적 행위에 참여했다. 많은 경우에서 그는 하나님을 개인화했고, 친숙한 상징들에 대해 새로운 깊이를 부여했다. 이는 하나님을 아바(Abba), 즉 아버지라고 친밀하게 부른 것에서도 볼 수 있다. 그는 자신에 대해 선한 목자, 이스라엘의 신랑, 사람의 아들 등으로 지칭하는 등, 많은 구약의 상징용어를 사용하였으며, 그 의미의 강도를 더하였다. 그는 자선 행위, 세례, 빵을 떼는 일과 같은 당대의 종교 관례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다. 예수는 일상생활에서 인간적 자비의 행동들, 즉 병든 자를 고치고 배고픈 자를 먹이고 발을 씻기시는 일등을 하셨고, 이것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으로 변화시켰다.

그리스도는 새 상징의 초점

b. 부활하신 주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새 상징의 초점이 되었다. 신약의 저자들은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제2의 아담으로, 하나님의 어린양으로 묘사하는 가운데, 새로운 현실에 대해 구약의 상징적 언어를 자주 사용하였다. 그들은 새로운 상징적 언어도 사용하였다: 즉 영원한 말씀, 모든 피조물의 첫 탄생, 적대하는 분

W-1.2003: 시편, 이사야 또 다른 시가와 예언서들

W-1.2004: 요 1:1, 36; 고전 15:45; 엡 2:14; 골 1:15

열의 벽을 무너뜨린 우리의 평화 등의 표현이 그 예이다. 찬송과 다른 찬양의 형태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세상에 나타내신 참된 상징으로 영광속에서 찬양되었다(W-1.1003-1005).

W-1.2005
참되고 적절한 언어

각 시대를 통하여 모든 문화 속의 교회는 성경 속의 상징과 이미지와 이야기와 단어들을 예배에 사용했고 채택하였다. 교회의 이런 언어의 사용이 항상 본래적이고 적절한 것은 아니었다. 다양한 표현의 개혁과 교회 전통에서, 언어의 문화 역사적 사용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 성서적 증거를 반영할 때 본래적인 것으로 인정된다. 언어는 예배공동체가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면서 그것을 공동체의 고유한 언어로 주장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적절한 것으로 증명된다. 본질상 적절한 언어는

- a. 이성적 분석적이기 보다는 풍부하게 표현되어야 한다,
- b. 알리고 묘사하면서도, 점증적이고 설득력이 있어야 한다,
- c. 질서 있는 열정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 d. 개인적인 기도이면서 전 신앙공동체의 말이어야 한다.

적절한 언어는 성서적 진리를 각 전통의 말과 행위의 형태로 참되게 반영하는 다양한 전통을 인정하려고 힘쓴다.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는 그 전통의 언어를 존중하고 적절히 사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적절한 새 예배언어를 찾아 새롭게 혁신하려는 자유가 있다. 오랜 전통의 형식과 질서를 존중하는 가운데 교회는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자유로이 응답하도록 언어를 재구성할 수 있다.

W-1.2006
포괄적인 언어

a. 미국장로교(PCUSA)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백성들이 하나로 된 가족이므로, 그 예배에 쓰일 적절한 언어는 이 백성들의 풍부한 다양성을 나타내는 것이어야 한다. 예배의 형식과 행위와 언어 또는 예배의 환경이 그 교회 구성원을 반영하는 다양한 문화의 표현을 배제하거나, 교회 구성원들의 정체성을 거부하거나 그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필요를 거부한다면, 그러한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에 충실하지 않는 것이 된다.

W-1.2006: 고전 9:19-23; 10:23,24,31-33; 갈 3:28; 약 2:1-9

다양한 언어

b. 교회는 예배에서 하나님에 관한 언어를, 성경과 신학의 전통이 다양하고 다른 것처럼 의도적으로 다양하고 다른 언어로 사용하기를 힘써야 한다. 교회는 신앙공동체 일원들 모두가 자신들이 포함되어 있고 관여되어 있으며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귀히 여김을 받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방식으로 언어를 사용할 것을 결단한다. 전세계를 향해 증거하고자 노력하는 가운데, 교회는 성서적 진리에 충실한 언어를 사용할 것을, 성별이나 피부색깔이나 삶의 기타 조건에 의해 사람들을 의식적으로나 잘못하여 배제하는 일이 없는 언어를 사용할 것을 힘쓴다.

W-1.3000

W-1.3010

W-1.3011

안식일, 주의 날

3. 시간, 공간, 물질

a. 시 간

(1) 크리스천은 어느 때나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시간을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계약 공동체는 매일 예배드렸다. 그러나 하나님은 7일 중 하루를 특별히 따로 선별하시고 주께 거룩하게 지키도록 하셨다. 구약에서 안식일은 전적으로 주님께 바치는 날로 선별된 것으로 이해되었다. 신약에서는 주간의 첫째 날, 부활의 날을 새 계약의 백성이 모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지켰다. 이날이 주의 날로 불리게 된 것이다.

말씀과 성례전

(2) 아주 초기부터 교회는 주의 날에 말씀의 선포와 해석 그리고 성례전 축하를 위해 모였다. 개혁과 전통은 주의 날을 말씀을 듣는 시간으로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기대 속에서 성례전을 축하하는 시간으로서, 기도와 예배 가운데 응답하는 시간으로서 그 중요성을 강조해왔다(W-3.2001; W-5.5001).

W-1.3012

매일 예배

(1) 이스라엘 예배에서는 매일 찬양과 감사의 희생 제사를 드리는 시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었다. 성전을 잃어버린 후에도 아침 낮 저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정해졌다. 예수는 정기적인 기도의 시간을 따로 정해두었고, 신앙공동체는 성전에서, 다락방에서, 가정에서 모여 매일 기도하였다. 신약의 저자들은 교회가 쉬지 말고 기도하도록 권고하였다. 교회는 역사적으로 성무(聖務)의 일과로서 불리운 매일 기도를 위한 특별 시간을 전 시대를 통하여 지속하였다.

기도와 성경

(2) 개혁과 교회 전통은 성무(聖務)의 일과 모범을 채택했으며, 기도 뿐만 아니라 공적으로 성경봉독 및 그 해설을 듣는 행

W-1.3011: 창 1:3, 14-; 2:3; 출 20:8-11; 신 5:12-15; 행 20:7; 계 1:10;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103; 제2스위스고백 5.223-5.226; 웨스트민스터고백 6.118-6.119; 소요리문답 7.060; 대요리문답 7.226-7.227

W-1.3012: 행 1:14; 2:42; 3:1; 10:9; 웨스트민스터고백 6.117

사를 마련한 것이다. 매일의 공중 예배는 교회가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를 위해 사역하면서 교회의 삶과 증거의 차원으로 권고된다. 매일의 공중 예배는 교회가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를 위해 사역하면서 교회의 삶과 증거 차원으로 권고된다. 생활양식의 변화는 가족의 매일 기도와 개인 기도를 드리도록 했고, 이는 크리스천 삶의 정기적 훈련의 일부가 되도록 권장되고 있다(W-3.4000; W-5.2000; W-5.7000).

W-1.3013
교회력

하나님께서 날들을 만드시고 요일을 지정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시간의 주기를 만드셨고 예배의 절기를 지정하셨다. 구약에서 백성들은 하나님 경배의 축제행사로써 금식의 절기와 잔치의 절기를 지켰다. 예수님은 이러한 축제 절기들을 지키셨다. 신약의 교회에서 축제 절기들의 목적과 의미는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성령의 은사에 의해 변화였다. 예수님의 탄생과 생애, 죽음, 부활, 승천, 재림의 약속은 이러한 절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예배의 연례 주기가 정해지고 교회 생활에서 봉독되고 선포될 교훈의 선택을 하게 된다. (W-3.2002; W-3.2003).

W-1.3020
W-1.3021
구약

b. 장소

크리스천들은 어디에서나 예배드릴 수 있다. 왜냐하면 시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공간도 만드셨고 질서도 주셨기 때문이다. 구약은 하나님께서 수많은 다른 장소에서 사람들과 만나셨음을 말해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과 하나님이 특별한 만남을 가지는 특정한 장소가 인정되었으며, 그러한 만남을 기억하고 만남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였다. 그 곳이 돌로 쌓은 족장들의 제단이든, 하나님의 방황하는 백성의 회막이든, 예루살렘에 있는 왕국의 성전이든 또는 흩어진 유대인 예배당이나 회당이든 간에, 각기 그 곳은 하나님의 임재를 부르며 표현하는 장소로 지정되었다.

W-1.3022
예수

계약공동체의 예배장소에 대한 이해는 예수의 생애를 반영한다. 그분은 정기적으로 회당과 성전에서, 광야와 갈릴리 언덕에서 예배하셨다. 예수님은 특별히 어느 특정한 장소에 하나님을 한정시키는 생각을 거부하셨다.

W-1.3013: 롬14:5, 6; 골 2:16, 17

W-1.3020: 웨스트민스터고백 6.117

W-1.3022: 요 4:21-24

W-1.3023
초대교회

크리스천 예배의 실재를 확인하는 일은 장소나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현존이었던 까닭에 초대 크리스천은 성전에서, 회당에서, 가정에서, 카타콤에서, 그리고 감옥에서 예배를 볼 수 있었다. 말씀을 해석하고 빵을 떼는 무리가운데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면 그 장소가 어디든지 간에 거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현존 가운데 모이고 찬양과 예배로 응답하는 특별한 장소를 선별하기 시작하였다. 지금까지도 계속하여 교회가 모일 때 예배의 본체는 특정한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 안에 계시는 부활하신 주님의 현존에 있다.

W-1.3024
장소 배치

한 예배 장소가 선별되었을 때, 그 곳은 접근하기 편리한 곳이고 모임을 갖기 용이한 곳이어야 하고, 공동체 의식을 촉진시켜야 하며, 또 교인에게 하나님 앞에서 경외감을 갖게 해야 한다. 그 곳은 성경을 읽을 수 있고 말씀을 설교하거나 강론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그곳에서 성례전을 축하할 수 있게 적절한 관리되어야 하고, 세례반이나 세례못, 그리고 주의 만찬 축하에 적절한 성찬대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공간 배치에 말씀과 성례전 그리고 기독교 예배의 중심 사이에 있는 핵심관계가 가시적으로 표현되어야 한다.(W-1.4004)

W-1.3030

c. 물질

W-1.3031
구약

하나님께서서는 물질 세계를 만드셨고 그것을 좋다고 선언하셨다. 계약공동체는 물질 세계가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한다고 이해했다. 그들은 또한 물질이 하나님을 적절히 경배하고 감사드리는 표현의 방법일 수 있다고 보게 되었다. 법제, 진설병, 짜서 만든 수놓은 천, 대야, 기름, 등불, 악기, 곡식, 과일, 동물 등은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의 표현물이 되었다. 그렇지만 예언자들은 하나님께 자신을 바치는 대용으로 물질을 드리는 행위를 경고했다.

W-1.3032
예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이 되었으며, 하나님께서 물질의 실재를 거룩하게 하셨다. 예수는 자신의 몸을 산 제물로 바치셨다. 그는 그의 목회활동에서 그물, 생선, 광주리, 향아리, 기름, 진흙, 수건과 대야, 물, 빵과 포도주 등 평범한 물건들을 이용하셨다. 이런 물질들 안에서, 물질을 통해서 일하시면서 그는 백성을 축복하시고 치유하셨으며, 그들을 화해케 하시고 공동체

W-1.3024: 제2스위스고백 5.214-5.216

W-1.3031: 암 5:21-24; 사 1:11-17; 미 6:6-8; 참조 시50편; 1967년도 신앙고백 9.16

안에 묶어 두셨으며, 하나님 나라의 은총과 권능과 임재를 나타내셨다.

W-1.3033
교회: 성례전

(1) 초대교회는 예수가 자신의 목숨을 제물로 바치셨듯이, 예수를 따라 생명의 주요한 세가지 요소인 물과 빵과 포도주를 취하여 하나님께 생명을 바치는 기본 상징으로 삼았다. 세례수로 씻김 받음으로서 크리스천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받고, 그들의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봉헌하였다. 그들은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리스도의 지속적 임재를 받아들였고, 하나님 계약의 약속을 명령했으며 순종의 서약을 새롭게 하였다.

개혁전통: 성례전

(2) 개혁과 교회의 전통은 세례와 주의 만찬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성례전으로 이해했다. 성례전은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참 임재와 권능의 징표요, 하나님 행동의 상징이다. 성례전을 통해 하나님은 믿는 자의 구원을 인치시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들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시며 섬기도록 그들을 인치신다.(W-3.3601)

W-1.3034
예배 시 물질 이용

(1) 교회는 크리스천들의 삶과 그들이 소유한 모든 것을 창조주에게 속한 것으로, 예배에서 하나님께 봉헌되어야 하는 것으로 인정하였다. 하나님 백성들은 이와 같이 자신을 바치는 제물의 징표와 상징으로서 그들이 만든 것과 주요한 소유물을 하나님께 바쳤다. 색채, 질감, 형식, 음향, 동작의 풍요함이 예배행위에 도입되었다.

예술적 표현

(2) 개혁과 교회의 유산은 예배드리러 오는 백성들이 물질 예물을 가져오도록 권장했으며, 그것들은 단순한 형태와 기능을 통해 하나님이 이미 이룩하신 것에 대해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의 삶을 이루어 가시는 진리에 대해 관심을 집중하도록 해준다. 하나님 백성들은 건축, 비품, 설비, 제의, 음악, 연극, 언어와 동작 안에서 창조적인 표현으로 응답해왔다. 이러한 예술적 창조력이 하나님의 실재하심을 일깨울 때, 그것들은 예배에 적절한 것이 된다. 예술 자체에 관심을 집중시키거나, 그 아름다움 자체가 목적으로서 봉헌될 때는 우상숭배가 된다. 예술적 표현은 하나님의 실재하심과 은총에 대해 예배자들의 의식을 일깨우고 복돋으며 고양시키고 확대하는 것이어야 한다.

W-1.3033: 스콧고백 3:21; 하이델베르크문답 4.066-4.068; 제2스위스고백 5.169-5.180; 웨스트민스터고백 6.149-6.153; 소요리문답 7.092-7.093; 대요리문답 7.272-7.274

W-1.3034: 제2스위스고백 5.020-5.022; 1967년도 고백 9.50

W-1.3040
선교

모든 시간, 모든 공간, 모든 사물은 하나님이 만드셨으며,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거룩하게 되었다. 크리스천 예배는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장소에서 하나님의 은사를 사용하면서, 교회가 세상의 삶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 목적에 참여하도록 이끌면서, 세월을 아끼고 공간을 거룩하게 하며 물질적 현상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변모시키는 것이다.

W-1.4000

4. 예배의 책임과 책임 소재

W-1.4001
책임

예배에 있어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와 모든 것을 질서있게 하라는 성경의 명령, 이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한다. 크리스천 예배가 반드시 정해진 형식을 그대로 따라야 할 필요는 없지만, 정성이 없고 무질서한 예배는 하나님께 불경스럽고 교인들에게는 걸림돌이 된다. 예배 책임자들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인도와, 보편교회의 역사적 경험, 개혁과 교회의 전통, *신앙고백서*, 예배공동체의 필요와 특수 상황, 그리고 정치형태 및 이 예배모범 조항에 의해 지도받아야 한다.(W-3.1001; W-3.1002)

W-1.4002
평가와 감독

이 같은 지도원리를 따르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노회를 대신하여 개체 예배 회중의 사역을 감독하고 평가할 책임자들은 당회와 함께 예배의 질적 요소, 그것을 주관하는 수준, 또 하나님의 백성이 복음을 전하고 기쁨과 정의를 전달함으로써 그들의 삶 가운데서 맺는 열매 등을 논의해야 한다.(G-3.0301)

W-1.4003
예배 참여자와 인도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는 왕 같은 제사장 직을 가지며 그 안에서 예배는 모든 사람이 해야 할 일이다. 하나님 백성들은 예배의 공동 목회에 참여하도록 부름 받는다. 하나님의 집에서 드리는 공중예배에 어느 누구도 인종, 피부색깔, 계급, 연령, 성별, 또는 지체부자유의 이유로 참여나 지도자 역할에서 제외 당해서는 안 된다. 어떤 이들은 받은 은사나 교육에 의해 예배를 인도하는 특정 행위로 부름 받을 수 있다. 그러한 능력을 보유한 교인들이나 직제사역자들로 하여금 예배인도를 조력하도록 권장하는 것이 합당하다.

W-1.3040: 미 6:8; 롬 12:1; 엡 6:16; 약1:22-27; 웨스트민스터고백 6.174

W-1.4001: 갈 5:1; 고전14

W-1.4003: 뱀전 2:9-; 1969년도 고백 9.39

W-1.4004
당 회

개체교회에서는 당회가 예배 준비를 하고 사람들이 예배에 전적으로, 정기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해야 한다. 당회는 정기적으로 다음을 준비해야 한다:

- a. 말씀의 설교
- b. 성례전 거행
- c. 단체 기도와
- d. 하나님께 찬양의 노래 바침(W-2.0000-W-3.0000).

당회의 권한은,

- e. 목사에게만 위임된 책임을 제외하고, 개체교회 삶 속의 모든 공중예배를 감독하고 승인하는 일(W-1.4005)
- f. 예배 행사, 날짜, 시간, 장소를 결정하는 일.

당회의 책임은,

- g. 예배 장소 마련 및 성구와 비품을 비치하고 정돈에 대해,
- h. 꽃, 촛대, 깃발, 제의, 헌금접시, 기타 장식도구 같은 특별 비품 사용에 대해,
- i. 교회의 음악과 그 밖의 예술에 관한 전체 프로그램에 대해,
- j. 음악, 연극, 춤, 기타 예술을 통해 예배 인도에 대해 (G-3.0201a,b).

W-1.4005
목 사

a. 담임목사로서 교역장로(목사)는 당회의 권한에 종속되지 않는 특정한 책임이 있다. 특정 예배에서 목사의 책임소관은,

- (1) 봉독할 성경 교훈 선택,
- (2) 설교 준비와 설교, 말씀의 주해,
- (3) 교인을 대표하여 드리는 기도 봉헌, 예배시 교인들이 사용할 기도문 준비,
- (4) 부를 찬송 선택,
- (5) 연극, 춤, 그 밖의 예술 형식 사용.

목사는 특정한 예배 예식을 계획함에 있어서 예배위원회와 협의할 수도 있다(G-2.0504).

W-1.4004: 1967년도 신앙고백 9.50

W-1.4005: 제2스위스고백 5.163

목사와
성가 지휘자

b. 목사는 찬양음악과 기타 봉헌음악이 그 특정한 예배에 적절한지에 대해 성가대 지휘자나 다른 음악담당자(가 있는 경우)와 협의한다. 당회는 이러한 협의가 적절하게 정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확인한다.

W-1.4006
당회와 목사

예배요소들의 순서와 조화를 이룩하는 것은 목사의 책임이며 당회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공중예배에서 회중이 사용할 찬송가, 성가집, 예배서, 성경, 기타 자료의 선택은 목사의 동의를 얻고 음악담당자와 교육담당자(가 있을 경우)와 협의해서 당회가 결정한다.

W-1.4007
당회의 교육 책임

당회는 예배에 참여하도록 교인들을 적극 권면하는 책임을 이행함에 있어서, 교인들의 나이와 관심분야와 그들의 상황에 적절한 방법으로 크리스천 예배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W-3.5202; W-6.2000; G-3.0201a,b). 당회는 또한 사역장로(장로)와 집사들을 대상으로 이 예배모범을 정규적으로 교육해야 한다(G-3.0201c).

W-1.4008
노회에 보고 의무

예배의 책임 수행에 대해 목사와 당회는 헌법에 의해 회원 감독권을 행사하는 노회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다(G-3.0307).

W-1.4009
노회의 교육책임

노회는 회원교회들에게 격려와 지도와 자원 제공의 책임 이행을 위해, 적절한 교육 이벤트를 주선해야 한다. 또한 노회는 목사 후보생의 안수시험과 교역장로(목사)의 계속회원권을 위해 시취할 때 이 예배모범을 정기적으로 사용하여 예배교육을 제공해야 한다(G-2.0503; G-3.0306).

W-2.0000

제2장 크리스천 예배의 구성요소

W-2.1000

1. 기도

W-2.1001

크리스천의기도

기도는 예배의 중심이다.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을 통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되신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찾고, 그분에 의해 발견된다. 그들은 하나님께 경청하고 기다리며,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은총의 행위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봉헌한다. 기도는 말의 기도, 노래의 기도, 침묵의 기도, 또는 행동의 기도로 바뀔 수 있다. 기도는 성령에 응답하는 가운데 개인 삶의 중심으로부터 나온다. 기도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공동체의 삶에 의해 형성된다. 기도는 세상에서 하나님 사역에 동참하기 위한 결단에서 나온다.

W-2.1002

기도의 내용

우리는 기도를 통해 수 많은 방식으로 하나님께 응답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존재 그대로 숭배하고 찬양한다. 우리는 감사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감사를 표시한다. 우리는 고백기도를 통해 우리가 개인으로서나 국민으로서 한 일이나 하지 못한 일에 대해 회개를 시인한다. 우리는 간구기도를 통해 우리 자신과 모인 공동체를 위해 간구한다. 우리는 중재기도를 통해 다른 사람을 위해, 다른 사람을 대표하여, 전세계를 위해 기원한다. 우리는 자기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목적과 영광에 우리를 바친다.

W-2.1003

기도로서 음악

찬송가와 기악 음악

찬송은 기도로서 자신의 전부를 개입시키는 온몸의 응답이다. 찬송을 부르는 것은 신앙인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이건 집이건 또는 다른 특별한 장소이건 간에 공동의 기도 안에서 그들을 하나되게 한다. 계약 백성들은 언제나 노래의 은사를 사용하여 기도를 바쳐왔다. 시편은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중에 불리어지도록 지어졌다. 시편은 응답으로 읽거나 함께 봉독할 수 있지만, 노래로 불리워질 때 그 힘이 가장 크게 표현된다. 찬송으로 불리어질 때 힘찬 능력으로 나타나게 된다. 시편에 덧붙여서 신약의 교회는 찬송과 영가를 불렀다. 여러 시대를 통해서 다양한 문화로부터 교회는 공중기도를 위한 음악형식을 추가하여 발전시켰다. 이같이 다양한 음악형식을 기도 대신 사용할 뿐만 아니라, 그들 자신의 문학적 음악생활에서 우리나라의 그것들을 사용토록 격려받았다.

W-2.1004

기도로서 음악

성가대와 기악

회중을 기도의 노래로 이끄는 것은 성가대와 다른 음악인들이 담당하는 일차적인 역할이다. 그들은 입진송(Introits), 응답송, 그리고 기타 음악 형식으로 교인들을 대표하여 기도할 수 있다. 언어가 기도에 필수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악(器樂)이 기도의 형태가 될 수 있다. 예배에서 음악은 그 목적을 즐거움이나 예술적 표현에 두어서는 안 된다. 음악이 단순히 어색한 침묵을

W-2.1000: 하이델베르크문답 4.116-4.118; 제2스위스고백 5.218-5.221; 웨스트민스터고백 6.114-6.115; 소요리문답 7.0798-7.099

W-2.1003: 엡 5:19; 골 3:16

대신하기 위한 것이 되지 않게 유의해야 한다. 기도로서 음악은 사람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가치있게 바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참조W-2.2008, W-3.3101).

W-2.1005 신·구약에서 그리고 여러 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기도를 말과 기도의 행동화 노래로, 행동으로 표현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다음과 같이 기도하는 것이 적절하다:

- a. 무릎을 꿇고 머리 숙이고, 또는 일어서서 손을 높이 올리면서 기도하고,
- b. 춤을 추고, 손뼉을 치며, 기쁨과 찬양으로 열싸 안으며,
- c. 중재기도와 간구기도에서, 파송식과 안수식에서 기쁨을 붓고 손을 얹는 것.

W-2.2000 2. 성경봉독과 선포

W-2.2001 교회는 성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증거하는 말씀으로 고백한다. 어디서나 그 말씀이 봉독되고 선포되면 살아계신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의 내적 증거로 인하여 현존하신다. 이런 이유로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설교하고 고백하는 것은 크리스천 예배의 중심이 된다. 당회는 공예배시에 그 개체교회의 공통언어로 성경이 반드시 정기적으로 봉독되고 선포되도록 한다.

W-2.2002 교역장로(목사)는 모든 공예배시에 봉독한 성경본문을 고를 책임이 있고, 또 이 때 교인들이 성경의 전체 메시지를 들을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주일 예배시에는 구약, 신약의 서한과 복음서를 봉독하는 것이 적절하다. 시편의 전 범위도 예배에 사용되도록 해야 한다.

W-2.2003 공예배시 봉독할 본문은 교회력의 절기와 개체교회의 목회적 관심사, 세계적 사건과 조건 그리고 그 교회의 특정 프로그램 강조점에 맞게 선택되어야 한다. 교회에 의해 제공되는 성구집들은 보편교회와 일치되고 연관된 폭넓은 독서목록이 되어야 한다.

W-2.2004 하나님 백성들은 가족예배와 개인예배에서 읽을 성경본문을 고를 때 이 성경을 읽는 훈련 동일한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W-5.3000).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책임자들은 자신들의 개인예배에서 읽는 성경 본문이 성경의 전체를 나타낼 수 있도록 훈련을 행사할 특별한 책임이 있다.

W-2.2005 교역장로(목사)는 공예배 때 봉독할 성경 본문의 번역판을 선택할 책임이 있다. 만일 의역이 읽히거나 개작이 만들어지거나 새 번역이 나왔으면, 회중들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W-2.2000: 스룻고백 3.18-3.19; 제2스위스고백 5.001-5.007; 웨스트민스터고백 6.001-6.010; 6.116 소요리문답 7.088-7.090; 대요리문답 7.113-7.115, 7.264-7.270; 바르멘선언 8.11-8.12, 8.26; 1967년도고백 9.27-9.30, 9.49

W-2.2006 성경의 공중 봉독은 분명한 발음으로 잘 들리게 의미가 명료하게 전달되도록 읽어야 하며, 그렇게 읽을 준비가 된 사람에게 맡겨야 한다. 성경봉독을 듣는 것은 기대감과 정신집중을 요구하며, 예배의 일부로서 교인들이 성경을 교독하거나 교송하거나 함께 읽을 수도 있다(W-3.3401).

W-2.2007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해 모인 회중 가운데 임재하시고 은총을 베푸시며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확신으로 선포된 성경말씀이어야 한다. 설교는 성경공부에 있어서 근면함과 분별성이 있을 것을, 매일기도에 규율이 있을 것을, 인간 삶에 영향을 주는 사건이나 이슈에 대해 연마된 민감성이 있을 것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일관성이 있을 것을, 그리고 개인적으로 순종할 것을 요구한다. 설교는 복음을 간단 명료하게, 사람들이 알아듣기 쉬운 언어로 전달해야 한다. 직제상의 이유로, 말씀의 설교는 보통 교역장로(목사)가 해야 한다. 담임목사가 당회 동의를 받아 교역장로(목사)나 노회가 위임한 다른 사람을 초빙할 수 있으며, 담임목사 부재 시에는 당회가 초빙할 수 있다. 노회가 설교할 분을 보낼 수도 있다(G-2.0301; G-3.0301; G-3.0307; G-2.0606; G-2.0504b; G-2.1001).

W-2.2008 말씀은 성경에 바탕을 둔 찬양과 독창으로, 성경이야기를 전하는 칸타타와 다른 형식의 선포 오라토리오로서, 시편과 아가를 통해서, 그리고 성경적 신앙의 진리를 전하는 찬송과 영가와 신령한 노래로서도 선포된다. 예배에서 노래는 봉독되고 노래되고 행동화되고 선포된 말씀에 대한 백성의 응답을 표현할 수도 있다. 연극과 춤, 시와 축제행렬, 기타 인간 예술형태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을 선포하고 응답하는 표현이 되어 왔다. 예술 형식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역할을 떠맡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아들이고 응답하는 방법으로 복음이 충실하게 표현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W-2.2009 사람들은 말씀의 봉독과 말씀 선포에 대한 응답을 신조와 신앙고백을 통해서도 표현한다(F-2.01). 교회는 다음에 관련하여 그 신앙고백을 한다.

- a. 보편교회
- b. 그것의 특별한 역사적 유산, 그리고
- c. 지역적 상황.

교회가 세례와 성찬식을 축하하면서 그 신앙을 고백할 때는 보편교회의 신조를 사용해야 한다 (W-3.3603). 고백된 말씀은 언제나 성경에서 입증된 살아계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판별된다.

W-2.2010 교인들이 말씀 선포 참여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다음을 위해 듣는 것이다:

- a. 예수 그리스도를 분별하기 위해,
- b. 그가 제공하는 은혜를 받기 위해,
- c. 그의 부르심에 순종으로 응답하기 위해서이다.

그러한 참여는 성령의 조명에 좌우되며, 이를 간절한 기도로 구해야 한다. “듣기”와 “들음”이라는 말은 단지 감각의 인지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W-2.3000

3. 세례

W-2.3001

예수와 세례

세례는 그리스도와 결합되는 표시이며 인침이다. 예수는 모든 의로움을 이루시고자 스스로 세례를 받으시고 자신을 죄인과 동일시하셨다.. 예수는 세례를 받으시면서 하느님 아버지께 의해 아들로 입증받았고, 그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서 나타난 종의 길을 택하시기 위해 성령으로 기름부음을 받았다. 부활하신 주 예수는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그들과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다짐하시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들로 제자들을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찌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마 28:19, 표준새번역). 제자들은 넘치는 성령으로 권능을 받고 섬기는 생활을 살기로, 포용적인 예배공동체가 되기로, 사랑과 정의와 자비가 넘치는 생활을 나누기로 다짐하였다.

W-2.3002

세례에서 죽고 살아남

우리는 세례를 통해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한다. 세례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지게 한 것으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일어난다. 세례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표명된 하나님 은총으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향하게 한다. 세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의 미래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실 그리스도에게 향하게 한다.

W-2.3003

계약과 세례수

세례에서 성령은 그 교회를 주님이신 창조주와 계약으로 묶는다. 세례수는 창조의 물과 홍수의 물, 그리고 출애굽의 물을 상징한다. 따라서 세례수는 하나님 창조의 선하심과 노아와 이스라엘과 맺으신 하나님의 약속의 은총으로 우리를 연결되게 한다. 이스라엘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계약을 지키지 못한 그들 세대 가운데 나타나서,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라고 말하였다(암 5:24).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창조의 선하심에 대한 새로운 표현, 즉 정화수의 뿌림에 수반하는 새 언약을 구상하였던 것이다. 예수는 목회사역에서 생명수의 선물을 제공했다. 그러므로 세례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총과 계약의 표시이며 인침이다.

W-2.3000: 스콧고백 3.21-3.23; 하이델베르그문답 4.069-4.074; 제2스위스고백 5.185-5.192; 웨스트민스터고백 6.154-6.160; 소요리문답 7.094-7.095; 대요리문답 7.275-7.277, 7.286-7.287; 1967년도고백 9.51

W-2.3001: 마 3:15; 28:19-20; 막 10:38-40; 행 2:38-47

W-2.3002: 롬 6:3-11; 골 2:12

W-2.3003: 창 1:2; 렘 31:31-34; 겔 36:25-27; 요 4:7-15; 7:37, 38; 고전 10:1, 2; 벧 3:20-21

W-2.3004
은혜의 계약에 포함

할례가 이스라엘과 맺은 하나님의 은총과 계약에서 포용성의 표시이고 상징이었던 것처럼, 세례도 교회와 맺은 하나님의 은총과 계약에서 포용성의 표시이고 상징이다. 하나의 신분 표시처럼 세례는 다음을 의미한다:

- a. 하나님의 신실하심,
- b. 죄의 씻어냄,
- c. 새로 태어남,
- d. 그리스도로 새 옷 입음
- e.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침받음,
- f. 교회의 계약 가족으로 양자됨,
- g.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고 조명 받음.

W-2.3005
그리스도와 일치, 상호
일치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와 화합하는 가운데, 세례는 그들을 서로 뭉치게 하고, 모든 시대와 장소의 교회들과도 화합한다. 인종과 성별, 신분과 나이의 장벽에서 초월해야 한다. 국적과 역사와 관습의 장벽을 극복해야 한다.

W-2.3006
세례: 은혜, 회개, 파송

세례는 선포된 말씀을 행동화하고 인침한다: 하나님의 구속하시는 은총은 모든 사람들이 받을 수 있다. 세례는 하나님 은총의 선물이고, 그 은총에 응답하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세례는 회개하고 신실하고 제자직으로 향하라는 부름이다. 세례는 교회에 정체성을 주고, 교회로 하여금 세상에서 일하라고 파송하는 것이다.

W-2.3007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표시와 인침

인간의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은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도, 세례에서 표시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항상(恒常)하시고 확실하시다. 세례는 오로지 한 번만 받는다. 세례의 효력은 세례가 집행되는 그 순간에 매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세례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활의 시작을 뜻하고 완성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총은 회개와 새 생명으로 부르시며 부단히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새롭게 되어질 필요가 없다. 인간의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은 반복적으로 새롭게 될 필요가 있다. 세례는 그 후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직면하는 각 단계마다 결단을 요구한다. 이는 신앙고백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이나 어릴 적부터 신앙가정에서 양육된 사람이나 모두 마찬가지다.

W-2.3008
‘하나의 세례’: 그
의미

a. 신자들과 그 자녀들은 다 하나님의 계약의 사랑에 포함된다. 신자들의 자녀는 지나치게 지체하거나 지나치게 서두름 없이 세례를 받아야 한다. 세례는 신앙고백을 한 사람에게 하든지 어린이 세례로서 집행하든지 간에 하나이며 동일한 성례전이다.

W-2.3004: 창 17:7-14; 요 3:5; 행 2:39, 22: 16; 고전 6:11, 12:12-13; 고후 1:22; 갈 3: 27; 엡 1:13-14; 5: 14; 골 2:11-12; 딤후 3:5

W-2.3005: 고전 12:12-13; 갈 3:27-28; 엡 2:11-22; 4: 4-6

W-2.3006: 마 28: 18-20; 눅 3:3, 8-14 | 행 2: 38, 41-47; 참조 사 44:3; 요 4: 7-15; 7:37-38; 계 7:17, 22: 17

- 어린이 b. 어린이 세례는 그들이 신앙으로 응답을 할 수 있기 이전에도 하나님에게 사랑받고 있는 백성이라는 진리를 증거하는 것이다.
- 성인 c. 자신의 신앙고백에 의하여 계약에 들어간 자들의 세례는 하나님 은총의 선물이 신실한 응답으로 이행을 요구하신다는 진리를 증거한다.
- W-2.3009 세례는 단 한 번만 받는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끊임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확인하는 일이 예배 중에 여러 번 있다. 다른 사람의 세례예식에 참여하면서, 주의 만찬의 지속적인 양육을 경험하면서, 그리고 세례때 한 결심을 재확인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총의 필요가 진행되고 있음을 경험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계약에 순종한다고 새롭게 서약한다.
- W-2.3010 몸이 하나인 것처럼 세례도 하나이다(엡 4:4-6). 미국장로교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다른 기독교 교단이 거행한 모든 물세례를 인정한다.
- W-2.3011 a. 직제상의 이유로 세례의 허가는 당회가 하며, 세례의 집행은 교역장로(목사)가 하거나 당회가 초대하고 노회의 허가를 받을 때 평신도 목회자가 할 수 있으며, 세례 후에 말씀의 봉독과 선포가 뒤따라야 한다(G-3.0301; W-3.3602-.3608). 세례는 공예배의 예식으로 거행된다. 전체 회중의 예배와 떨어진 곳에서 세례의 거행을 요구하는 특례 상황이 있을 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1) 교회를 대표하는 당회원이 1명 이상 참석한다;
 - (2) 성례전의 의미에 대한 적절한 설명이 교역장로(목사)에 의해 제공되어야 한다;
 - (3) 가능한 때 당회와 협의한다;
 - (4) 집행한 교역장로(목사)가 세례 사실을 보고하며, 당회가 이를 기록한다.
- 기관목사들 b. 공의회는 병원이나 교도소나 학교 등의 기관목사들이나, 공의회가 허가한 목회나 공기관 증거를 맡고 있는 기타 직제사역자들이나, 군인이나 군인가족을 대상으로 목회하는 군종 목사들이나, 공의회 관할의 개척교회에 관여하는 교역장로(목사)들에게 세례의 성례전을 거행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그와 같이 세례를 거행했을 경우, 교역장로(목사)는 새로 세례받은 사람이 개척교회의 교인 명부에 등록되도록 할 책임이 있다. 그러한 등록은 교회의 당회와 협의하여 사전에 주선할 수 있다. 아니면, 공의회가 그러한 새 세례인을 공의회 관할의 특정 개척교회에 부재자 등록을 하거나, 또는 개척교회가 새로 조직될 때까지 공의회에 보유 명단에 등록되도록 마련할 수 있다.
- W-2.3012 세례에 관한 당회의 책임은
- 당회의 책임 a. 부모에게 어린이 세례를 권면하고, 신자의 자녀가 지나치게 지체하거나 지나치게 서두름 없이 세례 받아야 할 것을 상기 시키며, 이들의 세례를 정식 허가한다(W-2.3014);

b. 부모(둘 다 또는 한명)나 친권행사자(들)에게 적절히 지도하고 그들과 협의한 후 신자의 자녀의 세례를 허락한다, 이 행위에서 하나님께 행하시는 일의 중요성을 알게 하고, 크리스천 삶에서 세례받은 사람을 양육할 부모와 회중의 특별한 책임을 그들에게 알린다;

c. 개인신앙고백을 공개적으로 한 사람으로서 아직 세례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적절한 지도와 시험을 치룬 후 세례를 허락한다;

d. 모든 세례받은 이들을 교회의 교인명부에 올린다;

e. 세례받은 이들이 세례와 주의 만찬 의미 그리고 그 상관관계를 이해하면서 양육되고 있는지, 그리고 신자들의 격려와 지지를 주변에서 받고 있는지를 확인한다(G-3.0201; G-3.0204; W-2.3011).

W-2.3013
교회 책임

전체 회중은 보편교회를 대신하여 세례받은 이들을 크리스천 생활에서 양육할 책임을 맡는다. 이러한 목회사역을 행사함에 있어 당회는 교회를 대표하여 양육하는 특별한 책임을 맡도록 특정 교인들을 지정할 수 있다. 당회는 세례를 원하는 사람과 협의하여, 세례를 받는 사람과 그 자녀들을 위해 후원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세례 받는 사람을 양육하는 특정한 역할을 부여할 수 있다(W-6.2001; W-6.2005).

W-2.3014
부모의 책임

어린이에 대해 세례 요청을 할 때는 대개 부모(둘 다 또는 한 명)나 정당한 친권행사자가 교회의 활동교인이어야 한다. 어린이 세례를 받게 하는 부모는 어린이가 커서 개인 신앙고백을 할 준비가 될 때까지, 그리고 교회의 활동교인으로 책임을 수행할 준비가 될 때까지, 신앙공동체 내에서 그들을 양육하고 지도하겠다고 서약해야 한다(W-4.2002; W-4.2003). 당회는 다른 교회의 활동교인으로 있는 크리스천 부모로부터 어린이세례 요청을 받을 경우 이를 고려할 수 있다. 만일 당회가 그러한 요청을 승인할 경우, 다른 교회의 **공의회**와 협의해야 하고 성례전이 거행될 때 그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W-2.4000

4. 주의 만찬

W-2.4001
예수와 성찬식

a. 주의 만찬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영적 교류 속에서 식음하는 표시이고 인증이다. 예수님은 지상 사역을 하시는 중에 공동체의 표시이고 인정의 표시로서 그리고 당신의 목회 행사로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셨다. 그는 이스라엘의 계약기נם을 축하하셨다.

W-2.4000: 스콧고백 3.21-3.23; 하이델베르크문답 4.075-4.082; 제2스위스고백 5.193-5.210; 웨스트민스터고백 6.161-6.168; 소요리문답 7.096-7.097; 대요리문답 7.278-7.287; 1967년도고백 9.52

W-2.4001: 마 14:13-21, 15:32-39; 눅 5:27-32; 7:36-50, 10:38-42; 비교 요 2:13, 5:1, 7:2-37, 10:22-33, 12:1-3, 13:1-4; 공관복음서 병행성구 마 26:17-29; 막 14:12-25; 눅 22:7-20, 24:41-43; 요 21:13; 행 1:4

- 최후 만찬 b.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빵을 떼고 나누셨으며, 그의 살과 피를 새 언약의 표시라고 말씀하셨다. 그는 빵을 떼고 잔을 나눔으로써 그의 죽음을 기억하고 선포하라고 명령하셨다.
- 부 활 c. 부활하신 날, 부활하신 예수님은 떡을 떼심으로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다. 그는 축복하고 떡을 떼시면서, 공동의 식탁을 준비하고 대접하고 나누시면서, 믿는 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다(W-1.3033).
- W-2.4002 신약의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 성도의 교제, 기도, 그리고 공동 식탁에 헌신하였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기억하고 공표하는 일로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떡을 떼고 잔을 함께 마시는 전통을 교회에 전달하였다. 신약은 이 식탁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면서 서로 참여하는 식탁으로서, 메시아 왕국의 향연을 미리 맛보는 식탁으로서 묘사하고 있다.
- W-2.4003 주의 만찬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교회는
- 감 사 a. 하나님이 창조와 구속과 성화를 통해 이룩하신 모든 일에 대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 b. 인간의 죄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온 세상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 드린다;
- c. 감사한 마음으로 그리스도가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고대하면서 하나님 통치에 순종으로 섬긴다.
- W-2.4004 주의 식탁에서 교회는
- 기억함 a.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과 재림의 약속을 기억하고 새롭게 되고 힘을 얻는다.
- b.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사랑과 하나님의 백성과 항상 함께 하신다는 약속으로 지속된다;
- c.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제물이 되는 일에 참여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의 계약으로 인침된다.
- 기억하면서 신자들은 그들과 세상에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신뢰하며; 화해하고 화해되는 은총의 계약의 실체를 증거하며; 정의와 평화 속에서 세계를 새롭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통치의 힘을 선포한다.
- W-2.4005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송축하고 감사하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때 그들은 성령을 불러
- a. 자신들이 그리스도의 현존으로 들어올림 받도록;

W-2.4002: 행 2:42, 46; 고전 11:23-26; 마 8:11, 22:1; 고전 10:16-17; 계 19:9; 비교. 시 107:1-3; 사 25:6-8; 43:5-7

W-2.4005: 고전 10:16

- b. 자신들이 드리는 떡과 잔이 받아들여지도록;
- c. 떡을 떼고 잔을 나눔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케 하도록;
- d. 그리스도와 묶여지고 서로 결속되도록;
- e. 하늘과 땅 위에 사는 모든 믿는 자들과 교통하는 가운데 하나 되도록;
- f.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영양을 공급받아 그리스도의 완성에까지 성숙하게 하도록;
- g. 그리스도의 몸으로써 신실하고,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사역을 행할 수 있게 기원한다.

W-2.4006
 믿는자들의 교통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의 식탁에 둘러 앉아 그리스도와 교통하고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사람들과도 교통한다. 그리스도와의 화해는 상호 화해를 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세례받은 충실한 자들은 모두 주의 식탁에 오도록 환영해야 하며, 어느 누구도 인종이나 성별, 나이나 경제 사회적 신분, 지체장애의 조건, 상이한 문화와 언어, 기타 인간적 부당성에 의해 초래된 장애에 의해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 주의 식탁에 나옴으로써 충실한 신도들은 그들과 이웃간에 있는 모든 갈등과 분열에서 화해하기 위해 적극 힘쓴다. 신앙공동체는 주의 식탁에 모일 때마다

- a. 세상 어디에서든 교회와 하나되며, 전체 교회가 현존한다;
- b.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예배 드릴 때 하늘과 땅의 모든 신실한 자들과 동참한다;
- c. 세례받을 때 행한 맹세를 새롭게 한다;

그리고 하나님과 서로와 세상에 있는 모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것을 스스로 새롭게 결단한다.

W-2.4007
 천국잔치를 미리 맛봄

이 식탁에서 교회는 하나님 백성의 즐거운 잔치를 축하하고 큰 축제와 어린양의 큰 결혼잔치를 기대한다. 교회는 성령에 의해 그리스도가 계시는 곳으로 인도받아서 그리스도께서 영광속에 오실 날을, 하나님이 만유의 찬양을 받으실 날을 열심히 기다리며 기도한다. 이 소망으로 양육받은 교회는 주의 식탁에서 일어나 성령의 힘으로 세계로 보냄 받고, 하나님 선교에 동참하며 복음을 선포하고 자비를 행하며, 그리스도의 왕국이 마침내 올 때까지 정의와 평화의 사역을 한다.

W-2.4006: 마 5:23-24, 18:15-18; 고전 11:18-22, 27-29; 갈 3:28; 약 2:1-7

W-2.4007: 마 22:1-10; 눅 14:15-24; 고전 15:20-28; 엡 1:23; 빌 2:10, 11; 골 3:1-4; 살전 4:16, 17; 계 19:9; 시 72:2-4, 12-14; 사 2:1-4; 미 4:1-4, 6:8 마 5:21-26, 28:18-20; 눅 3:10-14, 4:18-21; 행 1:3-8; 약 2:14-17; 요일 3:16-18

W-2.4008 예배 회중의 삶에서 말씀과 성례전은 절대 필요의 관계이다. 주의 만찬이 말씀과 성례전을 함께 집행될 때는 반드시, 말씀의 봉독과 선포가 선행되어야 한다. (W-1.1005).

W-2.4009 주의 만찬은 정기예배 장소에서 특정 행사와 개체 교회에 적합한 방식으로 주일에 거행되어야 한다. 주의 만찬은 주일날 자주 축하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것이 자주, 정기적으로 거행되어서 주일 예배의 핵심요소로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

W-2.4010 특별 행사 성례전이 신앙공동체 전체에 개방되어 있는 한, 기독교 공동체의 삶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행사에서 주의 만찬을 거행하는 것이 적절하다. 주의 만찬은 환자들이나 공예배에서 격리된 사람들의 방문과 관련하여 거행될 수 있으며, 이로써 교회사역이 그들에게 확장하는 수단이 된다. 성례전을 축하하는 모든 경우에는 반드시 말씀의 봉독과 선포가 있어야 한다. 그 같은 성례전에 설령 두서너명의 교인들만이 참여하더라도, 그것은 개인적 예식이나 기도의 행사가 아닌 전체 교회의 행위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 같은 예식은 교역장로(목사)나 노회에 의해 성례전 집행 권한을 받은 사람 뿐만 아니라 당회에 의해 교회를 대표하는 권한을 받은 한 사람 이상의 교인들에 의해 대표되어야 한다(W-2.4012; W-3.3609-3618; W-3.6204).

W-2.4011 성찬을 받는 사람 a. 주의 만찬으로 초대는 세례를 받은 모든 이들을 포함한다. 주의 식탁에 앉을 권리는 합당한 자들 뿐만 아니라, 믿음과 회개와 사랑으로 들어오는 합당하지 않은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특권임을 명심한다. 이 성례전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할 준비를 하기 위해, 믿는 자들은 죄와 부서짐을 고백하고, 하나님과 이웃과 화해하기 힘쓰며, 정결해지고 갱신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이다. 의심을 하거나 신뢰가 흔들리는 자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확신받기 위해 주의 식탁에 올 수 있다.

세례받은 어린이들 b. 주의 식탁에 초대와 응답의 의미에 대해 양육과 지도를 받고 있는 어린이 세례자들에게 대해서는, 참여의 의미에 대한 그들의 이해력이 정신적 성숙도에 따라 다양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주의 만찬에 초대한다. (W-4.2002).

W-2.4012 책 임 a. 당회는 개체교회의 삶에서 주의 만찬 집행 권한을 부여할 책임을 가지며, 성례전 축하가 정기적으로 자주 있도록 하고, 어떤 경우에도 1년에 4번 이하가 되지 않게 한다. 교회의 다른 공의회도 회의를 가질 때 주의 만찬집례의 시간을 지정할 수 있다. 공의회는 관할권의 신자들이나, 선교사역을 하거나 허가된 목회사역이 있는 기관의 신자들이 회집하여 공예배를 드릴 때, 이와 관련하여 성례전을 거행하도록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공의회는 주의 만찬 집례를 승인하는 권한을 공의회 관할기관 내의 적절한 감독부서에 위임할 수 있다.(비교 W-3.6205).

기관목사들

b. 병원, 교도소, 학교, 또는 다른 기관에서 봉사하는 원목이나 다른 교역장로(목사)들, 그리고 군인들과 군인 가족들에게 목회하는 군종목사들은 개체교회의 목회사역에 대해 관할권을 가진 공의회가 허가가 있을 때 성찬식을 거행할 수 있다. 성찬례 집행 권한의 조건은 교역장로(목사)의 청빙서나 승인서에 명시되어야 한다.

교역장로(목사)
혹은 평신도
목회자가 집행

c. 직제상의 이유로 성찬례는 교역장로(목사)가 집행하거나, 당회가 초대하고 노회에 의해 권한을 부여받은 평신도 목회자가 집행해야 한다. 선교적 관여가 특례를 만들 수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노회가 결정하고 권한을 부여한다(G-3.0301; G-2.1001)

W-2.5000

5. 자신을 드림

W-2.5001

그리스도께 응답

크리스천의 삶은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바치는 삶이다. 사람들을 예배에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바치고 그에게 묶임으로써 자유함을 얻고, 자신의 삶과 재능과 능력과 물질을 바침으로써 응답하게 된다.

W-2.5002

영적 은사를 바침

예배는 그리스도의 제자직으로 부르심에 대해 신앙 고백으로, 교회와 일치함으로, 하나님 백성들의 선교를 떠맡음으로써 응답하는 기회를 항상 제공해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그리고 세상 안에서 그의 선교를 위해 자신의 삶을 바치는 결단을 새롭게 하는 제자직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성령께서는 교인 각자에게 선교를 위해 그리스도의 몸을 강건하게 하는 특별한 은사를 주시므로, 예배는 이러한 은사를 감사하고 교회와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W-2.5003

물질 은사와 재물을 바침

a. 예배시에 물질을 바치는 일은 하나님께 응답하는 자기 헌신의 공동 행위이다. 그것은 생명을 주시고 모든 물질을 주시는 분, 죄와 악으로부터 구속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현이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제자에 의해 다음을 확인하는 것이다.

- (1) 모든 피조물에 대해 청지기가 된다는 헌신;
- (2) 말씀을 함께 나누고, 모든 사람들을 배려하는 책임;
- (3)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보편교회에 관련된 모든 믿는 자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열망;

W-2.5001: 제2스위고백 5.110-5.123; 웨스트민스터고백 6.088

W-2.5002: 롬 12:4-8; 고전 12; 엡 4:7-16

W-2.5003: 창 1:28-, 2:15; 레 23:22; 민 18:21-29; 신 28:7-12; 대하 24:8-14; 말 3:8-10; 마 28:19; 행 1:8, 2:44-45; 4:34-37; 고전 16:1, 2; 고후 8:1-15, 9:5-15; 딤후 5:17, 18; 약 2:4; 요삼 5-8; 제2스위스고백 5.211

(4)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갖는 공통의 유대.

규율적이며 후한 지원

b.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 수입의 십분의 일을 하나님 집의 사역과 그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위해 바치도록 명령받았다. 신약시대의 사도들은 교회의 사역이 규율있는 지원을 필요로 함을 인정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초대교회 사람들은 가난한 자의 필요 충족을 위해 넉넉하게 기부하도록 권면받았다. 하나님은 지금도 믿는 자들을 부르시고, 교회의 목회사역을 지원하기 위해 후하게, 규율있게 주라고 하신다(W-5.5004).

예배시 드림

c. 공예배 중 적절한 시간에 감사의 한 행위로서 교인들은 십일조와 봉헌금을 모아서 바친다.

W-2.6000

6. 상호간,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

W-2.6001

공동체의 관심사

예배는 하나님 백성들이 행하는 공동 삶의 활동이다. 거기서 교인들이 서로를 돌보고, 자신들의 삶과 목회사역을 돌보는 것은 죄의 세상 가운데서 공동체를 만들고 지속시키는 하나님의 권능의 실체를 함께 표현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일상 생활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관여하시는 것처럼, 예배공동체의 일원들도 서로에 대해 그리고 세상에서 봉사하는 목회사역에 대해 적절한 관심을 표시한다.

인사

a. 그들은

- (1) 서로 인사하고, 예배 인도자의 인사를 받으며;
- (2) 방문자들을 환영하고 그들이 와있음을 주목하며, 크리스천 환대를 베푼다;

화해

b. 그들은

- (1) 마음에 상처가 있거나 오해가 생겼거나 교인간에 깨어진 관계에 대해 용서를 구하고 제공하는 기회를 포착하며;
- (2) 화해와 그리스도의 평화의 표시와 말을 교환함으로써 하나님의 화해 행위에 응답한다;

기도 준비

c. 그들은

- (1) 개체교회와 전체 교회와 세상의 궁핍한 자들을 대신하여 기도를 요청하고 우려를 표명함으로써 중재기도를 준비하고;
- (2)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면서 삶에 대해, 삶의 전환에 대해 감사드린다;

W-2.6000: 제2스위스고백 5.135; 웨스트민스터고백 6.146-6.147; 1967년도고백 9.35-9.38

해 석

d. 그들은

- (1) 일상생활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 (2) 교회의 선교와 사역을 해석하고;
- (3) 신앙과 봉사를 증거한다;

선 교

e. 그들은

- (1) 언약을 하고 새롭게 하며;
- (2) 연민과 정의, 화평 조성, 화해와 증거를 위한 특정 단체/개인 사역에 헌신하고 파송받는다.

W-3.0000

제3장 크리스천 예배의 순서

W-3.1000

1. 순서의 원칙과 자료

W-3.1001

성경과 역사

크리스천 예배의 순서를 정하는 책임자들은 성경 안에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성령의 권위에 충실해야 한다. 성경 이외에 예배 순서에 권위를 갖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그러나 교회의 예배는 역사와 문화와 그 시대의 필요에 의해 이해되고 형태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미국장로교의 예배는 수세기를 통해, 특히 개혁전통을 통해 일어난 교회의 역사적 경험을 지표로 삼아야 한다(W-1.4001).

W-3.1002

형식과 자유

a. 교회는 언제나 예배의 형식과 자유 사이에서 긴장을 경험해왔다. 교회의 역사에서 어떤 이들은 하나님 말씀에 일치된 예배순서의 제정형식을 제공했다. 다른 이들은 말씀에 충실하기 위해 힘쓰는 가운데, 예배공동체 대한 고정된 형식의 강요를 저항했다. 미국장로교는 예배의 모든 형식이 잠정적이고 개혁에 종속되어야 한다고 인정한다. 교회는 예배순서를 정할 때 예배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창의성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질서와 자발성을 반영하되 하나님 말씀과 일치되도록 힘써야 한다(W-1.4001).

당회의 지도

b. 예배에서 성령의 발현하심이 전체교회를 교화시킨다. 예배의 행위들이 단지 개인적인 표현에 그칠 때나 그 자체에 관심을 집중시킬 때, 또는 예배 회중에 대해 민감성이 없을 때, 그것들은 적절한 것이 아니며 당회의 자문과 지도를 요구한다.

W-3.1003

참여와 인도

예배순서는 목회하는 교회의 문화적 다양성을 풍요하게 반영해야 하고, 교회의 지역적 상황과 필요를 또한 반영해야 한다. 예배순서를 정하는 권한은 예배순서를 정하는 권한은 예배 담당자에게(G-2.0504; G-3.0201; W-1.4000) 그리고 재능과 교육과 권한(W-1.4003)을 가진 예배 인도자에게 지정되어 있지만, 모든 사람들의 참여를 마련하고 격려하도록 예배 순서가 마련되어야 한다.

W-3.1004

예배시의
어린이들

어린이들은 특별한 은사를 가져오며, 그들이 교회의 예배에 정규적으로 포함되고 참여함으로써 신앙 안에서 자란다. 어린이들의 예배참여를 계획하고 인도하는 책임자들은 어린이들의 이해력과 응답력의 수준을 고려해야 하고, 지나친 형식성이나 지나치게 수준을 낮추는 태도를 피해야 한다. 당회는 교회의 정기 프로그램이 주일날 전체 회중을 위한 말씀과 성례전의 전체 예배에 어린이들의 완전 참여를 막지 않도록 해야 한다(W-3.3201; W-3.5202; W-6.2001; W-6.2006)

W-3.1000: 스콧고백 3.20; 웨스트민스터고백 6.006

W-3.1002: 전 12-14

W-3.2000**2. 날들과 절기**W-3.2001
날들

하나님께서서는 7일 중 하루를 거룩하게 지키도록 지정하시고 하나님 백성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날로 선별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또는 집에서 매일 예배하도록 하셨다(W-1.3011-3012; W-5.5001).

W-3.2002
교회력

하나님께서서는 삶에 질서를 주고 교회의 예배에 영향을 주는 계절의 리듬을 주셨다(참조 W-1.3013).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예수의 삶과 하나님 백성들의 삶에서 중대한 행사로서 예배순서의 중심형태를 제공한다. 그래서 교회는 다음의 날들과 절기들을 지켜왔다.

- a. 강림절, 오시는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한 희망을 회상하고 주의 다시 오심을 대망하는 절기;
- b. 크리스마스, 그리스도의 탄생 축하;
- c. 현현일, 만백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기념하는 날;
- d. 사순절, 재의 수요일에 시작하여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축하를 대망하면서 영적 훈련과 준비를 하는 절기;
- e. 성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고난과 죽음을 기억하고 선포하는 때;
- f. 부활절, 주의 부활하신 날이며 그의 승천까지의 사역을 기념하는 기쁨의 절기, 그리고 계속하여;
- g. 오순절, 교회에 내리신 성령의 은사를 축하함.

교회는 또한 이 절기 이외에도 주의 수세일, 주의 변모 축일, 삼위일체 주일, 모든 성현들의 날, 왕 되신 그리스도의 날들을 지킨다.

W-3.2003
그 밖의 절기들

공동체 안에서 인간의 삶은 크리스천의 예배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리듬을 반영한다. 시민활동, 농업, 학교, 사업의 연례주기, 가족의 특별 기념일과 축하일; 또 문화적 축하행사와 기념일과 행사의 다양한 양식 등이 그러한 예이다. 교회에서 선교를 수행하는 가운데서도 활동, 프로그램, 기념일의 주기가 만들어진다. 크리스천 예배에서 그런 행사들을 기념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지만, 주의할 점은 그것들이 주의 날에 선포되는 복음을 모호하게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W-3.3000**3. 주일 예배****W-3.3100****a. 적절한 행동들**

W-3.3101

주일 예배 안에:

포함되는 것들

성 경

- (1) 성경이 봉독되고 선포되어야 한다(W-2.2001). 성경 교훈은 신구약에서 봉독되어야 한다(W-2.2002). 성경은 설교나 강해 형식으로 해석되어야 한다(W-2.2007-2008).

- 기 도 (2) 기도가 바쳐져야 한다(W-2.1001). 기도는 회중을 대표해서 드릴 수 있다. 이때 회중은 긍정의 ‘아멘’으로 단체 응답에 참여한다. 기도의 형식은 회중기도와 응답기도를 통해, 중보기도와 자발적인 기도를 통해 예배자들의 참여를 격려할 수 있다. 명상과 기도를 위한 묵도의 시간이 제공되어도 좋다 (W-2.1000).
- 음 악 (3) 음악은 성경말씀의 봉독과 해석의 표현으로, 복음에 대한 응답의 표현으로, 그리고 시편과 찬미의 노래, 찬송가와 송가, 신령한 음악이나 영가를 통해 기도하는 표현이 될 수 있다 (W-2.1003-1004; W-2.2008).
- 세 례 (4) 세례의 성례전은 교인들이 교회와 합일하기 위해 자신과 자녀들을 봉헌하는 가운데 집행되어야 한다. (W-2.3000).
- 주 의 만 찬 (5) 주의 만찬 성례전은 당회가 결정한 대로 규칙적으로 자주 거행되어야 한다(W-2.4000).
- 십입조와 헌금 (6) 교인들의 십일조와 헌금을 거두어서 봉헌해야 한다 (W-2.5000).
- 특별 시간 (7) 모임과 인사, 예배의 부름, 공동관심사 알리기, 축도와 파송의 시간이 개체교회의 삶에 적절하게 예배순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W-2.6000)
- 특별 예배 (8) 새교인 입교예식, 안수예식, 취임예식, 파송예식, 언약과 언약갱신 예식, 삶의 전환의 인정과 축하의 예식들이 회중의 삶에서 일어나는 대로 거행되어야 한다 (W-2.5000-6000; W-4.0000).

W-3.3200

b. 행동의 순서

W-3.3201
예배순서의 설정

담임목사는 당회의 동의를 얻어 주일예배 순서를 설정하며, 이 순서를 통해 최연소자로부터 최고령자에 이르는 모든 교인들이 하나님께 합당한 찬양을 바치는 일에 참여하는 기회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응답하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W-1.4004-4007; W-3.1004).

W-3.3202
제안된 순서

여기서 제공되는 순서는 논리적인 진행이고, 구약과 신약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보편교회의 전통과 우리 개혁파 교회의 유산을 반영한다. 달리 정한 예배 순서도 개체교회의 필요를 충족하고 성경에 충실하며 역사적 원리에 참될 수 있다. 아래의 순서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5개의 주요 행동들이 제시된다:

- (1) 말씀을 중심으로 모임;
- (2) 말씀의 선포;
- (3) 말씀에 응답;
- (4) 말씀의 인침;
- (5) 세상에서 말씀을 짚어지고 말씀을 따라감.

W-3.3300

W-3.3301

모임

(1) 말씀 중심으로 모임;

- (a) 사람들이 모여 예배를 시작한다. 다음 행동들 중 한가지 이상이 적절하다; 교인들이 서로 인사 나눔; 교인들이 묵도나 명상 가운데 준비함; 공지사항 알림; 음악을 들려줌.
- (b) 하나님께 예배의 시작 선언. 성경말씀을 구두로나 노래로서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무슨 일을 이룩하셨는지 선포한다.
- (c) 기도 또는 경배와 찬양의 찬송이 바쳐진다.
- (d) 개인적으로 공동 삶 속에서 지은 죄의 실재를 고백하는 기도가 따른다. 죄사함의 선언으로 복음이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가 선언된다. 하나님의 구속하심과 인간 삶의 주관하심이 기억된다.
- (e) 하나님께 영광돌리고, 이 때 그리스도의 화해와 평화의 표시를 나눌 수 있다.

W-3.3400

W-3.3401

선포

(2) 말씀의 선포

- (a)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선포하고 들을 준비를 하면서 성령의 조명을 구하는 기도가 적절히 바쳐진다.
- (b) 교역장로(목사)나 교인 한 명이 그 날 적절한 성경말씀을 읽거나, 회중들이 응답식으로나 답창식으로, 또는 다같이 함께 봉독한다 (W-2.2006).
- (c) 성경 봉독에는 시편이나 성가 또는 성경의 교훈이나 주제를 선포하거나 해석하는 다른 음악적 형식이나 예술적 표현이 포함될 수 있다.
- (d) 말씀은 교역장로(목사)의 설교로 또는 당회나 목사의 허가를 받은 다른 형식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W-1.4004-4006; W-2.2007-2008). 이 선포는 기도, 환호, 또는 찬양하는 말씀으로 끝 맺는다. 교인들을 제자직으로 부름도 적절하다 (W-2.2007; W-2.2009).

W-3.3500

W-3.3501

응답: 확인

(3) 말씀에 응답

말씀의 선포에 대한 응답은 신앙을 확인하고 결단하는 것으로 표현된다. 교인들이 찬송가를 부름으로써, 또는 다른 적절한 음악 응답을 통해, 아니면 교회 신경을 고백하거나 노래함으로써 공동의 확인을 표시할 수 있다. 성가대는 찬양으로 또는 다른 음악형식으로 회중의 확인을 인도할 수 있다. 개인 응답의 기회도 이 때 제공될 수 있다.

W-3.3502

결단의 확인과
재확인

말씀에 응답은 결단과 인식의 행위도 포함한다. 세례의 성례전이 거행될 수 있다(W-3.3601-3607). 세례 받은 신자들은 첫 공적 신앙고백이나 신앙의 재확인을 통해, 또는 교회의 교적 이명을 통해 개체교회의 새 교인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교인 입교와 파송에 대해 W-4.2000; W-4.3000; 비교 G-1.03; G-3.0201c 참조). 개인들이나 회중들로 하여금 세례 때 행한 결단과 재확인을 행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도 적절하다 (W-4.2005).

W-3.3503

결단의 다른 행위

말씀의 응답으로서 적절하게 포함될 수 있는 기타 행위들:

- (a) 크리스천 결혼 (W-4.9000),
- (b) 직제사역에의 안수 및 취임 예식 (W-4.4000),
- (c) 기독교 교육사, 교회학교 교사, 조직 임원 또는 그룹 상담자 역할을 하도록 교회 내부에서 파송하거나 교회로 파송하는 예식 (W-4.3000; 비교 W-3.3701).

W-3.3504

인정의 행위

말씀에 응답으로써 인생 자체에 대해, 인생의 전환에 대해 인정과 감사를 드리는 것이 적절하다,

- (a) 개인들과 공동체의 삶 속에서 의미깊은 사건들을 기념하는 일,
- (b) 재회를 축하하고 이별을 고하는 일,
- (c) 고인이 된 이들의 생애를 잊지않고 추모하는 일(비교 (W-4.5000; W-4.7000; W-4.8000).

W-3.3505

선교적 관심

신앙간증, 교회 선교 및 프로그램 제공과 설명이 말씀의 응답으로써 예배에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순서들은 이 응답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들어있어야 하고, 그리스도와 교회 사역의 지원에서 자기 자신과 재능을 바치기 위해, 사람들의 중보와 탄원의 기도를 위해 준비되어야 한다.

W-3.3506

기도

사람들이 말씀에 응답하면서 다음을 위해 중재기도들이 올려진다

- (a) 보편교회를 위해, 목회자와 목회사역을 위해, 세상이 믿음을 가지도록 ;
- (b) 세계를 위해, 슬픔이나 특별한 필요에 처한 자들을 위해, 모든 권력자들을 위해, 정의와 평화가 승리하도록;
- (c) 국가와 주 정부, 지역공동체를 위해, 통치자들을 위해, 그들이 무엇이 바른지 알고 옳은 것을 행하는 정신적인 강건함을 가지도록.

간구의 기도는 다음을 위해 올려진다

- (d) 개체교회를 위해, 특별한 문제점이나 필요에 직면하여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도록;
- (e) 신앙의 갈등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 그들이 확신을 얻도록;
- (f) 생의 전환기를 맞은 사람들을 위해, 그들이 인도와 도움을 받도록;
- (g) 중대한 결정에 직면한 사람들을 위해, 그들이 지혜를 얻도록;

- (h) 병든 자, 슬픔을 겪는 자, 외로운 자, 근심있는 자들을 위해, 그들이 위로와 치유를 받도록;
- (i) 모든 교인들을 위해, 은총으로 하나님 목적에 합치하도록 (W-2.1000)

이때 고백 기도가 포함될 수 있다 (W-3.3301). 예배순서에 주의 만찬이 포함되어있지 않을 때는 감사기도를 올리고, 주의 기도로 마친다(W-3.3613).

W-3.3507
헌 금

하나님 백성들로부터 십일조와 헌금은 거두어서 구두 기도나 노래의 기도와 함께 받는다(W-2.5003). 화해와 평화의 표시가 아직 교환되지 않았다면 이때, 하나님의 죄사함의 확신에 대한 말씀의 응답으로서 교환될 수 있다.(W-3.3301). 주의 만찬이 축하될 예정일 때는, 빵과 포도주 선물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감사로서 성찬상에 가져올 수 있다 (W-2.4003; W-3.3609).

W-3.3600

(4) 말씀의 인침: 성례전

W-3.3601
인침으로서
성례전

세례와 주의 만찬의 성례전들은 회중이 예배하는 가운데 신앙공동체 안의 믿음의 약속에 대해 하나님의 인침하시는 행위이며, 여기에는 성례전에서 선포되고 행동화된 말씀에 대한 신앙인의 응답들이 포함된다.

W-3.3602
세례

하나님 은총과 우리 응답의 표시이고 인침인 세례 예식 (W-2.3000)은 크리스천 결단의 토대가 되는 인정 행위이다. 세례식은 말씀의 봉독과 선포에 이어 적절히 거행된다. 이 예식에는 세례의 성서적 의미에 대해, 자신이 세례를 받기 원하거나 자녀 세례를 원하는 사람들이 감당할 책임에 대해, 그리고 교회가 떠맡을 양육에 대한 선언이 포함되어야 한다.

W-3.3603
결단과 서약

자신과 자녀들을 위해 세례의 성례전을 원하는 사람들은 다음의 서약을 해야 한다:

- (a) 주와 구세주로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고백,
- (b) 악을 끊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탁함을 확인,
- (c) 교회의 예배와 선교에 적극적으로 책임감 있게 참여할 의도를 선언,
- (d) 자녀의 기독교 신앙의 양육을 제공할 의도를 선언한다.

교회의 회중은 다음과 같이 한다

- (e)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 (f) 세례 받은 자들을 돕기로 공개 진술;
- (g) 세례받은자의 신앙양육을 위해 기꺼이 책임진다는 의사를 표명한다.

사역장로(장로) 한 분이 이 신앙고백과 확인에서 교인들을 인도한다(W-2.2009; W-2.3011-3014).

- W-3.3604 교역장로(목사)는 세례예식의 기도를 올린다. 이 기도는
 기 도 (a) 서약에 충실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한다,
 (b) 하나님의 화해하시는 행위에 찬양을 드린다,
 (c) 성령이 세례식에 임재하셔서 권능을 부어 주실 것과, 구속과
 새로 태어남의 세례수로 만들어 주실 것과 충실한 교회가 되게
 해주실 것을 간구한다.
- W-3.3605 세례에 사용되는 물은 그 지역에 있는 보통 물이어야 하고, 세례자에게
 물 붓거나 뿌리거나 또는 침수하여 적용시킨다. 어떤 방식을 사용하든지, 세례수는
 볼 수 있게, 넉넉히 사용해야 한다.
- W-3.3606 교역장로(목사)는 세례자의 이름을 부르며,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의 말씀 세례를 주어야 한다. 세례의 양식은 다음과 같다: “_____에게,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 W-3.3607 물로 세례를 주는 중심 행위가 가려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기타 행위들 세례의 역사에 깊이 뿌리내린 다른 행위들, 즉 강복의 안수, 성령의 기름부음
 기도, 기름 부음, 새로이 세례받은 이들을 회중 앞에 소개하는 일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그러한 행위가 도입될 때 잘못된 해석이나 오해를 받지 않도록
 행위들에 대해 주의깊은 설명이 있어야 한다.
- W-3.3608 새로 세례받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새 교인이 되었음을
 환 영 선포해야 한다. 전체 교인의 환영이 있어야 한다. 예식이 그와 같이 진행될
 때는 언제나, 주의 만찬이 세례식 후 예배의 적절한 시간에 뒤따라야 한다.
- W-3.3609 회중은 주의 만찬 성례전을 축하할 준비를 스스로 해야 한다 (W-2.4006; W-
 주의 만찬: 준비 2.4011; W-5.2001). 주의 만찬 축하식이 주일날에 매번 집행되지 않는다면,
 성찬식 거행에 대해 적어도 일주일 전에 공지해야 한다. 주의 만찬식이 거행될
 때는, 예배 시작 전에 또는 십일조와 헌금을 거두는 도중에 성찬상이
 준비되어야 하고 빵과 포도주가 놓여져야 한다.
- W-3.3610 공동체 문화에 알맞은 빵을 차려놓고 빵 떼는 일은 집례자에 의해
 떡 수행되어야 한다. 빵 한 덩어리를 사용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임을 표시한다. 회중을 위한 빵은 같은 빵덩어리에서 떼거나 분배하기
 적당한 방식으로 준비될 수 있다.
- W-3.3611 집례자가 잔을 내밀 때 사용할 수 있게 잔과 주전자가 준비될 수 있다.
 잔 공동의 잔을 사용하는 것은 성례전의 공동적 성격을 표시하며, 하나의 잔에
 대한 신약의 일치된 언급을 반영한다. 잔에 붓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위해 피흘리심을 뜻한다. 특정한 신앙공동체에서 사용되는 분배 방식은 하나의
 잔으로 준비되거나, 사람들 수에 알맞은 여러 잔으로 준비될 수 있다. 어떤

W-3.3610: 전 10:16-17

W-3.3611: 막 14:23-; 병행성구 고전 10: 16, 21; 11:25-28; 롬 14:1-23 고전 8:1-13, 10:14-33, 1:17-32

종류의 포도열매를 사용할 것인지는 당회가 결정한다. 이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당회는 성서적 전례와 교회의 역사, 에큐메니컬 사용과 지역적 관습, 그리고 회중들의 건강 관심사와 양심의 문제를 알아두어야 한다. 주의 만찬에서 포도주가 사용될 때는 언제나 발효되지 않은 포도즙을 확실하게 표시해두고 이를 선호하는 사람들에게 선택할 수 있게 한다.

W-3.3612

초 대

교역장로(목사)나 집례자는 성경의 적절한 말씀을 사용하여 교인들을 주의 만찬에 초대해야 한다 (W-2.4011). 제정의 말씀이(고전 11:23-26, 또는 공관복음서에 병행된 기록) 빵을 떼 때에 말하지 않거나, 감사 기도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그 언어는 초대의 일부로서 언급되어야 한다.

W-3.3613

기 도

집례자는 기도로써 교인들을 인도한다.

- (a)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섭리에 대해, 언약의 역사에 대해, 절기의 축복에 대해 찬양의 환호로써 감사드린다;
- (b)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는 행동을 기억한다: 그의 탄생과 삶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 재림의 약속에 대해, 성만찬 제정(이미 언급되지 않았을 경우)을 다함께 큰 목소리로서 믿음을 확인한다;
- (c) 성령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현존으로 이끌어 주십사고 청한다. 그리하여 그들이
 - (1)양식을 공급받으며,
 - (2)하나님의 모든 백성들과 부활하신 그리스도에게 성인들의 통공에 동참할 수 있도록,,
 - (3)충실한 제자로서 섬기기 위해 보내지도록 성삼위 하나님을 높이 찬양할 수 있도록; 그리고
- (d) 주의 기도를 드린다.

W-3.3614

빵을 떼

집례자는 빵을 들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떼는다. 만일 제정의 말씀이 초대의 일부로써 또는 성찬 기도에서 언급되지 않았다면, 이때에 고린도 전서11:23, 24절이 사용되어야 한다.

W-3.3615

잔을 제공함

집례자는 잔을 채운 다음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잔을 제공한다. 만일 제정의 말씀이 초대의 일부로서나 성찬기도에서 언급되지 않았다면 이 때 고린도 전서 11:25, 26절이 사용되어야 한다.

W-3.3616

빵과 잔의 분배

빵과 포도주는 특정행사에 가장 알맞은 방법으로 분배한다.

- 모임 a. 교인들이 성찬상에 둘러서서 빵과 잔을 받을 수도 있고; 또는 성찬을 받기 위하여 봉사하는 이에게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봉사하는 이들이 교인들이 앉아 있는 곳으로 가서 성찬을 분배할 수 있다.
- 빵 b. 빵은 성찬상에 있는 빵에서 떼어 교인들 손에 놓아주거나; 교인들이 쪼개놓은 빵 덩어리나 분배를 위해 준비된 다른 빵에서 빵조각을 떼거나; 아니면 분배를 위해 준비된 빵조각을 받을 수 있다.
- 잔 c. 참여하기 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공동의 잔이 제공될 수도 있고; 대여섯 개의 잔으로 함께 사용하거나; 분배용으로 날개의 잔을 준비할 수도 있다. 성찬 참여자들이 공동의 잔으로 마시는 대신에 빵을 포도주에 적실 수도 있다.
- 분배 d. 빵과 잔은 그 교회의 직제사역자들이 나누어 줄 수 있고, 아니면 당회나 권한있는 공의회가 초청한 다른 교회 회원들이 분배할 수 있다.
- e. 예배공동체로부터 격리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성찬식을 제공하기 위해 교회의 직제사역자 2명 이상이 다음 조건 하에서 빵과 잔을 베풀 수 있다:
 - (1) 모인 회중에게 성례전을 베풀 후, 이의 직접적인 연장 예식으로서 같은 날, 또는 실제적으로 가능한 한 빠른 시간에 교회의 성례전 초대에 응하는 사람들에게 빵과 잔을 제공한다;
 - (2) 성경을 읽고 기도를 바침으로써, 말씀과 성례전의 일치가 지켜지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3) 성찬식에서 섬기는 자들은 이 목회의 신학적 목회적 기반이나 전례 자원을 받는 당회나 권한있는 공의회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다 (W-6.3011).

- W-3.3617 빵과 잔을 나누는 동안
- 성찬을 받을 때
- (a) 교인들은 시편이나 찬송가, 영가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노래를 부를 수 있다;
 - (b) 성가대가 성가나 그 밖의 적절한 음악의 헌정을 노래할 수 있다;
 - (c) 예배 행사에 적절한 기악을 연주할 수 있다;
 - (d) 적절한 성경 구절들을 낭독할 수 있다; 아니면
 - (e) 교인들은 침묵으로 기도할 수 있다.

W-3.3618 교인이 모두 성찬을 받은 후, 남은 빵과 포도주가 성찬대에 놓여 있을 때, 집례자는 회중들을 기도로 인도하고, 성례전에서 그리스도의 선물을 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성찬에서 사람들이 서약한 것을 이행하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청하며, 약속된 천국이 오기를 간구드린다. 회중은 시편이나 아가, 찬송가나 영가 또는 영적인 노래를 부른다.

W-3.3619 성례전을 마치면 술과 포도주는 성찬대에서 치우거나, 당회가 승인한 남은 빵과 포도주 방식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한다. 이의 방식은 성례전에 대한 개혁파 교회의 이해 방식과 일치되게, 또한 선한 청지기정신의 원칙에 일치되게 해야 한다.

W-3.3700 (5) 말씀을 품고 순종하면서 세상속으로 나아감

W-3.3701 (a) 제자직의 결단 행위, 세례받기로 의도의 선언, 그리고 세례식에서 서약한 것을 재확인하는 행위들은 성례전에서 받은 말씀에 적절한 응답이다 (W-2.4005; W-2.4007). 예식이 끝날 무렵에 결단과 인정의 다른 순서를 거행할 수도 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복음전도, 연민, 정의, 화해와 평화조성을 위한 특정 단체/개인 행위에 헌신하고 파송받을 수 있다 (W-4.3000).

이별의 시간 (b) 특정 개교회의 성도교제에서 떠나는 사람들
(1')이 같은 선교적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2')교육, 국가 임무, 직업 변화, 가족상황, 건강상의 이유로 타지로 떠나갈 때 고별회로서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교인 중에 세상을 떠난 분들을 이 때 기억해주는 것도 적절하다.

W-3.3702 예배는 공식 폐회로 끝난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상에 나아가는 성삼위 하나님 사람들에게 권면의 말씀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 성삼위 축도로써, 또는 고린도후서 13:14에 있는 사도의 축도와 같은 성경의 다른 말씀을 사용하여 축복의 말을 할 수도 있다. 사람들이 헤어지면서 화해와 평화의 표시를 주고 받을 수도 있다. 사람들이 헤어지면서 화해와 평화의 표시를 주고 받을 수도 있다.

W-3.4000 4. 매일 기도회

W-3.4001 a. 매일 기도회는 주중에 정기적으로 지키는 공예배 예식이다(W-1.3012; W-3.2001). 이 예배는 교회와 교회가 목회하는 공동체의 필요에 맞추어, 아침이나 정오나 하루 일이 끝났을 때, 또는 저녁이나 밤에 드릴 수 있다.

말씀과 기도 b. 이 예배에는 말씀을 읽고 들으며 기도하는 일이 포함되어야 하다.

W-3.4002 성경 본문을 읽고 명상과 묵상의 시간을 갖는다. 성경의 강해가 제공될 수도 있다. 말씀은 음악이나 연극이나 춤으로 표현될 수 있다. 매일기도회에서는 특히 시편과 송영성구가 적절하다. 이를 사용함으로써 예배자들이 말씀을 나타내고 응답하기 때문이다(W-2.2000).

W-3.4003 기도는 말로, 노래로, 행동으로 그리고 침묵 가운데 드릴 수 있다. 매일 기도는 공동체 안에서 묵상과 명상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제공한다. 모든 차원의 기도회는 공동체의 개인과 공적 관심사에 특별한 관심을 보이면서 제공되어야 한다 (W-2.1000).

W-3.4004 매일기도회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정해져야 한다.
순서 (1) 찬양,

- (2) 성경 말씀을 읽고 듣기,
- (3) 명상과 기도와 노래로서 말씀에 응답,
- (4) 그리스도 이름으로 앞으로 나아감.

W-3.4005 당회의 정식허가를 받은 예배는 반드시 담임목사와 협의해서 계획되어야
인도자 하고, 교회의 적절히 준비된 교역장로(목사), 사역장로(장로), 집사들 혹은
다른 교인들이 인도할 수도 있다.

W-3.5000 5. 그 밖에 정기적으로 드리는 예배

W-3.5100 a. 일요일 예배

W-3.5101 일요일의 대예배는 주의 날 예식으로서 대부분의 교인들이 참석할 수 있는
일요일의 다른 시간으로 정한다. 그 밖의 예배 예식들도 일요일 아침, 오후, 저녁시간에 정기
예식들 일정에 넣을 수 있다. 이러한 예식들의 시간과 성격은 당회가 회중과 공동체의
필요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이러한 예식들을 계획할 때는 주의 날 예식의
순수성이 보존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W-3.5102 이 예배는 말씀을 읽고 듣기, 기도, 자신을 바치는 기회, 세계와 상호간에
구성요소들 유대감을 갖는 기회들이 있어야 한다(W-2.1000-2000; W-2.5000-6000). 기도와
회중의 노래, 성경의 교훈, 예술을 통한 말씀의 해석에 특별한 강조를 할 수
있다. 그러한 예배는 말씀의 설교를 포함하거나 또는 목사나 당회가 인가한
다른 선포의 형식을 포함할 수 있다(W-1.4000; W-2.2000; W-3.3400). 그러한
경우에 성례전이 축하될 수도 있다.

W-3.5103 각 예배의 순서는 특별한 행사와 관련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예배모범의
순서 예배원칙을 반영해야 한다.

W-3.5200 b. 교회학교

W-3.5201 교회학교의 여러 학급들이 다 함께 모여 예배드릴 때에 기도와 찬송,
교회학교 성경말씀을 읽고 듣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재능을 제공함으로써 자신을
바치고 세계와 유대감을 갖는 적절한 표현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

W-3.5202 교회학교에서 각 반 별로 정기 예배를 보는 기회를 정기적으로 가져야
구성요소와 한다. 그러한 예배는 큰 그룹에서보다는 덜 형식적이고 더 자발적일 수 있다.
순서 그렇더라도 거기에는 기도가 있어야 하고 말씀을 생각함으로 나오는 찬송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 자기 헌신과 결단의 행위와 표시를 포함시킬 수 있으며,
그것이 다음으로 발전될 수 있다.

- (1) 세례 요청,

(2) 주의 만찬에 참여

(3) 세례 때 행한 맹세 확인.

교회학교의 예배가 주일 대예배 참여를 대신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W-3.1004; W-3.3201; W-6.2001).

W-3.5300

c. 기도회

W-3.5301
기도 모임

교회생활에서 교인들은 여러가지 배경으로 기도모임을 가질 수 있다. 당회는 그런 기도 모임을 인정할 책임이 있다. 모든 사람에게 개방된 정기 기도 모임들은 주중의 저녁기도회나 아침 기도회나 낮 기도회 그리고 조찬겸 오찬 기도회 등, 여러 형태를 취할 수 있다. 소그룹들은 기도회 서클, 중재적 친교, 또는 언약그룹으로서 정기 모임을 가질 수도 있다. 지역사회와 국가와 보편교회의 삶에서 특별한 날들이나 행사가 있을 때 교인들이 기도회 모임을 가질 수 있다.

W-3.5302
구성요소들

이런 기도회에서 말씀을 읽고 들으며, 선포하고 가르치고 토의할 수 있으며, 또는 음악이나 다른 예술형식으로 말씀을 표현할 수도 있다. 기도를 바친다, 기도는 말로 하거나 노래로 하거나 행동으로 할 수 있고 또는 침묵으로 나눌 수도 있다. 공식 인정과 헌금의 기회, 예수 그리스도에게 삶을 결단하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 상호 관심의 표시는 말로 할 수도 있고 환영과 화해와 상호사역의 행위로서 나타낼 수도 있다. 세계에 대한 관심은 기도로써 연민과 정의와 평화 조성 및 증거로써 행동화될 수 있다.

W-3.5400

d. 치유 예식

W-3.5401
치유하는 예식

치유는 예수님 목회사역의 핵심이었다. 따라서 교회는 그 일을 교인 건강에 관심을 갖는 한 차원으로 알고 계속하도록 부름받았다. 치유 예식을 통하여 교회는 치유하는 공동체로서 예배에서 그 사역을 행동화할 수 있다.

W-3.5402
정식 허가

치유예식은 당회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목사의 지도 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한 예식은 정기 예배로서나 가끔 드리는 예배로서, 아니면 주일 대예배의 일부로서 거행될 수 있다(W-3.3506). 이 예식은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되어야 한다. 이 것이 치유받기 원하는 사람들이나 특별한 관심있는 사람들에게만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 이 예식은 치유받기 원하는 사람들이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서 거행되어야 한다.

W-3.5403
기도의 형식

온전함을 회복하는 예식에서 필수적인 예배요소는 기도이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온전함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감사드리고 중보기도와 탄원기도를 바쳐야 한다. 말의 기도와 노래의 기도와 더불어 침묵기도의 시간이 적절하게 주어져야 한다. 행동화된 기도는 손의 얹음과 기름부음 형식이 적절하다(약 5:14). 기도의 행동화는 교역장로(목사)의 집례와 믿음 공동체 대표자들이 개입된다.

W-3.5404 이런 기도는 읽고 선포된 말씀에 대한 응답이다. 특별한 초점은 말씀과 성례전 그리스도를 통해 치유된다는 복음의 약속 선포에 두어야 한다. 이 약속의 인침은 주의 만찬에서 축하될 수 있으며, 기도와 손 없음이 따라야 한다.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행위에 새롭게 결단하는 기회와 더불어, 목회를 위해 자신의 삶과 재능을 바치는 행사가 마련되어야 한다.

W-3.5405 온전함 회복의 예식에 기름 바름과 손 없음이 개입될 때, 이러한 행동화된 기도가 잘못된 해석과 오해를 받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도입되어야 한다. 치유는 이러한 행동 기도를 하는 자의 거룩함이나 진지함이나 능력이라고 보거나 또는 치유하고자 하는 자의 믿음의 결과라고 이해될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통한 하나님의 은사로 이해되어야 한다.

W-3.5500 e. 복음전도의 예식

W-3.5501 주일 대예배 때 자주, 정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응답하도록 초대해야 제자직에 초대 한다(W-2.5002). 당회가 특정 전도 목적의 예배를 정식으로 허가하고 정기적으로 계절에 따라 그런 예배를 마련하는 것이 적절하다 (W-3.2003; W-7.2000).

W-3.5502 복음전도의 예식에서 중심적 예배요소는 말씀의 선포이다. 그리고 순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속 은사이시고 인간의 삶을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성령의 힘을 받은 제자직의 삶으로 초대를 특별하게 강조한다. 이 선포는 다음을 포함한다

- (1) 성경 읽기와 듣기,
- (2) 설교와 증거,
- (3) 말씀을 노래로 행동으로 고백으로.

이 중심 행위를 기도로 둘러싸야 한다,

- (4) 예배의 준비에서,
- (5) 예배에서 찬미, 감사, 고백, 중보, 간구의 기도로써;
- (6) 새 제자들의 결단을 지원하고 그들이 교회의 삶에 적극적으로 포함되도록, 예배에 끝난 후에도 기도한다.

W-3.5503 이 예배는 주님이시고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결단이나 새 결단 결단으로 진행되도록 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계약공동체 안의 삶으로 들어오도록 분명하게 초대해야 한다. 그러한 결단은 은사의 표시와 자기 헌신의 행위이며, 다음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 (1) 새로운 상호 유대를 통해,
- (2) 자신의 목회 재능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통해,
- (3)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구속행위에 새롭게 참여함으로써.

W-3.5500: 웨스트민스터고백 6.055-6.058, 6.187-6190

W-3.5504 새로운 결단에 응답
초대에 응답하는 자들은 자신들의 결단을 지지받고 제자직의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양육과 지도를 받아야 한다(G-1.0304). 첫 결단을 하는 사람들은 그때까지 세례받지 않았다가 그 예배에서 세례를 받은 사람들과 더불어 주일 예배시에 신앙고백을 공개적으로 해야 한다. 결단을 갱신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주일 대예배에서 공개적으로 재확인하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W-3.5600**f. 프로그램과 선교 해석**

W-3.5601 선교 강조 예배
교회의 프로그램과 선교에 대한 해석은 이 목적으로 갖는 예배예식에서 해야 하고, 연중 적절한 절기에 정기적으로 계획해야 한다(W-3.2003). 이 예배의 주요 초점은 프로그램과 선교의 해석에 있으며, 특별 예배(들)를 당회가 인가하는 이유는 바로 그 해석에 있다. 그러므로 그러한 예배에서는 세계와 유대 및 상호 유대를 특별하게 강조한다(W-2.6000).

W-3.5602 예배 내용
성경 말씀을 읽고 해석을 들어야 한다. 감사기도, 간구기도, 중재기도는 예배에서 해석된 사역을 위해 드러져야 한다. 헌금을 드리고 삶의 결단을 하는 기회가 적절히 포함된다. 물질적 예물을 바치고 삶의 결단을 하는 기회가 적절히 포함될 수 있다.

W-3.5700**g. 개체교회 내의 특별 그룹들**

W-3.5701 특별 그룹들
모든 개체교회에는 연령별로 성별로 또는 관심사에 따라 정기적으로 모이는 특별그룹들이 있다. 이런 그룹들의 모임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것이 통례이며, 이 예배모범의 원칙을 반영해야 한다. 성례전을 제외하고 제2장에 나오는 예배의 전 요소들이 이 환경에서도 적절하다. 이 요소들은 보통 전체 회중의 참여를 위해 당회가 인가한 예배의 행위들이다.

W-3.6000**6. 특별한 모임들****W-3.6100****a. 공의회**

W-3.6101 공의회 예배
공의회는 정기적으로 예배드리고 이 예배모범의 원칙에 의해 예배 순서를 정한다. 각 공의회가 예배를 책임 맡고 감독할 그룹을 만들어 두어야 한다. 또한 그 회의시 예배의 계획과 진행 지침을 채택할 수도 있다.

W-3.6102 말씀과 성례전

당회 위의 상위 공의회에서 정기적으로 말씀을 읽고 선포하고 들으며, 자주 또는 정기적으로 주의 만찬을 축하하는 규정을 만든다(G-3.0105).

W-3.6103 기도

공의회가 회집할 때마다 기도로서 개최하고 기도로서 폐회해야 하며 (G-3.0105), 안건의 심의 과정에서 기도할 적절한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 그 기도는 찬양과 감사, 고백, 중재, 그리고 공의회 회의 절차와 관련하여 간구를 표현해야 한다.

W-3.6200

b. 수양회, 캠프, 특별 모임

W-3.6201

특별집회 예배와 수양회에서 예배

특별집회 예배의 인가 책임은 관할 공의회가 가진다. 예배는 수양회, 캠프, 집회 활동에서 핵심요소이다. 그 예배는 이 예배 모범의 원칙과 해당 공의회가 마련한 지침을 따라야 한다.

W-3.6202

순서

예배의 성격과 초점은 모임의 종류, 목적, 참석자들, 장소, 계절 그리고 삶의 리듬과 순서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예배에서 매일 기도서의 순서(W-3.4000)를 사용하거나, 주일 대예배의 순서 (W-3.3000)를 따르거나, 아니면 이 예배모범에 기술된 다른 예식의 형식을 응용할 수도 있다 (W-3.5000).

W-3.6203

구성요소들

각 집회에 적절한 예배의 구성요소들은 기도, 성서 읽기와 듣기, 자기 헌신, 그리고 상호유대 및 세계와 유대이다(W-2.1000; W-2.2000; W-2.5000; W-2.6000). 예배의 다양한 요소들은 다양한 설정에서 강조될 수 있다:

- (1) 침묵의 기도나 부부관계 강화를 위한 수양회,
- (2) 자연 캠프나 선교 카라반,
- (3) 청년지도자 양성이나 음악훈련 집회.

그렇지만 어느 경우에도 말씀을 온전하게 바치고 적절한 기도가 드러져야 한다 (W-2.1000-2000).

W-3.6204

특별한 모임에서 주의 만찬

주의 만찬은 다음의 경우에서 어떤 특별 모임에나 적절하다:

- (1) 그 모임을 주관한 공의회나 행사 소재지의 관할 노회가 인가했을 때,
- (2) 교역장로(목사)가 집례하고 교회의 다른 사역장로(장로)나 집사가 참석해 있을 때,
- (3) 말씀의 설교나 공의회가 인가한 다른 형태의 선포에 뒤따른 예식으로 거행될 때,
- (4) 소수를 위한 경건회라기 보다는 전체 신앙공동체의 삶에의 참여로 이해될 때 (W-2.4010-4012).

아주 다양한 교단들이나 다양한 민족 그룹들로 이루어진 기독교인들이 집회를 가질 때, 또는 주의 만찬 축하를 위한 에큐메니컬 집회로 모일 때 교회는 그리스도 몸의 일치성을 강력하게 증거한다 (W-2.4006).

W-3.6205

에큐메니컬 성찬식

에큐메니컬 환경에서 주의 만찬을 집례하거나 참석하도록 초청받은 교역장로(목사)들은 그 참여가 개혁과 교회의 성례전의 이해에서 모순되지 않은 범위에서 그렇게 할 권한을 갖는다.

W-4.0000

제4장 특별한 목적을 위한 예배순서

W-4.1000

1. 특별한 행사와 인정

W-4.1001

특별 행사 및
취지의 예식

회중의 삶과 교인들의 삶에는 예배에서 적절히 인정받는 특별한 행사와 삶의 전환기가 있다. 많은 경우 이런 일들은 보통 주일 대예배의 어느 시점에서 축하된다. 다른 일들도 주일 대예배에서나 다른 정기 예식에서, 아니면 그 행사를 위한 특별 예식으로 축하될 수 있다. 특별 인정의 순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즐거운 기대 속에서 말씀을 듣고 성례전을 축하하는 중요성을 감소시키는 것이면 주일예배 예식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W-1.3011).

W-4.2000

2. 환영과 영접 예배

W-4.2001

세례와 교회회원권

세례를 통해 사람은 성령으로 인침받고, 교회 회원으로서 정체성이 주어져서, 성찬상으로 환영받고, 그리스도인의 봉사생활을 하도록 선별된다(W-3.3602-3608; W-3.5504). 세례의 이러한 국면은 세례받은 사람들에게 성찬상으로 환영, 견진례와 파송식, 새 교인 입교식을 통해 예배의 표현이 강화된다 (W-6.2001). 이런 순서는 보통 주일 대예배 예식에서 말씀에 대한 응답으로써 갖는다 (W-3.3502).

W-4.2002

성찬상으로 환영

세례를 받고 주의 만찬 초대에 응답하기 위해 세례를 받도록 양육하는 책임은 전체 교회의 책임이며, 이 책임은 특별히 당회를 통해 행사된다. 어린이가 세례를 받으면, 부모(둘다 또는 한 명)나 부모 책임 행사자가 그 어린이에게 주의 만찬 받는 것을 양육할 수 있도록 당회가 그 부모들을 준비시키고 지원해야 한다.(W-2.3012). 그 어린이가 이 성례전 수락 의사를 표현하기 시작할 때, 당회는 이 사실을 기록하고, 인정과 환영의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

W-4.2003

견진례와 파송

교회는 세례받은 어린이들을 양육하고 그들이 공적으로 신앙고백을 하고 교회 삶의 책임을 수락하도록 부른다. 이들이 스스로 준비될 때 당회에 의해 심사된다(G-3.0201c). 당회가 그들을 활동교인으로 받아들인 후에 공예배 시 그들을 회중 앞에 내세운다. 이 예식에서 교회는 그들의 세례적 신분을 확고히 한다. 그들은 세례 예식에서 행한 서약을 다음과 같이 거듭 확인해야 한다.

- a.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구세주로 믿는 신앙을 고백하고,
- b. 악을 끊고 하나님 은총에 의탁함을 다짐하며
- c. 교회의 예배와 선교에 적극적으로 책임있게 참여할 의도를 선언한다

(W-3.3603).

그들은 교회의 선교와 치리에 전면 참여하도록 파송되며, 전 회중의 환영을 받는다 (W-3.3502; W-3.3602-3608; W-3.3701).

W-4.2004

다른 교인의 영접

교인 이명증서나 신앙의 재확인에 의해 입교하는 교인들을 영접하는 예식은 그의 첫 세례와 신앙고백과 제자직으로 결단을 일깨우는 행사이다. 당회의 심사

를 받고 영접이 끝난 후, 새 교인들은 정규 공예배에서 인정되어야 한다(W-3.3502). 그들이 세례시 결심을 재확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과 구주로 모시는 신앙고백을 다시 공적으로 하며, 교회의 예배와 선교에 적극 참여할 의도를 표시하는 것이 적절하다 (W-3.3602). 그들은 개체교회의 삶 속으로 들어오도록 환영받으며 교인으로서 봉사 위임을 받는다.

W-4.2005
전교인 재다짐

개체교회 회원으로 들어하는 사람이 공적 신앙고백을 하는 각 행사시에, 세례받은 전 예배자들도 세례시 행한 결심을 공적으로 재다짐하는 것이 적절하다.

W-4.2006
갱신과 새 결단

신앙인 개인의 삶에는 공적 표명과 인정과 축하를 받을 만한 특별한 각성과 갱신과 새로운 결단의 시기들이 있다. 사람들이 이러한 결정적인 계기가 있거나 성령의 감동을 받을 때, 교역장로(목사)와 당회와 나누도록 격려해야 한다. 예배예식에서 사람들이 이러한 확고한 결심을 공개하고 교회가 기도와 감사로서 인정하는 것은 대체로 적절하다(W-3.3502; W-3.3701).

W-4.2007
환영과 인정의 행동

이 모든 예식에서 환영하고 인정하고 파송하고 확인하는 일은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도 표현되어야 한다. 적절한 행동은 다음을 포함한다:

- a. 그리스도 평화의 나눔;
- b. 환영의 손내밀;
- c. 기름 부음;
- d. 포옹하기.

그리고 참여자들의 문화(들)에서 공통적인 인정과 축하의 기타 행위.

W-4.3000

3. 제자직의 특별 위임예배

W-4.3001
제자직의 인정

기독교 공동체의 삶에서 하나님은 제자직의 특정 행위로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들이 가진 재능을 사용하여 교회와 세상안에서 봉사하도록 하신다. 이러한 특정 행위들에 대해 예배에서 공식적인 인정을 함으로써 격려와 힘을 북돋을 수 있다.

W-4.3002
제자직의 형식

제자직은 다음과 같이 표시될 수 있다:

- a. 개체교회 내의 교회학교 교사로서, 이사로서, 성가대원으로서, 교회조직의 제직으로서, 다양한 교회그룹의 고문이나 보조자로 봉사함으로써;
- b. 개체교회를 대표하여, 공동체 안의, 공동체를 위한 목회사역을 통해;
- c. 전체교회에서 노회와 대회와 총회 그리고 에큐메니칼 기관과 협의회의 목회사역에 봉사함으로써;
- d. 교회 밖에서, 연민과 화해 사역을 하는 모든 사람들과 협동함으로써 (W-7.3000-4000);

W-4.3003
인정과 위임

제자직의 그러한 행위로 부름 받은 사람들에 대한 인정과 파송은 말씀선포에 대한 응답으로서 (W-3.3500), 또는 세상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따르는 일로써, 주일 대예배예식에서 행할 수 있다 (W-3.3700). 제자직의 특정 행위에 대한 인

정과 파송은 이 취지로 제공된 예배 예식이나 기타 적절한 예식을 통해 행해질 수 있다 (W-3.5100; W-3.5300; W-3.5600).

W-4.4000

4. 안수, 취임, 파송

W-4.4001

안수와 취임

a. 안수식에서 교회는 집사와 사역장로(장로) 그리고 교역장로(목사)로 섬기도록 교회의 선거를 통해 부름 받은 사람들은 기도와 안수로써 선별한다. 취임식에서 교회는 집사나 사역장로(장로) 또는 교역장로(목사)의 사역에 이미 안수받은 이들을 기도로써 선별하며 그 직책으로 부름을 새롭게 한다.

안수와 취임 및 파송의 예식

b. 사역장로(장로), 집사 또는 교역장로(목사)에 대한 안수식과 취임식, 그리고 평신도 목회자, 유자격 기독교 교육사와 기타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을 파송하는 예식은 반드시 그리스도에 대해 그리고 교회의 선교와 목회사역을 통해 그리스도께 봉사하는 기쁨과 책임에 대해 초점을 두며, 그에 적절한 설교가 있어야 한다. 집례하는 교역장로(목사)는 사역의 성격을 간단히 진술해 주어야 한다.

W-4.4002

예식의 장소

안수와 취임, 또는 파송의 예식은 말씀 선포에 대한 응답으로서 주일 대예배 예식 중에 거행될 수 있다 (W-3.3503). 안수와 취임 또는 파송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그리고 교회의 선교와 목회사역에 대해 초점을 두는 특별한 예식으로 거행될 수 있으며 말씀의 선포가 있어야 한다. **교역장로(목사)의 안수 혹은 취임식**은 노회에서 상당 수가 참여할 수 있도록 편리한 시간을 잡아 거행해야 한다.

W-4.4003

안수, 취임, 파송받는 자들에게 묻는 헌법 질문

해당 공의회 의장은 안수와 취임 또는 파송받을 사람들을 치리회 앞에 서게 하고 다음의 질문에 답하게 한다:

a.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주로 믿으며, 그가 만유의 주님이시고, 교회의 머리시며, 그를 통하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한 분 하나님임을 믿습니까?

b. 당신은 구약과 신약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된 책이며, 전체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유일하고도 권위있는 증거이고, 또 당신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고 받아들입니까?^a

c. 당신은 장로교의 신앙고백서에 표현된 개혁과 교회 신앙의 기본 교리가 우리로 믿고 행하게 하는 성경의 순수하고도 믿을 만한 해설서라고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채택하며, 아울러 당신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할 때 이들 신앙고백서에 의해 가르침을 받고 지도 받겠습니까?^b

d. 당신은 성경의 권위하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함으로 당신에게 주어진 사역을 완수하며, 우리 신앙고백서에 의해 계속 지도 받겠습니까?

e. 당신은 우리 교단의 정치에 순응하며 그 권징을 따르겠습니까? 당신은 목회 동역자들과 친구가 되어 함께 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명령에 순종하겠습니까?^c

f. 당신은 자신의 생활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이웃을 사랑하고, 세계의 화해를 위해 힘쓰겠습니까?

g. 당신은 교회의 평화와 일치와 순결을 더욱 촉진시키기로 약속하겠습니까?

h. 당신은 주의 백성을 위해 기도하고 온 정성과 지혜와 상상력과 사랑으로 섬기기를 힘쓰시겠습니까?

i. (1) (사역장로에게) 당신은 주의 백성을 돌보고, 예배와 양육과 봉사에 헌신함으로 충성된 사역장로가 되겠습니까? 당신은 교회의 공의회에서 봉사하면서, 정치와 권징에 동참하고, 또 당신의 목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공의를 나타내도록 힘쓰겠습니까?

(2) (집사에게) 당신은 박애정신을 가르치고 관심을 일으키며, 백성들을 인도하여 친구가 없고 궁핍한 자들을 돕도록 하며, 당신의 사역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공의를 나타내보이는 충성된 집사가 되겠습니까?

(3) (교역장로에게) 당신은 말씀과 성례전으로 복음을 선포하고 믿음을 가르치며 주의 백성을 돌보는 충실한 교역장로(목사)가 되겠습니까? 당신은 교회의 공의회에서 봉사하면서 정치와 권징에 능동적으로 동참하고; 당신의 목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정의를 나타내도록 힘쓰겠습니까?

(4) (과송받는 평신도 목회자에게) 당신은 복음 선포로 사람들을 섬기며, 믿음을 가르치고, 주의 백성을 돌보며, 당신의 사역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정의를 나타내는 충실한 평신도 목회자가 되겠습니까?

(5) (유자격 기독교 교육사에게) 당신은 믿음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돌보며, 목회사역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정의를 나타내는 충실한 유자격 기독교 교육사가 되겠습니까?

W-4.4004

사역장로(장로)나 집사의 안수 또는 취임 예식에서

사역장로(장로)나

집사의 안수 또는 취임

교인에게 하는 질문

a. 사역장로(장로)와 집사로 피택된 자들이 질문에 긍정적으로 대답한 후, 사역장로(장로) 한 명이 그들과 같이 교인들 앞에 서서 전체 교인들로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답하도록 묻는다:

(1) 본 교회의 교인인 우리는 (이름들)_____을/를 본 교회 교인들의 요청에 의하여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인도하도록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역장로(장로)들이나 집사들로 알고 받아들입니까?^d

(2) 우리는 홀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격려하고, 그들의 결정을 존중하며, 그들이 우리를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기로 동의합니까?

기도와 안수 b. 교인들이 이 질문에 긍정적 대답을 한 후에, 안수 받을 사람들은 기도와 당회의 안수를 위해 (가능할 경우)무릎을 꿇어야 한다. 이전에 안수 받은 이들은 취임 기도시 회중과 함께 (가능할 경우)일어서는 것이 통례이다. 당회는 다른 사역장로(장로)들과 교역장로(목사)들을 안수에 참여하도록 초청할 수 있다.

선언 c. 이와 같이 안수 받고 취임한 자들에게 당회장은 다음과 같이 말해야 한다: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본 교회의 사역장로(장로)들이고 집사들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하든지 말과 행동에 있어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또 그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십시오. 아멘.

당회의 환영 d. 그런 다음, 당회 회원들과 해당되는 다른 사람들이 새로 안수받고 취임한, 또는 새로 취임한 사역장로(장로)들과 집사들을 목회사역의 교체 안으로 환영해야 한다.

회중의 인사 e. 예식이 끝난 후에 교회의 교인들은 새 사역장로(장로)들과 새 집사들에게 애정과 지지를 나타내 보이면서 인사하는 것이 적절하다.

W-4.4005 말씀과 성례전의 목회직 안수 예식에서

교역장로(목사)의 안수

안수 질문

a. 노회는 질문 i.(3) 본문을 사용하여 W-4.4003에 제시된 안수 질문을 하여야 한다. 당신은 말씀과 성례전으로 복음을 선포하고, 믿음을 가르치고, 주의 백성을 돌보는 충실한 교역장로(목사)가 되겠습니까? 당신은 교회의 **공의회**에서 봉사하면서 정치와 권징에 능동적으로 동참하고; 또 당신의 목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정의를 나타내도록 힘쓰겠습니까?

기도와 안수 b. 그 후보생이 질문에 긍정적으로 답변한 후, (가능할 경우)무릎을 꿇고, 노회위원회는 그 후보생을 기도와 안수로서 말씀과 성례전의 목회직에 안수해야 한다. 그 집례자는 그 때 다음과 같이 선포해야 한다:

 (이름)_____, 당신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교역장로(목사)로 안수받았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하든지 말과 행동에 있어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또 그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십시오. 아멘.

노회의 환영 c. 그 다음에 노회 회원들과 다른 해당 인사들이 말씀과 성례전의 목회직에 부름받은 새 교역장로(목사)를 환영해야 한다. 새 교역장로(목사)가 안수 예식 끝에 간단한 인사말을 할 수 있으며, 축도로 끝내야 한다.

W-4.4006

교역장로(목사)의

위임

모든 기독교인은 교회를 섬기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 그러나 하나님은 특정한 사람들에게 특별하고 특정한 방식으로 교회를 섬기도록 교회로 부르신다. 개체교회와 노회와 교역장로 (혹은 후보생)가 모두 영구 목사직이나 임명 목사직 청빙에 동의하였을 때, 노회는 위임 예식을 준비하고

거행함으로써 청빙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위임예식은 목회관계를 수립하는 노회의 행위이다. 노회 임무를 위해 전권위원회가 임명될 수 있다.

위임예식

a. 정해진 위임 날짜에 노회나 이 목적으로 임명된 전권위원회는 예식절차를 개시하고 교인들을 예식에 회집해야 한다. 그 예식은 안수예식처럼 동일한 초점과 형식을 취해야 하고, 위임되는 사람은 안수시의 질문에 대답해야 한다.

회중에게 하는 질문

b. 위임하는 사람이 이 질문에 긍정적 대답을 한 후에 사역장로(장로) 한 사람이 위임되는 목사(또는 위임 받는 부목사)와 함께 교인들을 향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답하도록 물어야 한다:

(1) 본 교회의 교인인 우리들은 (이름) _____ 목사님을 하나님 선택을 받은 우리의 담임목사 (부목사)로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인도해줄 분으로 받아들입니까?

(2) 우리는 그(그녀)를 위해 기도하고 격려하며, 그(그녀)의 결정을 존중하며, 그(그녀)가 인도하는 대로 따르면서 홀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로 동의합니까?^e

(3) 우리는 그(그녀)에게 정당한 보수를 지불하고, 그(그녀)가 우리 가운데서 목회할 때 그(그녀)의 복지를 제공하며, 어려울 때 그(그녀)의 곁에 서서 그(그녀)와 기쁨을 함께 나누기로 약속합니까? 우리는 그(그녀)가 전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그녀)의 목회적 돌봄을 환영하며, 그(그녀)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예롭게 하고 주님으로 순종할 때 그(그녀)의 권위를 존중하겠습니까?^{f,g}

교역장로(목사)의 위임

c. 교인들이 이 질문에 긍정으로 대답하면,^{h,i}

(1) 안수와 위임을 받는 후보생은 (가능할 경우)무릎을 꿇으며, 노회는 기도와 안수로서 그이나 그녀를 말씀과 성례전의 목회직에 안수하고 특정한 목회 직분에 취임시킨다.

(2) 이전에 안수받은 교역장로(목사)가 의임되는 경우에는, 손을 얹을 때와 위임 기도 시에 (가능할 경우)일어서는 것이 통례이다.

교역장로(목사)에게 선언

d. 그 집례자는 그 때 다음과 같이 선언해야 한다:^j

(1) (안수와 위임을 받는 분에게) (이름)_____, 당신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본 교회를 위한 교역장로(목사)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하든지 말과 행동에 있어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또 그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십시오. 아멘.

(2) (이전에 안수받은 교역장로에게)(이름)_____, 당신은 이제 본 교회 안에서 그리고 본 교회를 위한 교역장로(목사)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하든지 말과 행동에 있어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또 그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십시오. 아멘.

환 영 e. 그런 다음, 노회 회원들과 다른 해당 인사들이 새로 안수받고 위임된 교역장로(목사)에게, 또는 새로 위임된 교역장로(목사)에게 말씀과 성례전의 목회에 있어서 그들의 친교에 동참하게 된 것을 환영해야 한다.^k

권 면 f. 노회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그때 목사(부목사)와 회중에게 상호 유대와 공동의 책임에 충실하도록 간단한 권면의 말을 그때 할 수 있다.^l

축 도 g. 그 예식 끝에 새로 위임된 교역장로(목사)가 간단한 인사말을 할 수 있으며, 축도를 해야 한다..

W-4.5000 5. 사역에 있어서 변화

W-4.5001 제자직의 특정 활동에 특별히 과송받은 사람들, 안수 받은 집사나
전환기 인정 교역장로(장로) 또는 교역장로(목사) 그리고 기타 교회를 섬긴 사람들이 임기를 마칠 때, 전체 회중과 그 사역과 관련된 다른 이들이 임기를 마친 사람의 재능과 봉사에 대해 정식으로 인정해주는 것이 적절하다.

W-4.5002 이러한 인정은 말씀선포에 대한 응답의 일부로서(W-3.3503) 하거나,
인정 형식 세상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따르는 일로써(W-3.3701) 하거나, 또는 달리 지정한 예배 예식에서 인정을 할 수 있다. 그 예배는 그 사람의 사역에 대한 치하와 사의 표명이 포함될 수 있고, 목회 전환기에 있는 그들을 위해 감사와 중보의 기도가 포함될 수도 있다.

W-4.6000 6. 책별과 회복

W-4.6001 책별과 복권의 형식은 이 *규례서*의 권징조례에 명시되어있다 (D-12.0102; D-12.0103; D-12.0104; D-12.0105; D-12.0202; D-12.0203). 주의할 점은, 이러한 형식의 사용이 어디까지나 목회적인 관점에서, 해당 공동체 내의 예배의 맥락으로 논의되고 실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W-4.7000 7.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의 인정

W-4.7001 교회의 특정 선교사업 이상으로 공동체에 행해진 봉사에 대해서는 기독교 제자직의 표현으로서 예배 중 적당한 기회에 기도와 감사로 적절하게 인정할 수 있다. 크리스천 삶에서 중요한 성취를 이룩하거나 명예나 다른 형태의 인정을 받았을 때도 신앙공동체와 더불어 축하 행사를 가질 수 있다.

W-4.8000 8. 용납과 화해의 예식

W-4.8001 기독교인들은 죄 많은 세상에 사는 용서받은 죄인들이다. 그들은 부서진 관계로 고통받으며 그들의 부서진 관계는 스스로 자초한 것들이다. 이런 현실을 감안할 때, 온전함을 회복하는 중요한 발걸음은 관계의 부서짐과 실패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일이다:

W-4.8000: 고후 5:18-20; 약 5:16; 웨스트민스터고백 6.068; 1967년도고백 9.07, 9.22

- a. 친구와 결혼 관계에서,
- b. 가족과 교회 관계에서,
- c. 직장과 학교 관계에서
- d. 이웃과 지역사회와 세상과의 관계에서.

W-4.8002 이 밖에도 크리스천 공동체는 죄와 부서진 조직과 부서진 관계에 있는 것을
 용납과 화해의 예식 인식하고 인정해야 한다. 인간 관계의 실패에 대한 인식과 인정을 위해, 관계의
 상실을 함께 슬퍼하기 위해, 신앙공동체 안에서 상호 용서와 화해를 위한 특별
 예배의 기회가 적절히 주어진다.(W-2.6001; W-3.3301; W-3.5400; W-6.3007-3008;
 W-6.3011; W-7.4004).

- W-4.8003 이러한 예식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예식의 형식
- a. 하나님의 은총이 계시된 성경구절 봉독,
 - b. 고백, 중재와 간구의 기도,
 - c. 용서의 선언, 죄의식과 수치감에서 해방 선언,
 - d. 찬양의 표시, 용서와 화해에 대한 감사,
 - e. 상호 결단과 화해의 행동화.

W-4.9000 9. 결혼

W-4.9001 결혼은 전인류 가족의 복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전인류에게 주신 선물이다.
 크리스천 결혼 결혼은 한 여자와 한 남자간에 맺은 시민계약이다. 크리스천들에게 결혼은 한
 여자와 한 남자가 하나님 앞에서 제자직의 삶을 함께 살도록 부름받은
 계약이다. 크리스천 결혼예식에서 한 여자와 한 남자는 서로에게 평생을
 헌신하는 언약을 하며, 신앙공동체가 이의 증인이 되고 확인을 한다.

W-4.9002 a. 결혼 예식을 준비함에서 있어서 교역장로(목사)는 남자와 여자와 함께
 결혼 준비 다음에 관하여 상담을 제공해야 한다.

- (1) 크리스천 결단에 대해, 그리고 두 사람 중 적어도 한 사람이
 신앙고백을 한 크리스천임을 확인한다,
- (2) 주법의 요구사항에 대해,
- (3) 크리스천 결혼의 특권과 책임에 대해,
- (4) 결혼 예식의 성격과 형식에 대해,
- (5) 그들이 결혼식에서 하게 될 서약과 결단에 대해,
- (6) 제자직의 삶과 이러한 결심의 상관성에 대해,
- (7) 그들의 결혼서약 이행에 도움이 되는 신앙자료와 크리스천
 공동체에 대해.

이러한 상담은 첫결혼에서나, 배우자가 죽은 사람들의 재혼에서나, 이혼한
 사람의 재혼에서나 다 똑같이 중요하다.

만일 결혼이 현명치
않으면 b. 만일 교역장로(목사)가 결혼할 두 사람과 상담한 다음, 그들의 결심이나 책임감이나 성숙도, 또는 기독교적 이해가 너무나 부족하여 그 결혼이 현명치 않다고 판단할 경우, 교회가 그 두사람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것을 다짐해주고 결혼식을 거행하지 말아야 한다. 교역장로(목사)가 이 결정을 내릴 때 당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W-4.9003 크리스천 결혼은 공동체가 모여 예배하는 장소에서 거행되어야 한다. 예배식의 시간과 장소 크리스천 예배로서의 결혼식은 교역장로(목사)의 주례와 당회의 감독하에서 거행되어야 한다 (W-1.4004-4006). 결혼식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크리스천 삶의 축복의 표현으로서의 결혼에 초점을 두는 특별 예배로 거행하는 것이 통례이다. 목사의 재량으로 다른 사람들을 초대하고 그 예식을 인도하게 할 수 있다. 결혼식에서 성찬식을 축하하려면 당회의 승인을 반드시 구해야 하고, 참석한 모든 세례인들이 성찬식에 초대되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당회가 승인할 경우 결혼 예식을 주일 대예배 예식 중에 거행할 수 있다. 이때 결혼식은 말씀 선포의 응답으로서 예배순서가 되어야 한다. 그럴 경우 주의 만찬 성례전이 뒤따를 수도 있다 (W-2.4010; W-3.3503).

W-4.9004 예식은 성경구절과 간단한 예식 취지에 대한 선언으로 시작한다. 남자와 여자는 크리스천 혼약을 맺을 의도를 선언해야 하며, 서로 사랑하고 충실하겠다는 서약을 교환해야 한다. 그 예식에는 선포의 다양한 형식으로 해석될 수 있는 적절한 성경구절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랑신부를 위해, 새로운 차원의 제자직에 들어가는 그들을 도울 공동체를 위해, 그리고 충실한 삶을 추구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가 바쳐져야 한다.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역장로(목사)는 그 여자와 그 남자가 결혼으로 이제 하나가 된 것을 공적으로 선포해야 한다. 권면을 해줄 수도 있다. 그 공동체와 문화에서 보편화된 다른 행위들도 적절히 지켜질 수 있으나 이러한 행위들이 크리스천 결혼의 이해를 감소시키지 않아야 한다. 예식은 축도로써 끝낸다.

W-4.9005 결혼식에 어울리는 음악은 하나님께로 관심을 이끌어 가고 교회의 신앙을 표현하는 것이다 (W-2.1004). 회중은 찬송가와 기타 음악형태의 찬양과 기도를 따라할 수 있다. 꽃과 장식, 그 밖의 실내장식이 예배 장소로서 적절해야 하고, 하나님의 실재에 대한 예배자들의 의식을 고취시키고 또 크리스천 생활의 고결성과 소박함을 반영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W-1.3034; W-1.4004-4005; W-5.5005).

W-4.9006 예배 예식에서 시민결혼을 인정하고 신앙공동체가 이를 확인하는 일은 결혼한 부부의 요청이 있을 때 적절할 수 있다. 그 예식은 결혼 예식과 유사하다, 다만 그 남녀가 시민법에 따라 이미 결혼하였기 때문에 이것이 개회사와 의도 선언, 남편과 아내의 서약교환, 그리고 교역장로(목사)의 공선언에서 그렇게 반영된다.

W-4.10000

10. 장례식

W-4.10001
크리스천과 죽음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중심교리의 하나이며, 죽음의 사건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태도와 응답의 기틀을 형성한다. 죽음은 모든 이들에게 상실감과 비탄과 큰 슬픔을 가져온다. 죽음에 직면하여 그리스도인은 눈물과 기쁨으로 복음의 희망을 확인한다. 크리스천은 사별의 슬픔을 격리된 채 홀로 감당하지 않으며, 성령과 신앙공동체의 힘으로 견디어낸다. 교회는 사별의 슬픔을 겪는 모든 이들에게 사랑과 희망의 목회를 제공한다 (W-6.3006).

W-4.10002
준비 계획

감정적으로 스트레스 상태일 때는 현명하게 계획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당회는 교인들로 하여금 죽음에 대비하여 필요한 절차 - 매장, 화장, 의학적 목적의 장기 기증의 결정문제 포함 - 를 미리 상의하도록 권장해야 한다. 장례준비는 소박하게, 부활의 희망을 증거하는 것으로, 그리고 크리스천 공동체가 중심이 되도록 이러한 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 상례 절차로서 거행하는 예식들에 관해 당회가 전반적인 방침을 수립할 책임이 있다 (W-1.4004).

W-4.10003
예식의 환경

상례예식은 신앙공동체의 지속적인 삶의 예식으로, 부활을 증거하는 예식으로 참여하도록,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일반 예배의 장소에서 거행되어야 한다. 장례식은 목사의 집례로 거행되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이 이 예식의 인도자로서 참여하도록 목사의 재량으로 초대될 수 있다. 이 예식은 어느 날이나 거행할 수 있다. 그러한 예식을 주일날 예배의 일부로서 거행하거나, 상례의 절차로서 주의 만찬을 축하하는 요청은 당회의 승인이 요구된다.

W-4.10004
형식과 순서

예식은 성경구절로 시작한다. 죽음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의 신앙, 그리고 모든 성인들의 통공을 확신케 하는 찬송, 시편, 영가 또는 영적인 노래를 예배자들이 부르는 것이 합당하다. 성경을 봉독해야 하고, 설교나 말씀의 해설이 선포될 수 있으며, 교인들이 믿음의 확신을 말할 수도 있다. 고인의 생애에 관한 추억을 이야기 할 수 있다. 기도를 올려야 하고 다음과 같이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 (1)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복음의 약속에 대해,
 - (2) 고인에게 주어진 삶의 선물에 대해,
 - (3) 성령의 위로해 주심에 대해,
 - (4) 신앙공동체에 대해;
- 중재의 기도를 드린다
- (5) 슬퍼하는 유족을 위해,,
 - (6) 유족들을 돌보고 지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7) 상실로 고통 받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간구 기도를 올린다

(8) 참석자 전원의 믿음과 은총을 위해,

주기도로 마친다.

이 예식은 고인을 영원한 하나님의 돌보심에 부탁하고 축도로써 조객들을 보내면서 마친다.

W-4.10005
대안과 선택

이 예식은 매장 전후에 거행될 수 있다. 예식이 하나님께로만 주목되도록 하기 위해서 관이 있을 때는 보통 뚜껑을 닫는다. 관보로 덮여있을 수 있다. 그 예식에 그 공동체와 문화에서 보편화된 다른 행위들도 포함될 수 있으나 이러한 행동들이 크리스천 죽음과 부활의 이해를 손상시키거나 감소시키지 않아야 한다. 예식은 그 자체로서 끝나야 한다. 어떠한 형제의례나 공민의례나 군장 의례는 별도로 거행되어야 한다. 평상시의 예배 장소를 사용하지 못할 어떤 중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 가정이나 장의사나 화장터 또는 장지와 같은 다른 적합한 장소에서 예식을 거행할 수 있다.

W-4.10006
하관 예식

유가족과 고인의 친구들이 장지나 화장지에 모여 고별예식으로 거행하며, 이 예식은 간소하고 간결하고 정중해야 한다. 그 예식은 성경구절 봉독, 기도, 하관기도문, 축도의 순서를 포함하며, 죽음의 실재를 성찰하고 고인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며 죽음에서 부활하는 믿음을 증거하는 내용이 반영된다.

W-5.0000

제5장 예배와 개인의 제자직

W-5.1000

1. 개인예배, 제자직, 신앙공동체

W-5.1001
개인과 공동의
예배

크리스천은 공동의 예배와 봉사로, 그리고 개인의 예배 행위와 제자직으로 하나님께 응답한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교회의 예배에서 흘러나오며 거기에서 신자의 정체성이 확인되고, 제자직의 삶과 하나님께 향한 개인적 응답의 삶으로 파송받는다. 신자의 응답과 제자직의 생활은 교회의 예배와 봉사의 생활 속으로 흘러들어간다 (W-1.1006; W-2.1001).

W-5.1002
예배와 생활

예배를 통하여 교인들은 그들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한다. 세상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의 생활로부터 예배의 필요성이 나오고; 또 예배드리는 중에 신자는 세상을 하나님의 은혜의 빛 가운데서 보게 되며; 예배로부터 세상에서 삶을 위한 선견과 능력이 나온다.

W-5.1003
예배와 목회

예배에서 선포되고 받아들여진 하나님의 말씀은 각 신자에게 세상에서 충실한 제자가 되도록 요청한다. 그렇게 봉사함으로써 제자는 감사하고, 고백하고, 중재하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부르시는 새로운 음성을 듣는다. 신자의 생활 리듬은 예배에서 목회로, 목회에서 예배로 움직이는 것이다.

W-5.1004
예배와 훈련

크리스천의 생활은 은총으로 힘을 얻고 순종으로 표현되고 훈련으로 형성된다. 하나님이 공동체에서와 마찬가지로 가정에서나 개인에 의해 사용되도록 은혜의 방편으로 예배의 요소들을 주셨다 (W-2.0000). 당회는 교인들로 하여금 그들의 순종과 제자직의 표현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고 성장하는 방편으로서, 이 예배모범에 기술된 훈련 내용을 사용하도록 격려해야 한다 (W-5.2000-5.5000).

W-5.2000

2. 매일 개인예배의 훈련

W-5.2001
매일 개인예배

매일 개인예배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일종의 훈련이다. 날마다 제자직에 도전은 날마다 예배로 양육 받음을 요구한다. 매일 개인예배는 신앙공동체가 모여서 예배할 수도 있고 (W-1.1006; W-1.3012; W-3.4000), 가정에서/가족들과 (W-5.7000) 또는 사적으로 드릴 수 있다. 성경읽기, 기도, 자기 헌신, 또 봉사하기 위한 결심 등은 매일 개인예배의 요소이다. 세례와 주의 성만찬은 그 성격상 집합적이지만, 이런 성례전을 준비하고 기억하는 것은 매일 개인예배에 중요하다. 매일 개인예배의 훈련의 한 국면은 시간과 장소를 찾아서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에 초점을 맞추고, 그의 말씀을 듣고, 기도, 개인 헌신과 봉사의 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것이다.

W-5.3000

3. 개인예배 시 성경 봉독

W-5.3001

성 경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기록이며, 이를 통해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또 신앙생활을 위한 권위있는 방향 제시를 해주신다.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읽고 들을 때 개인예배는 성경에 중점을 두게 된다(W-2.2000).

W-5.3002

성경 사용

a. 우리는 인도, 지원, 위로, 격려를 위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제시하는 도전에 대해 성경을 읽을 수 있다.

성경 연구

b.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분명히 듣고, 또 더욱 충실히 순종하기 위하여 성경 말씀의 문학적 형식, 역사적 상황, 그리고 문화적 맥락에서 이해하도록 성경을 연구할 수 있다.

명 상

c. 우리는 말씀을 명상할 수도 있는데,

- (1) 성경구절들을 외우려고 결심하며,
- (2)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회상과 성찰을 하며,
- (3) 성경의 주제들, 이미지들, 그리고 형식들을 비교 분석하며,
- (4) 성경과 실제생활 사이에 있는 상관성을 찾아보고 관계시킬 수 있으며,
- (5)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약속에 참여하기 위하여 성경에 묘사된 세계와 그 사건들 속으로 상징적으로나마 개입해 들어가 볼 수 있으며,
- (6) 복음의 도전과 요구를 붙잡고 씌름하며,
- (7) 하나님께 응답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새롭게 헌신하면서 명상할 수 있다.

W-5.3003

성경 이용에 도움

성경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명상하면서 개인의 통찰과 반응을 기록하고, 또는 다른 사람과 그것들을 자주 나누는 일은 도움이 된다. 풀어서 적어두는 일, 요약하는 일, 간단한 성찰, 창의적 반응을 하는 일, 그리고 일지를 적는 일들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도록 보조해 주는 훈련이 된다. 개인예배에서 성경을 폭 넓게 읽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성구집과 각종 번역과 의역서를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완전한 메시지를 찾아 듣는데 도움이 된다(W-2.2004).

W-5.4000

W-5.4001

4. 개인예배 때의 기도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의식적으로 열어보이는 것이고, 그분은 우리와 영적 교류와 대화를 주도하신다. 기도는 하나님의 현존하심 가운데 받고 응답하고, 말하고 듣고, 또 기다리고 행동하는 것이다. 기도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와 감사로, 고백과 간구로, 중재와 자기 헌신으로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이다(W-2.1000).

W-5.4002

기도의 표현

개인예배에 있어서 기도는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과 의식적인 대화를 할 수 있으며, 우리의 기쁨과 걱정, 공포와 희망, 생의 필요와 갈망 등을 말로 표현할 수 있다.

우리는 세심하게, 그리고 기대하는 침묵 속에서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을 명상할 수 있다. 우리는 말과 생각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성령과 우리의 영이 교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다.

우리는 고독 가운데서 하나님께 접근해갈 수 있다.

우리는 개인적 또는 사적인 훈련으로써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다.

우리는 춤으로, 신체 운동으로, 음악으로, 또는 은혜에 응답하는 다른 능동적 표현을 통하여 행동화된 개인기도의 훈련을 할 수 있다.

우리는 철야기도를 통하여, 사회적 책임감을 감당하는 행동이나 항거를 통하여, 또는 훈련된 봉사의 상징적 행동을 통한 공적 증거로서 기도를 행동화할 수 있다.

우리는 사람들, 거래, 그리고 세상에서 생기는 일상적 사건을 하나님 앞에 내놓은 훈련을 할 수 있다.

우리는 기도 계약을 할 수 있고, 함께 기도하는 정기 훈련에 참여할 수 있다.

그리스도인은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롬 12:12, 살전 5:5:17)하는 생활로 부름을 받았다.

W-5.4003
기도에의 도움

개인예배에서 기도의 훈련을 쌓으면서, 우리는 기도의 형식과 내용을 형성하기 위해 다음을 통해 도움을 구할 수 있다.

- a. 성경에서 특히 주기도와 다른 기도들, 시편과 또 다른 성경의 송가들에서;
- b. 찬송가와 영가, 그리고 그 밖의 송가들에서;
- c. 예배서, 기도서, 또 예배의 보조 서적들에서;
- d. 문학과 시각예술에 표현된 기도와 헌신의 유산에서.

그러한 자원들은 일간 뉴스와 교회 프로그램 해석 자료 및 개인예배 안내서와 더불어 기도의 기회와 제목을 찾는 데 도움이 된다.

W-5.5000

W-5.5001
주일날
성수주일 훈련

5. 개인예배와 제자직을 위한 기타 훈련

a. 하나님은 성경과 성례전, 그리고 기도 이외에도 은혜의 방편을 주셨다.

b. 크리스천은 주께 거룩하게 지키도록 주의 날을 받았다(W-1.3011; W-1.2001). 주일은 신자의 일주일의 시작이며 제자직의 삶에 모습을 부여한다. 주일을 잘 지키는 훈련은 다음을 포함한다.

- (1) 공중예배의 참여
- (2) 말씀 증거와 봉사, 그리고 구제의 목회에 참여
- (3) 영적 재창조에 공헌하는 활동을 하고, 일상적 직업으로부터 휴식한다.

이런 규율을 지키기 위해, 주일에 일하는 크리스천은 주중 다른 날을 이렇게 지킬 목적으로 구별해 놓아야 한다.

W-5.5002
계 절

교회력의 계절은 개인예배와 제자직에 리듬과 내용을 제공한다(W-3.2002). 특별한 계절, 행사, 그리고 각자 생활의 변화 등이 개인예배와 제자직을 또한 지시해준다.

W-5.5003
금식훈련과
행동화한 기도

크리스천은 금식, 철야, 또 다른 행동화된 기도의 훈련을 위한 특별한 때와 절기를 지킨다. 특별히 제자직의 특별 행동을 준비하거나 회개, 화해, 평화운동, 사회적 항거, 동정의 행동으로서 어느 때나 이런 훈련을 하는 것이 역시 적절하다.

W-5.5004
기독교인의
봉헌

봉헌은 언제나 크리스천의 결단과 제자직의 표징이 되어왔다. 신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의 은총과 개인 재능과 시간을 유용하게 사용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주신 일과, 또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러 세상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역하고 그들과 함께 참여하라고 분부하신 데 대한 충성된 응답을 반영하는 것이어야 한다. 십일조는 그리스도인의 청지기 훈련의 기본적 표현이다(W-1.3030; W-2.5000).

W-5.5005
삶의 청지기 정신

그리스도인의 청지기 규율로 사는 자들은 스스로 소박함, 관용, 정직성, 환대, 연민, 이해심, 그리고 이 지구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계에 관심을 두는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다(W-7.5000).

W-5.6000 6. 크리스천의 소명

W-5.6001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시고

- a.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세주로 믿으라;
- b. 순종하는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
- c.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재능과 능력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섬기는 데 사용하라,
 - (1) 개인생활에서
 - (2) 가정에서 가족들과
 - (3) 일상 직업에서
 - (4) 지역사와 국가와 세계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다.

W-5.6002
우리의 응답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또 신앙공동체의 예배와 생활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다.

우리들은 세상 안에서, 세상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의 목회를 통하여, 제자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다.

우리들은 인간생활의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섬기도록 하나님 부르심을 응답한다

- a. 일을 하면서, 노는 가운데
- b. 생각하면서, 행동하는 가운데
- c. 사적 관계에서, 공적 관계에서.

W-5.6003
예배와 일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생활을 거룩하게 만드시고, 또 일상생활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크리스천은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섬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크리스천에게는 일과 예배를 분리시킬 수 없다.

W-5.7000

7. 가족 예배 및 가정예배

W-5.7001
가정예배

그리스도인들이 한 가족으로 또는 한 가정에서 함께 살 때,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가정의 구성원들이 매일 함께 모여 가정예배 시간을 가질 수 있을 때는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 a. 식탁에서 기도하기, 그리고 성경 읽기와 찬송이 뒤따를 수 있다;
- b. 아침기도와 저녁기도;
- c.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성찰하고 암송한다;
- d. 성가, 찬송가, 영가 및 그 밖의 찬가를 부른다;
- e. 베풀고 나누는 표현을 한다.

가정의 구성원들이 각자 하는 일이 다르고 시간을 서로 맞추는 것이 쉽지 않은 만큼, 정기적인 가정예배시간을 지키는 훈련을 쌓는 것이 특별히 중요하다. 만일 가정의 구성원들이 다함께 모여 가정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공통 시간을 정해두고 개인예배를 드리고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지킬 수 있다.

W-5.7002
가정예배시의
어린이

부모 둘다 또는 자녀교육을 책임진 부모 중 한 사람은 자녀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가정예배를 드리고 의논하고 지시를 함으로써 크리스찬 예배에 대해 가르친다. 자녀들은 가정예배에서 다음과 같이 참여한다

- a. 기도하고 찬송한다
- b. 성경 이야기를 듣고 말한다
- c. 성경을 읽고 암송한다
- d. 예배를 인도하고 함께 나눈다
- e. 행동으로 실천하고 응답한다.

자녀들은 주일예배 때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예배의 적절한 요소들에 대해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W-2.3012-3013; W-3.1004; W-3.3100; W-3.5202; W-6.2000).

W-5.7003
특별한 날과 절기

가정예배는 교회생활과 가족들의 생활 가운데서 특별한 표창을 받거나 축하 행사가 있을 때 이런 것들이 반영되어야 한다. 생일, 세례받은 날, 그 밖의 특별 연례 기념일들은 특별히 기념해야 할 날들이다. 또한 가정예배에서 주의날과 세례식과 성찬식을 기다리며 기억하는 것도 역시 중요하다. 교회력에 의한 절기는 대강절, 사순절의 절기, 크리스마스와 부활절의 기념 등, 특별히 가정예배에서 잘 지켜지는 행사들로서 가정예배를 위한 방향과 내용을 제공해 준다. 이런 상황에서 가정예배는 자연의 절기 변화, 세계와 국가와 지역사회 삶의 리듬을 인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세상을 살아가도록 신자들을 일깨우는 사건들과 필요에 대해서 인식한다. (W-2.3014; W-3.2000; W-3.3600)

W-6.0000

제 6장 신앙공동체 내에서의 예배와 목회

W-6.1000

1. 교회 내의 상호 목회

W-6.1001
목회에서
하나님께 응답

하나님은 개인예배 및 공동 예배를 통해 사람들을 신앙과 제자 직으로 부르신다.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은 신앙공동체 생활에서 세상 목회를 하고 상호 목회를 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바치고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바친다(W-1.1000; W-5.1000; F-1.0301; F-1.0302a; F-1.0403).

W-6.1002
교회 안에서
상호 목회

교회 안에서 상호 목회는 선포된 말씀을 듣고, 집계된 성찬을 받고, 예배에서 기도를 봉헌하고 함께 나누면서 생기고 키워진다.

W-6.1003
양육과
목회적 돌봄

양육과 목회적 돌봄은 크리스천들이 서로에게 봉사하는 방식들이다. 크리스천 공동체 안에서 신자와 자녀들의 양육은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숙에 이르게 하는 하나의 과정이다. 목회적 돌봄은 크리스천이 일상생활에서 그리고 때때로 발생하는 개인과 공동의 필요와 위기가 있을 때 서로에게 제공하는 협조를 의미한다. 양육은 종종 목회적 돌봄을 포함하고, 목회적 돌봄은 크리스천 양육을 증진한다.

W-6.2000

2. 크리스천 양육

W-6.2001
공동체에
가담함

크리스천 공동체는 전체적인 삶과 삶의 변천과정에서 소속 구성원들에게 양육을 제공한다. 교회는 신앙공동체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양육을 제공한다.

- a. 세례준비를 시킴으로써,
- b. 신앙공동체의 생활에 교인들을 포함시킴으로써,
- c. 그들을 예배에 참여하고 주의 만찬에 나오도록 영접함으로써,
- d.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로서의 정체성을 주장하도록 지원함으로써,
- e. 그들로 하여금 세상으로 파송받은 제자로서 살게 준비를 갖추게 함으로써. (W-2.3012; W-2.3013; W-4.2002; W-4.2003)

W-6.2002
책임 수용

교회는 이 세상에서 책임을 떠맡도록 교인들을 양육시키며 그들을 다음과 같이 지원한다.

- a. 자기 발견 및 세계 인식을 하도록
- b. 자기 수련과 제자직을 수행하도록
- c. 도덕적 윤리적 가치관을 개발하도록
- d. 교육과 직업에 대해 이해에 입각한 선택을 하도록
- e. 개인관계와 결혼에 대해 현명한 결단을 하도록 지원한다.

W-6.2003
소명 생활

교회는 크리스천 소명을 발견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듯이, 공생활과 활동에서 크리스천 소명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도 양육을 제공한다. (W-5.6000) 교회는 제자직에서 그들을 다음과 같이 지도하고 지원한다.

- a. 신앙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대하는 목회자로서,
- b. 물질적 자원, 시간과 재능의 청지기로서,
- c. 특히 가족의 일원으로서, 특히 그들 가정의 다른 일원들과 믿음을 함께 나누는 역할에서,
- d. 책임 있는 시민으로서,
- e.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W-6.2004
변화에 응답

교인이 새로운 제한과 새로운 자유를 부여하는 환경에서 그들의 제자직을 계속해 나갈 때, 교회는 교인들을 지도하고 지원할 양육을 제공해야 한다.

W-6.2005
교회의 양육 제공자

세례 예식에서 교인들은 성령의 능력을 믿으며, 보편 교회를 위해 크리스천 양육을 제공할 책임을 서약한다(W-2.3013; W-3.3603). 당회와 사역장로(장로)들은 교회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감독하는 책임, 사역장로(장로)와 집사들을 훈련하는 책임, 그리고 교인들에게 제자도 영성을 함양하는 책임을 가진다(G-2.0301; G-3.0201). 목사는 말씀과 성례전의 목회를 통하여, 교인들과 함께 그리고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함으로써, 공식 및 비공식 가르침으로, 그리고 모범을 보임으로써 그 공동체를 양육한다 (G-2.0104; G-2.0504). 특별한 재능과 교육으로 교육 목회에 준비되어 있는, 신앙공동체 내의 어떤 이들은 양육하는 지도자 과제를 맡도록 부름을 받는다. 교사들, 상담자, 또 당회의 임명을 받은 그 밖의 지도자들은 교육과 양육을 책임진 사람들을 지도하고 가르치고 준비되게 한다(W-3.3503). 부모와 부모의 책임을 맡은 사람들은 교회의 신앙을 자녀들과 함께 나눈다(W-4.3002; W-5.7000).

W-6.2006
양육자료와
기회

교회 양육의 주요 표준과 자원은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다. 교회교육을 위한 중요한 기회는 말씀이 선포되고 성례전이 거행되는 주일 낮 예배이다. 교회공동체의 모든 교인, 곧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게 이르기까지 모두 다 참석하고 참여하도록 권해야 한다. 주일낮 정기예배에 참여할 수 없게 만드는 교육 활동을 계획해서는안 된다 (W-3.1004). 기독교인 양육을 위한 중요하고도 지속적인 현장은 예배와 교육과 실제 모범을 통해 신앙을 서로 나누는 가정이다. 교회는 다음과 같이 양육의 다른 기회를 제공한다.

- a. 교회학교의 교실에서,
- b. 교육과 양육 목적으로 조직된 다른 그룹 및 친교에서,
- c. 봉사와 선교 목적으로 모인 그룹과 단체에서,
- d. 위원회, 이사회, 또는 공의회에서,
- e. 수양회, 캠프, 또는 컨퍼런스에서.

교회의 신앙고백 문서는 양육의 지침을 제공한다 (F-2.00). 연구와 지도의 형태와 내용은 교회의 예배적, 문화적, 그리고 민족적 유산의 풍부한 자료에 의해서 마련된다. 크리스천 교육을 다양하게 접근하도록 개발된 교재들은 당회의 승인을 받은 바,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G-3.0201).

W-6.3000

3. 목회적 돌봄

W-6.3001

크리스천 공동체는 교인들의 개인생활과 공동생활에서 목회적 돌봄을 제공한다. 교회는 여러 다른 차원에서 상호 돌봄의 목회를 제공할 수 있다.

W-6.3002

모든 신자에 의한 돌봄

모든 크리스천들은 일상 생활에서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 힘들 때나 어려울 때 지원해주고,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면서 상호돌봄을 제공하도록 부름 받았다. 이와 같은 돌봄은 주로 신앙공동체가 함께 예배드리면서 주어진다. 또한 이것은 교인들이 공동체에서 상호 교류하면서, 양육 그룹에 들어옴으로써, 또는 교회의 목회사역을 수행해 나감으로써 제공된다. 사역장로(장로)들과 집사들과 목사들은 이러한 공동 목회적 돌봄의 특별한 책임을 수행하도록 부름 받았다 (G-2.0501; G-2.0301; G-2.0201).

W-6.3003

목회 상담

신앙공동체 내의 특별한 재능과 적절한 훈련을 받은 이들은 이 목적으로 조직된 그룹들 및 개인들과 함께, 목회상담을 하는 특별 목회를 하도록 교회에서 부름 받았다.

- W-6.3004
상담 소개
- 어떤 경우에는 목회적 돌봄 사역에 있어서 적절한 상담이나 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특수한 사역을 하는 교역장로 (목사)나 다른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이 필요하다..
- W-6.3005
환자의 돌봄
- 교회는 사람들이 특별히 어려울 때나 삶의 위기에 있을 때 목회적 돌봄을 제공한다. 교인이 아플 때 크리스천들은 기도와 문병을 함으로써, 그리고 병자와 병자 가정 및 가족, 친지들에게 애정과 지원을 표시하는 그 밖의 행동으로써 응답해야 한다. 병이 위중하거나 오래 갈 때, 목회적 돌봄을 제공하는 이들은 환자와 관련된 모든 일들이 겪는 힘들고 어려운 사정에 특별히 관심을 두어야 한다. 말기 환자일 경우, 하나님 신뢰를 중재하고, 고통에서 의지가 되어주고, 괴로움을 위로하고, 죽음에 직면했을 때 희망을 주는 특별한 돌봄이 요구된다.
- W-6.3006
사망시의 돌봄
- 죽음이 임박했을 때 목회적 돌봄을 제공하는 교회는 즉시 목사의 입회를 제공하고, 상실과 고통을 함께 나누며, 부활의 능력에 대한 믿음과 희망을 심어주고, 평범한 행위에서 돌봄과 사랑을 표시한다. 상실의 슬픔과 적응의 시기 중에도 교회는 특별한 목회적 돌봄을 계속한다(W-4.10000).
- W-6.3007
상실의 돌봄
- 삶에는 다른 상실도 있다. 즉,
- a. 힘의 상실,
 - b. 한 때는 중요했던 관계가 멀어짐,
 - c. 자식들이 집을 떠나갈 때,
 - d. 중요한 직장, 생계유지 수단, 또는 경제적 안정 상실,
 - e. 결혼이 별거나 이혼으로 끝나게 되는 것. 이러한 상실들은 슬픔의 기회를 주고 재화와 적응의 과정에서 실제적인 도움과 지원을 제공하는 목회적 돌봄을 요구한다.
- W-6.3008
깨어진 관계의 돌봄
- 교회는 목회적 돌봄을 제공하고, 이 것은 가정과 가족간의 관계, 학교와 직장에서의 관계, 이웃과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 교회 안의 관계를 파괴로 이끄는 상처와 적대감과 갈등의 일상생활에서 헤어날 수 없는 사람들을 치유하고 지원할 사람들을 부른다(W-4.8000).

W-6.3009
죄와 용서에서 돌봄

목회적 돌봄에 있어서 치유에로 부름은 각자의 삶 속에 죄가 실재하고, 이것이 인간 부서짐의 근원이라고 인식하는 것을 포함한다. 믿음의 공동체는 하나님 사랑이 사람들에게 은총을 주신다고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전한다:

- a. 부서짐에 대한 자신들의 죄와 공모를 고백하라
- b. 슬픔과 변화할 결심으로 회개하라,
- c.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그 용서를 다른 사람들에게로 확장하라,
- d.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라, 그리고 그들의 용서를 또한 받아들이라,
- e. 부서짐 안에서 화해를 향해 정진하라,
- f. 치유와 화평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라 (W-4.8000).

죄의 고백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용서를 선언하고, 회개를 촉구하며, 새 삶을 향한 투쟁을 지지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용서하고 용서받도록 격려하고, 그리고 화해를 조정하는 것이 적절한 목회적 돌봄 행위이다.

W-6.3010
삶의 변천기에 돌봄

교회는 인간생활에 기쁨과 슬픔을 가져오는 변천이 있음을 인정한다:

- a. 아이들이 태어나서 자라서 독립하고, 그들 부모는 나이들어 자식들에게 의탁하게 된다;
- b. 사람들은 일하기 시작하고 직업을 바꾸고 은퇴하게 된다;
- c. 가족이 이루어지고 새로운 거처로 옮기고 가족수가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한다;
- d. 사람들은 힘을 얻고 회복하고 새 결단을 한다.

목회적 돌봄의 사역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저런 적응의 때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즐기도록 하며, 삶의 새로운 역할을 향해 나아가도록 지원하고, 생의 변천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도록 돕는다.

W-6.3011 신앙공동체는 예배를 통하여 상호 돌봄의 사역에 참여하고, 교인
목회적 돌봄을 위한 예배자료 들은 목회적 돌봄을 주기 위해 예배자료를 사용하다.

a. 성경은 지원과 위로와 지침을 구하는 핵심 자료이다. 설교와 찬양으로 하는 말씀의 선포는 필요를 인정하도록 하며 돌봄을 제공할 수 있게 한다 (W-2.2000; W-3.3400)

b. 기도는 침묵으로나 말로나 노래로나 간에,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에 대해 감사드리고 중재하고 간구하고 인식하는 것이다. 손을 얹고 기름을 부으며 기도드리는 것은 치유받고 능력을 얻고 지속되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다(W-2.1000; W-3.3506; W-3.5400).

c. 성찬식을 병원에서나 가정에서 거행하는 일은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을 축하하는 것이고, 신앙공동체를 성전 안에 국한하지 않고 성전 밖으로 확대시키는 것이다(W-2.3000-4000; W-3.3600).

d. 주기도, 시편, 송영, 축도, 그리고 그 밖의 회중예배에서 사용하는 익숙한 순서들은 특수 사정이나 필요에 의해 고립된 사람들에게게까지 신앙공동체의 지원과 돌봄을 확대시키며, 지역사회에서 그들의 존재와 위치가 있음을 상기시켜준다.

e. 추모의 시간, 사람들에게 대한 관심 표명, 중재의 기도, 그리고 그 밖의 단체예배 행사들을 거행함으로써,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을 신앙공동체 예배에로 끌어들인다(W-3.3500; W-3.3700).

W-6.4000 예배와 목회 크리스천 공동체에서 하나님 예배는 목회적 돌봄의 사역의 근본 이고 맥락이며, 이것은 믿음 안에서 양육하는 목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다.

W-7.0000

제7장 세계 속에서의 교회의 예배와 목회

W-7.1000

1. 예배와 선교

W-7.1001

예배와 목회

교회는 그 목회와 예배를 통하여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한다. 예배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의 마지막 부활로서 약속하신 거룩한 통치의 실존을 제시한다. 말씀 안에서 온전하게 예배하는 공동체, 그리고 기도와 성례전으로 이루는 일치감은 하나님의 통치의 실재를 표시한다. 목회하는 교회는 복음 선포를 통하여, 연민과 화해의 사역을 통하여, 창조와 생명의 창지기 정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증거한다. 하나님 통치의 표징은 또한 성령의 주도로 사람들이 정의와 평화를 추구하게 하는 세상 어느 곳에서나 나타난다 (F-1.01).

W-7.1002

예배와 선교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서 교회를 불러 세계에 봉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에 참여케 하신다. 교회가 세계 선교에 참여할 때, 교회는 세계를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부름을 받은 것이다 (F-1.0304).

W-7.2000

2. 복음 선포와 전도

W-7.2001

전도의 범위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를 보내시고 다음과 같이 하라고 명하신다.

- a.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이 하나님께로 화해한다는 복음을 알리라,
- b.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믿음을 갖고 순종하라고 하시는 예수의 부르심을 전하라,
- c. 백성을 자유케 하시려고 예수께서 자신을 내어주셨음을 말과 행동으로 선포하라,
- d.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와 영원히 충만한 삶을 제공하라,
- e. 모든 곳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요 구세주로 믿고 따르라,
- f. 사람들을 신앙공동체 안으로 초대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라 하신다 (F-1.0304; F-1.03).

W-7.2002
전도의 맥락

예배는 백성들이 복음의 선포를 정규적으로 듣는 주요한 맥락이며,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믿음으로 결단의 행동으로 응답할 기회를 얻으며, 공동체의 양육과 지지를 받는 곳이다 (W-2.2000; W-2.5001; W-3.3501-3503; W-3.5500); 교회의 삶에서 성령의 변화시키는 힘은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행위에서, 자기를 내어주고 받아들이는 행위에서 계시되며, 사람들을 분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나누는 신앙공동체 안으로 이끌어들이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자신의 일을 천직으로 알고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백성으로서 삶을 함께 나누자고, 예배를 함께 드리게 나오라고 초대한다.

W-7.3000

W-7.3001
연민의 목회

3. 불쌍히 여김

하나님은 성령의 힘으로 교회를 보내 세상에서 연민을 실천하라고 하신다.

- a. 굶주린 자들을 먹이라,
- b. 슬퍼하는 자들을 위로하라,
- c. 병자들을 돌보라,
- d. 죄수들을 면회하라,
- e. 포로들을 풀어주라,
- f. 노숙자들에게 쉼터를 제공하라,
- g. 외로운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라 하신다.

W-7.3002
연민과 예배

하나님의 연민으로 부르심은 예배에서 선포된다. 부름받은 자들은 말씀 선포와 성례전에 의해 연민의 사역을 하도록 준비되며 힘을 얻는다. 그 부르심은 고백과 중재의 기도를 통해, 자기를 내어주는 행동으로, 그리고 연민의 목회에서 나누어 쓰여질 물질을 바치는 가운데서 신실한 응답으로 받아들여진다 (W-2.1002; W-2.5000; W-3.3505-3507). 부름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연민의 행위를 행하도록 교회의 파송을 받고 보냄을 받는다 (W-2.6000; W-3.3701; W-4.3000).

W-7.3003
연민과 주창

단체적으로 행하든지 개별적으로 행하든지 간에 그러한 연민의 행위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사역이다. 교회는 사람들의 시급한 필요에 조력하고 상처를 달래주도록 부름받았다. 또한 교회는 부서짐과 왜곡을 일으키거나 조장하는 구조와 제도에 대해 적극 관여하도록 부름 받았다. 그리스도인들은 주창운동과 연민의 행동으로, 교회의 공동사역의 봉사료, 또 여기에 목표를 두고 헌신하고 기관들 및 조직들과 협력함으로써 부름에 응답한다 (F-1.03).

W-7.3004
성실한 동정

오늘의 신실한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서 다음과 같이 연민을 표현한다.

- a. 궁핍한 자들의 인간적 존엄성을 존중하며,
- b. 자격 없는 자로 판단된 사람까지도 돕겠다는 열린 마음으로,
- c. 자신들의 안락과 안전을 무릅쓰려는 기꺼운 마음으로,
- d. 주고 받을 준비가 된 상태에서,
- e. 봉사의 사역을 하는 중에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예배공동체의 새롭게 하는 힘과 항상 교통하는 가운데(F-1.02).

W-7.4000

4. 화해: 정의와 평화

W-7.4001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

하나님은 성령의 힘으로 교회를 보내사,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와 사랑의 통치를 세상에서 이룩하는 일을 그리스도와 함께 나누도록 하신다(F-1.02).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화해는 정의와 평화의 토대이다(1967년 신앙고백 9.45).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를 예배에서 선포하고 영접하고 실천하며, 교회 자체의 삶과 세계 안에서 정의와 평화를 위해 정진하는데 헌신한다.

W-7.4002
정의 실행

정의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 속에서 공정하고 정직한 거래를 위해, 자기 권리를 주장할 힘이 없는 자들에게 권리를 주도록 세우신 질서이다. 정의를 실행하는 성경적 비전은 다음을 요구한다.

- a. 개인이나 공공업무를 정직한 거래,
- b. 공동의 선(善)을 위한 힘의 행사,

W-7.3004: 막1:32-38; 눅 6:12

W-7.4000: 1967년도 신앙고백 9.43-9.47

W-7.4002: 출 22:21-27; 레 19:33, 34; 시 34, 82; 사 2:1-5, 32:1-8, 16, 17; 암 5:6-15; 미 6:8; 마 23:23-24; 눅 4:16-21; 웨스트민스터고백 6.127-6.128; 대요리문답 7.246, 7.251, 7.252, 7.254, 7.255; 1967년도 신앙고백 9.43-9.47

- c. 거부 당해온 자신의 존엄성과 자유와 존중을 추구하는 자들을 지지,
- d. 공정한 법을 위해, 법의 올바른 집행을 위해 정진,
- e. 그 땅에 들어온 이방인들을 환영,
- f. 빈부 괴리를 극복하기 위한 추구,
- g. 정치적 억압과 착취에 반대하는 증언,
- h. 교회와 이 나라 안에서, 그리고 전세계에서, 개인과 그룹과 민족들을 억압하는 비리를 시정하도록 요구한다.

W-7.4003
평화 조장

정의 없는 평화는 없다. 부서짐과 폭력과 불의가 있는 어느 곳으로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평화 만들기에 부름 받는다.

a. 역사와 문화에 의해 갈라지고 분리된 보편교회 안에서, 상호 불신에 의해 내적으로 양극화된 교단들에서, 분열과 알력이 난무하는 개교회들 안에서;

b. 국가들이 국가안보를 다른 무엇보다 우위에 두는 세상에서, 종교나 민족이나 이념의 광적인 행위가 폭력을 도발하는 세상에서, 경제적 또는 정치적 힘을 쟁취하고 지키려는 욕망이 폭동과 전쟁을 유발하는 세상에서;

c. 범죄와 공포 분위기에 휩싸인 공동체 내에서, 잔인한 경쟁과 질서를 뒤집어 엮는 반동으로 점철된 학교와 일터에서, 스스로 분열하고 폭력으로 상처 입고 공포로 마비된 가족과 가정에서.

W-7.4004
화해 예배

화해, 정의 및 평화의 목회는 교회의 하나님 예배에서 시작되고 양육된다. 하나님의 말씀 선포 가운데서, 사람들은 자신들로 하여금 이 같은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게 하는 죄의식과 공포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확신을 얻는다. 세례와 주의 성찬에서 교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고, 성령을 통해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고, 모든 경계와 분열을 뛰어넘어 신앙의 형제자매로서 서로를 인정한다(W-2.3000-4000). 기도 가운데서 충실한 신자는 인간의 부서짐과 폭력과 불의를 겪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탄원을 올리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와 평화와 정의를 하나님께 감사하고; 정의를 구하고 평화를 추구하는 화해자가 될 것을 결단한다(W-2.1000; W-2.6000; W-3.3506; W-3.3700).

W-7.4003: 사 2:1-5, 32:16, 17; 미 6:8; 약 3:13-18; 웨스트민스터고백 6.128; 대요리문답 7.245, 7.246; 1967년도 신앙고백 9.43-9.47, 9.53-9.56

W-7.5000

5. 창조계와 생명의 돌봄

W-7.5001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은 성령의 힘으로 교회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창조작업과 보존작업에 참여하기를 명하신다. 하나님은 인류에게 지구를 다스리고, 길들이고, 지속시키고, 다시 꾸미고, 다시 채우고, 재생시키라는 막강한 힘과 힘든 책임을 주셨다.

W-7.5002

예배와 창조계의 이용

예배에서 크리스천은 창조된 우주, 지구, 모든 생명과 모든 물질을 주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를 드린다. 그들은 청지기가 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음을 인정한다. 그들은 창조계와 생명을 돌보는 일에 스스로 실패했음을 고백한다. 그들은 말씀에서 선포되고 성례전에서 인증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피조물의 구속과 갱생의 약속을 즐거워한다. 그들은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실 그 날까지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 것을 결심한다 (W-1.0000).

W-7.5003

창조계의 청지기

하나님의 창조계의 청지기로써, 지구의 수탁자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음의 일을 하도록 부름 받았다.

- a. 약탈이나 오염이나 파괴 없이 지구 자원을 책임있게 이용하도록,
- b. 생명을 보존하고 향상시키는 목적으로, 지구환경에 우호적인 기술방식과 절차를 개발시키도록,
- c. 생산과 소비를 하되,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의 생명유지에 충분할 만큼 제공되는 방식으로,
- d. 번식과 재생에 있어서 책임 있는 태도와 실행을 위해,
- e. 모든 피조물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아름다움, 질서, 건강, 그리고 평화를 창조하기 위해 지구의 산물을 사용하고 형성하도록.

모든 창조의 선물에 감사하면서 신자들은 찬양의 표현으로서, 자기 봉헌의 상징으로서, 그리고 지구의 산물을 함께 나누는 결심의 표시로서, 예배시에 하나님께 물질을 바친다 (W-2.5000; W-3.3507; W-5.5005; W-5.6000).

W-7.6000

W-7.6001

교회와 신국

6. 교회와 하나님의 통치

예배와 봉사 안에서 교회는 하나님 통치의 표시이며, 이는 현재의 실현이고 미래의 약속이다. 교회의 예배와 봉사가 하나님 나라를 오도록 만드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적대적이었던 시대에도 교회는 예배드리고 섬겼으며, 하나님의 통치권이 이미 세워졌다는 신념과 하나님의 승리가 궁극적으로 나타나리라는 굳은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

W-7.6002

확신과 희망

현 시대에서 전도와 창조계의 돌봄, 연민과 화해에 대한 교회의 사역은 하나님의 통치의 표징이다. 또한 이것은 생명을 부인하는 상황의 한복판에서도 희망을 제시한다. 그 희망은 교회사역의 성공이나 교회 예배의 효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사역하고 예배드릴 때 교회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지속된다.

W-7.7000

W-7.7001

찬양을 드림

7. 찬양으로서의 예배

예배 안에서 교회는 변화되고 갱신되며 만민의 준비를 갖추게 되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위해 섬기도록 보냄을 받는다. 교회는 그 날을 기다린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이의 무릎을 예수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빌 2:9-11).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곧 우리 구주 홀로 하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고 전부터 이제와 세세에 있을지어다

(유 1:24).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계 7:12).

권징조례

The Rules of Discipline

[Approved 1996, Effective July 6, 1996.]

D-1.0000

제 1장 교회권징의 원리

전 문

D-1.0101
교회권징

교회 권징은 교회의 교인들을 인도하고 통제하고 바른 방향으로 교육시키며, 또 범법자에게는 건설적인 방향으로 비판하여 선도하기 위한 그리스도께서 주신 교회의 권위행사이다. 교회권징 절차는 세속적 사법제도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고, 세속적인 사법절차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기 위해 존재한다. 권징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이 교인됨의 의미를 분명히 밝힘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신앙 공동체의 생활 가운데서 개인을 양육 시킴으로써 교회의 순결성을 보존하고; 모든 관련 당사자들에 대해 공의로움과 인애를 이룩하며; 잘못 행동하는 교인의 언동을 교정하거나 제재하여 회개와 회복에 이르도록 하고; 권징사유에 의해 손상된 개인의 위엄을 지키고; 불화와 분열의 원인들을 제거하여 교회의 일치를 회복하고; 과정의 올바르고 신속하고 실속 있는 결정을 확보하는 데 있다. 이 모든 점에서는 모든 당사자들은 절차상 안전과 합당한 과정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 조례를 마련한 의도가 바로 여기에 있다.

D-1.0102
그리스도의
교회에 부여된 권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교회에 주신 그 권위, 곧 교회가 권징을 행사하는 데서 나타난 권위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파괴하자는 것이 아니라 세우기 위함이며, 또 벌하자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자는 것이다. 권징은 분노로 할 것이 아니라 자비한 마음으로 해야만 한다. 그리하여 교회의 큰 목적을 달성하게 되고, 또 그리스도의 날에 하나님의 모든 자녀가 흠없이 나타날 수 있게 된다

D-1.0103
조정과 중재

분쟁 없이 견해 차이를 조정하고 중재하고 조절하려는 전통적인 성서적 의무는 본 권징조례로 인해 감소되지 않는다. 권징조례가 교회 내에서 필요시 사법절차가 수행되어야 할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어떤 방식의 사법절차를 권장하거나 비용을 더 들게 하거나 더 힘들게 하려는 데 그 의도나 목적이 있지 않다.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마태 5:25)는 교인에 대한 성서적 의무가 줄어들거나 감소되지 않는다. 모든 교회 교인의 의무는 불화, 불평, 비행이나 변칙의 조절이나 해결을 (기도함으로 신중히) 하려고 노력하는 일과 또 기도하는 심정으로 논의한 후 그것들이 교회의 순결과 목적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고 확정되지 않는 경우 외에는 본 권징조례 하에서 공식 절차를 피하도록 노력하는 일이다.

D-2.0000

제2장 사법절차의 정의

D-2.0100

1. 사법절차

D-2.0101

교회권징

사법절차는 목회적 돌봄과 감독의 맥락에서 교회권징이 수행되는 수단이다. 그것은 다음 사항을 위해 교회의 **공의회**들에 의한 권위 행사이다.

변칙과 비행 방지와 시정

a. **공의회**들, 총회 선교사역부와 총회 산하 기관의 변칙과 비행의 예방과 교정(교정사건, D-6.0000);

위법의 시정

b. 개인들에 의한 위법의 방지와 시정 (징계사건, D-10.0000).

D-2.0102

교회 **공의회**들

사법절차를 위한 교회의 **공의회**들은 당회, 노회, 대회, 그리고 총회이다. 당회는 자체적으로 재판을 주관한다. 노회, 대회, 그리고 총회는 상임사법 전권위원회를 통하여 재판을 주관하고 청문회를 가진다.

D-2.0103

해결의

대안형식

D-1.0103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조사위원회는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피소인**의 서면동의를 받아, 전문교육과 자격증을 받은 조정자들과 중재자들에 의해 처리되는 해결의 대안 형식을 개시할 수 있다. 이 절차의 취지는 조정과 중재를 통하여 관련 인물들에 대한 연민과 정의의 목표에 달성하는 것이다.

이 절차에 사용되거나 관련된 진술은 서면이든 구두이든 간에 차후 조사나 재판에서 증거능력을 가질 수 없다.

D-2.0200

2. 사건의 형태

D-2.0201

교정이나 징계

사법절차는 두가지 사건으로 이루어진다:

D-2.0202

교정사건

교정사건은 하위 **공의회**나 총회 선교사역부, 또는 총회 산하 기관의 변칙과 비행이 상위 **공의회**에 의해 교정되어질 수 있는 사건이다.

변칙

a. 변칙이란 잘못된 결정이나 행동을 뜻한다.

비행/직무태만

b. 비행/직무태만이란 행동의 결여나 불이행이다.

D-2.0203

징계사건

징계사건이란 교회 교인이나 **직제사역자**가 위법으로 책벌받을 수 있는 사건을 뜻한다.

직제사역자

a. 직제사역자는 **교역장로(목사)**, **사역장로(장로)**와 집사이다.

위법

b. 위법이란 교회의 교인이나 **직제사역자**가 성경이나 미국장로교 헌법에 위배되는 어떤 행위나 행동의 결여이다.

D-3.0000

제3장 사법절차 관할권

D-3.0101

사법절차에 있어서 각 공의회는 다음과 같은 관할권을 갖는다;

관할권

당회

a. 개체교회의 당회는 그 교회 교인들을 개입된 징계사건에 대해 원 관할권을 갖는다.

노회

b. (1) 노회는 그 노회 교역장로(목사) 회원들과 그 노회 소속의 지교회를 섬기는 평신도 목회자들이 개입된 징계사건에 대해 원 관할권을 갖는다 (G-3.0307).

(2) 회원권을 가진 노회가 아닌 다른 노회 지경 내에서 사역을 하는 교역장로(목사)는, 그 사역이 노회의 관할권에 속하든지 안하든지 상관없이, 징계의 목적을 위하여서는 현재 사역을 하고 있는 노회의 관할권에 종속된다. 이 조항에 따라 교역장로(목사)에 대해 징계 절차가 시작되는 경우, 회원권을 가진 노회에 통보되어야 한다. 교역장로(목사)가 사역하고 있는 지역의 경계 안에 있는 노회가 그 징계 관할권을 행사하지 않고, 회원권을 가지고 있는 노회에게 그 관할권을 넘겨주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 혹은 모든 징계 심사, 해결의 대안 방안, 혹은 재판에 있어 회원권을 가진 노회와 협력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본 단락은 교역장로(목사)가 다음과 같은 인정된 목회에 사역할 경우에는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즉 당회 이상의 공의회나 이들 공의회에 관련된 기관의 직원과 같은 본 교단의 다른 사역; 또는 들 또는 그 이상의 교단들(그 중의 하나는 본 교단임)이 후원하는 기관 - 예를 들면, 연합 선교 교회, 전문화된 특수 사역, 행정 사무실, 교단간의 대행기관 - 에서의 사역; 또는 미국 밖에 있는 교단과 함께 관련된 선교에 동역자로 사역하는 경우 등이다.

노회, 대회,
총회

c. 노회와 대회와 총회는 교정사건(D-6.0000)과 상소사건(D-8.0000, D-13.0000)에 대해 관할권을 갖는다.

교회해산

d. 교회가 해산될 때, 노회는 당회에 의해 시작되었으나 종결되지 않은 모든 징계사건에 대해 확정지어야 한다.

D-3.0102

더이상 사법적
결의 못함

교정사건이건 징계사건이건 간에,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에 일단 사건이 회부될 경우, 발의한 공의회는 그 사건에 관하여 그 이상 사법적 조치를 취할 수 없다.

D-3.0103

하위 공의회가
결의하지 못할
때

하위 공의회가 교정사건에 대한 항의나 징계사건에 대한 혐의가 제기되고 나서 90일 동안 특정 교정사건이나 징계사건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상위 공의회가 어느 당사자의 요청에 의해 사건의 관할권을 맡을 수 있다. 상위 공의회는 하위 공의회에 사건처리에 관한 특정한 지시를 보내거나 그 문제 자체를 종결지을 수도 있다.

D-3.0104 한 노회에서 다른 노회로 이명한 교역장로(목사)는 두 번째 노회에서 받아들여지
 이명한 교역장 기까지는 첫번째 노회의 관할권에 속한다. 한 노회에 의해 다른 교단으로 이명한 교
 로(목사)의 관 역장로(목사)는 그 교단에 입교되기까지는 그 노회의 관할권에 속한다.
 할권

D-3.0105 각 공의회는 다른 모든 공의회가 *권장조례*에 의해 취한 판결과 결정과 명령들을
 판결과 결정의 집행하고 인정해야 한다.

집행 및 인정

D-3.0106 사법절차에 있어서 관할권은 교회 직제사역자나 교인이 그 교회의 관할권 포기
 관할권의 선언을 할 때 종결된다. 만일 징계사건의 피소자가 G-2.0407과 G-2.0509에 명시된 대
 종결시 로 관할권 포기 선언을 할 경우, 서기나 지정서기는 공의회에 피소자의 이름, 조사나
 재판 도중에 관할권을 포기한 사실과 날짜, 제기된 혐의사항을 포함하여, 그 당시 사
 안의 진행상태와 포기선언을 보고해야 한다.

D-4.0000

제4장 위임

D-4.0100

1. 위임

D-4.0101

정의

위임은 당회에 의해 또는 노회나 대회의 상임 사법전권위원회에 의해 미결의 교정사건 및 징계사건의 재판, 결정, 또는 상소 청문을 차상위 **공의회**로 위임하는 서면청원이다.

D-4.0102

적절한 내용

위임의 적절한 내용은 상위 **공의회**가 그 사건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또는 필요한지에 대한 사안들과 논점들을 포함한다.

D-4.0103

하위 **공의회**
의무

상위 **공의회**에 서면으로 위임 청원을 할 때, 하위 공의회는 그 청원의 이유를 상술해야 하고 그 사건 절차의 전체 기록을 송부해야 하며,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어떠한 결정도 취할 수 없다. 만일 위임 청원이 수락되면, 재판이나 상소 청문을 포함한 모든 절차는 그 이후부터는 상위 **공의회**에서 주관한다.

D-4.0200

2. 위임 결의

D-4.0201

상위 **공의회** 의무

위임 청원이 접수되면, 상위 **공의회** 지정서기가 이를 상임사법 전권 위원회에 송부하여 사건을 맡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D-4.0202

접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 위임 청원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면, 동 위원회가 재판이나 결정 또는 상소의 청문을 주관한다.

D-4.0203

거부

상임사법 전권위원회는 위임 사건을 맡기를 거부하고 하위 **공의회**로 돌려보낼 수 있으며, 거부하는 사유를 첨부한다. 그렇게 될 경우, 하위 **공의회**가 재판이나 상소 청문을 주관하고 판결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D-5.0000

제5장 상임사법 전권위원회

D-5.0100

1.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에 봉사

D-5.0101
선출

총회, 각 대회 혹은 협력하는 대회들과 각 노회는 그 관할권에 속하는 교역장로(목사)와 사역장로(장로) 중에서 상임사법 전권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각 전권위원회는 가능한 한 교역장로(목사)와 사역장로(장로)가 거의 동수로 구성되어야 한다. 전권위원회의 위원수가 홀수일 경우에는 그 추가되는 위원은 교역장로(목사)일 수도 있고 사역장로(장로)일 수도 있다. 전권위원회는 각 산하 대회로부터 오는 1 명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총회의 전권위원회는 각 산하 대회로부터 오는 1 명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대회의 전권위원회는 가능한 한 산하 노회 가운데서 균등하게 배분된 11 명 이상으로 구성해야 된다. 11 개 이하의 노회를 갖고 있는 대회에서는 각 노회가 적어도 1 명을 보내야 한다. 둘 혹은 그 이상의 대회들이 공유된 상임사법전권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그 전권위원회 위원 수가 12 명 이하이어서는 안되며, 각 대회는 가능한대로 각 대회에 속한 노회의 숫자에 비례해서 위원들을 선출해야 한다. 협력하는 대회들은 공유된 상임사법전권위원회에 접수된 사건들을 처리하기 위하여 그들 사이에 한 명의 정서기를 지명해야 한다. 노회의 전권위원회는 노회 산하 각 개교회로부터 사역장로(장로) 위원 1 인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7 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노회의 전권위원회 위원 중 2 인을 징계사건의 조사가 진행중인 동안 조사 위원회 절차 검토에 대한 청원 검토 (D-10.0204) 및 고발을 접수하지 아니하는 결정 검토에 대한 청원 검토 (D-10.0303) 를 하기 위해 선정한다. 이 두 위원은 추후의 심리에 참여할 수 없다. 당회는 노회의 전권위원회에 청원 양식 중 하나를 회부한다.

D-5.0102
임기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각 위원의 임기는 6년이어야 한다. 단, 총회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회원권은 그 위원이 공천받은 대회 밖에 있는 개교회 또는 노회로 회원권을 이명할 때 끝난다. 매 짝수 연도에 총회는 그때 생긴 공석을 메꾸기 위해 6년 임기로 위원들을 선출해야 한다. 그들의 임기는 그들을 선출한 총회가 폐회될 때부터 시작한다.

D-5.0103
연 조

대회나 노회는 전권위원들은 각 3개조로 선출받되, 한 조 내의 위원수가 반 이상이어서는 안 된다. 처음으로 설립되었을 때 한 조는 2년 간, 두 번째 조는 4년 간, 그리고 세 번째 조는 6년 간 봉사해야 한다.

D-5.0104
공 석

사임, 사망 또는 그 밖의 어떤 이유로 생긴 공석은 어떤 회의에서든지 잔여 임기를 채울 위원을 선출한 그 선출 공의회에 의해 충원될 수 있다.

D-5.0105
자 격

6년의 전체 임기를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에서 봉사한 사람은 6년 임기가 만료된 후 4년이 경과한 후라야 재선될 자격이 있다. 아무도 동시에 하나 이상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에 봉사해서는 안 된다. 총회에 의해 선출된 다른 어느 기관의 위원인 사람은 그가 그 회원권을 사임하기까지는 총회 상임사법 전권위원으로 봉사해서는 안 된다. 어느 공의회 의장이나 서기나 직원 또는 그 소속기관의 직원은 그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에 봉사해서는 안 된다.

D-5.0106
위원회 비용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모든 필요한 경비는 그 선출 공의회 혹은 공의회들이 지불해야 한다. 협력하는 대회들은 공유된

상임사법전권위원회의 비용을 동등하게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각 대회는 그 대회의 지경안에서 일어난 특정한 사법 사건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불해야 한다.

D-5.0200

2. 회의

D-5.0201
임원

각 상임사법 전권위원회는 회의를 갖고 그 위원 중에서 위원장과 서기를 선출해야 한다.

D-5.0202
권한의 근거

송부된 사건의 경우, 상임사법 전권위원회는 미국장로교 헌법에 의해 규정된 권한만을 가지며 그것에 따라 그 절차를 집행해야 한다.

D-5.0203
회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회의는 선출 공의회 혹은 공의회들이 지시한 때와 장소에서 모이거나, 그런 지시가 없었을 때는 그 전권위원회가 결정한 때와 장소에서 모여야 한다.”

D-5.0204
정족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정족수는 위원의 과반수이어야 한다. 단, 징계사건에 대한 노회 전권위원회는 정족수가 D-10.0204 또는 D-10.0303 에 따라 선정된 2인의 위원을 제외한 회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사법 절차에 대한 당회의 정족수는 당회장 및 사역장로(장로) 회원들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D-5.0205
참여치 못할 자

개체교회 또는 하위 공의회가 어떤 사건의 대상자라면, 그 교회나 그 하위 공의회나 그 하위 공의회 지역 내에 있는 교회의 교인인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위원은 그 사건의 심리나 상소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D-5.0206
정족수 부족

만일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위원수가 결석이나 무자격이나 신체장애로 인해 정족수에 미달하면, 상임사법 전권위원회는 정족수를 얻을 때까지 회의를 휴회해야 한다.

정족수 확보 불능

a. 상임사법 전권위원회는 그 사건들을 진행하도록 지명된 서기에게 정족수 미달을 보고해야 한다.

전임 위원의 명단

b. 지명된 서기는 과거 6년 이내에 임기가 끝난 상임사법 전권위원회 위원의 최근 명단을 보관해야 한다. 그 명단은 가장 최근 연조로 시작하여 가나다 순으로 정리해야 한다. 상임사법 전권위원회가 정족수를 얻을 수 없다고 보고하면, 서기는 정족수를 이루기 위해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이전 위원 중에서 충분한 수를 그 명단에서 윤번으로 즉시 선택해야 한다. 서기는 그 공의회 혹은 공의회들에게 매년 그 명단을 보고하여야 한다.

참석자 비용

c. 만일 상임사법 전권위원회가 정족수 부족으로 사건 심리를 하지 못하면, 그 사법 사건이 발생한 지경의 관할 공의회는 참석하도록 요청한 사람들에게 발생한 비용을 적정하게 지불해 주어야 한다.

D-6.0000

제 6장 교정사건

D-6.0100

1. 교정사건의 착수와 집행유예

D-6.0101
착수 방법

교정사건은 관할권을 가진 공의회의 서기에게 고소를 접수함으로써 시작된다. 만일 공유된 사법전권위원회를 위하여 사법 사건을 처리하도록 다른 서기가 이미 지명되었을 때에는, 관할권을 가진 서기는 즉시 그 고소를 그 서기에게 이양해야 한다.

D-6.0102
고소의 정의

고소란 어느 특정한 결정이나 결의에 있어서 변칙을 주장하거나 비행을 주장하는 서면 진술을 말한다. (D-2.0202) 고소의 제기는 그 자체가 결정이나 결의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아니다.

D-6.0103
집행유예

집행유예는 고소나 상소가 최종적으로 확정지어질 때까지 판결이나 결정을 정지시키는 상임사법전권위원회의 서면 명령서이다.

유예신청 접수의
시간제한

a. 고소나 상소를 제기하고자 하는 사람은, 공의회의 변칙적인 결정 혐의로부터 30 일 이내에 또는 상소될 상임사법전권위원회의 교정 결정으로부터 30 일 이내에, 그 사건의 관할권을 가진 공의회의 서기에게 고소나 상소를 접수하고 동시에 그 집행유예를 청원할 수 있다. 이 청원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할 수 있다:

(1) 공의회 결정이나 결의가 내려졌을 당시 출석한 것으로 기록된 회원들의 3 분지 1 이 서명한 청원서;

(2) 교정사건을 결정한 상임사법전권위원회 위원들의 3 분지 1 이 서명한 청원서; 또는

(3) 고소나 상소의 심의권이 있는 상임사법전권위원회의 위원들 중 최소한 3 명이 집행유예를 서명해 주도록 요청하는 청원서를 고소인이나 상소인이 서명하여 제출했을 때.

위원장과 서기에게
전달된 청원서

b. 고소장이나 상소장은 집행유예 청원서와 함께 서기에 의해 즉시, 가장 신속한 수단으로 상임사법전권위원회 위원장과 서기에게 전달되어야 하고 다음 사항을 결정받아야 한다:

(1) 고소나 상소가 D-6.0305 또는 D-8.0301 의 예비 쟁점들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해, 그리고

(2) 그 청원서가 D-6.0103a(1) 또는 D-6.0103a(2)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면

(a) D-6.0103a(1)에 따라 작성된 청원서가 빠짐이 없고 기일 내에 제출되었는지(서명인 수와 서명인들 의도의 확인 등); 또는

(b) D-6.0103a(2)에 따라 작성된 청원서가 빠짐이 없고 기일 내에 제출되었는지.

예비 조사를 위한
시간 소요

c. 상임사법전권위원회 위원장과 서기는 청원서를 접수받고 그로부터 7 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상임사법전권위원회와 당사자들에게 보고해야 한다.

집행유예를 시행하기
위한 시간 소요

d. 상임사법전권위원회는 위원장과 서기의 조사결과 보고를 받은 후 10 일 이내에 다음의 방법으로 집행유예 명령을 내릴 수 있다:

(1) 동 위원장과 서기에 의해; D-6.0103a(1)나 D-6.0103a(2)에 따라 작성된 청원서가 빠짐이 없고 기일 내에 제출되었으며, 고소와 상소를 위한 예비 쟁점들이 충족되었다고 이들이 확정함으로써.

(2) 그 청원서가 D-6.0103(a)(3)에 따라 작성되었을 경우, 3 명의 상임사법전권위원회 위원들에 의해; 즉 각 위원의 판단으로 그 결정이나 결의가 중지되지 않을 경우 중대한 해를 끼칠 것이라는 것, 위원의 판단으로 결정이나 결의가 오류라고 판정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존재한다는 진술서를 사건 심의를 관할하는 공의회 서기에 제출함으로써. 각 상임사법전권위원회 위원은 유예될 공의회의 해당결정이나 판결의 적요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유예 사본의 배포

e. 서기는 시행중지 명령서 사본을 당사자들과 상임사법전권위원회 위원들에게 보내야 한다.

유효기간

f. 집행유예는 고소나 상소의 통보 제기의 기일이 만료되기까지나, 또는 기일에 맞추어 접수했으면 차후에 있을 조건을 제외하고, 그 사건의 관할권을 가진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결정이 내릴 때까지 유효해야 한다.

집행유예에 대한 반대

g. 피고인은 집행유예의 제기 45 일 이내에 그 사건의 관할권을 가진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에 집행유예에 대한 반대사를 접수시킬 수 있고, 그래서 그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위원 3 명 이상이 집행유예에 관련된 모든 문제에 관한 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 양편 당사자들이 그 청문회에 참석하거나 대표를 보낼 수 있다. 그런 청문회에서 집행유예는 조절되든지, 종결되든지, 또는 상임사법 전권위원회가 그 사건의 공과에 대해 결정을 내릴 때까지 계속되든지 할 수 있다.

D-6.0200

2. 교정사건의 고소 제기

D-6.0201
당사자들

교정사건에 있어서 고소를 제기한 당사자나 당사자들을 고소인이나 고소인들이라 하고 고소를 받은 당사자나 당사자들을 피고인이나 피고인들이라 한다.

D-6.0202
고소 제기자

변칙의 고소나 비행의 고소는 어느 공의회의 관할권에 종속하면서 거기에 조치를 상신하는 한 사람이나 여러 사람 또는 공의회에 의해서 제기될 수 있다.

노회, 대회나 동등한 수준의
공의회 상대

a. 노회나 대회를 상대로 하는 고소나 어느 공의회가 동등한 수준의 다른 공의회를 상대로 고소하는 경우, 변칙의 고소는 변칙혐의가 발생한 후 90 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 비행의 고소는 비행혐의가 발생한 후 90 일 이내 다음 회의 때 제기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한다는 서면 요청서가 상기 회의 전에 만들어져야 한다. 그런 고소를 제기할 자격자는 다음과 같다.

- (1) 회원 등록 기간 중 노회를 상대로 대회에 변칙이나 비행에 대해 제기한 노회원으로 등록된 교역장로(목사)나 사역장로(장로);
- (2) 총대의 등록기간 중 대회를 상대로 총회에 변칙이나 비행에 대해 제기한 대회의 총대;
- (3) 노회를 상대로 대회에 제기한 당회;

당회나 총회 선교사역부/기관에 대한 상대

- (4) 당회를 상대로 총회에 제기한 노회;
- (5) 동일 수준의 타 공의회를 상대로 그 공의회가 소속한 차상위 공의회에 고소를 제기하는 어느 한 공의회;
- (6) 공의회나 기관에 의해 개인이나 재산에 손해나 손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노회를 상대로 당회에 혹은 당회나 **협력하는 당회를** 상대로 총회에 제기한 노회, **당회 혹은 협력 당회** 또는 노회나 당회 기관의 고용직원.

b. 당회나 총회 선교사역부 또는 총회의 기관을 상대로 고소하는 경우, 변칙의 고소는 변칙혐의가 발생한 후 90 일 이내에 접수되어야 한다; 비행의 고소는 비행혐의가 발생하고 이의 교정을 요구하는 서면요청서가 제출되었으나 피고인이 다음 회의 때 주장된 비행을 교정하지 않거나 교정하기를 거부했을 때, 그로부터 90 일 이내에 접수 되어야 한다. 그런 고소를 제기할 자격자는 다음과 같다

- (1) 해당 교회의 당회를 상대로 노회에 제기한 지교회 교인;
- (2) 총회 선교사역부나 총회의 기관을 상대로 당회, 노회, 당회가 총회에 제기
- (3) 총회 선교사역부나 총회의 기관에 의해 개인적 또는 재산상 손해나 손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총회 선교사역부나 총회 기관의 고용직원이 총회에 제기;
- (4) 교회의 당회를 상대로 당회 또는 당회의 기관에 의해 개인이나 재산에 손해나 손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노회에 제기한 지교회의 고용직원.

D-6.0300

D-6.0301
고소 진술

3. 사전 심리 절차

고소는 다음 사항을 진술해야 한다:

- a. 고소인의 이름과 피고인의 이름.
- b. 날짜, 장소, 그리고 그 환경을 포함한 특별한 변칙 ; 또는 그 비행을 치유하기 위한 서면 요구서의 날짜와 피고인이 그렇게 하는 데 실패했던 차기 회의의 날짜를 포함한 특별한 비행.
- c. 변칙 또는 비행에 대한 고소 사유.
- d. 당사자가 고소를 제기할 권한이 있다는 이유를 밝힌 고소인의 관심과 관계.
- e. 요청한 구제책.
- f. 고소 사본이 피고인에게 배달 증명 우편이나 인편으로 전달되었다는 사실. 고소인은 수취인의 서명이 있는 영수증이나 인편 전달의 공술서를 첨가하여 상위 공의회 서기에게 서류를 접수시켜야 한다.

D-6.0302
변호인단

공의회나 총회 선교사역부, 또는 총회의 기관이 고소인이나 피고인이 될 때 세 명 이하의 변호인단을 지명해야 한다. 이 변호인단은 그 사건을 상소한 최상위 공의회에서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그 사건에서 고소인이나 피고인을 대표해야 한다.

규칙에 따라 마련

a. 공의회나 총회 선교사역부 또는 총회의 기관은 규칙에 따라 변호인의 임명을 제공해줄 수 있다.

봉사 못함

b. 당회 서기, 노회나 대회의 서기나 총무는 봉직하는 공의회 of 변호인단에 봉사해서는 안된다.

D-6.0303
고소에 대한 답변서

피고인의 변호인단은 고소를 접수한 후 45 일 이내에 간명한 답변서를 상위 공의회 of 서기에게 접수해야 하고, 고소인에게 답변서의 사본을 주어야 한다. 그 답변서는 고소에 혐의 사실이 진실함을 인정해야 하고, 진실이 아니거나 잘못 진술된 그 주장을 부인해야 하고, 또한 변칙이나 비행으로 확인된 상황을 설명할 다른 사실들을 내세워야 한다. 답변서는 D-6.0305 에 언급된 어떤 다른 문제도 역시 제기할 수 있고 고소를 각하할 행동도 포함할 수 있다.

D-6.0304
심리 이전 절차

그 고소와 답변이 상위 공의회 of 서기에게 접수되었을 때, 그 서기는 즉시 그들 서류를 그 공의회 of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임원들에게 넘겨야 하고, 그리고 그 서기는 그 사건이 접수되었다는 사실을 당사자들에게 통보해야 한다.

D-6.0305
서류 검사

D-6.0304 에서 규정한 문서를 접수하면, 그 사건을 심리할 공의회 of 상임사법 전권위원회 위원장과 서기는 신속히 다음 사항을 결정짓기 위하여 서류 심사를 해야 할 것이다.

- a. 그 공의회 of 관할권 여부 ;
- b. 그 고소인이 그 사건을 제기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 ;
- c. 그 고소가 적시에 상소 접수되었는지 여부 ;
- d. 그 고소가 구제책의 부여를 요구하고 있는지 여부.

D-6.0306
예비 질문 결정

위원장과 서기는 그들의 조사 결과를 당사자들과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 a. 만일 소견이 접수되고 30 일 이내에 사건의 어느 당사자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 위원에 의해 위원장과 서기의 소견에 항의가 행해지면, 논의 중인 소견에 관한 증거와 논의를 제시할 기회가 마련되어야 한다. 당사자들은 사법적인 질문에 대한 청문회 이전에 요약서를 제출하도록 요청받는다.
- b. 만일 논의 중인 조사 결과를 결정하는 데 청문이 필요하다면, 금전적 고려를 포함하여 고소에 관한 심리 바로 전에 예비 질문의 처리를 할 만한 상황이 아닌 한, 그 청문은 고소에 관한 심리 이전 적어도 30 일 전에 일정을 정해야 한다.
- c. 만일 상임사법 전권위원회가 D-6.0305 에 열거한 어느 사항이라도 부정적으로 대답되었다고 확정하면, 상임사법 전권위원회는 그 사건을 기각해야 한다.
- d. 만일 D-6.0305(또는 D-8.0301 이나 D-13.0106)에 열거된 하나 이상의 항목들에 대해 부정적으로 답이 내려졌다는 위원장과 서기의 조사결과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되지 않는다면, 그 사건은 더 이상 상임사법위원회의 결의나 명령 없이 기각되어야 한다.

D-6.0307
응답해야 하는
당회 서기 또는
[공의회]의 서기

a. 고소를 접수한 후 45 일 이내에, 응답해야 할 당회 서기나 공의회 서기, 또는 기관이나 협의회는 그 사건에 관련된 모든 서류들과 다른 자료들을 모든 당사자들에게 서면으로 목록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회의록 및
서류들

b. 그 후 15 일 이내에, 그 고소인은 서면으로 그 사건에 관련된 피고인의 추가 회록철 또는 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다.

c. 관할 상위 공의회 서기에 의해 그 사건이 접수되었다는 통지를 받는 즉시, 당회 서기나 응답할 공의회 서기는 가능하면 포함할 추가적인 서류들에 대한 청원서들과 기록 목록과 함께, 그 사건에 관련된 회의록과 서류들을 지체함이 없이 상위 공의회 서기에게 넘겨야 한다.

D-6.0308
등록 절차

그 회의록과 서류가 상위 공의회 서기에게 접수되었을 때, 그 서기는 그들 서류를 그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에 넘겨야 하며, 그리고 예상 심리 날짜를 당사자들에게 통보해야 한다.

D-6.0309
심리 요약서

상임사법 전권위원회는 원 절차 진행에 있어서 당사자 어느 편에게 출판할 수 있도록 증거의 개요를 담은 심리 요약서와 그 증거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이론 진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D-6.0310
사전 심리회의

한 사건이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에 의해 접수된 이후 어느 때나, 그 위원회는 당사자들이나, 만일 있다면, 그들의 변호인에게 해결 가능성들을 모색토록 규칙에 따라 마련해 줄 수 있다; 또는 사전 심리회의에서 사실 진술과 논쟁 이슈에 관해 합의를 구하고, 문서와 기타 증거를 교환하고, 그 논쟁을 합리적으로 편견 없이 좁히고 그것의 해결을 진척시킬 수 있는 다른 어떤 결의를 하도록 한다.

D-7.0000

제7장 교정사건의 재판

D-7.0100

1. 재판의 집행

D-7.0101

재판-교정사건

교정사건의 재판은 상임사법 전권위원회가 집행한다.

D-7.0102

정식으로 집행

재판은 그 상황에 적합한 중립 장소에서 정중한 예의와 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D-7.0200

2. 소환과 증언

D-7.0201

당사자와
증인 소환

일방 당사자의 요구가 있을 때, 당사자들이나 증인에 대한 재판 출두 소환장은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위원장이나 서기가 반드시 서명하여 송달되어야 한다.

소환받는 회원

a. 미국장로교 회원만이 출두 소환을 받을 수 있다.

기타인들 요청

b. 기타인들에 대해서는 출두 요청만 할 수 있다.

타 **공의회**의
증인

c. 교단의 다른 **공의회** 관할권 하에 있는 사람을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할 필요가 있을 때, 재판을 주재하는 상임사법 전권위원회가 다른 **공의회**에 증인소환을 의뢰하며, 다른 **공의회** 서기나 지정서기는 증인들이 재판지에 출두하여 필요한 증언을 하도록 소환장을 발부한다.

비 용

d. 증인은 재판에 출두하기 위해 발생한 비용에 대해 증인소환을 요청한 당사자로부터 변상받을 권리를 가진다.

D-7.0202

소환장 송달

소환장 송달은 직접 전달하거나 배달증명우편으로 한다. 사건의 재판을 주재하는 상임사법 전권위원회 위원장이나 서기는 송달 및 배달 사실과 날짜를 증명해야 한다.

D-7.0203

2차 소환

미국장로교 회원으로서 당사자나 증인이 소환에 불응할 경우, 2차 소환장은 당사자나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시간에 출두하지 않을 경우에 그 당사자나 증인이 불순종과 모욕죄로 간주되고 그러한 위반은 징계 조치에 처해질 수 있다는 통지가 첨부되어야 한다.

D-7.0204

증인의 증언거부

증인으로 소환받아 출두한 미국장로교 회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하기를 거부하고, 경고를 받은 후에도 또 계속 증언을 거부하면 징계 조치에 처해질 수 있다.

D-7.0205
선서 증언

선서 증언은 D-14.0304의 규정에 받아들이고 접수될 수 있다.

D-7.0300

3. 재판 절차

D-7.0301
변호인

교정사건의 각 당사자들은 출석할 권리가 있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으나, 미국장로교의 회원이 아닌 사람은 변호인 역할을 할 수 없다.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으로 재직하는 동안은 변호인으로서 그 위원회에 나올 수 없다.

D-7.0302
자료의 배포

교정사건의 어느 당사자나 어느 누구도 사건에 관련된 어떤 서면 자료나 인쇄물이나 시각 자료들을 사건이 최종 처리되기 이전에 상임사법 전권위원들에게 배포하거나 배포되도록 시켜서는 안 된다. 이런 금지에도 불구하고 상임사법 전권위원회는 추가 자료들을 요구하거나 서류철하여 보관하도록 허락할 수도 있다.

D-7.0303
재판 진행 통제

상임사법 전권위원회는 재판의 집행이 극도로 정중하고 격식있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재판 진행과 모든 당사자들, 증인들, 변호인, 일반 방청인들의 행동을 전적으로 통솔하는 권한과 힘을 가진다. 여기에는 그들을 퇴장시키는 권한도 포함된다.

절차에 관한
질문

a. 재판 과정에서 일어나는 절차상의 문제나 증거 입증능력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양편 당사자들이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가진 다음에 위원장이 결정한다. 위원장의 결정에 대해 당사자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 위원이 전권위원회에 상소할 수 있으며, 그 위원회는 다수표결에 의해 그 문제를 결정한다.

결 석

b. 재판이 시작된 다음에 상임사법 전권위원회 위원이 결석하면 이를 반드시 기록한다. 그 사람은 그 이후 그 사건에 참여할 수 없다.

D-7.0304
정족수 미달

정족수의 미달은 무효재판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그 사건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D-7.0400

4. 재 판

D-7.0401
교정사건의 절차

교정사건의 재판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어야 한다:

- 위원장이 선언
- a. 위원장은 D-1.0101과 D-7.0102의 본문을 큰소리로 낭독하고, 공의회가 재판을 집행할 것을 선언한다. 그리고 위원들이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공의회 판정관들로서 냉정함과 높은 품위를 지키고 맡은 바 임무를 엄숙하게 이행하도록 명한다.
- 전권위원들의 자격
- b. 당사자들이나 그들의 변호인은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조직과 관할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의견을 개진할 수도 있다.
- 부적격성
- (1)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위원은 개인적으로 재판 사건과 관계되었거나, 어느 한편 당사자와 혈연관계나 결혼관계가 있거나, 어느 한편 당사자를 적극 지지나 반대해 왔거나 또는 D-5.0205 규정에 의해 자격이 없을 경우 실격하게 된다.
- 이의 제기
- (2)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위원은 누구나 당사자 어느 편으로부터 이의 제기를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타당성은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나머지 위원들이 결정한다.
- 절차에 대한 이의
- c. 상임사법 전권위원회는 예심에서의 모든 반대사항과 재판 절차 질서나 규칙성에 영향을 끼치는 기타 반대사항에 대해 결정을 내린다.
- 고소장 수정
- d. 고소인이 재판시에 그 고소장을 수정하도록 허락되어야 한다. 단, 수정이 고소장의 본질을 바꾸거나 피고인의 권리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 개정 진술
- e. 당사자들에게 개정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 증거의 규칙
- f. D-14.0000에 있는 증거의 규칙을 반드시 따른다.
- 증거
- g. 증거가 필수적이고 적절한 것이 있다면, 고소인과 피소인을 대신하여 제시되어야 한다.
- 최종 진술
- h. 당사자들에게는 최종 진술을 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고소인에게는 논의를 개시하고 마감할 권리가 있다.
- D-7.0402
판결
- 상임사법 전권위원회는 그 다음 비공개로 회집한다. 전권위원회 위원이 아닌 사람들은 모두 제외되어야 한다.

심 의

a. 증거의 우세에 의해 증명되지 않는 한, 어떠한 교정사건의 고소도 지지받을 수 없다. 증거의 우세란 증거와 반증과 저울질 하여 볼 때 증거가 보다 설득력 있고 사실일 개연성을 더 많이 갖고 있다는 의미이다. 심사숙고한 후 그 전권위원회는 그 고소에 명기된 각 변칙이나 비행에 대해 투표해야 하고, 그 회의록에 표결을 기록해야 한다.

판결

b. 상임사법 전권위원회는 그 다음에 그 사건을 판결해야 한다. 만일 고소내용의 전부나 일부가 지지를 받으면, 그 전권위원회는 거기에 적절한 조치를 명령하거나, 또는 하위 공의회로 그 사안에 대해 추후 절차를 수행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판결문

c. 판결문은 회기 중에 작성되어야 하고, 판결문에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위원장과 서기가 서명할 때 최종 판결문이 된다. 서면 판결문의 부분은 직접 배달이나 배달증명 우편으로 그 사건 당사자들에게 즉시 송달되어야 한다.

즉시 서류제출

d. 판결문은 재판 종료 30일 이내에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에게 사건을 위임한 **공의회** 지정서기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공개

e. 상임사법 전권위원회 위원장이나 서기는 그 상임사법 전권위원회 지시하는 대로 그 판결문을 배포해야 한다.

D-7.0500

5.상소의 규정

D-7.0501
상소 시기

각 당사자의 상소 제출 시점은 그 결의가 그 당사자에게 전달되었거나 또는 당사자가 이를 거부한 일자로부터 시작된다.

D-7.0502
상 소

상소는 원 당사자들의 한 사람이나 그 이상에 의해서만 개시될 수 있다. 상소의 규칙은 D-8.0000에 있다.

D-7.0600

6. 절차의 기록

D-7.0601
절차의 기록

상임사법 전권위원회 서기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해야 한다:

축어적 기록

a. 모든 증언과 구두 절차를 축어적으로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게 사전에 준비한다.

증거물

b. 증거로 제시된 모든 증거자료(증거능력이 인정되었든 안 되었든 간에) 확인하고 보존하고 모든 증거자료의 목록을 작성한다.

회의록 c. 절차의 의사록을 기록한다. 여기에는 사건에 관련된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조치나 명령, 그리고 표결의 기록이 포함된다.

기록 d. 다음의 목록의 사건 기록을 준비한다.

- (1) 고소와 그에 대한 소답;
- (2) 그 사건에 접수된 모든 회의록과 서류들;
- (3) 요구가 있을 경우, 안중 등본;
- (4) 적절히 표시된 모든 증거물, 문서, 그리고 기타 서류;
- (5) 결의문
- (6) 사건에 관련된 표결을 포함하여,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어떤 결의나 명령.

보 존 e. 결의가 최종화 된 후 14일 이내에 선출 **공의회** 서기에게 그 사건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증명하고 전달해야 하며 서기는 그것을 최소한 2년간 보관해야 한다.

등 본 f. 요청에 의해, 요청 당사자의 비용으로, 가능한 한 신속히, 재판과정에 있었던 모든 증언과 구두 절차에 관한 빠짐이 없는 완전한 인증사본이 준비되어 있도록 한다. 이 기록의 사본이 기록 담당자에 의해 사실과 틀림없는 완전한 내용으로 증명될 때, 만족할 만한 수수료 결제 방식에 의해 사본 요구 당사자에게 배달되어야 하며, 이 기록의 추가 사본을 만들어두고 D-8.0000에 의거하여 상소가 있을 시 전달될 수 있도록 한다.

D-7.0602
기록에 추가

재판 진행 담당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 위원장이나 서기에 의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간주되지 않은 한, 어느 누구도 사건 기록을 보충하거나 추가할 수 없다. 기록 보충에 관한 요청이 하의 **공의회** 지정서기에 의해 서면으로 접수되고, 이것이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위원장과 지정서기에 전달될 때까지는 어떤 보충 요청도 고려될 수 없다. 요청서 사본은 모든 당사자들에게 전달되어야 하고, 각 당사자는 10일의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응답해야 한다.

D-7.0700

D-7.0701
판결 보고

7. 서기의 임무

공의회가 회기 중에 있을 때 상임사법 전권위원회 서기로부터 판결문이 접수되면, **공의회** 서기는 이를 즉시 알리고, 판결문 전체를 **공의회** 회의록에 입력한다. **공의회**가 회기 중에 있지 아니할 경우에는, 첫 번째 정기회의나 폐회한 직후 회의나, 또는 그 목적을 위해 소집한 회의에서 서기가 그 결의를 **공의회**에 보고해야 하며, 판결문의 전내용을 회의록 기록에 입력한다.

D-8.0000

제8장 교정사건의 상소

D-8.0100

1. 상소의 착수

D-8.0101

정의

교정사건의 상소는 절차와 결정을 교정하거나 수정하거나 취소하거나 그 결정을 반복 시키려는 검토의 목적으로 하위 **공의회**에서 이루어진 사건을 차상위 **공의회**에 이첩하는 일이다.

D-8.0102

상소의 착수

상소는 그 사건의 원 당사자들 중 하나나 그 이상에 의해서 착수될 수 있으며 서면 상소장을 접수함으로 이루어진다.

D-8.0103

상소의 효력

상소장은 집행유예가 D-6.0103 의 규정에 따라 행해지지 않는 한, 상소 중인 그 결정을 시행하는 앞으로의 어떤 결의도 더 이상 보류시켜서는 안된다.

D-8.0104

상소의 철회

신청에 따라 상위 **공의회**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는 상소의 철회를 위한 청원을 승낙할 수있다. 상임사법 전권위원회는 만일 그것의 승인이 정의의 목적을 좌절 시킨다면 청원을 거부해야 한다.

D-8.0105

상소의 근거

상소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 a. 절차상 변칙;
- b. 한편 당사자에게 청문이나 증거를 얻거나 제시할 합리적 기회를 거부;
- c. 부적절한 증거나 증인을 얻거나 적절한 증거나 증언을 얻는 일 거절;
- d. 증거나 증언을 충분히 얻기 전에 결정을 조급히 서두름;
- e. 사건 처리 과정에서 편견의 명시;
- f. 과정이나 결정에 있어서 부정;
- g. 헌법적 해석에 있어서 과오.

D-8.0200

2. 상소 과정의 접수

D-8.0201

서면 상소장 접수 기간

서면 상소장은 판결문의 사본이 상소하는 당사에게 배달(서면)증명 우편이나 인편으로 전달된 후 45 일 이내에 접수시켜야 한다.

a. 서면 상소장은 그 판결로 인해 상소가 취해진 상임사법 전권위원회를 선출한 하위 **공의회**의 서기에게 접수시켜야 한다.

b. 상소하는 당사자는 상소자의 사본을 상대 당사자 각 사람에게와 그 상소를 청문할 **공의회**의 서기에게 마련해 주어야 한다.

D-8.0202

서면 상소장 내용

서면 상소장은 다음 사항을 명시하고 포함시켜야 한다.

- a. 상소인 또는 상소인들이라고 불리우는 상소를 접수시키는 당사자나 당사자들과 만일 있다면, 그들의 변호인 성명;
- b. 피소인 또는 피소인들이라고 불리우는 상대면 당사자나 당사자들과, 만일 있다면, 그들의 변호인의 성명;

- c. 그 판결로부터 상소가 취해진 **공의회**;
- d. 상소가 취해진 판결이나 결정, 그리고 날짜와 장소(상소장과 함께 판결이나 결정 사본을 동봉할 것);
- e. 상소를 위한 근거인 상소에 관한 심의 또는 청문회를 처리했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과실 진술서(D-8.0105); 및
- f. 상소장의 사본이 상대 당사자들 각 사람에게와 상소를 청문할 **공의회**의 서기에게 배달 증명 우편이나 인편으로 마련되었다는 확인서.

D-8.0203
상소장을 임원들에게 전달

상소장이 접수되고 결정이 상소될 때, 상위 **공의회**의 서기는 이 기록들을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임원들에게 전달해야 한다.

D-8.0300

3. 청문 이전 절차

D-8.0301
서류 검사

D-8.0203 에서 규정한 서류 접수 시, 그 사건을 청문할 **공의회**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위원장과 서기는 다음 사항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서류를 즉시 검사해야 한다.

- a. 그 **공의회**의 관할권 여부;
- b. 그 상소인이 상소를 제기할 자격 여부;
- c. 그 상소 서류가 적절히 그리고 적시에 접수되었는지 여부;
- d. 그 상소가 D-8.0105 에 정해진 상소를 위한 한 가지나 그 이상의 근거를 진술하고 있는지 여부.

D-8.0302
예비질문 결정

위원장과 서기는 당사자들과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에게 그들의 소견을 보고해야 한다.

- a. 만일 소견이 접수되고 30 일 이내에 사건의 어느 당사자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 위원에 의해 위원장과 서기의 소견에 항의가 행해지면, 논의 중인 소견에 관한 증거와 논의를 제시할 기회가 마련되어야 한다.
- b. 만일 논의 중인 항목을 결정하는데 청문이 필요하다면, 제정적 고려를 포함해서, 상소에 관한 청문 바로 전에 예비 질문의 처리를 할 만한 상황이 아닌 한 그 청문은 상소에 관한 청문 이전, 적어도 30 일 전에 일정을 정해야 한다.
- c. 만일 상임사법 전권위원회가 D-8.0301 에 열거한 어느 사항이라도 부정적으로 해답 되었다고 확정하면, 상임사법 전권위원회는 그 상소를 기각해야 한다.
- d. 만일 D-6.0305(또는 D-8.0301 이나 D-13.0106)에 열거된 하나 이상의 항목들에 대해 아니요 라고 답이 내려졌다는 위원장과 서기의 조사결과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되지 않는다면, 그 사건은 더 이상 상임사법위원회의 결의나 명령 없이 기각되어야 한다.

D-8.0303 상소 기록의 목록	상소에 관한 기록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
추가기록	<p>a. 서면 상소장의 접수 후 45 일 이내에, 하위 공의회 서기는 그 사건의 기록을 이루는 모든 서류와 기타 자료들을 당사자들에게 서면으로 목록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D-7.0601d)</p> <p>b. 그 후 15 일 이내에, 어느 당사자나 서기에 의해 목록이 만들어진 사건 기록의 정확성이나 완결성에 항의하는 서면 진술서를 하위 공의회의 서기에게 접수시킬 수 있다. 그 서면 항의서는 사건의 기록에서 누락되었다고 주장하고자 하는 D-7.0601d 에 열거된 항목이나 항목들을 명확하게 진술해야 한다.</p>
상소 기록의 접수	<p>c. 그 사건이 용인된 관할 상위 공의회의 서기에 의한 통지 시, 하위 공의회의 서기는 사건의 기록을 확인하고 상위 공의회의 서기에게 접수시켜야 하는데 거기에는 그 기록 부분의 인증 사본을 포함시킬 수 있으며, 그 기록의 완결성과 정확성을 논박하는 서면 항의서를 포함시켜야 한다.</p>
기록의 교정	<p>d. 만일 당사자 어느 편에게 보낸 자료의 어느 부분이 실수나 우연으로 그 기록에 누락되었거나 그 안에 허위진술이 되었으면 누락이나 허위진술은 교정될 수 있다. 당사자들이 그 교정을 명기하거나, 당회나 하위 공의회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가 보충기록을 확인하고 전달하거나, 상위 공의회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가 누락이나 허위진술을 교정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그 기록의 형식과 내용에 관한 다른 질문서는 상위 공의회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한다.</p>
접수 일자의 통보	<p>e. 상위 공의회의 서기는 상소에 관한 기록이 접수된 일자 통보를 당사자들에게 통보해야 한다.</p>
사본 제공 비용	<p>f. 서면 요청에 따라서, 상위 공의회의 서기는 상소 당사자 어느 편이든지 그들의 비용 부담으로 상소 기록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p>
연장	<p>g. 이유가 합당하면, 상위 공의회의 서기는 D-8.0303 에 있는 시간 제한을 적당한 기간 동안 연장할 수 있다.</p>
D-8.0304 상소인의 적요서 접수	<p>상소 기록을 접수한 일자 후 30 일 이내에, 상소인은 상소 통지서내에 오류혐의 명세서와 변론서, 논의서, 그리고 자세히 열거한 오류혐의에 관해 상소인의 주장을 지지하는 당국의 소환장을 포함한 서면 적요서를 상위 공의회의 서기에게 접수시켜야 한다.</p>
상대편에게 사본 전달	<p>a. 그 적요서에는 사본 한 통이 상대방 당사자나 당사자들에게 제공되었다는 확인서를 동반해야 한다.</p>
연장	<p>b. 이유가 합당하면, 상위 공의회의 서기는 이 시간 제한을 적당한 기간 동안 연장 할 수 있다.</p>
적요서 접수 실패	<p>c.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한 기간 내에 적요서의 접수를 피소인이 하지 못할 때 적요서 접수와 출두와 청문의 권한을 포기하는 것으로 여겨야 한다.</p>
D-8.0305 피소인의 적요서 접수	<p>상소인의 적요서 접수 후 30 일 이내에, 피소인은 거기에 응하는 서면 적요서를 상위 공의회의 서기에게 접수시켜야 한다.</p>

- 상대편에게 사본 전달
- 연장
- 적요서 접수 실패
- D-8.0306
기록 및 적요서 전달
- a. 그 적요서에는 사본 한 통이 상대편 당사자나 당사자들에게 제공되었다는 확인서를 동반해야 한다.
- b. 이유가 합당하면, 상위 **공의회**의 서기는 이 시간 제한을 적당한 기간 동안 연장을 할 수 있다.
- c.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한 기간 내에 적요서의 접수를 피소인이 하지 못한 때 적요서 접수와 출두와 청문의 권한을 포기하는 것으로 여겨야 한다.
- 기록과 적요서의 접수나 그것들의 접수 시한의 만료에 따라, 상위 **공의회**의 서기는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서기에게 그 기록과 적요서를 전달해야 한다.

- D-8.0307
사전청문회
- 상임사법 전권위원회가 상소를 접수한 후 어느 때에라도, 그 위원회는 규칙대로, 상소내의 논쟁점에 관한 일치를 구하거나, 합리적으로 그리고 공평하게 논점을 좁혀주고 그 해결책을 촉진시킬 수 있는 행동을 취하기 위해, 당사자들과 그들의 변호사를 위해 사전청문회를 규정할 수도 있다.

D-8.0400

4. 상소의 청문

- D-8.0401
청문 통보
-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위원장이나 서기는 상소를 제기하기 위해 당사자들이 본인 자신이 변호인에 의해 상임사법 전권위원회 앞에 출두할 수 있는 일자리를 그들에게 통보해야 한다.

- D-8.0402
출두 실패
- 어느 편 당사자가 본인 자신이나 변호인에 의해 출두하지 못하면 상소에 관한 청문 참여의 포기로 간주해야 한다.

- D-8.0403
청문
- 청문 상임사법 전권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행해야 한다.

- 새 증거
- a. D-14.0502의 규정하에서 그런 새 증거의 구술 기록을 마련한 새로이 발견된 증거를 접수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 청문
- b. 상소인이 변론의 개시와 종결의 권한을 가지면서, 그 권리를 포기하지 아니한 당사자들에게 상소의 근거에 관해 청문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D-8.0404
상임사법 전권
위원회의 결정
- 청문과 심의 후에 상임사법 전권위원회는 오류혐의의 각 세목을 분리해서 투표해야 한다. 투표 시 이런 질문을 해야 한다. “오류의 세목이 입증되는가?” 회의록에는 오류의 각 세목에 대한 투표수를 기록해야 한다.

- 만일 오류가 발견
안되면
- a. 만일 오류가 세목 중 어느 하나도 입증되지 않고 다른 오류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하위 **공의회**의 결정은 확인되어야 한다.

- 만일 오류가
발견되면
- b. 만일 한 가지나 그 이상의 오류가 발견되면, 상임사법 전권위원회는 하위 **공의회**의 결정을 확인하든지, 조절하든지, 파기하든지, 번복하든지, 그 사건을 새로운 심리를 위해 반송하든지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 서면 결정서
- c. 서면 결정서는 회기 중에 준비해야 하고 서면 결정서의 사본이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위원장과 서기가 서명할 때 그것이 최종 결정이 되어야 한다. 결정의 사본을 인편이나 배달 증명 우편으로 사건 당사자들에게 즉시 전달되어야 한다.

각 오류의 판결

d. 그 결정서는 상세한 오류의 판결을 포함해야 하고 D-8.0101에 마련된 대로 구제책을 진술해야 한다. 상임사법 전권위원회는 중복을 피하여 실질적인 모든 질문을 처리할 방법으로 그 결정서를 마련한다. 그것은 그 판결의 설명서를 포함한다.

즉시 접수

e. 청문의 종결 30 일 이내에 그 결정서는 그 상임사법 전권위원회를 임명했던 **공의회**의 서기에게 접수시켜야 한다.

공개

f.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위원장이나 서기는 그 상임사법 전권위원회가 지시하는 대로 그 결정서를 배포해야 한다.

D-9.0000

제 9장 결백 입증의 요청

- D-9.0001 소문이나 험담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미국장로교 회원은 혐의 전 결백 입증의 요 말을 명료하게 설명한 경위서와 청원문을 당회서기나 노회서기에게 제출함으로 결 청 백입증의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 공의회에 의한 검토 a. 적절한 위원회를 통하여 **공의회**가 청원을 허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의할 경우, 그것은 D-10.0201에 마련된 대로 조사위원회 구성을 진행해야 한다.
- 조사위원회 b. 조사위원회는 사실과 정황의 진상을 규명하고 그 보고를 서면으로 **공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 D-9.0102 결백 입증을 요청한 사람을 상대로 공소 중이라고 조사위원회가 보고하지 않는 사건의 종결 한, 보고서로서 사안이 종결된다. 만일 혐의가 고발되어야 한다면, D-14.0402에 따라 시작하는 적절한 사법절차가 그 사안에 대해 진행되어야 한다.

D-10.0000

제 10 장 징계사건

D-10.0100

1. 징계사건에 대한 예비절차

D-10.0101

예비절차의 착수

징계사건에 대한 예비절차는 범법 혐의의 서면 진술서를 입증 자료와 함께 그 회원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당회서기나 노회서기에게 제출함으로써 착수된다(D-3.0101). 그 진술서는 구술 내용이 분명해야 하고 만일 진실이 증명되는 경우 징계 결정에 귀결할 만한 혐의 사실을 주장해야 한다. 그런 주장은 조사위원회에 회부되어야 한다(D-10.0201).

D-10.0102

범법의 진술

서면 진술은 다음 사람에게 의해 제출될 수 있다.

고 소

a. 다른 사람을 상대로 고소하는 미국장로교의 공의회의 관할권하에 있는 개인;

공의회

b. 징계의 목적으로 조사받아야 할 범법이 발생했으리라는 정보를 어떤 출처로부터 얻은 공의회의 회원;

자 책

c. 자책감을 갖고 나서는 미국장로교회 공의회의 관할권하에 있는 개인.

D-10.0103

조사위원회에 회부

범법 혐의에 대한 서면 진술서를 접수하면, 당회서기나 노회서기는 더 이상 조사하지 말고 피소인의 이름이나 범법 혐의의 성격을 밝히지 않고 범법 혐의가 있다는 사실만을 그 공의회에 보고해야 하고 그 진술서를 조사위원회에 즉시 회부해야 한다.

D-10.0104

타 공의회의 고소

한 회원이 본인에 대한 관할권을 갖지 않는 다른 공의회에 제출된 서면 진술에 의해 범법이 있다고 고소받게 될 때, 그 당회서기나 그 노회서기는 그 회원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당회서기나 노회서기에게 서면 진술서를 제출하는 것이 의무이다. 연루된 공의회들은 사법 절차를 상호 협력하여 진행시켜야 한다.

D-10.0105

이명 불가

조사나 고발이 심리 중이면, 당회는 교인에 대한 이명 증서를 발부해서는 안 되고 노회는 교역장로(목사)에 대한 이명 증서를 발부해서는 안 된다. 이명 증서를 발부할 수 없는 이유가 당회서기나 노회서기나 노회서기에 의해 해당된 사람들에게 전달되도록 한다.

D-10.0106

직위 정지

누구에게든지 성희롱 행위를 범했다는 주장의 서면진술이 교역장로(목사)를 상대로 접수되는 경우에, 그러한 서면 진술서를 접수 받은 서기는 즉각 이를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상임사법 전권위원회 위원장은 3일 이내에 2명의 위원들(상임사법 전권위원회 전임 위원명부에서 선출 가능)을 지명하여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그러한 범법 혐의자를 유급 직위정지할 것인지 소견을 내려야 한다. 그러한 비용부담은 고용기관이 가능한 한 부담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노회가 부담해야 한다. 직위정지를 받은 교역장로(목사)는 목회업무, 행정사무, 교육이나 감독 업무를 돌볼 수 없으며, 세례식, 장례식, 또는 결혼식을 집행할 수 없다.

a.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지명된 위원들은 혐의자에게 청문의 기회를 준 다음에, 주장된 범법행위의 성격과 상당한 진실성 여부에 비추어 숙고하면서 직위정지나 교역장로(목사) 직무 제한을 요구할 만한 위험이 교인들과 잠재적 성희롱 피해자들에게 있는지 결정해야 한다. 그러한 직위

정지나 직무제한은 권장조례에 규정된 방법들 가운데 한 가지 방법으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혹은 직위해제나 제한이 전권위원회의 지명된 위원들에 의해 변경되거나 제거될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b. 만일 동 전권위원회의 지명된 위원들이 직위정지나 직무제한이 요구되지 않는다고 결정할 경우에는, 주장된 범법행위를 조사하도록 임명된 조사위원회가 조사의 어느 시점에서 자유롭게 직위정지나 직무제한을 뒷받침하는 추가 증거자료를 지명된 위원들에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D-10.0200

2. 조사

D-10.0201
조사위원회

조사는 고발이 접수되어야 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그 회원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공의회가 임명한 조사위원회에 의해 행해져야 한다.

회원권

a. 조사위원회는 5 명이 넘지 않으면서 3 명 이하가 아닌 위원을 가져야 하며, 만일 적절하다면 D-10.0104 에 따라 타 공의회에서 온 위원을 포함시킬 수 있다. 당회는 당회원들을 조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할 수 없다.

규칙대로 임명

b. 노회는 규칙에 따라 조사위원회의 임명을 마련할 수 있다.

비용

c. 조사위원회의 비용은 동 위원회를 임명한 공의회가 일반적으로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회원에 대해 관할권을 가지지 아니한 다른 공의회로 제출된 정보에서 서면진술서가 발생되었다면, 범법혐의가 일어난 구역 내의 공의회가 그 구역내의 조사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D-10.0202
조사위원회 책임

조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책임을 져야 한다

a. 범법 혐의가 사실이라면 D-2.0203b 에 기술된 바와 같은 범법에 해당하는 사실을 제기하고 있는지 결정하기 위하여 범법 혐의 진술서를 검토한다. D-2.0203b 에 해당하는 범법 혐의가 없다면 조사위원회는 심의를 종결짓고 그 사실을 그 조직의 서기에게 보고해야 한다. D-2.0203 에 기술된 바와 같은 범법 혐의가 있을 경우에는, 아래의 순서에 따라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b. 피소인에게 D-10.0101 에 기술된 범법 혐의에 대한 진술서의 사본을 마련해 준다;

c. 고발인에게 조사위원회 절차에 관한 설명서를 제공한다;

d. 피소자에 대한 고발이 이전 고발 내용의 반복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만일 그럴 경우, 조사위원회는 피소자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공의회에게 고소(D-10.0202j)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한다. 단, 조사를 받을 만한 새로운 정보를 담고 있거나, 종결되지 않은 조사 문제일 경우는 예외다.

e. 범법 혐의에 대한 사실과 상황을 철저히 조사한다;

f. 그것에 해당되는 모든 관련 서류와 문서와 기록을 조사한다;

g. 모든 해당되는 증인들을 확인하고 그들을 심리한다;

h. G-3.0102 와 D-2.0203b 에 따라 범법이 피소인에 의해 범행되었다고 믿을 수 있는 가능한 근거와 원인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i. 그 성격, 유효성과 증인들의 신용도와 유효한 증거를 적절히 검토한 후, 접수된 고발(들)이 - 서류, 문서, 기록, 증언이나 다른 증거의 근거 위에서 - 합리적으로 증명될 수 있을지 여부를 결의한다;

j. 일반적으로 조사가 완료되고 합당한 이유가 결정된 다음, 그러나 혐의가 제기되기 전에, 대안의 해결방식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개시한다. 해결의 대안 방식의 취지는 제기될 수 있는 혐의에 대해 조사위원회와 피소인 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데 있을 것이다.

(1) 어떤 조정이나 당회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에 의해 연기가 허락되지 않는 한 120 일 이내에 완결되어야 한다.

(2) 조사위원회는 어떤 해결 합의점을 당회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에 승인을 위해 보고해야 한다.

(3) 당회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는 회의를 소집하여 해결 합의서를 접수한다; 이 안은 표결에 부쳐지고 최소한 3 분지 2 이상의 투표권자 회원들의 찬성 투표를 받아야 한다; D-11.0601d 규정에 따라 회의절차를 기록하되, 여기에 피소인 이름, 혐의(들)과 징계의 요지가 들어가야 한다; 당회의 서기나 지정 서기에게 그 결정을 보내고, 당회서기나 회의 서기는 D-11.0701 규정에 의거하여 이를 보고해야 한다.

(4) 조사위원회는 피소인이 합의 협상의 전과정에서 대리인을 제공받게 해야하며, 그리고 기타 이해관계자들에게도 대리인을 제공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다.

(5) 조사위원회와 피소인 양방에게 만족스러운 대안의 해결방식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조사위원회는 D-10.0202k에 대한 기소위원회를 지정해야 하고, 제기된 혐의에 대한 사건을 진행시킨다.

k. 피소인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공의회에 고발을 접수시킬 것인지 안할 것인지 여부를 보고한다.

기소위원회 지명

l. 만일 고발이 접수되면, D-10.0401-.0404 의 규정에 따라 그것들을 준비하고 접수하며 그 사건을 기소하기 위해 그 회원 중에서 한 사람이나 더 많은 사람들(기소위원회로 알려진 위원회에) 지명한다.

D-10.0203
고소인의 권리

a. 고발인이 조사위원회와 기소위원회와 당회, 또는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와 모든 회의를 할 때마다 대리인과 함께 참석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조사위원회가 반드시 고발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대리인의 역할은 상담해주고 지원해주는 일이다.

피해자의 권리

b. 고발인 진술서가 범법혐의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된 사람을 대신하여 제출되었다면, 그 피해자가 조사위원회와 기소위원회와 당회, 또는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와 모든 회의를 할 때마다 대리인과 함께 참석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조사위원회가 피해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한다.

가해 용의자의 권리

c. 위원회나 그 회원과 더불어 갖게 되는 회의마다, 그리고 모든 회의를 시작할 때, 위원회나 그 회원은 혐의를 받고 있는 그 사람에게 묵비권과 변호인에 의해 대표될 수 있는 권한과, 만일 고발이 늦게 접수되어 변호인을 확보하기 어려울 때, 변호인을 지명받을 수 있는 권리를 알려주어야 한다. (D-11.0301-.0302)

D-10.0204
전권위원회에 절차 검토 청원

조사과정 동안, 피소인은 조사위원회의 절차를 검토하도록 전권위원회에 청원할 수 있다. 그러한 청원을 위한 합당한 사안은 조사위원회가 적법하게 증거 수집과정을 따랐는지 여부, 고려 중인 증거를 적법하게 확보했는지 여부, 조사위원회가 피소인이 제출한 관련 증거를 면밀하게 조사했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제한해야 한다.

- a. 청원의 검토는 양 당사자 및 변호인이 출석한 가운데 D-5.0101 에 따라 선정된 전권위원회의 위원 2 인이 주관하는 청문회에서 행해야 한다. 청문회는 청원접수 30 일 이내에 열려야 한다. 청문회 후 15 일 이내에 결정이 양 당사자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 b. 검토 결과를 전권위원회 의장에게 전달해야 하고 D-10.0405 의 고발 검토를 통지한다.

D-10.0300

3. 결정의 전달

D-10.0301
결정의 전달

만일 조사위원회가 해결의 대안 형식을 발의하면, 그 위원회는 해당 당회서기나 상회서기를 통해 공의회에 통지해야 한다.

D-10.0302
만일 고발이
접수되면

만일 조사위원회가 고발을 접수하기로 결정했다면, 심리시 이 고발을 뒷받침할 증거를 낼 수 있는 사실의 개요를 포함하여, 그 고발을 서면으로 피소인에게 즉시 연락해야 한다. 그 위원회는 그 개인이 정식 재판을 피하기 위해 그 고발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기 바라는지를 피소인에게 물어야 하고, 당회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에 제안할 견책을 지적해야 한다.

D-10.0303
검토청원

만일 아무런 고발이 접수되지 않았다면, 조사위원회는 당회 서기나 노회서기에게 그 사실의 서면 보고서만을 접수해야 하며, 서면 진술서를 제출했던 그 개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 a. 그 보고서의 접수 후 30 일 이내에, 그 개인은 고발을 접수하지 않기로 한 조사위원회의 결정을 검토해 줄 것을 당회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에 청원할 수 있다. 그 청원서는 조사위원회가 D-10.0202 에 명시된 의무를 완수하지 않았다는 사례들을 주장해야 한다.
- b. 조사위원회는 청원서에 나타난 혐의사실에 대해 서면 응답서를 제출해야 한다.
- c.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지명 위원들은, D-10.0202 에 명시된 의무와 고발을 접수하지 않기로 한 조사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교회 징계의 원리가 유지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그 청원과 응답을 고려해야 한다. 그 청원과 응답에 관한 전권 위원회의 지명 위원들의 결정은 90 일 이내에 교부되어야 한다.
- d. 이 지명 위원들이 청원을 승인할 경우, 새 조사위원회가 당회나 노회에 의해 임명되어야 한다.
- e. 만일 또다시 고발이 접수 안되면, 그 사건은 종결된다.
- f. 만일 고발이 접수되면, 조회의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D-4.0000)

D-10.0304
기록의 처리

만일 고발이 접수 안 되면, 조사위원회의 기록의 처리는 당회나 노회의 정책과 일치해야 한다.

D-10.0400

4. 고소

D-10.0401
시간제한

고소가 범법 혐의가 있던 때로부터 5년이 지나거나 조사위원회가 구성된 일자로부터 1년이 넘어서 접수되어서는 안 된다. 단 둘 중 먼저 일어난 일이 적용된다. 다음의 예외 조항이 있다.

- a. 민사 사법기관의 재판이 시작된 상황 하에서, 조사위원회는 상임사법 전권위원회나 당회에 고소장 제기 기한을 민사 사법기관의 수사나 재판이 종결된 후 6개월까지 연장해줄도록 신청하고 이를 허가를 받았을 때이다. 조사위원회는 그러한 민사 재판이 언제 종결될지 판정할 수 있도록 민사 사법기관과 접촉을 계속해야 한다.
- b. 3년 제한 기한이 적용될 수 없다. 범법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어느 일자에 상관없이 고소를 제기할 수 있다.
- c. 다른 사람의 성희롱은 다른 사람에 관련된 성적행위를 포함하는 범법이다.
 - (1) 18세 이하나 동의할 정신적 능력이 없는 18세 이상의 어느 개인; 또는
 - (2) 그 행위가 강제, 위협, 강요, 협박, 또는 직제사역이나 직위의 남용을 포함할 때의 어느 개인.

[역사적 주: D-10.0401c의 원문은 제 214차 총회(2002년)의 결의로 삭제되었다.]

D-10.0402
사건의 고소

만일 고발이 접수되면, 기소위원회는 그 사건을 기소하고 어떤 상소가 있는 동안 교회를 대표해야 한다(D-10.0202h).

당사자들

a. 모든 징계사건은 미국장로교의 이름으로 조사위원회와 기소위원회를 통해서 공의회에 의해 접수되고 기소되어야 한다. 기소위원회는 그 교회의 대표이며 그런 자격으로 그 사건에 있어서 해당 공의회에 모든 권리를 갖는다.

두 당사자들만

b. 징계사건에서 당사자들만이란 기소공의회와 피소인이다.

D-10.0403
고소의 형식

한 건의 고발은 단지 한 건의 범법만을 주장해야 한다(D-2.0203b).

여러가지를
함께

a. 동일인을 상대로 여러 고소를 동시에 공의회에 접수시킬 수 있다.

고소의 명세서

b. 매 고소는 번호를 매겨야 하고 범법을 구성한 행위를 설명해야 한다. 매 고소는 (가능하면) 혐의받은 행위의 수행의 시간, 장소, 상황을 제시해야 한다. 매 고소는 기소를 위해서 증인의 성명과 주소, 그리고 그것의 뒷받침을 위해 소환될 기록과 문서의 설명서가 역시 첨부되어야 한다.

함께 심리

c. 동일인에 대한 여러 개의 고소는 당회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재량으로 함께 심리할 수 있다.

D-10.0404
고소의 접수

매 고소는 서면으로 준비되어서 당회서기나 노회서기에게 접수시켜야 한다.

당 회 a. 고소의 접수와 함께 당회서기는 차기 회회시 당회에 고소를 제출해야 한다. 당회는 그 사건을 심리할지 아니면 노회에 회부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D-4.0000)

노 회 b. 고소의 접수와 함께 노회서기는 그 노회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 위원장이나 서기에게 즉시 전달해야 한다.

D-10.0405 그 사건을 심문할 당회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는 고소들의 접수 후 30 일
사전 심리회의 이내에 사전 심리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시간과 장소 a. 당회장과 당회서기 또는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위원장과 서기는 피소인, 만일 있다면, 피소인의 변호인 그리고 기소위원회에 사전 심리와 시간과 장소를 통보해야 하고, 고소장(들)의 사본을 피소인에게 전달해 주어야 한다.

참석자들 b. 사전 심리회의의 시간이 정해지면, 당회장과 당회서기, 또는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위원장과 서기, 기소위원회, 피소인, 만일 있다면, 피소인의 변호인 그리고 위원장(당회장)과 당회서기의 재량에 따라 다른 해당되는 사람들이 보통 출석해야 한다. 위원장(당회장)은 이렇게 해야 한다.

- (1) 피소인에게 고소를 읽어 준다;
- (2) 피소인에게 변호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린다 (D-11.0301);
- (3) 피소인에게 그때 알려진 모든 증인들의 성명과 주소, 그리고 고소를 뒷받침할 만한 기록과 문서의 명세서를 전해 준다;
- (4) 논쟁의 여지가 없는 고소 내용들을 피소인과 기소위원회에 결정해 주고 정식재판에 대한 대안을 토의한다;
- (5) 조사 위원회의 작업 검토를 위한 청원보고서를 검토하고, 고발의 일부 또는 전부의 해제, 사건의 해제 또는 고발 내용의 수정을 허가하기 위한 예비 행동을 취하면서, 고발의 적절함과 관련한 추가적인 신청들을 심리한다. 그와 같은 예비 결정들은 D-11.0402c 에 따라서 노회 또는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가 검토해야 한다.
- (6) 모든 당사자들이 고소에 포함된 사실들이 진실이고 제안된 책벌의 정에 동의하면, 책벌 청문 일정을 정한다;
- (7) 모든 당사자들의 출두를 명령한다.

아무 일도 못함 c. 그 회의에서는 그 이상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된다.

D-10.0406 피소인은 주소를 포함하여 예상되는 증인들의 명단을 적어도 재판 일자
증인 공개 20 일 전에 당회서기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와 기소위원회에게 제공해야 한다. 기소위원회와 피소인은 재판 일자 전 10 일보다 늦지 않게 증인들의 최신 명단을 그 전권위원회와 상대방 당사자에게 각각 제공해야 한다.

D-11.0000

제11장 징계사건의 재판

D-11.0100

1. 재판의 집행

D-11.0101
재판 - 징계사건

징계사건의 재판은 당회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에 의해 집행되어야 한다.

D-11.0102
정식으로 집행

재판은 그 상황에 적합한 중립적인 장소에서 예의 범절이 분명하게 정식으로 집행되어야 한다.

D-11.0200

2. 소환과 증언

D-11.0201
당사자와
증인소환

당사자들이나 어느 편 당사자가 요구하는 증인들이 재판에 출두하도록 하는 소환장은 당회장이나 당회서기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위원장이나 서기에 의해 서명되어야 한다.

소환받는 회원

a. 미국장로교 회원만이 출두하도록 소환받을 수 있다.

요청받는 사람들

b. 다른 사람들은 출석을 요청받을 뿐이다.

타 **공의회**의
증인

c. 교단의 다른 **공의회**의 관할권하에 있는 사람을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할 필요가 있을 때, 사건을 재판하는 당회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청원에 의하여 당회서기나 다른 **공의회**의 서기가 재판 장소에 출두하여 요구하는 증거를 제공하라고 증인들에게 소환장을 발부해야 한다.

비용

d. 어느 증인이나 재판에 출석함으로써 발생한 비용의 상환은 증인을 부른 당사자로부터 받아야 한다.

D-11.0202
소환장 전달

소환장은 인편으로나 배달 증명 우편으로 전달되어야 한다. 사건을 재판하는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위원장이나 서기는 인편이나 우편으로 전달한 사실과 일자を確認해야 한다.

이차 소환

a. 만일 미국장로교 회원인 당사자나 증인이 소환에 불응하면, 2차 소환장은 다음과 같은 단서를 붙여서 보내야 한다. 즉, 만일 당사자나 증인이 정당한 사유를 말하지 않고 정한 시일에 출두하지 아니하면, 당사자나 증인은 불순종과 모욕의 과오를 범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그런 범법으로 인해 징계 결의를 받을 수도 있다.

피소인이 출두
아니함

b. 징계사건에서 피소인이 이차 소환에도 출두하지 않으면, 당회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는 피소인을 대신하여 변호할 어느 사람이나 사람들을 임명한 후, 피소인의 결석으로 재판이나 판결을 진행할 수 있다.

D-11.0203
증인의 증언 거부

증인으로 소환받아 출두한 미국장로교 회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하기를 거부하고, 경고를 받은 후에도 또 계속 증언을 거부하면 징계 결의를 받을 수 있다.

D-11.0204
선서 증언

선서에 의한 증언은 D-14.0304 의 규정에 따라서 행해지고 받아들여진다.

D-11.0300

3. 재판 절차D-11.0301
변호인

징계사건에 있어서 각 당사자들은 출두해야 하며 변호인에 의해 대신할 수도 있으나 단, 미국장로교의 회원이 아닌 사람은 아무도 변호인으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 재직 중 변호인으로서 그 위원회 앞에 출두해서는 안 된다. 변호인은 유급 대표나 변호사일 필요가 없다.

D-11.0302
변호인을
얻지 못함

만일 징계사건에 있어서 피소인이 변호인을 얻지 못하면, 당회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가 피소인을 위한 변호인을 임명해야 한다. 합리적 변호 비용은 사건이 발단한 **공의회**에 의해 위임하고 상환받아야 한다.

D-11.0303
자료의 회람

징계사건의 어느 당사자나 어느 누구도 당회원이거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 위원들에게 사건의 최종처리 이전에 사건에 관련된 어떤 기록되거나 인쇄되거나 눈으로 볼 수 있는 자료들을 배포하거나 배포되도록 시켜서도 안 된다. 이런 금지에도 불구하고 당회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는 추가 자료들을 요구할 수 있고 또는 철하여 보관하도록 허락할 수 있다.

D-11.0304
재판집행 통괄

당회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는 재판의 집행과 그들을 해임하는 일까지 포함하여 양편 당사자, 증인, 변호인. 그리고 일반인들의 행동을 통괄할 전적인 권위와 권한을 가져야 하고, 중국에는 적절한 권위와 예의범절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절차에
대한 질문

a. 절차나 재판 과정에서 일어나는 증거물의 허용에 대한 질문은 양편 당사자들이 청문할 기회를 가진 다음에 위원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한편, 당사자나 당회원이거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의 결정에 대해 당회나 전권위원회에 항소할 수 있으며, 그 위원회는 다수표에 의해 그 질문을 결정해야 한다.

결석

b. 재판이 시작된 후 당회원이거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어느 회원의 결석은 기록해 두어야 한다. 그 후로부터 그 사람은 그 사건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D-11.0305
정족수 미달

정족수의 미달은 그 사건을 미결 재판으로 끝나게 하고 그 사건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D-11.0306
비공개 회의
절차

그 절차는 일반적으로 공개회의로 진행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어느 편의 요구나 그 자체의 발의로 당회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는 그 절차의 어느 과정에서 출석회원 2/3의 투표로서 당사들이나 변호인 외에 다른 사람들을 제외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D-11.0400**4. 재판**D-11.0401
무죄의 추정

징계사건에 있어서 피소인은 그 반대가 증명되기까지 무죄로 추정되며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유죄가 성립되지 않는 한 피소인은 무죄로 인정된다.

D-11.0402
징계사건의 절차

징계사건의 재판은 다음과 같이 진행해야 한다:

위원장에
의한 선포

a. 위원장은 D-1.0101 과 D-11.0102 를 큰 소리로 읽고 **공의회**가 재판을 진행시키려 한다고 선언하고 위원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공의회**에 속한 판정관들로서의 높은 인격과 그들이 수행하려는 엄숙한 의무를 기억하며 중시하도록 일러야 한다.

전권위원의 자격	b. 당사자들이나 그들의 변호인은 당회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조직과 관할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의견이 청취되도록 할 수 있다.
부적격성	(1) 당회원이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위원은 그가 개인적으로 그 사람과 관계되었거나 어느 한편 당사자와 혈연관계나 결혼관계가 있거나, 어느 한편을 적극 지지나 반대를 해왔거나, 또는 D-5.0205의 규정에 의해 적절치 못한 사람이면 실격하게 된다.
항의	(2) 어느 당회원이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위원은 어느 편 당사자로부터 항의를 받을 수 있으며, 그 항의 타당성은 당회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나머지 위원들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예비적 반론	c. 당회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는 모든 예비적 반론과 절차 진행의 질서나 규칙에 영향을 끼치는 다른 어떤 반론을 확정해야 한다. 당회나 전권위원회는 그 사건을 기각하거나 정의의 촉진을 위해 고소에 대한 개정을 허용할 수 있다. 단, 그런 개정이 고소의 본질을 변경시키지 않고 또는 피소인에 대한 편견이 없어야 한다.
변론	d. 만일 절차가 질서 있게 되어 있고 고소가 충분하다고 인정되면, 피소인이 매 고소에 대해 “유죄”나 “무죄”를 주장하도록 하게 해야 한다. 그 변론 주장을 기록해 두어야 한다. 만일 피소인이 답변을 거절하거나 “무죄”라고 주장하면, “무죄”의 주장을 기록해 두고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 만일 피고인인 “유죄”를 주장하면 그 공의회 는 D-11.0403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개정진술	e. 당사자들에게 개정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증거의 규칙	f. D-14.0000에 있는 증거의 규칙을 따라야만 한다.
기소	g. 기소위원회는 피소인에 의한 반론과 대질 심문을 조건으로 고소를 입증하는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반론	h. 피소인은 기소위원회에 의한 반론과 대질 심문을 조건으로 증거를 제시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
반박	i. 기소위원회는 그때 추가 증거를 소개할 수 있는데, 다만 피소인을 대신하여 소개된 증거를 반박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이 추가 증거는 피소인에 의해 반론과 대질 심문을 조건으로 한다.
최종 진술	j. 당사자들에게 최종 진술을 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기소위원회가 그 논의를 시작하고 마감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
D-11.0403 판결	당회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는 그 다음 비공개로 모여야 한다. 당회원이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 위원이 아닌 사람들은 모두 제외되어야 한다.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a. 신중한 심의 후에 당회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는 매 고소를 분리해서 투표하고 회의록에 투표를 기록해야 한다. 피소인에게서 고소의 유죄를 찾기 위해서 당회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는 그 고소 내에서 그 타당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음을 발견해야 한다.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는 증명은 모든 증거의 비교와 고려에 의해 고소를 입증할 물적 사실이 진실이라고 확신시켜줄 때 나타난다.

- 2/3 투표에 의한 유죄판결
서면 결정서
공개회의에서 공포
책벌의 정도
즉시 접수
당사자들에게 통보
공개
- b. 투표권이 있는 당회원이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 위원의 적어도 2/3 가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 한, 고소에 대한 유죄 판결은 할 수 없다.
- c. 매 고소에 대한 판결과, 만일 있다면, 책벌의 정도의 결정을 진술한 서면 결정서는 회기 중에 준비되어야 한다. 그것은 당회장과 당회서기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위원장과 서기가 서명했을 때 최종 결정이 된다.
- d. 당회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가 결정에 도달했을 때, 당회장(위원장)은 공개회의에서 고소에 대한 평결을 각각 분리해서 공포해야 한다.
- e. 피소인이 유죄로 판명되거나 유죄 답변을 한 후, 당회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는 손상입은 정도, 경감, 복권과 배상에 관한 증언을 청문해야 한다. 이 증거는 당사자의 어느 편이나 원고나 그 사람의 대리인에 의해 제공될 수 있다. 범법행위에 의해 직접적으로 손상을 입은 사람이 피해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진술에 대해 반대신문을 해서는 안된다. 당회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는 그때 부과할 책벌의 정도를 결정하기 위해 비공개로 모여야 한다 (D-12.0000). 그런 결정에 이어 공개회의에서, 당회장이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 위원장은 그때 책벌을 선포해야 한다.
- f. 그 결정은 당회서기나 **공의회**의 서기에게 즉시 접수시켜야 한다.
- g. 당회서기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서기는 인편으로나 배달 증명 우편으로 그 결정에 이름이 적힌 때 당사자에게 결정서의 사본을 전달해야 한다.
- h. 당회장이나 당회서기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위원장이나 서기는 당회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가 지시하는 대로 그 결정을 배포해야 한다.

D-11.0500

5. 상소의 규정

- D-11.0501
상소의 시일
D-11.0502
상소
- 상소를 접수할 시일은 그 결정이 유죄로 판명된 사람에게 전달되거나 그에 의해 거절된 일자로부터 산출해야 한다.
- 유죄로 판명된 사람만이 상소의 첫 단계를 주도할 수 있다. 당사자 어느 편이나 항소 결정의 상소를 주도할 수 있다. 상소의 규칙은 D-13.0000 에 나온다.

D-11.0600

6. 절차의 기록

- D-11.0601
구두기록
증거물
- 당회의 서기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서기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해야 한다:
- a. 모든 증언과 구술 절차에 대한 정확한 구두 기록을 미리 마련한다.
- b. (증거물로 접수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명시해서) 증거로 제시한 모든 증거물을 확인하고 보존하고 모든 증거물의 목록을 작성한다.

회의록 c. 그 절차의 회의록을 기록하는데 거기에는 투표와 함께 그 사건에 관련된 당회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어떤 결의나 지시를 포함해야 한다.

기록 d. 다음 사항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의 기록을 준비해야 한다.

- (1) 고 발;
- (2) 매 고소에 관해 피소인에 의해 제기된 변론의 기록;
- (3) 만일 요청이 있다면, 증명받은 등본;
- (4) 적절히 표시된 증거물, 기록, 문서, 그리고 기타 서류;
- (5) 매 고소를 위한 평결과, 만일 있다면, **공의회**가 부과한 책벌의 정도를 포함한 서면 결정서;
- (6) 그 사건에 관련된 투표를 포함한 당회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어떤 결의나 지시.

기록의 보존 e. 모든 기록의 원본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보존한다:

- (1) 당회서기는, 최종 결정 후에, 사건의 기록을 적어도 2년간 보유해야 한다.
- (2)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서기는, 최종 결정 이후 14 일 이내에, 선출 공의회 서기에게 그 사건의 기록을 확인하고 전달해야 하며, 그는 그것을 적어도 2년간 보관해야 한다.

등 본 f. 청원에 따라서 그리고 요청하는 측의 비용으로, 여건이 허락하는 한 신속히 재판과정에 있었던 모든 증언과 구두 절차의 정확하고 완전한 등본을 마련해 두어야 한다. 이 등본은 정확하고 완전하다고 그 사람이 확인할 때, 만족할 만한 비용 지불 절차에 따라 그것을 요구한 각 당사자에게 전달되어야 하고, 또 D-13.0000 에 의한 장소에 대비하여 발송될 수 있도록 추가 사본 1 부는 기록부에 포함시켜야 한다.

D-11.0602 기록에 추가 아무도 그 재판 집행에 책임을 진 당회장과 당회서기 또는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위원장과 서기에 의해 결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어느 사건의 기록에 보충하거나 추가해서는 안 된다. 그 기록을 보충하겠다는 요청은 당회서기나 하위 **공의회**의 서기로부터 서면으로 받기 전까지는 고려할 수 없으며, 그 서기는 당회장이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위원장과 서기에게 전달해야 한다. 요청서의 사본은 모든 당사자들에게 전달되어야 하며 각 당사자는 서면으로 응답하는 데 10 일 기한을 가져야 한다.

D-11.0700 7. 서기의 임무

D-11.0701 결정 보고 만일 노회가 그 결정을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서기로부터 접수할 때가 회기 중이면, 그 서기는 그 결정을 즉시 보고해야 하며, 노회 회의록에 결정 전부를 기록해 넣어야 한다. 만일 노회가 회기 중이 아니면 그 서기는 그 첫 번째 정기회의가 그 후 휴회한 회의나 그 목적을 위해 소집한 회의에서 그 결정을 노회에 보고해야 하며, 그 노회의 회의록에 결정 전부를 기록해 넣어야 한다.

D-11.0800

8. 집행

D-11.0801
공의회에 의한
집행

당회가 재판을 끝내고 피소인의 유죄가 판명되고 그 결정이 선언되었을 때, 또는 상위 공의회가 서기가 피소인이 유죄하다는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결정을 접수했을 때, 당회나 상위 공의회는 그 결정의 집행을 진행해야 한다. 판결을 받은 사람은 당회나 노회가 상소 계류 중에 그에게 직제사역을 계속하도록 허락하는 요구를 특별히 승인하지 않는 한, 상소가 결정되거나 상소 기간이 만료되기까지, 상황에 따라서 직제사역의 행사나 회의에 참석하여 투표를 하는 일을 그만두어야 한다.

D-12.0000

제12장 징계사건의 책벌과 회복

D-12.0100

1. 책벌

D-12.0101
교회 책벌의 등급

교회 책벌의 등급은 견책, 감독 복권 상담의 견책, **직제사역**이나 회원권으로부터의 일시 정지, 그리고 **직제사역**이나 회원권으로부터의 박탈이다.

D-12.0102
기도가 따른
견책

견책은 범법에 대한 책벌의 최하 등급이고 선포했을 때 완료된다(D-11.0403e). 그 것은 범법의 성격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으로 책망과 동시에 다음과 같이 또는 아래 형식으로 선포해야 한다:

당신 _____ 은
_____ (범법내용을 기입해
넣는다)의 범법으로 유죄하며 그런 범법(들)에 의해 당신은
(성경)과/또는 미국장로교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_____
노회(또는 당회)는 미국장로교의 이름과 권위로 이 범법의 잘못을
지적하고 당신을 견책합니다. 당신은 이제 이후로 더욱더 조심하여
그런 범법을 피해야 합니다. 우리는 당신이 더욱 부지런히 은혜의
방편을 끝까지 사용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더욱 순종하도록
당신에게 권고합니다.

기도

이 공식적 견책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증보기도가 따라야 한다.

D-12.0103
감독 복권
상담의 견책

감독 복권 상담의 견책은 책벌의 최하등급의 바로 위다. 그것은 책망, 그리고 당회와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에 의해 부여된 감독 복권 상담의 기간을 명하는 일과 함께, 범법의 성격을 밝히는 것이다(D-11.0403e). 이 책벌은 다음과 같이 또는 아래 형식으로 선언되어야 한다.

당신 _____ 은
_____ 의 범법으로 유죄하며
그런 범법(들)에 당신은 성경/또는 미국장로교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_____ 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또는 당회)는 미국장로교의 이름과 권위로 이
범법의 잘못을 지적하고 당신을 견책하며, 아래
_____ 에 기술된 대로 _____ 의
지도하에 감독 복권 상담 프로그램을 마치도록 명령합니다.

당신은 이제 후로 더욱 조심하여 그런 범법을 피해야 합니다. 우리는
당신이 더욱 부지런히 은혜의 방편을 끝까지 사용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더욱 순종하도록 당신에게 권고합니다.

기도

a. 그 견책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증보기도가 따라야 한다.

복권 상담의
목적 전달

b. 당회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는 감독관(들)에게 주어진 구체적 권한과 복권 상담의 목적을 감독기관과 책벌받은 사람에게 공식적으로 전달해야 한다.

평가와 복권
상담의 진술

c. 복권 상담 프로그램의 기술서는 진전 사항을 어떻게 평가할 것과 만일 감독 복권상담이 만족스럽게 완수되었다면 그 시기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진술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d. 다른 사람을 성희롱한 범법 사건에 있어서 복권 프로그램은 유죄로 판명된 자가 자발적 회개나 회개행위를 완전히 끝낼 수 있도록 조언하는 일이 포함될 수 있다. 그러한 행위로서 다음이 포함될 수 있다: 공개적으로 죄를 인정하는 것, 커뮤니티 봉사, 피해자의 손상이나 손실에 대한 상징적인 복구, 그리고/또는 피해자의 의료/심리상담 지불기록에 대한 경비 분담.

D-12.0104
일시 정지

직제사역이나 회원으로부터의 일시 정지는 더욱 심한 범법에 대한 보다 높은 책벌의 등급이고, 일정한 기간 또는 당회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에 의해 부여된 감독 복권 상담의 완료까지의 기간이어야 한다(D-11.0403e). 이 책벌은 다음과 같이 또는 아래 형식으로 선언되어야 한다:

당신 _____ 은 _____ (범법 내용을 기입해 넣는다)의 범법으로 유죄하여 그런 범법(들)에 의해 당신은 (성경과/또는 *미국장로교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_____ 노회(또는 당회)는 미국장로교의 이름과 권위로 _____ 부터 _____ 동안 _____ 또는 _____ 의 감독하에서 아래 기술된 대로 _____ 복권 상담 프로그램의 완성시까지 이제 일시 정지처분을 선언합니다.

기도

a. 이 공식적 선언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증보기도가 따라야 한다.

감독 복권 상담

b. 만일 일시 정지 기간이 감독 복권 상담의 완료에 의해 한정되었다면, 당회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는 감독관에게 주어진 구체적인 권한을 감독기관과 유죄받은 사람에게 공식적으로 전달해야 한다.

c. 다른 사람을 성희롱한 범법 사건에 있어서 복권 프로그램은 유죄로 판명된 자가 자발적 회개나 회개행위를 완전히 끝낼 수 있도록 조언하는 일이 포함될 수 있다. 그러한 행위에는 포함될 수 있는 것들: 공개적으로 죄를 인정하는 것, 커뮤니티 봉사, 피해자의 손상이나 손실에 대한 상징적인 복구, 그리고/또는 피해자의 의료/심리상담 지불기록에 대한 경비의 분담.

직제사역 수행의
자제

d. **직제사역**으로부터의 일시 정지의 기간 동안, 유죄받은 사람은 **직제사역**의 모든 기능의 수행을 그만두어야 한다.

투표권이나
직책 못 가짐

e. 회원권으로부터 일시 정지의 기간 동안, 유죄받은 사람은 회의에 참석하고 투표하는 일과 어떤 직책을 갖거나 수행하는 일을 그만두어야 한다.

목사의 일시 정지의 영향

f. 만일 목사가 **직제사역**의 직무수행으로부터 일시 정지되었다면, 노회는, 만일 사건의 상소가 계류 중이 아니라면, 목회 관계가 해소되었음을 선언할 수 있다.

일시 정지의 통지

g. 일시 정지의 책벌이 **교역장로(목사)**에 관련하여 선언되었을 때, 노회서기는 총회서기에게 취해진 결의 정보를 즉시 보내야 하며, 총회서기는 교단 산하 모든 노회에 그런 모든 정보에 대한 계간 보고서를 보내야 한다.

일시정지
책벌의 종료

h. 일시 정지의 책벌하에 있는 사람은 당회서기나 상회의 서기를 통해 정지 기일의 종료나 감독 복권 상담의 완료에 근거하여 회복을 **공의회**에 서면으로 청원해야 한다. 책벌을 부과했던 **공의회**는 정지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또는 **공의회**가 감독 복권 상담의 완료에 전적으로 만족할 때, 회복을 승인해야 한다.

조기 복권

i. **직제사역**의 수행이나 회원권으로부터 일시 정지의 책벌하에 있는 사람은 정지 기간의 완료나 책벌에 정해진 감독 복권 상담의 종결 이전에 회복되도록(서기를 통해) 책벌을 부과했던 **공의회**에 서면으로 청원해야 한다. 그 **공의회**는 그 결의의 정당함에 전적으로 만족할 때, 그런 회복을 승인할 수 있다.

D-12.0105
직제사역이나
회원권 박탈

직제사역이나 회원권으로부터의 박탈이 책벌의 최고 등급이다.

직제사역 박탈

a. **직제사역**으로부터의 박탈은 유죄받은 사람의 안수와 선출을 취소하고, 그 사람의 회원권으로부터의 박탈은 없이, 모든 **직제사역**에서 박탈되는 책벌이다.

회원권 박탈

b. 회원권으로부터의 박탈은 유죄받은 사람의 회원권이 종결되며, 그 사람이 모든 명부에서 삭제되고 그 사람의 안수와 모든 **직제사역**에의 선출이 취소되는 책벌이다.

이 책벌은 다음과 같이 또는 아래 형식으로 선언되어야 한다.

당신 _____은
_____ (범법내용을 기입해 넣는다)의 범법에 유죄하여 그런 범법(들)에 의해 당신은 (성경과/또는 *미국장로교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_____ 노회(또는 당회)는 미국장로교의 이름과 권위로 당신을 _____ (여기에 박탈이 안수받고 선출된 **직제사역**으로부터인지 또는 모든 **직제사역**으로부터의 삭제를 포함하는 회원권으로부터의 박탈인지를 기술한다)로부터 취소하고 박탈합니다.

기도

c. 이 공식적 선언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증보기도가 따라야 한다.

직제사역으로부터
박탈의 결과

d. 만일 **교역장로(목사)**가 회원권으로부터의 박탈이 아닌 **직제사역**으로부터 박탈되면, 노회는 그 **교역장로(목사)**에게 회원 증명을 주어 그 **교역장로(목사)**의 선택에 따라 어떤 기독교회로 보내야 한다. 만일 **교역장로(목사)**가 목회자면, 그 목회 관계는 책벌에 따라 자동적으로 해소된다.

박탈 통지

e. 박탈의 책벌이 **교역장로(목사)**에 관련하여 선포되었을 때, 해당 노회의 서기는 총회서기에게 취해진 결의 정보를 즉시 보내야 하며, 총회서기는 교단 산하 모든 노회에 그런 모든 정보에 대한 계간 보고서를 보내야 한다.

D-12.0200

2. 회복

D-12.0201
공의회 결정

직제사역이나 회원권으로부터 박탈의 책벌하에 있는 사람은 **공의회**가 그 결의의 정당함에 전적으로 만족할 때와 그 사람이 회원권 회복을 위해 신앙의 재확인을 하거나 **직제사역**에 회복하기 위해 재안수를 받을 때 그 책벌을 부여한 **공의회**에 의해 회복될 수 있다. 회복의 양식은 D-12.0202 와 D-12.0203 에 기술되어 있다.

D-12.0202
박탈 후 직제사역에의
회복 양식

직제사역에의 회복은 다음과 같이 또는 아래 형식으로 **공의회** 의장에 의해 선언되어야 한다.

양 식

a. 당신(이름) _____ 은 교회를 만족시킬 만한 회개를 분명히 보여 주었으므로, _____ 노회(또는 본 교회의 당회)는 이제 당신을 본교단의 헌법에 따라 이 안수 행위에 의해 _____ 의 직제사역에 회복시키고, 그 사역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권한을 부여합니다.

명부에 회복

b. 그 후에 정식 안수 예식이 거행되고 그 이름이 해당 명부에 회복되어야 한다 (W-4.4000).

D-12.0203
박탈 후 회원권
회복양식

회원권에 회복은 다음과 같이 또는 아래 형식으로 **공의회**의 회의에서 공의회 의장에 의해 선포되어야 한다:

양 식

a. 당신(이름) _____ 은 교회를 만족시킬 만한 회개를 분명히 보여 주었으므로, _____ 노회(또는 당회)는 이제 당신을 이 재확인 결의에 의해 교회의 완전한 회원권에 회복합니다.

명부에 회복

b. 그 후에 재확인 결의가 취해져야 하고, 그 이름이 해당 명부에 회복되거나 회원 증명서가 그 사람의 선택에 따라 어느 기독교회로 발부되어야 한다.

직제사역 회복

c. 만일 회원이 직제사역에도 회복되려면, D-12.0202 에 규정된 절차를 따라야 한다.

D-13.0000

제13장 징계사건의 상소

D-13.0100

1. 상소의 착수

D-13.0101

정의

징계사건의 상소는 절차와 결정을 교정하거나, 수정하거나, 취소하거나 그 결정을 반복 시키려는 검토의 목적으로 하위 공의회에서 이루어진 사건을 차상위 공의회에 이첩하는 일이다.

D-13.0102

상소의 착수

유죄 판결을 받은 자만이 서면의 상소문을 제출함으로써 첫단계 상소를 개시할 수 있다.

D-13.0103

항소판결의 상소

어느 편 당사자나 서면 상소장을 접수시킴으로 항소 판결의 상소를 착수할 수 있다.

D-13.0104

상소의 효력

상소장은, 만일 적절하게 시간에 맞추어 접수되었다면, 하위 공의회에 의한 앞으로의 절차를 중지시켜야 한다. 단, 예외는 **직제사역**의 수행이나 회원권의 일시 정지 또는 **직제사역**이나 회원권으로부터 박탈의 경우, 그 판결의 선언을 받은 그 사람은 상소가 최종적으로 결정되기까지 **직제사역**의 수행이나 회의에 참여하여 투표하는 일을 삼가해야 한다.

D-13.0105

상소의 철회

신청에 따라 상위 공의회 상임사법 전권위원회는 상소의 철회를 위한 청원을 승낙할 수 있다. 상임사법 전권위원회는 만일 그것의 승인이 정의의 목적을 좌절 시킨다면 청원을 거부해야 한다.

D-13.0106

상소의 근거

상소의 근거들은 다음과 같다

- a. 절차상 변칙;
- b. 한편 당사자에게 청문이나 증거를 얻거나 제시할 합리적 기회를 거부;
- c. 부적절한 증거나 증언을 얻거나 적절한 증거나 증언을 얻는 일 거절;
- d. 증거나 증언을 충분히 얻기 전에 결정을 조급히 서두름;
- e. 사건 처리 과정에서 편견의 명시;
- f. 과정이나 결정에 있어서 부정;
- g. 헌법적 해석에 있어서 과오;
- h. 책벌의 지나친 가혹성.

D-13.0200

2. 상소 과정의 접수

D-13.0201

서면 상소장의
접수 기간

서면 상소장은 판결문의 사본이 상소하는 당사자에게 배달 증명 우편이나 인편으로 전달된 후 45 일 이내에 접수시켜야 한다.

- a. 서면 상소장은 당회서기나 그 판결로 인해 상소가 취해진 상임사법 전권위원회를 선출한 하위 공의회 서기에게 접수시켜야 한다.
- b. 상소하는 당사자는 당사자 각 사람에게와 그 상소를 청문할 공의회 서기에게 상소장의 사본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D-13.0202

서면 상소장의 내용

서면 상소장은 다음 사항을 명시하고 포함시켜야 한다.

- a. 상소인 또는 상소인들, 그리고 있을 경우 그들의 변호인이라고 불리우는 상소를 접수시키는 당사자나 당사자들의 성명;
- b. 피소인 또는 피소인들, 그리고 있을 경우 그들의 변호인이라고 불리우는 상대방 당사자나 당사자들의 성명;
- c. 그 판결로부터 상소가 취해진 **공의회**;
- d. 상소가 취해진 판결이나 결정, 그리고 날짜와 장소(상소장과 함께 판결 또는 결정의 사본을 동봉할 것);
- e. 상소를 위한 근거인 상소에 관한 심리 또는 청문을 처리한 상임사법 전권위원회 또는 당회의 과오 진술서(D-13.0106); 및
- f. 상소장의 사본이 상대권 당사자들과 각 사람들에게와 상소를 청문할 **공의회**의 서기에게 배달 증명 우편이나 인편으로 제공되었다는 확인서.

D-13.0203
임원들에게
상소장 전달

상소장이 접수되고 결정이 상소되었을 때, 상위 **공의회**의 서기는 그 기록들을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임원들에게 넘겨 주어야 한다.

D-13.0300

3. 청문 이전 절차

D-13.0301
서류 검사

D-13.0203 에서 규정된 서류 접수 시, 그 사건을 청문할 **공의회**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위원장과 서기는 다음 사항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서류를 즉시 검토해야 한다.

- a. 그 **공의회**의 권한 여부;
- b. 그 상소인이 상소를 접수시킬 자격이 있는지 여부;
- c. 그 상소 서류가 적절히, 그리고 적시에 접수되었는지 여부;
- d. 그 상소가 D-13.0106 에 정해진 상소를 위한 한 가지나 그 이상의 근거를 진술하고 있는지 여부.

D-13.0302
예비 질문결정

위원장과 서기는 당사자들과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에게 그들의 소견을 보고해야 한다.

- a. 만일 소견이 접수되고 30 일 이내에 사건의 어느 당사자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 위원에 의해 위원장과 서기의 소견에 항의가 행해지면, 논의 중인 소견에 관한 증거와 논의를 제시할 기회가 마련되어야 한다.
- b. 만일 논의 중인 항목을 결정하는 데 청문이 필요하다면, 재정적 고려를 포함해서, 상소에 관한 청문 바로 전에 예비 질문의 처리를 할 만한 상황이 아닌 한, 그 청문은 상소 청문 이전 적어도 30 일 이내에 일정을 정해야 한다.
- c. 만일 상임사법 전권위원회가 D-13.0301 에 열거된 어느 사항이라도 부정적으로 해답 되었다고 확정하면, 상임사법 전권위원회는 그 상소를 기각해야 한다.
- d. 만일 D-6.0305(또는 D-8.0301 이나 D-13.0106)에 열거된 하나 이상의 항목들에 대해 아니요 라고 답이 내려졌다는 위원장과 서기의 조사결과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 되지 않는다면, 그 사건은 더 이상 상임사법위원회의 결의나 명령 없이 기각되어야 한다.

D-13.0303 상소 기록	상소에 관한 기록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
기록의 목록	a. 서면 상소장의 접수 후 45 일 이내에, 당회서거나 하위 공의회 서기는 그 사건의 기록을 이루는 모든 서류와 기타 자료들을 당사자들에게 서면으로 목록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D-11.0601d).
추가 기록	b. 그 후 15 일 이내에, 어느 당사자나 서기에 의해 목록이 만들어진 사건 기록의 정확성이나 완결성에 항의하는 서면 진술서를 하위 공의회 의 서기에게 접수시킬 수 있다. 그 서면 항의서는 사건의 기록에서 누락되었다고 주장하고자 하는 D-11.0601d.에 열거된 항목이나 항목들을 명확하게 진술해야 한다.
상소기록의 접수	c. 관할권을 가진 상위 공의회 의 서기로부터 해당 사건이 접수되었다는 통보를 받으면, 하위 공의회 의 서기는 사건의 기록을 확인하고 상위 공의회 의 서기에게 접수시켜야 하는데, 거기에는 그 기록 부분의 인증 사본을 포함시킬 수 있으며, 그 기록의 완결성과 정확성을 논박하는 서면 항의서를 포함시켜야 한다.
기록의 교정	d. 만일 당사자 어느 편에게 보낸 자료의 어느 부분이 실수나 우연으로 그 기록에 누락되었거나 그 안에 허위 진술되었으면, 누락이나 허위 진술은 교정될 수 있다. 당사자들이 그 교정을 명기하거나, 당회나 하위 공의회 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가 보충 기록을 확인하고 전달하거나, 상위 공의회 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가 누락이나 허위 진술을 교정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그 기록의 형식과 내용에 관한 다른 모든 질문서는 상위 공의회 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접수일자 통보	e. 상위 공의회 의 서기는 상소에 관한 기록이 접수된 일자를 당사자들에게 통보해야 한다.
사본제공 비용	f. 서면 요청에 따라서 상위 공의회 의 서기는 상소하는 당사자 어느편이든지 그들의 비용 부담으로 상소 기록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연장	g. 이유가 합당하면 상위 공의회 의 서기는 D-13.0303 에 있는 시간 제한을 적당한 기간 동안 연장할 수 있다.
D-13.0304 상소인의 적요서 접수	상소 기록을 접수한 일자 후 30 일 이내에, 상소인은 오류 혐의 명세서와 변론서, 논의서, 그리고 자세히 열거한 오류 혐의에 관해 상소장에서 상소인의 주장을 지지하는 당국의 소환장을 포함한 서면 적요서를 상위 공의회 의 서기에게 접수시켜야 한다.
상대방에게 사본 전달	a. 그 적요서에는 사본 한 통이 상대편 당사자나 당사자에게 제공되었다는 확인서를 동반해야 한다.
연장	b. 이유가 합당하면, 상위 공의회 의 서기는 이 시간 제한을 적당한 기간동안 연장할 수 있다.
적요서 접수 실패	c.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한 기한 내에서 적요서의 접수를 상소인이 하지 못할 때, 상임사법 전권위원회는 이를 상소의 포기로 판단해야 한다.
D-13.0305 피소인의 적요서 접수	상소인의 적요서 접수 후 30 일 이내에, 피소인은 상위 공의회 의 서기와 함께 거기에 응답하는 서면 적요서를 접수시켜야 한다.

- 상대방에게 사본 전달
 - a. 그 적요서에는 사본 한 통이 상대방 당사장나 당사자들에게 제공되었다는 확인서를 동반해야 한다.
- 연장
 - b. 이유가 합당하면, 상위 **공의회**의 서기는 이 시간 제한을 적당한 기간동안 연장할 수 있다.
- 적요서 접수 실패
 - c.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한 기한 내에서 적요서의 접수를 피소인이 하지 못할 때 적요서 접수와 출두와 청문의 권한을 포기하는 것으로 여겨야 한다.

D-13.0306 기록과 적요서 전달
 기록과 적요서의 접수나 그것들과 접수 시기의 만료에 따라 상위 **공의회**의 서기는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서기에게 그 기록과 적요서를 전달해야 한다.

D-13.0307 사전 청문회
 상임사법 전권위원회가 상소를 접수한 후 어느 때에라도, 그 위원회는 규칙대로, 상소내의 논쟁점에 관한 일치를 구하거나, 합리적으로 그리고 공정하게 논점을 좁혀주고 그 해결책을 촉진시킬 수 있는 행동을 취하기 위해, 당사자들과 그들의 변호사를 위해 사전청문회를 마련할 수도 있다.

D-13.0400 4. 상소의 청문

D-13.0401 청문통보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위원장이나 서기는 상소를 제기하기 위해 당사자들이 본인 자신이나 변호인에 의해 상임사법 전권위원회 앞에 출두 할 수 있는 일자를 그들에게 통보해야 한다.

D-13.0402 출두실패
 어느 편 당사자가 본인 자신이나 변호인에 의해 출두하지 못하면 상소에 관한 청문 참여에 포기로 간주해야 한다.

D-13.0403 청문
 청문 시 상임사법 전권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행해야 한다.

- 새 증거
 - a. D-14.0502 의 규정하에서 그런 새 증거의 구술 기록을 마련한 새로이 발견된 증거를 접수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 청문
 - b. 상소인이 변론의 개시와 종결의 권한을 가지면서, 그 권리를 포기하지 아니한 당사자들에게 상소의 근거에 관해 청문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D-13.0404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결정
 청문과 심의 후에 상임사법 전권위원회는 오류혐의의 각 세목을 분리해서 투표해야 한다. 투표 시 이런 질문을 해야 한다. “오류의 세목이 입증되는가?” 회의록에는 오류의 각 세목에 대한 투표수를 기록해야 한다. **만일 상소가 무죄 평결에 불복하는 기소위원회에 의해 개시되고 상임사법전권위원회가 그 부분의 상소를 지지할 경우, 상임사법전권위원회는 새로 재판을 하도록 사건을 환송해야 한다.**

- 만일 오류가 발견 안되면
 - a. 만일 오류의 세목 중 어느 하나도 입증되지 않고 다른 오류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하위 **공의회**의 결정은 확인되어야 한다.
- 만일 오류가 발견되면
 - b. 만일 한 가지나 그 이상의 오류가 발견되면, 상임사법 전권위원회는 하위 **공의회**의 결정을 확인하든지, 파기하든지, 번복하든지, 조절하든지, 그 사건을 새 심리를 위해 반송하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서면 결정서

c. 서면 결정서는 회기 중에 준비해야 하고, 서면 결정서의 사본이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서기와 위원장이 서명할 때 그것은 최종 결정이 되어야 한다.

각 오류의 판결

d. 그 결정서는 상세한 오류의 판결을 포함해야 하고 D-13.0101에 마련된 대로 구제계획을 진술해야 한다. 상임사법 전권위원회는 중복을 피하여 실질적인 모든 질문을 처리할 방법으로 그 결정서를 마련한다. 그것은 그 판결의 설명서를 포함한다.

즉시접수

e. 그 결정서는 상임사법 전권위원회를 임명한 공의회와 그 사건의 당사자들에게 인편이나 배달 증명 우편으로 즉시 접수시켜야 한다.

공개

f. 위원장이나 서기는 그 전권위원회가 지시하는 대로 그 결정서를 배포해야 한다.

D-13.0405
징계사건에 있어 상소에 의한
반복 효력

징계사건의 상소를 맡은 상임사법 전권위원회가 유죄의 모든 판결을 반복할 경우, 그것은 사실상 무죄 방면이며 그 사람은 교회의 **직제사역**이나 회원권에 자동적으로 회복된다. 이 효력에 대한 선언은 하위 **공의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D-14.0000

제14장 교정사건이나 징계사건의 증거

D-14.0100

1. 증거

D-14.0101
증거의 정의

증거는 증인들의 구술 증언 외에, 사실의 존재나 부재를 증명하는 기록과 글, 중대한 물적증거와 기타 사물들이 포함될 수 있다. 증거는 관련성이 있는 것만 인정되어야 한다. 필수적 증명의 등급에서 직접 증거와 상황 증거 사이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D-14.0200

2. 증인

D-14.0201
이의 제기

당사자나 증언할 증인의 능력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당회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는 이의 제기를 받은 증인의 적격성에 대해 결정하여야 한다.

D-14.0202
남편이나 아내

적격성이 있다 할 때, 남편과 아내, 서로 상대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증인이 될 수는 있으나, 남편과 아내가 서로 반대하는 증인으로 증언하도록 강요받을 수 없다.

D-14.0203
상담자

공의회 관할권 안의 사람들에게 상담업무를 제공하도록 공의회로부터 정식 임명을 받은 사람은 당회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에 나와 증언할 수 없다. 단, 증언의 표적이 된 당사자가 자신에 대해 증언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겠다고 포기할 때는 예외이다.

D-14.0204
당사자들의 변호인

사건에 연루된 당사자들의 변호인은 개인기밀 문제에 관한 증언을 강요받지 않을 것이며, 의뢰인으로부터 명시적인 승낙을 받지 않고는 다른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증언하지 않는다..

D-14.0205
증인의 신빙성

신빙성이란 증인의 증언이 믿을 만한 것인지의 정도를 의미한다. 당회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는 증인의 신빙성을 결정함에 있어, 증인이 증언하는 내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뒷받침해주는 점들을 고려할 수 있다.

D-14.0300

3. 증언

D-14.0301
분리 심문

어느 편 당사자의 요청이 있을 때, 증인들은 다른 증인이 심문을 받는 중에 출석할 수 없다. 이 것이 피소인이나 피고인의 변호인단의 출석 권리 또는 전문가 증인의 출석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

D-14.0302
증인의 심문

징계사건이나 교정사건의 증인들은 증언을 요청한 쪽의 심문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반대편 쪽의 대질 심문을 받는다. 그런 다음에 당회 회원이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 위원이 추가 질문을 할 수 있다.

선 서 a. 증인은 증언을 하기 전에 다음 질문에 긍정의 답변을 함으로써 선서를 해야 한다:

“본 사건과 관련하여 당신이 지금 제공하게 될 증거가 진실이고, 거짓 없는 완전한 진실이 될 것을 하나님 앞에서 엄숙히 서약합니까?”

확 약 b. 만일 증인이 선서하기를 반대할 경우, 다음 질문에 긍정의 답변을 해야 한다:

“증언하도록 부름을 받은 사건으로 당신이 지금 제공하게 될 증거가 진실이고 거짓없는 완전한 진실이 될 것을 엄숙히 확약합니까?”

D-14.0303 각 증인의 증언은 공인 속기사에 의해, 또는 기타 방식으로 정확하게 증언의 기록 하게 전부 기록되어야 한다.

D-14.0304 당회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는 계류 중인 담당 사건과 관련하여 증언녹취에 의한 증언 어느 편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때, 증언녹취의 형태로 증언을 받아 기록하도록 한 사람이나 그 이상의 사람들을 임명할 권한을 가진다.

타 공의회에서 온 사람 a. 필요할 경우, 그와 같이 임명받은 사람(들)이 타 공의회에서 올 수 있다.

증언의 취득 b. 증인들의 심문 시간과 장소가 양방 당사자들에게 통지된 다음, 그와 같이 임명받은 사람은 어느 일방의 당사자가 제공하는 증언을 기록한다. 당사자들은 전원 출석할 권리가 있으며, 반대심문할 기회가 허락되어야 한다.

증거로서 제공 c. 그와 같이 임명된 사람(들)의 서명(들)에 의해 적절하게 검증된 녹취서는 어느 한 당사자의 증거로서 현안의 당회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 서기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증거 허용성의 쟁점들 d. 증언녹취에서 진술된 내용의 증거 허용성에 관한 모든 쟁점들은 그러한 증언 기록이 증거로서 제출될 당시에 당회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가 판정을 내린다.

D-14.0305 현안의 사건에 대해 당회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 회원이 증언을 증인으로서는 할 수는 있으나, 일단 증언을 한 다음에는 그 사건에 그 밖의 방법으로 참여해서는 안 된다. 회원

D-14.0400 4. 증거로서의 기록

D-14.0401 공의회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검증된 서면기록은 어떤 절차에 기록의 허용성 나 증거로 허용되어야 한다.

D-14.0402
증언의
허용성

공의회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에 의해 채택되었고, 정기적으로 검증이 된 증언의 기록이나 사본은 타 공의회에서 어느 재판 과정에서나 증거로 허용되어야 한다.

D-14.0500**5. 새 증거**

D-14.0501
새 재판 신청

상소 통보를 제출하기 이전, 상소 기한을 연장하지 않고서, 위법에 대한 유죄가 확정된 사람이나 또는 교정사건에서 내려진 명령이나 판결에 상소하는 당사자는 새로이 발견된 증거에 근거하여 새 재판 신청을 할 수 있다. 당회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는 그러한 증거가 합리적으로 고려될 때 다른 판결을 초래할 수 있다고 납득될 때, 그리고 합리적인 주의의무 행사에도 불구하고 그 증거를 재판 당시에는 제출할 수 없었다고 납득이 될 때, 그런 신청을 허락할 수 있다.

D-14.0502
상소의 고려

만일 어느 편 당사자에 의해 상소가 제기된 다음에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으며, 이 증거는 합리적인 주의의무 행사에도 불구하고 상소통지 접수 이전에 발견될 수 없었다면, 상소를 접수받은 상임사법 전권위원회 재량으로 새로이 발견된 증거를 받아들이고 청문회를 개최하고 사건을 확정지을 수 있다. 그러나, 새 증거 도입을 추구하는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나 제3 당사자에게 청문회를 개최하기 적어도 30일 전에 사본을 보내고 신청을 하지 않은 한, 새로이 발견된 증거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 그 신청서에는 반드시 증거의 요약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부 록

- A. 사법절차 양식
(반대와 항의 포함)
- B. 합의 조항 (남북장로교 통합시의)
- C. 합의 약정서 (교단간의 완전교류를 위한)
- D.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들의
가시적 표시
- E. 미주한인장로회와 미국장로교 간의
계약관계
- F. 한국어 어휘

부록 A

사법절차 양식

(반대와 항의 포함)

양 식

개인의 고발장에 의해 고발, D-10.0102a (Form No. 26).....	A-15
공의회 회원의 고발장에 의해 고발, D-10.0102b (Form No. 27).....	A-16
고소에 대한 답변서, D-6.0303 (Form No. 9).....	A-7
검토 청원에 대한 조사위원회의 답변서, D-10.0204 (Form No. 28-B).....	A-18
검토 청원에 대한 조사위원회 답변서, D-10.0303b (Form No. 32).....	A-21
고소에 대한 답변서 송달 증명서, D-6.0303 (Form No. 10).....	A-7
적요서 송달 증명서, 징계사건, D-13.0304a, D-13.0305a (Form No. 49).....	A-32
적요서 송달 증명서, 교정사건, D-8.0304a, D-8.0305a (Form No. 22).....	A-13
고소장 송달 증명서, D-6.0301f (Form No. 7).....	A-6
소환장 송달 증명서, 징계사건 D-11.0202 (Form No. 43).....	A-27
소환장 송달 증명서, 교정사건 D-7.0202 (Form No. 16).....	A-10
상소 통보 송달 증명서, 징계사건 D-13.0202f (Form No. 47).....	A-30
상소 통보 송달 증명서, 교정사건 D-8.0202f (Form No. 20).....	A-12
공소, D-10.0403, D-10.0404 (Form No. 34).....	A-23

규례서/부록

교정사건 당사자에게 소환장, D-7.0201, D-7.0202 (Form No. 12).....	A-8
교정사건 당사자에게 소환장, 사전심리 회의, D-6.0310 (Form No. 11).....	A-8
피소인에게 소환장, D-11.0201a, D-11.0202 (Form No. 37).....	A-24
피소인에게 소환장, 사전심리 회의, D-10.0405a (Form No. 35).....	A-23
기소위원회에게 소환장, D-11.0201a, D-11.0202 (Form No. 39).....	A-25
기소위원회에게 소환장, 사전심리 회의, D-10.0405a (Form No. 36).....	A-24
증인에게 소환장, 징계사건, D-11.0201a, D-11.0202 (Form No. 40).....	A-26
증인에게 소환장, 교정사건, D-7.0201a, D-7.0202 (Form No. 13).....	A-9
고소장, D-6.0301 (Form No. 6).....	A-6
조사의 종결, D-10.0202g, D-10.0300 (Form No. 29).....	A-20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에 의한 검토 종결, D-10.0204b (Form No. 28-C).....	A-19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에 의한 검토 종결, D-10.0303 (Form No. 33).....	A-22
위임에 관한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결정, D-4.0200 (Form No. 51).....	A-33
반대, G-9.0303 (Form No. 1).....	A-1
상소인과 피상소인의 적요서 양식, 징계사건, D-13.0304, D-13.0305 (Form No. 48).....	A-31
상소인과 피상소인의 적요서 양식, 교정사건, D-8.0304, D-8.0305 (Form No. 21).....	A-13

상소 통보, 징계사건, D-13.0100, D-13.0201, D-13.0202 (Form No. 46).....	A-30
상소 통보, 교정사건, D-8.0100, D-8.0201, D-8.0202 (Form No.19).....	A-12
소환장 송달 명령, 징계사건, D-11.0202 (Form No. 42).....	A-27
소환장 송달 명령, 교정사건, D-7.0202 (Form No. 15).....	A-10
불기소 결정에 대한 재심 청원, D-10.0303a (Form No. 31).....	A-21
조사과정중, 조사 절차에 대한 검토 청원, D-10.0204 (Form No. 28-A).....	A-17
항의, G-9.0304 (Form No. 2).....	A-1
피소인에 의한 고소장 수신확인, D-6.0301f (Form No. 8).....	A-7
조사위원회의 보고서 수신확인, D-10.0300 (Form No. 30).....	A-20
위임, D-4.0000 (Form No. 50).....	A-32
조사위원회의 보고서, 결백입증 절차, D-9.0101b (Form No. 25).....	A-15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위원 3명이 서명한 집행유예의 요구, D-6.0103a (Form 5-A).....	A-5
증언녹취에 의한 증언취득 요구, 징계사건, D-11.0204, D-14.0304 (Form No. 45).....	A-28
증언녹취에 의한 증언취득 요구, 교정사건, D-7.0205, D-14.0304 (Form No. 18).....	A-11
결백입증 요구, D-9.0101 (Form No. 23).....	A-14
미국장로교 회원이 아닌 사람을 증인으로 요구, 징계사건, D-11.0201b (Form No.44).....	A-28

규례서/부록

미국장로교 회원이 아닌 사람을 증인으로 요구, 교정사건, D-7.0201b (Form No. 17).....	A-11
결백입증 요구의 검토, D-9.0101a (Form No. 24).....	A-14
피소인에게 2차 소환장, D-11.0202a, b (Form No. 38).....	A-25
증인에게 2차 소환장, 징계사건, D-11.0202a (Form No. 41).....	A-26
증인에게 2차 소환장, 교정사건, D-7.0203 (Form No. 14).....	A-9
회원이 범법자술서로 자신을 고발, D-11.0102c (Form No. 28).....	A-16
집행유예, 치리회의 1/3이 서명, D-6.0103a(1) (Form No. 3).....	A-2
집행유예, 사건을 주재하는 상임사법 전권위원회 위원들 1/3의 서명, D-6.0103a(2) (Form No. 4).....	A-3
집행유예, 고소나 상소를 접수하는 상임사법 전권위원회 위원 3명의 서명, D-6.0103a(3) (Form No. 5).....	A-4
집행유예, 고소나 상소를 접수한 상임사법 전권위원회 위원 3명의 서명 요구, D-6.0103a(3) (Form No. 5-A).....	A-5
증인 - 비밀유지 권리의 제한된 포기, D-4.0201 (G-4.0301) (Form No. 45-A).....	A-29

공의회의 결정에 불찬성을 기재하는 양식

양식 No. 1 반대, G-3.0105a

본인 _____ 은 _____ (공의회의 명칭)에 회원 또는 총대
로서 _____ (결정 또는 결의)에 본인의 반대표를 등록한다.

(서명)

[반대는 결정이 취해진 특정 회기가 휴회하기 전에 구두로 표명해야 한다. 상기 양식은 반대를 하
는 사람이 반대의사를 확실히 하기 위해, 서기나 정서기 또는 자신의 보좌관에게 줄 수 있다. 반
대하는 사람의 이름이 기록에 들어가야 한다.]

양식 No. 2 항의, G-3.0105b

본인 _____ 은 _____ (공의회 이름)에 회원 또는 총대로서,
_____ (변칙 또는 직무태만)에 항의하고자 한다.

본인의 항의 이유는 다음과 같다: _____.

(서명)

[항의의 서면 통보는 항의 사건이 발생한 그 공의회 회기 중에 제출되어야 한다.
그 항의는 폐회 되기 이전에 당회서기 또는 정서기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교정사건의 양식

양식 No. 3

집행유예

공의회의 1/3이 서명 D-6.0103a(1)

수신자: (고소인이 공의회의 결정에 대해 유예를 원하는 공의회의 서기)와 (상임사법 전권위원회
원회의 관할권을 가진 공의회 서기)

고소인

대

피소인

하기 서명인들은 _____ (공의회 이름 삽입) 회원들 중 최소한 1/3을 구성하며, _____ (집행유예되기 원하는 결의 삽입)에 대한 결의나 결정이 취해졌을 때 그 모임에 출석하였하였으며, 그 결의가 변칙적이었다고 믿는다.

[이 집행유예는 반드시, 취해진 결의에 도전하는 공의회 위원 한 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서 변칙에 대한 고소장과 동시에 제출되어야 한다. 피소인은 시행중지가 제기된 30일 이내에 집행유예에 대한 반대를 제기해야 한다. 집행유예를 존속시킬 것인지 제거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청문회가 열리고 나서, 상임사법 전권위원회가 사건의 시비곡직에 따라 판결을 내릴 때까지 그 유예를 수정하거나 종료하거나 지속시킬 수 있다.]

_____, 날짜 _____, 날짜 _____
_____, 날짜 _____, 날짜 _____
_____, 날짜 _____, 날짜 _____

[주: 필요한 수의 서명을 기록하도록 충분한 용지를 사용해야 하며, 각 서명은 본인의 실제 서명이어야 한다. 이름만 기입된 페이지 또는 서명 페이지의 부분은 요구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주: 고소인이 집행유예를 추구하는 결의를 취한 공의회 서기나 정서기는 그 서명자들이 공의회 회원들이었다는 사실과 그 결의나 결정이 내려질 때 출석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며, 그 증명서를 관할권을 가진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공의회 서기에 보내야 한다.]

양식 No. 4

집행 유예

사건을 주재하는 상임사법 전권위원회 위원들 1/3의 서명 D-6.0103a(2)

_____,
고소인, 상소인, 피상소인

대

_____,
피소인, 상소인, 피상소인

다음의 _____(공의회 이름)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 위원들은 상기 사건의 결의에 참여하였으며, 상위 공의회에서 사건의 상소가 재심될 때까지 집행유예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믿는 바, 여기에 서명을 한다.

_____,	날짜 _____	_____,	날짜 _____
_____,	날짜 _____	_____,	날짜 _____
_____,	날짜 _____	_____,	날짜 _____
_____,	날짜 _____	_____,	날짜 _____

오늘 본인은 요구되는 수의 서명을 접수하였다.

날짜

서기나 정서기의 서명

[주: 고소인/상소인은 청원서를 반드시 상임사법 전권위원회 서기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공의회 서기에게 송부해야 한다.]

양식 No. 5

집행유예

고소나 상소를 접수하는 상임사법 전권위원회 위원 3명의 서명, D-6.0103a(3)

고소인, 상소인, 피상소인

대

피소인, 상소인, 피상소인

하기에 명기된 사람들은 _____(결정이나 결의 제목 삽입)과 관련하여,
_____(공의회나 그 공의회 상임사법 전권위원회 또는 D-6.0202b(3)에 기명된 피소인 이
름 삽입)의 결정이나 결의에 대한 고소나 상소를 _____(날짜 삽입)에 심리할 관할권을
가진 상임사법 전권위원회 위원들로서, 집행유예 청원과 고소 또는 상소 통보를 접수하였으며,
결정이나 결의에서 오류를 발견할 만한 논거의 가능성이 존재하고, 결정이나 결의가 유예되지 않
으면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믿는 바, 집행유예를 허가한다.

_____, 날짜 _____, 날짜 _____
_____, 날짜 _____, 날짜 _____
_____, 날짜 _____, 날짜 _____
_____, 날짜 _____, 날짜 _____

오늘 본인은 요구되는 수의 서명을 접수하였다.

날짜

서기나 정서기의 서명

[주: 고소인/상소인은 반드시 고소나 상소를 심리할 관할권을 가진 상임사법 전권위원
회의 공의회 정서기에게 집행유예 청원서와 집행유예 양식과 고소, 또는 상소 통보장을 송
부해야 한다. 이 청원서는 고소나 상소 통보와 더불어, 직접 전달하거나 배달증명우편으로
송달되어야 한다. 양식 No. 5와 양식 No. 5A가 동시에 접수되어야 한다.]

양식 No. 5-A

집행유예

고소나 상소를 접수하는 상임 사법전권위원회의 위원 3명의 서명 요구서, D-6.0103a(3)

고소인, 상소인, 피상소인

대

피소인, 상소인, 피상소인

본 고소인 혹은 상소인은 _____ (결정이나 결의에 대
해 이의를 제기하는 근거를 간단히 기술)에 관련하여 _____ (날짜 기입)에
_____ (공의회나 그 공의회의 상임사법전권위원회 또는 D-6.0202b(3)에 기
명된 피소인 이름 기재)가 취한 결정이나 결의에 대한 집행 유예를 위한 이 요구서를 접수합니다.

만일 취해진 결정이나 결의가 유예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해(불이익)가 일어날 것입니다:

_____ (결정이 유예되지 않을 경우 일어날 불이익에 대해 간단히 기술).

이 사건에 관련된 당사자들이 전화번호 및 주소와 함께 아래에 적혀 있습니다.

_____, 고소인/상소인

_____, 주소

_____, 전화

_____, 피소인/피상소인

_____, 주소

_____, 전화

날짜

서기나 정서기의 서명

[주: 고소인/상소인은 고소나 상소를 심리할 관할권을 가진 상임 사법전권위원회의 공의회의 정서기에게 집행유예 청원서와 집행유예 양식과 고소 및 상소 통보장을 송부해야 한다. 이 청원서는 고소나 상소의 통보장과 함께 직접 전달하거나 배달증명 우편으로 송달되어야 한다. 양식 No. 5-A와 양식 No. 5가 동시에 접수되어야 한다.]

양식 No. 6
고소장, D-6.0301

고소인
대

피소인 (당회, 노회, 대회, 총회 선교사역부나 총회 기관)

고소 진술

본인(우리) _____ (고소인(들) 이름(들))은/는 _____ (공의회, 총회 선교사역부, 또는 총회기관 이름)이/가, 20__년 __월 __일자 _____ (장소)의 회의에서 범한 _____ (변칙 또는 직무태만)와/과 관련하여, 상기 언급의 _____ (공의회나 기관 이름)를 상대로 (변칙 또는 직무태만의 결정이나 결의)에 대한 고소를 _____ (차상 위 공의회나 총회)에게 제기한다.

고소인들은 그 결정/결의가 변칙적이었다고 믿는다, 또는 공의회가 다음의 관점 _____ (그 결정/결의가 왜 변칙적인지, 또는 불이행이 왜 직무태만인지 사유를 기입)에서 헌법이 요구하는 대로 이행되지 못하였다고 믿는다.

고소인(들)은 다음의 근거 _____ (D-6.0202a, b 명기된 대로 고소인의 입장 진술)에 의해 고소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

고소인(들)은 _____ (고소를 접수시킨 공의회 명칭)가 _____ (피소된 공의회 명칭)에게 _____ (특정 구체책 명시)을 하도록 명령할 것을 청원한다.

날짜
[고소인(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 양식 No. 7이 함께 접수되어야 함.]

고소인(들)의 서명

양식 No. 7
고소장 송달 증명서, D-6.0301f

본인은 상기의 고소장 사본이 _____ (서기, 정서기, 총회 선교사역부 또는 총회기관)에게 _____ (배달증명이나 등기우편, 수취확인 반송 요청의 우송방식이나 또는 인편 배달)의 방식으로 _____ (피소된 공의회 또는 기관명)에게 20__년 __월 __일자 송달되었음을 증명한다.

날짜

고소인(들)의 서명

양식 No. 8
피소인에 의한 고소장 수신확인, D-6.0301f

본인은 _____ (공의회나 총회 선교사역부 또는 총회 기관명)의 _____ (공의회나 총회 선교사역부나 총회기관 서기, 지정서기, 대리인 이름)으로서, _____(인편 배달 또는 배달증명이나 등기우편, 또는 수취확인서 반송 요청)의 우송방식으로, _____, 20____ (날짜 기입)에 (고소인 이름)의 고소장을 수신하였음을 확인한다.

날짜

서기, 정서기, 또는 대리인

양식 No. 9
고소에 대한 답변서 D-6.0303

고소인

대

(당회, 노회, 대회, 총회 선교사역부, 피소인, 또는 총회 기관)

답 변

_____ (피소인의 변호인단)은 _____ (고소인(들) 이름)의 고소장에 제기된 _____ (변칙 및 직무 태만) 고소내용과 관련하여 다음의 답변서를 제출한다.

[답변서는 고소장에 제기된 그러한 주장들을 사실이라고 인정하거나, 또는 사실이 아니라거나, 오류진술이라고 부인해야 하고, 이럴 경우에는 변칙이나 직무태만으로 확인된 상황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다른 국면들을 주장해야 한다. 답변서는 D-6.0307에 열거된 사항들에 대해 이슈를 제기할 수도 있다.]

날짜

피소인의 변호인의 서명

[피소인(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 **양식 No. 10**을 함께 접수해야 함.]

양식 No. 10
고소에 대한 답변서 송달 증명서, D-6.0303

본인 _____ (이름)은 _____의 고소에 대한 답변서로서 첨부문서가 제출되었으며, 본 답변서 사본이 _____ (배달증명이나 등기우편, 수취확인서 반신요청의 우송방식, 또는 인편배달)의 방식으로 고소(들)에게 20____년 ____월 ____일자로 제공되었음을 증명한다.

날짜

피소인(들)의 변호인의 서명

양식 No. 11
교정사건 당사자에게 소환장
사전심리 회의, D-6.0310

수신자: _____ (고소인이나 변호인단)

발신자: _____ (당회장이나 당회 서기, 또는 상임사법 전권위원회 위원장이나 서기)

_____ (당회 서기 또는 노회, 대회, 또는 총회 서기)에게 제기된 고소와 관련하여, 권징조례 D-6.0310에 명시된 바에 의거하여 _____ (도시)의 _____ (장소)에서 20____년 ____월 ____일 (오전/오후) ____시에 예심을 개최할 예정이므로, _____ (공의회 이름)의 _____ (당회 또는 상임사법전권위원회)의 회의에 출두하도록 귀하에게 소환장을 발부한다.

날짜

당회장이나 당회 서기, 또는 상임사법 전권
위원회 위원장이나 서기

양식 No. 12
교정사건 당사자에게 소환장, D-7.0201, D-7.0202

수신자: _____ (고소인이나 변호인단)

발신자: _____ (당회장이나 당회 서기, 또는 상임사법 전권위원회 위원장이나 서기)

_____ 20____년 ____월 ____일자, (당회 서기 또는 노회, 대회, 또는 총회 서기)에게 귀하를 상대로 제기 되었거나 또는 귀하가 제기한 고소와 관련하여, 귀하가 자신을 변론하거나, 또는 귀하가 고소할 수 있도록 하고, 사건내용이 충분히 심리되고 판결되도록 하기 위해, _____ (도시)의 _____ (장소)에서 20____년 ____월 ____일 오전/오후 ____시, _____ (공의회 이름)의 _____ (당회 또는 상임사법전권위원회)의 회의에 출두하도록 귀하에게 소환장을 발부한다.

날짜

(당회장이나 당회 서기, 또는 상임사법 전권
위원회 위원장이나 서기)

양식 No. 13

교정사건 당사자에게 소환장, D-7.0201a, D-7.0202

수신자: _____ (이름)

발신자: _____ (상임사법 전권위원회 위원장이나 서기)

_____ (고소인 또는 피소자 공의회 기관 이름[들])의 요청에 따라, 귀하가 _____ (공의회 이름)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 회의에 _____ (도시), _____ (장소)로 20____년 ____월__일 (오전/오후) ____시에 출두하여, 교정사건 _____ (사건 이름)에 대해 증언하도록 소환한다.

날짜

상임사법 전권위원회 위원장이나 서기

양식 No. 14

증인에게 2차 소환장, 교정사건, D-7.0203

수신자: _____ (이름)

발신자: _____ (상임사법 전권위원회 위원장이나 서기)

(본 소환장은 장소와 날짜의 필요한 변경을 제외하고는 양식 No. 13과 동일해야 한다. 또한 다음 문구가 포함되어야 한다):

본 소환장은 2차 소환장이므로, D-7.0203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귀하에게 통보한다: 만일 귀하가 정당하게 인정된 사유 없이 명시된 날짜와 장소에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에 출두하지 하지 않을 경우, 징계조치에 처해질 수 있다.

날짜

상임사법 전권위원회
위원장이나 서기

양식 No. 15
소환장 송달 명령, 교정사건, D-7.0202

수신자: _____ (이름)

발신자: _____ (당회장이나 당회 서기, 또는 상임사법 전권위원회 위원장이나 서기)

_____ (이름)에게 발부된 첨부 소환장을 그 사람에게 직접 배달하도록 귀하에게 지시한다.
송달증명서는 상임사법 전권위원회 서기에게 반드시 보낸다.

날짜

상임사법 전권위원회 위원장이나 서기

양식 No. 16
소환장 송달 증명서, 교정사건, D-7.0202

수신자: _____ (이름)

발신자: _____ (당회장이나 당회 서기, 또는 상임사법 전권위원회 위원장이나 서기)

본인은 _____ (이름)에게 발부된 소환장을 20__년 __월 __일자 직접 송달하였음을 증명한다. (또는, 본인은 _____ [이름]을 찾지 못하였으며 그 사람에게 발부된 소환장을 송달하지 못하였음을 증명한다).

날짜

서명

양식 No. 17

미국장로교 회원이 아닌 사람을 증인으로 요구, 교정사건, D-7.0201b

수신자: _____ (증인의 이름)

발신자: _____ (상임사법 전권위원회 이름)

_____ (고소인 이름[들])의 요구에 따라, _____ (공의회 이름)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 회의에 _____ (도시), _____ (장소)로 20____년 ____월__일 (오전/오후) ____시에 귀하가 출두하여 줄 것과, 교정사건 _____ (사건 이름)과/와 관련하여 귀하의 증언을 요청한다.

날짜

상임사법 전권위원회
위원장이나 서기

양식 No. 18

**증언녹취에 의한 증언취득 요구,
교정사건, D-7.0205, D-14.0304**

수신자: _____ (상임사법 전권위원회)

발신자: _____ (고소인[들]이나 피소인의 이름)

본인 _____은/는 _____ (사건 이름)의 재판에서 _____ (증인 이름)의 증언을 요구하는 바이며,
요구 사유는 다음과 같다: _____ (사유 열거).

본인은 이 요구서 사본이 _____ (고소인이나 피소인)에게 제공되었음을 증명한다.

날짜

서명

양식 No. 19

**상소 통보,
교정사건, D-8.0100, D-8.0201, D-8.0202**

A-12 규례서/부록

수신자: _____ (상소를 요청한 판결을 내린 공의회 정서기)

발신자: _____ (상소인)

제목:

상소인(고소인이나 피소인)

대

피상소인(피소인이나 고소인)

(노회 이름)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가 20__년 ____월 ____일자

(장소)에서 내린 결정에 대한 상소에 대해 _____
(대회나 총회)에 통보
하였다.

(D-8.0202에서 요구하는 모든 정보를 제공한다.)

날짜

상소인 서명

[상소인(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 반드시 양식 No. 20을 함께 제출한다.]

양식 No. 20
상소통보 송달 증명서,
교정사건, D-8.0202f

본인은 상소통보 사본이 _____ (청문회를 주재할 상임사법 전권위원회가 속한 상위 공의회 정서기)와/과 _____ (다른 당사자들과 그들의 변호인)에게 _____ (배달증명이나 등기우편, 수취확인 반송 요청의 우송방식이나 또는 인편 배달)의 방식으로 20__년 ____월 ____일자 제
공되었음을 증명한다.

날짜

상소인 서명

양식 No. 21
상소인과 피상소인의 적요서 양식
교정사건, D-8.0304, .0305

상소인(고소인이나 피소인)

대

피상소인(피소인이나 고소인)

오류 명세서

[하위 공의회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가 오류를 범했다고 하는 주장. D-8.0105에서 상소 근거를 참조한다. 피상소인은 상소인의 적요서에 열거된 오류 명세서를 인용해야 한다.]

진상 진술서

[사건이 상소에 이르게 된 사실의 경위를 간단 명료하게 서술한다.]

논증

[오류 명세서의 각 내용에 대해 변론을 진술하되, 변론에 적절한 표제를 붙이고 어느 오류에 속하는지 표시한다. 주장을 뒷받침하는 권위있는 근거의 인용과 사유가 포함되어야 한다.]

종결

[만일 상소인이면, 요구하는 구제책이나 교정을 진술한다. 만일 피상소인이면, 요구된 구제책이나 교정의 제거를 진술한다.]

부록

[해당될 경우, 하위 공의회가 취한 결정사항의 사본이 첨부되어야 한다. 적요서에 언급되었을 경우, 공의회 회의록의 적합한 부분들이 함께 첨부되어야 한다.]

날짜
상소인 서명
[상소인(들)과 피상소인(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 반드시 **양식 No. 22**을 함께 제출한다.]

양식 No. 22

적요서 송달 증명서, 교정사건, D-8.0304a, D-8.0305a

본인 _____ (이름)은/는 _____ (상소인, 피상소인)의 적요서 사본 이 _____ (다른 당사자들과 그들의 변호인)에게 _____ (배달증명이나 등기우편, 수취확인서 반송요청의 우송방식이나 인편배달)의 방식으로 20____년 ____월 ____일에 송달되었음을 증명한다.

날짜
상소인이나 피상소인의 서명

양식 No. 23
결백 입증 요구, D-9.0101

수신자: _____ (당회 서기, 노회 정서기)

발신자: _____ (결백입증 요구자 이름)

본인 _____ (이름)이 _____ 의 위반을 했다고 주장하는 _____ (소문이나 험담)에 의해 본인이 명예손상을 입었다고 생각한다. 본인은 _____ (당회나 노회)가 조사위원회를 지명하여, 주장된 범법과 관련된 사실과 정황을 조사하고 진상을 파악해줄 것을 요구한다.

[주장된 사실경위에 대한 서술서와 진술서를 제공한다. 소문이나 험담에서 귀하가 위반에 해당하는 어떤 행위를 했다고 주장되었는지? 그에 대응하여 귀하는 어떤 사실을 주장하는지? 기타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날짜

서명

양식 No. 24
결백입증 요구 검토, D-9.0101a

수신자: _____ (당회 서기나 노회 정서기)

발신자: _____ (목회위원회나 기타 적합한 위원회)

조사위원회 임명 여부의 결정 권한을 가진 _____ (위원회 이름)는 _____ (이름)이/가 접수한 결백입증 요구를 검토한 다음, D-10.0201에 의거하여 조사를 진행하도록 조사위원회가 임명되어야 (한다/안된다) 고 _____ (날짜)에 결정하였다.

_____ (당회서기나 노회 서기)는 D-10.0201 조항에 의거하여 그러한 조사위원회 임명을 마련해야 한다.

날짜

서명

양식 No. 25
조사위원회의 보고서, 결백 입증 절차, D-9.0101b

수신자: _____ (당회 서기나 노회 정서기, 또는 결백 입증 요구자)

발신자: _____ (조사위원회 위원)

_____ (사람 이름)에 관한 소문과 험담을 조사하기 위해 _____ (날짜, D-10.0401)에 구성된 조사위원회가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다: _____ (고발을 하지 않을 것이다, 또는 고발할 것이다).

[소문과 험담이 일어난 사실과 상황이 보고되어야 한다.]

[만일 조사위원회가 그 문제 대해 고소해야 한다고 결정하면, D-10.0402에서 시작되는 적절한 사법절차가 진행되어야 한다.]

날짜

서명

징계사건의 양식

양식 No. 26
개인의 고발장에 의해 고발, D-10.0102a

수신자: _____ (당회 서기나 노회 정서기)

발신자: _____ (고발자나 고발자들 이름)

본인 _____ 은/는 _____ (당회나 노회 이름)의 관할하에서, 성경과 미국장로교헌법에 위배되는 _____ 의 범법을 한 _____ (피고발자 이름)을/를 상대로 고발하며 상기 내용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의 자료를 제출한다.

상기인 _____ (피고발자 이름)이/가 _____ (날짜)에 범한 행위는 다음과 같다: _____ (고발내용을 입증할 사건전 말과 주장된 사실 삽입).

날짜

고발자 서명

양식 No. 27
공의회 회원의 고발장에 의해 고발, D-10.0102b

수신자: _____ (당회 서기나 노회 정서기)

발신자: _____ (고발자나 고발자들 이름)

본인 _____ (고발자 이름)은/는 _____ (당회나 노회 이름)의 회원으로
서, 성경과 미국장로교헌법에 위배되는 _____ 의 범법을 한 _____ (피
고발자 이름)을/를 상대로 고발하며 상기 내용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의 자료를 제출한다.

상기인 _____ (피고발자 이름)가/이 _____ (날짜)에 범한 행위는 다
음과 같다: _____ (고발내용을 입증할
사건 설명과 주장된 사실 삽입).

날짜

고발자 서명

양식 No. 28
회원이 범법자술서로 자신을 고발, D-10.0102c

본인은 _____ (당회, 노회) 관할하에 있으며, 성경과 미국장로교 헌법에 위배되는
_____ 의 죄가 있음을 진술한다. 본인 스스로 고발하는 내용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의 자료를 제출한다.

본인은 _____ 은 _____ (날짜)에 다음을 행하였다:
_____ (자신을 상대로 고발하는 내용 삽입).

날짜

고발자 서명

양식 No. 28-A

조사과정중, 조사 절차에 대한 검토 청원서, D-10.0204

수신자: _____ (당회 서기 혹은 노회 정서기)

발신자: _____ (조사받고 있는 사람)

나, _____는 현재 _____(노회 혹은 당회)가 임명한 조사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는바, 조사위원회의 조사 절차에 관련된 다음의 사안을 검토해 줄 것을 _____(당회 혹은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에 청원합니다.

[조사위원회가 오류를 범하고 있거나 빠뜨리고 있다고 생각되는 것을 설명하는 이야기를 쓴다. 이러한 검토에 적절한 내용은 D-10.0204에 열거된 것에 국한된다

[주: 이 청원은 조사위원의 답변과 함께 노회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두명의 지명된 위원이 검토할 것이다. 당회는 이러한 요청을 노회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에 조회하도록 해야 한다(D-5.0101). 이러한 검토를 마친 후에, 조사위원회의 절차를 그대로 승인하거나 조사위원회에 적절한 제안을 하게 된다. 검토의 결과는 재판전에 있는 사전 심리회의에서도 검토될 수 있다(D-10.0405).]

날짜

서명

[주: 이 청원은 고발이 접수되기 전까지만 (즉 조사 과정 중에) 받아들일 수 있다. 고발이 접수된 후에, 조사 절차에 대해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적절한 때는 사전 심리회의 때이다 (D-10.0405).]

양식 No. 28-B
검토 청원에 대한 조사위원회의 답변서, D-10.0204

수신자: _____ (당회 서기 혹은 노회 정서기)

발신자: _____ (조사위원회)

_____ (이름)에 대한 범법 혐의를 조사하도록 임명된 조사위원회는 지금까지의 본 위원회의 조사 절차를 검토해 달라고 한 (그/그녀)의 청원서에 _____ (이름)이 주장한 사실에 대해 다음과 같은 답변을 제출합니다.

[주장한 각 사실에 대해 답변]

날짜

조사위원회 위원의 서명

[주: 양식 No. 31을 보낸 것과 같이, 당회 서기는 이 답변서를 노회의 정서기에게 보낸다]

양식 No. 28-C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에 의한 검토 종결, D-10.0204b

수신자: _____ (당회 서기 혹은 노회 정서기,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

발신자: _____ (상임사법 전권위원회 위원장)

상임사법 전권위원회(_____ 교회의 당회를 대신하여, D-5.0101)는 _____ (이름)가 이의를 제기한 조사위원회의 조사 절차가 D-10.0204 에 기술된 기준과 일치 (하였다/하지 않았다)고 D-5.0101 와 D-10.0204a에 근거하여서 결론지었다. 따라서 _____ (청원자의 이름)의 청원은 아래에 기술한 바와 같이 (인정된다 혹은 인정되지 않는다).

[청원서의 어느 부분이라도 인정이 되면, 조사위원회로 하여금 조사 절차를 수정하도록 제안을 해야 한다. 이 검토의 결과는 조사위원회가 고발을 신청할 것인지의 여부의 결정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 검토의 결과는 사전 심리회의에서도 참조될 수 있다 (D-10.0405).]

날짜

상임사법 전권위원회 위원장

[주: 재판으로 갈 수 밖에 없다는 필요를 암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D-4.0000), D-5.0101 조항은 청원서의 검토는 전권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하는 두 사람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 위원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두 위원은 재판이 행해질 경우에 이 재판에 참여하지 못한다. 당회는 이러한 청원을 노회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 검토를 맡은 두 위원은 검토의 결과를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위원장이나 서기에게 통보해야 한다.]

양식 No. 29

조사의 종결, D-10.0202g, D-10.0300

수신자: _____ (당회 서기나 노회 정서기, 서면진술서 제출자 또는 피고 발자)

발신자: _____ (조사위원회 위원)

_____ (사람 이름)을/를 상대로 고발된 주장을 조사하기 위해 _____ (날짜, D-10.0401)에 구성된 조사위원회가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다: _____ (공소 하지 않을 것이다, 또는 공소할 것이다).

[공소 하기로/또는 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이어 그러한 결의(D-10.0300 조항에 명시된)는 반드시 조사위원회가 해야 한다.]

날짜

서명

양식 No. 30

조사위원회의 보고서 수신확인, D-10.0300

20__년 __월 __일자에 구성된 _____ (공의회 이름)의 조사위원회가 위임받은 사건과 관련하여 _____ (공소 하기로 또는 공소하지하지 않기로 하였다고) 발표한 보고서를 수신하였음을 확인한다.

날짜

서기 또는 정서기

양식 No. 31

불기소 결정에 대한 재심 청원, D-10.0303a

수신자: _____ (당회 서기나 노회 정서기)

발신자: _____ (처음 고발장을 낸 사람)

본인 _____은/는 본인이 _____(당회 혹은 노회의 이름)의 _____(당회 서기 또는 정서기)에 제출한 서면 고발장과 관련하여 어떤 죄목도 공소하지 않기로 한 조사위원회의 결정을 _____(날짜)에 받은 바, 공소하지 않기로 한 조사위원회 결정 대해 _____(당회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검토를 청원한다.

[조사위원회가 고소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게 된 데에 오류가 있었다고 판단되는 점들에 대해 서술한다.]

[이 청원서는 조사위원회의 답변서와 함께 당회에 의해 또는 노회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에 의해 검토될 것이다. 검토 결과, 조사위원회의 결정이 확정되거나 새로 조사하도록 결정될 것이다.]

날짜

서명

양식 No. 32

검토청원에 대한 조사위원회 답변서, D-10.0303b

수신자: _____ (당회 서기나 노회 정서기)

발신자: _____ (조사위원회)

_____ (이름)이/가 _____ (이름)을/를 상대로 제기한 서면 고발장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 구성된 조사위원회가 공소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내린 바, 이에 대한 검토 청원을 받고 _____ (이름)에 의해 주장된 사실에 대해 다음과 같은 답변서를 제출한다:

[주장된 사실의 각 내용에 대한 답변서]

날짜

조사위원회 위원 서명

[주: 당회 서기는 양식 No. 31을 전송한 방식과 동일하게, 이 답변서를 노회 정서기에게 보낸다.]

양식 No. 33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에 의한 검토 종결, D-10.0303

수신자: _____ (당회 서기나 노회 정서기, 서면진술서 제출자. 또는 피고 발자)

발신자: _____ (당회장이나 당회 서기, 또는 상임사법 전권위원회 위원장 이나 서기)

_____ (당회나 상임사법전권 위원회)가 내린 결론은,
_____ (사람 이름)을 상대로 공소하지 않기로 한 조사위원회 결정이
_____ (적절한 또는 적절하지 않은) 조사에 근거한 것으로 본다.
_____ (청원자 이름)의 청원은 _____ (인정
된다 또는 인정되지 않는다).

[만일 청원이 인정될 경우, 새로운 조사위원회가 임명되어야 한다 (D-10.0303d). 만일 청원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그 사안은 종결된다.]

날짜

당회장이나 당회 서기, 또는
상임사법 전권위원회 위원장이나 서기

[주: 중국적인 재판 (D-4.0000)에 대한 위임의 필요를 피하려면, 당회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 위원장이 청원서와 답변서의 검토자로서 2~3명의 위원들을 임명할 수 있도록 내부규칙을 마련하는 것이 당회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에 편리할 것이다. 재판이 중국적으로 일어날 경우에 그러한 위원들은 그 재판에 참여할 수 없다.]

양식 No. 34
공소, D-10.0403, D-10.0404

미국장로교는 귀하 _____ (교회 또는 노회 회원 이름)를 다음의 죄목(들)으로 공소한다:

[“범법이란 교회의 교인이나 제직원이 성경이나 미국장로교 헌법에 반하는 어떤 행위나 행동의 결여를 뜻한다.”]

귀하 _____ (이름)는/은 _____ (날짜) 또는 그 즈음에 다음과 같은 범법을 행하였다: _____.

[각 공소 항목에 대해 번호를 붙이고 범법을 구성하는 행위를 명시한다. 각 공소 항목에 대해, 주장된 행위를 저질은 시간, 장소, 상황을 가능한 대로 명시해야 한다. 각 공소 항목에 대해 공소를 지지하는 증인의 이름과 주소를 열거하고, 입증을 위해 소환될 기록과 문서 종류를 열거한다.]

공소를 지지하는는 증인들(이름과 주소 열거):

공소 항목을 입증할 기록과 문서(각각의 이름과 종류 열거):

날짜

서명, 조사위원회

양식 No. 35
피소인에게 소환장
사전심리 회의, D-10.0405a

수신자: _____ (피소인 이름)

발신자: _____ (당회장이나 당회 서기, 또는 상임사법 전권위원회 위원장이나 서기)

_____ (당회나 노회 이름)을 통한 미국장로교 대 _____ (피소자 이름) 사건이 권징조례 D-6.0405에 명시된 절차에 의거하여 예심이 _____ (도시)의 _____ (장소)에서 20__년 __월 __일자 오전/오후 __시에 개최될 예정이며, 귀하에게 _____ (교회나 노회 이름)의 _____ (당회 또는 상임사법전권위원회)에 출두하도록 소환장을 발부한다. 첨부문서는 공소장 사본이다.

날짜

당회장이나 당회 서기, 또는
상임사법전권위원회 위원장이나 서기

양식 No. 36
기소위원회에게 소환장, 사전심리 회의, D-10.0405a

수신자: _____ (기소위원회 이름)
발신자: _____ (당회장이나 당회 서기, 또는 상임사법 전권위원회 위원장이나 서기)
_____(당회나 노회 이름)을 통한 미국장로교 대 _____(피소자 이름)
사건이 권징조례 D-10.0405에 명시된 절차에 의거하여 예심이 _____(도시)의
_____(장소)에서 20__년 __월 __일자 오전/오후 ____시에 개최될 예정이며, 귀하에게
_____(교회나 노회 이름)의 _____(당회 또는 상임사법전권위원회)에 출두
하도록 소환장을 발부한다. 공소장 사본 첨부.

날짜

당회장이나 당회 서기, 또는
상임사법 전권위원회 위원장이나 서기

양식 No. 37
피소인에게 소환장, D-11.0201a, D-11.0202

수신자: _____ (이름)
발신자: _____ (당회장이나 당회 서기, 또는 상임사법 전권위원회 위원장이나 서기)
귀하 _____(이름)을/를 상대로 미국장로교가 _____(당회나 노회
이름)을 통해 공소를 제기한 바, 이의 절차가 _____(도시)의
_____(장소)에서 20__년 __월 __일자 오전/오후 ____시에 개최되므로, 귀하에게
_____(교회나 노회 이름)의 _____(당회 또는 상임사법전권위원회)에 출두하여 공소에
답변하도록 소환장을 발부한다. 공소장 사본 첨부.

날짜

당회자이나 당회 서기,
또는 상임사법 전권위원회 위원장이나 서기

양식 No. 38
피소인에게 2차 소환장, D-11.0202a, b

수신자: _____ (이름)

발신자: _____ (당회장이나 당회 서기, 또는 상임사법 전권위원회 위원장이나 서기)

(소환장은 날짜와 장소에 관한 필요한 변경을 제외하고는 양식 No. 37과 동일해야 한다. 또한 다음 문구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본 소환장은 2차 소환장이므로, D-11.0202b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귀하에게 통보한다. 즉, 만일 귀하가 정당하게 인정된 사유 없이 명시된 날짜와 장소에 출두하지 않을 경우, _____ (당회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가 귀하의 변호인으로서 대리인이나 대리인들을 임명하고, 마치 귀하가 출석한 것처럼 귀하 사건의 증인 청취 절차를 진행할 것이다. 나아가, 귀하는 권징결의에 처해질 수 있고, 불순종과 모욕죄로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다(D-11.0202a).

날짜

당회자이나 당회 서기,
또는 상임사법 전권위원장이거나 서기

양식 No. 39
기소위원회에게 소환장, D-11.0201a, D-11.0202

수신자: _____ (이름)

발신자: _____ (당회장이나 당회 서기, 또는 상임사법 전권위원회 위원장
이나 서기)

귀하가 _____ (이름)를/을 상대로 20__년 __월 __일자, _____ (당회 서기 또는 노회 서기)에게 제기한 공소 절차가 _____ (도시)의 _____ (장소)에서 20__년 __월 __일 오전/오후 __시에 있을 예정이므로 _____ (치리회 이름)의 _____ (당회 또는 상임사법전권위원회)의 회의에 출두하여 공소하도록 소환장을 발부한다.

날짜

당회장이나 당회서기, 또는
상임사법 전권위원장이거나 서기

양식 No. 40

증인에게 소환장, 징계사건, D-11.0201a, D-11.0202

수신자: _____ (이름)

발신자: _____ (당회장이나 당회 서기, 또는 상임사법 전권위원회 위원장이나 서기)

미국장로교가 _____ (당회나 노회 이름)을/를 통해 공소를 제기한 바, 이의 절차가 _____ (도시)의 _____ (장소)에서 20__년 __월 __일자 오전/오후 __시에 개최되므로, 귀하에게 _____ (교회나 노회 이름)의 _____ (당회 또는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에 출두하여 증언하도록 소환장을 발부한다.

날짜

당회장이나 당회서기, 또는
상임사법 전권위원장이나 서기

양식 No. 41

증인에게 이차 소환장, 징계사건, D-11.0202a

수신자: _____ (이름)

발신자: _____ (당회장이나 당회 서기, 또는 상임사법 전권위원회 위원장이나 서기)

(소환장은 날짜와 장소에 관한 필요한 변경을 제외하고는 양식 No. 40과 동일해야 한다.
또한 다음 문구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본 소환장은 2차 소환장이므로, D-11.0202a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귀하에게 통보한다: 만일 귀하가 정당하게 인정된 사유 없이 명시된 날짜와 장소에 _____ (교회나 노회 이름)의 _____ (당회,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에 출두하지 하지 않을 경우, 징계조치에 처해질 수 있다.

날짜

당회장이나 당회서기, 또는
상임사법 전권위원장이나 서기

양식 No. 42
소환장 송달 명령, 징계사건, D-11.0202

수신자: _____ (이름)

발신자: _____ (당회장이나 당회 서기, 또는 상임사법 전권위원회 위원장이나 서기)

_____ (이름)에게 발부된 첨부 소환장을 그 사람에게 직접 배달하도록 지시한다. 송달증명서는 상임사법 전권위원회 서기에게 반드시 보낸다.

날짜

당회장이나 당회서기, 또는
상임사법 전권위원장이나 서기

양식 No. 43
소환장 송달 증명서, 징계사건, D-11.0202

수신자: _____ (서기)

발신자: _____ (소환장 송달자)

본인은 _____ (이름)에게 발부된 소환장을 20__년 __월 __일자 직접 송달하였음을 증명한다. (또는, 본인은 _____ [이름]을 찾지 못하였으며 그 사람에게 발부된 소환장을 송달하지 못하였음을 증명한다).

날짜

서명

양식 No. 44
미국장로교 회원이 아닌 사람을 증인으로 요구,
징계사건, D-11.0201b

수신자: _____ (이름)

발신자: _____ (당회장이나 당회 서기, 또는 상임사법 전권위원장이나 서기)

미국장로교가 _____ (당회나 노회 이름)을/를 통해 제기한 공소 사건의 절차가 _____ (도시)의 _____ (장소)에서 20__년 __월 __일자 오전/오후 __시에 개최되는 바, _____ (교회나 노회 이름)의 _____ (당회 또는 상임사법전권위원회) 회의에 귀하의 출석과 증언을 요청한다.

날짜

당회장이나 당회서기, 또는
상임사법 전권위원장이나 서기

양식 No. 45
증언 녹취에 의한 증언취득 요구,
징계사건, D-11.0204, D-14.0304

수신자: _____ (당회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 이름)

발신자: _____ (기소위원회 또는 피소자 이름)

본인 _____ 은/는 _____ (사건 이름)의 재판에서 _____ (증인 이름)의 증언을 요구하는 바이며, 요구 사유는 다음과 같다: _____ (사유 열거).

본인은 이 요구서 사본이 _____ (기소위원회)에게 제공되었음을 증명한다.

날짜

서명

양식 No. 46
상소 통보, 징계사건, D-13.0100, D-13.0201, D-13.0202

수신자: _____ (당회 서기나 상소받은 판결을 내린 공의회 정서기)

발신자: _____ (상소인)

제목: _____

상소인(공의회 또는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 [D-13.0103])

대

피상소인(공의회 또는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

_____ (당회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가 20____년 ____월 ____일자 _____
(장소)에서 내린 결정에 대해 상소가 제기되어 이를 _____ (노회, 대회 또는 총회)에 통보하였
다. (D-13.0202에서 요구하는 모든 정보를 제공한다.)

날짜

상소인 서명

[상소인(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 반드시 양식 No. 47을 함께 제출한다.]

양식 No. 47
상소 통보 송달 증명서,
징계사건, D-13.0202f

본인은 상소 통보가 _____ (청문회를 주재할 상임사법 전권위원회가 속한 상위
공의회 정서기)와/과 _____ (다른 당사자들과 그들 변호인)에게
_____ (배달증명이나 등기우편, 수취확인 반송 요청의 우송방식이나 또는 인편 배달)
의 방식으로 20____년 ____월 ____일자 제공되었음을 증명한다.

날짜

상소인 서명

양식 No. 48

상소인과 피상소인의 적요서 양식, 징계사건, D-13.0304, D-13.0305

상소인

대

피상소인

오류 명세서

[하위 공의회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가 오류를 범했다고 하는 주장. D-13.0106에서 상소 근거를 참조한다. 피상소인은 상소인의 적요서에 열거된 오류 명세서를 인용해야 한다.]

진상 진술서

[사건이 상소에 이르게 된 사실 경위를 간단 명료하게 서술한다.]

논 증

[오류 명세서의 각 내용에 대해 변론을 진술하되, 변론에 적절한 표제를 붙이고 어느 오류에 속하는지 표시 한다. 주장을 뒷받침하는 권위있는 근거의 인용과 사유가 포함되어야 한다.]

결 론

[만일 상소인이면, 요구하는 구체책이나 교정을 진술한다. 만일 피상소인이면, 요구된 구체책이나 교정의 제거를 진술한다.]

부 록

[해당될 경우, 하위 공의회가 취한 결정사항의 사본이 첨부되어야 한다. 적요서에 언급되었을 경우, 공의회 회의록의 적합한 부분들이 함께 첨부되어야 한다.]

날짜

상소인 서명

[상소인(들)과 피상소인(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 반드시 **양식 No. 49**을 함께 제출한다.]

양식 No. 49
적요서 송달 증명서,
징계사건, D-13.0304a, D-13.0305a

본인 _____ (이름)은 _____ (상소인, 피상소인)
의 적요서 사본이 _____ (다른 당사자들과 그들 변호인)에게
_____ (배달증명이나 등기우편, 수취확인서 반송요청의 우송방식이나 인편배달)의 방식으
로 20__년 __월 __일자 송달되었음을 증명한다.

날짜

상소인 서명

위임 양식

양식 No. 50
위임, D-4.0000

수신자: _____ (차상위 공의회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
발신자: _____ (당회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
_____ (교회, 노회, 대회)의 _____ (당회, 상임사법 전권위원회)는
_____ (차상위 공의회 이름)의 상임사법전권위원회에게 다음의 사건에서
_____ (재판과 판결, 또는 상소 청문회) 관할권을 맡도록 청원한다:

고소인

대

피소인

또는

미국장로교

대

피고인

사건을 위임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상위 공의회가 사건을 취급해야 마땅하다고 보는 사유 설명):

날짜

공의회 의장

서기

양식 No. 51
위임에 관한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결정, D-4.0200

수신자: _____ (당회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

발신자: _____ (차상위 공의회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

_____ (노회, 대회, 또는 총회)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는
_____ (징계 또는 교정) 사건을 본 공의회에 의해 처리되도록 하는
_____ (당회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요청에 대해 _____ (승인한다, 또는 불승인한다).

_____ (공의회 이름)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는 _____ 사건의
원 관할권을 _____ (수락한다, 또는 거절한다).

[거절 사유를 기술한다, (D-4.0203).]

[만일 차상위 공의회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가 관할권 거절할 경우, 하위 공의회가 재판이나 상소 청문을 주재하고 판결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날짜

상임사법 전권위원장이거나 서기

부록 B

합의조항

Articles of Agreement

합의조항

Articles of Agreement

서 문

본 합의조항은 두 교회의 고백문서, 회원, 제직원, 치리회, 법정, 대행기관, 단체와 재산이 미국장로교의 고백문서, 회원, 제직원, 치리회, 법정, 대행기관, 단체와 재산이며, 또 그렇게 되는 방편에 관하여 미국 남장로교와 미국 연합장로교의 계약적 위임사항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본 합의조항은 재연합의 세목을 기록한다. 그 내용들은 각기 그 전례를 가진 재연합 교회의 지속성을 증명한다. 재연합 교회는 모든 교회적, 사법적, 법적, 그리고 다른 모든 사항에 있어서 미국 남장로교와 미국 연합장로교의 지속적인 실재가 될 것이다.

두 교회가 그들의 개별적 헌법에 따라서 그 계획을 승인했고, 재연합이 효력을 발생했으므로 재연합된 단일 교회로 존재하며, 두 교회의 개별적 존재는 해소된다. 원래 합의에 따라 두 당사자들은 개별적 교회로 더 이상 존재치 않으며, 따라서 그 합의는 향후 변경될 수 없다. 재연합 행위에 의해 그 합의에 반영된 두 당사자의 개별적 이해관계는 단일의 재연합 교회로 연합되었으며, 그 합의에 있어서 어떤 변경이 제안되지 않는 한, 그 교회는 이전 조직의 관심을 대표할 수 없을 것이다.

재연합 교회 수립에 끝이어서, 그 새헌법(G-1.0500)¹이 유효하게 될 것이다. 본 합의조항보다는 새 헌법이 단일 교회의 기본문서이며 그 규정에 따라서 개정될 것이다.

¹다음 약자가 쓰여진다:

G - 정치형태

D - 권징조례

S - 하나님 예배 지침서(1988년 이후 이 책은 예배모범으로 불리운다).

제1조 미국 남장로교와 미국 연합장로교가 더불어 갖는 미국장로교의 지속성

- 1.1 본 합의조항은 미국 남장로교와 미국 연합장로교가 미국장로교라고 불리우는 단일 교회를 형성하도록 의도하고 규정하는 것이다. 연합 이후 미국 남장로교나 미국 연합장로교를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미국장로교가 각자의 후계자이고 그렇게 되어야 하며 그 후계자가 그 정체성을 가져야 한다. 미국장로교의 역사는 미국 남장로교와 미국 연합장로교의 역사이며, 그것을 구현한다. 본 조항들은 전술한 내용과 일치되게 해석되어야 한다. 미국 남장로교와 미국 연합장로교회 그리고 미국장로교(PCUSA)는 각각, 미국장로교(PCUSA)가 미국 남장로교와 미국 연합장로교의 재연합의 결과에 의해 일어난 지속적 교회이고, 단일 교회의 실체로 이루어져야 함을 재연합 시 부터 확인한다.
- 1.2 미국 남장로교와 미국 연합장로교의 전교인은 각각 미국장로교의 교인이어야 한다.
- 1.3 미국 남장로교와 미국 연합장로교의 전 안수 제직원은 각각 목사나 치리장로나 집사이든 간에, 미국장로교의 대등한 안수 제직원, 목사나 장로나 집사가 되어야 한다.
- 1.4 미국 남장로교와 미국 연합장로교의 모든 지교회는 각각 미국장로교의 지교회여야 한다.
- 1.5 미국 남장로교와 미국 연합장로교에 있는 담임목사, 동사무사, 부목사나 보조목사와 지교회와의 모든 목회관계는 미국장로교에서 계속되어야 한다. 평신도 설교자나 파송 교회 사역자로서의 현존하는 관계는 미국장로교의 수립에 의해 방해받아서 안 되며,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개인이 동일한 지교회와 그 관계를 계속하는 한 방해 받지 않아야 한다.
- 1.6 미국 남장로교와 미국 연합장로교의 모든 당회, 노회, 대회 각각은 미국장로교의 대등한 치리회여야 한다.
- 1.7 미국장로교의 총회는 교회의 최고 치리회이며, 미국남 장로교와 미국 연합장로교 총회의 후계자여야 한다.
- 1.8 미국 남장로교나 미국 연합장로교, 또는 두 교회의 공동 감독하에 있는 모든 이사회, 대행기관, 단체와 위원회들은 각각 지금 미국 남장로교나 미국 연합장로교의 치리기관에 대해 가진 것과 동일한 관계를 미국장로교의 해당치리회와 가져야 한다.
- 1.9 미국 남장로교나 미국 연합장로교의 총회의 지시에 의해 채택되었거나 공포된 모든 정책 선언들은 각각 미국장로교 총회의 행동으로 폐기, 변경, 또는 대체되기까지는 그것을 채택했거나 공포한 교회에서와 같이 미국장로교에서도 동일한 권한과 효력을 가져야 한다.

제2조 재단이사회와 법인체 조직

- 2.1 미국 남장로교와 미국 연합장로교의 지교회, 치리회, 이사회, 대행기관과 단체의 모든 수탁자와 법인체 조직 각각은 그들에 의해 보유된 모든 재산, 곧 부동산 및 동산과 더불어, 미국장로교의 지교회, 치리회, 이사회, 대행기관 및 단체의 수탁자가 되고 법인체 조직이 된다. 그와 같은 법적 절차는 필요에 따라 지체없이 신속하게 취해져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러한 수탁자들과 법인체 조직들은 그들이 보유하는 모든 재산(부동산과 동산)과 더불어 미국장로교의 수탁자적이고 법인체들이고 조직들이며 재산으로 명백히 식별되어야 한다.
- 2.2 그런 수탁자나 법인체에 의해 신탁 보관된 모든 기금의 지속성과 보존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신탁증서에 명백히 설정된 대로 재산 양도자나 유언자의 의도가 엄격히 지켜져야 한다. 필요하다면, 미국장로교의 적절한 기관이 그런 신탁증서에 지명된 수익자를 승계했음을 제시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제3조 고백문서들

- 3.1 두 선행 교회의 고백문서들은 재연합 교회의 고백문서들이어야 한다. 미국장로교의 임시서기는 G-1.0501에 정의된 대로 고백문서들의 공식 원문을 작성해야 한다.
- 3.2 재연합 장로교의 총회는 재연합 교회 내의 다양한 관점과 그룹을 대표하는 위원회를 개회 초기에 임명하여, G-18.0201에 마련된 대로 **신앙고백서**에 삽입할 만한 개혁신앙의 간추린 선언을 준비토록 해야 한다.
- 3.3 개혁신앙의 간추린 선언이 신앙고백서에 통합되기까지, 미국장로교(PCUSA)는 1962년 미국 남장로교의 제102차 총회에 의해 채택된 “**간추린 신앙 선언**” (A Brief Statement of Belief)을 성경에 명시되었고, 미국장로교의 고백서들에 포함된 역사적 기독교 교리의 개혁교회 이해의 개요로서 수락한다. 그 과도기 기간동안, “**간추린 신앙 선언**”은 교인들과 제직들의 교육에서, 안수 이전의 목사후보생들과 타노회/타교단 이명에 의해 노회 회원권을 구하는 목사들의 오리엔테이션과 목사 고시에서, 교회 고백서로 사용되어야 한다.

제4조 총회 사무처

- 4.1 재연합에 곧 이어 총회사무처의 임무가 다음과 같이 마련되어야 한다:

연합하는 교회의 두 최고 치리회 기관은 기록과 기능이 새 최고치리회로 질서있게 인계되게 하기 위해 재연합의 발효일 이후 1년 기간 동안 계속되어야 한다. 그 과도기 기간에 미국 남장로교의 서기와 미국 연합장로교의 서기는 총회의 임시 서기로서 자격을 가지며, 총회 중앙협의회와 협의하여 기능을 수행한다. 임시 서기들은 총회 중앙협의회와 협의를 거쳐 연합이 발효된 일년 후에 총회 사무처에 대한 임무와 조직기구를 제안해야 한다.

- 4.2 총회 중앙협의회는 연합의 발효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서기 공천 특별위원회를 선출해야 한다. 동 위원회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재연합 교회의 전 지리적 구역을 대표해야 한다. 동 위원회에 뽑힌 위원은 총회 서기직에 공천될 수 없다. 동 위원회는 재연합 교회 내의 개인과 치리기관의 공천을 받은 전 후보자들에 대해, 그들이 직책을 맡을 용의가 있는지, 자격이 있는지를 즉시 검토하고, 동 위원회 자체적으로 책임자들을 적극 찾아야 한다. 동 위원회는 책임자로 고려되는 추천자 명단을 3명이 넘지 않은 범위로 작성하여 차기 총회에 직접 제출할 준비를 해야 한다.

총회는 총회 서기 공천위원회를 수립하고, 상기 문단에서 언급된 특별위원회로부터 추천에 대한 보고를 받게 해야 한다. 동 총회위원회는 특별위원회가 추천한 명단에 제한하여 선택할 필요가 없다고 이해된다. 특별위원회와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친 다음, 총회위원회는 2명 이하의 후보자를 선택해야 하며, 그 명단이 총회 폐회 48시간 전까지 총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만일 피지명자가 단 한명이고 회의장에서 더 이상 지명이 없을 경우, 박수로 선출할 수 있다. 후보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총회장 선출 방식과 동일한 방식이 되어야 한다. 과반수 이상의 표를 받은 후보자가 당선자로 선언되어야 한다.

제5조 총회 중앙협의회와 대행기관의 과도기적 구성과 임무

- 5.1 재연합 직후 기간 중 총회 중앙협의회 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야 한다: 즉 총회장과 두 교단의 가장 최근 총회장 두 명, 그리고 아래의 5.2에 명시된 대로 총회에 의해 선출된 48명이다. 투표권을 가진 위원들 외에도, 총회서기와 총회중앙협의회 추천에 의해 총회가 수시로 임명하는 직원들은 발언권만 있고 투표권이 없는 객원위원이 된다.
- 5.2 미국 장로교의 첫 총회는 총회 중앙협의회 위원 48명을 선출해야 한다. 24명은 남장로의 마지막 총회에 의해 지명되어야 하며, 그 중 21명은 그 총회 선교이사회 위원중에서, 그리고 나머지 3명은 이 기관들의 추천을 받은 총회 운영위원들이어야 한다. 24명은 미국 연합장로교의 마지막 총회에 의해 지명되어야 하며, 피지명자는 총회 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 동 기관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선출된 위원중 최소한 1명씩은 교단의 각 대회 거주자여야 한다. 선출된 위원들은 연합하는 교단의 총회중앙협의회와 기관 및 부서에서 나와야 하고, 교회 인종협의회, 교회여성협의회, 여성관련위원회를 포함해야 한다. 선출된 사람들의 절반은 목사들이고 나머지 절반은 평신도들이어야 한다. G-9.0104와 G-9.0105 규정에 합치하도록 유의해야 한다. 그렇게 선출된 위원들은 변동 없이 5년간 시무한다. 단 위원의 사임이나 사망 시에는 총회 공천위원회 추천에 따라 총회가 결원을 채운다. 5년이 되었을 때, 총회 중앙협의회가 그 위원들을 동수로 3개조로 나누어, 1년 추가, 2년 추가, 3년 추가 기간 말에 만료되도록 할당한다. 그 이후에는 G-13.0202와 의거하여 위원들을 선출한다.

- 5.3 재연합 후 첫 5년간, 총회 중앙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자체적으로 선출하고, 직원 임명을 하나, 이 임명과 선출은 총회의 재가에 종속된다. 총회 서기는 기록 서기여야 한다.
- 5.4 총회 중앙협의회는 G-13.0201에 열거된 책임을 가지며, 더하여 재통합하는 교단 총회들의 기능, 부서, 대행기관, 협의회, 전권위원회, 시설기관에 대한 필수적인 조정과 관리와 통합을 마련해야 한다. 미국장로교의 첫 총회가 폐회하면서, 미국 연합장로교의 총회 선교협의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다. 미국 남장로교의 총회 선교이사회(총회 중앙협의회 선출 이후에 잔류 위원들로 구성)와 미국 연합장로교의 프로그램부, 협력부와 소명부는 총회의 결의에 의해 조기 종결되지 않은 한, 그들 각자에 의해 이전에 수행된 프로그램의 관리를 계속할 것이다. 이 기간 중 상기 부서에 선출된 위원들은 변동없이 계속 시무해야 한다. 단 위원의 사임이나 사망 시에는 총회 공천위원회 지명을 받고 총회 선거를 통해 결원을 채운다.

총회 중앙협의회는 본 합의조항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은 한, 재연합 교회의 총회 기능, 부서, 대행기관, 협의회, 전권위원회, 시설기관을 효과적으로 관련시키는 총회 업무 기획을 개발하여 차기 총회에 제안해야 한다. 단, 아래의 제11장에 마련된 은급기관은 제외한다. 그 기능이 재연합 교회의 다른 기관이나 다른 방식으로 제공될 때 그 대행기관은 계속되지 않을 것이다.

- 5.5 총회 중앙협의회는 재연합 이전에 양 총회가 승인한 지속적 선교 방향과 우선순위를 신중히 검토해야 하며, 총회 대행기관들의 프로그램 사역을 조화시킬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총회 중앙협의회는 세계선교·복음전파·교육·교회갱신과 확장·경제·사회 정의의 분야에서 교회 일치의 맥락으로 전세계에서 조직적인 접근을 지속할 것을 보장해야 한다.

총회 중앙협의회는 기관의 창설과 인적/재정적 자원의 투입 방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각 나라와 남녀 각각에게 알려지는 방식이 되도록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하고, 이것이 미국 국내외적으로, 타 교단들 및 타 단체들과 협력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한다.

- 5.6 총회 중앙협의회는 총회사역기획을 개발함에 있어서 교회 인증협의회(양 교단)와 여성 관련위원회(미국 남장로교) 및 교회여성협의회(미국 연합장로교)와 같은 기존 협의회에 대한 지지와 기능 감독의 지속성을 보장해야 한다. 총회사역의 기획이 완성되고 이런 기능들이 보장될 때까지는 기존 기관의 체계와 기능들이 유지되어야 한다.
- 5.7 재연합 교회 총회들의 다양한 이사회, 대행기관, 협의회, 사무국이 재연합 교회의 삶 안에서 계속적으로 기능을 하는 가운데, 또는 새로운 대행기관들이 재연합 시에 창설되는 가운데, 그리고 특별히 총회 사무처와 대행기관들이 들어설 위치나 위치들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채용된 직원들에 대한 특별한 배려와 민감성이 보여져야 한다. 총회 중앙협의회는 가능한 한 대등한 차원에서 고용의 지속을 보장해야 한다. 직원의 결원이 생길 때 그 자리는 평등고용기회(G-13.0201b)와 전체 참여 원칙(G-4.0403)에 관한 전체 교단의 계획과 일치되게 충원되어야 한다. 총회 중앙협의회는 형평성있는 해직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6조 총회 대행기관들의 장소

- 6.1 총회 중앙협의회는 즉시 대표위원회를 임명하고, 총회 대행기관들의 소재지로 단일 지역이 좋을지, 복수 지역이 좋을 지에, 전문가 자문가들과 검토해야 한다. 동 위원회는 가능성있는 지역이나 지역들을 제안해야 한다. 동위원회는 만일 재배치가 포함될 경우, 이전 계획표를 짜서 제안해야 한다.

제7조 노회와 대회 구역 특별위원회

- 7.1 노회와 대회 구역 특별위원회가 조직되게 하고, 기존 교단들의 노회와 서로 중복되는 곳에서 치리회들과 협력하고, 필요하다면 다른 노회들과 대회들도 도와야 한다. 동 위원회 임무는 총회를 대신하며, 총회 결의를 받기 위해 상정된 권고안을 연구검토하는 것이다. (G-13.0103, l, m)
- 7.2 재연합 교단의 각 대회에서 1명씩 뽑아 구성된 이 특별위원회는 기존 교회의 정규 공천 절차를 통해 재연합 총회에 의해 선출되어야 한다. 동 위원회는 재연합 총회가 폐회되고 나서 즉시 임시 총회서기에 의해 개회될 때 자체적으로 그 위원장을 선출한다.
- 7.3 특별위원회는 중복 노회들과 대회들의 절충 절차를 추진하고, 상호 절충을 통해 양방이 만족스러운 계획 개발을 위해 협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동 계획은 재연합한 후 5년 내에 효력을 발생한다. 영향을 받는 노회들과 대회들의 치리기관들이 총회에 예비교섭의 방식으로 구역 조정을 개시하도록 권장해야 한다. 미국 일부 지역에서 노회들과 대회들이 서로 중복되어 오랜 세월 나란히 존재해온 사실을 인정하며, G-9.0104에 반영된 공정대표제 원칙이 준수되도록 각별한 관심을 쏟고, 노회 회원이 현재 누리는 치리의 책임과 특권이 존중되고 증대되도록 해야 한다. 특별위원회는 치리기관 지침서를 개발하여 절충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된 치리기관들과 특별위원회에 의해 승인을 받은 각 안을 총회로 보내 승인을 추천한다.
- 7.4 지역을 지리적으로 연관시킬 때 친교의 가능성이 훨씬 증대되고 치리회 업무 관장도 용이해진다는 원칙 하에서 특별위원회는 전체 교단의 선교를 증대시키는 충분한 교세와 지리적 근접성을 가진 치리기관들의 위치가 유래될 수 있도록 하는데 보다 높은 목표를 두어야 한다. 새로 형성된 치리기관에서 지도자들이 책임을 수행할 수 있으려면 반드시 연합하는 치리기관 회원들의 권리와 특권이 보호되어야 하고 여기에 대해 특별한 주의가 기울여져야 한다.

- 7.5 특별위원회는 치리회들이 이룩하는 경과 보고를 총회에 매년 상정해야 한다. 만일 재연합한 후 5년 내에 모든 관련 당사자들이 만족할만한 재조정이 상호 개발되지 않으면, 그 과정의 연장을 총회에 신청할 수 있다. 허가될 경우, 그 성과에 대해서는 연합하는 차기 총회가 향후 10년 한도 내에서 지역적 통합을 완전히 이룩할 수 있다는 기대와 함께 매 총회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 7.6 민중이나 언어적 고려가 바탕이 된 노회일 경우나 민중 그룹의 회원들이 지배적인 노회의 경우, 재조정은 10년의 기간 내에 완성되어야 한다. 만일 이것이 성취되지 않을 경우, 절차의 연장을 신청하고, 이것이 총회에 의해 허가되면 총회가 연합된 후 15년까지 성취되어야 한다.
- 7.7 그때에는 경계 중복에 관한 모든 문제들과 기타 노회들과 대회들의 관련문제들은 총회 결정으로 수락되어야 하고, 특별위원회는 해소되어야 하며, 미래의 경계이슈들은 G-13.0103 l, m의 조항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제8조 민중 대표, 참여와 조직

- 8.1 미국장로교는 당회 위의 각 상회 치리회에 대표위원회를 마련해야 한다. 그 회원권은 남녀 동수로 구성되어야 한다. 다수 위원들이 치리회 내에 있는 민중그룹에서 선출되어야 하고, 전체 회원에 다음의 각 범주에서 나온 사람들을 포함되어야 한다:

- a. 다수 남성회원
- b. 다수 여성회원
- c. 민중 남성회원
- d. 민중 여성회원
- e. 남녀 청년회원

동 위원회의 주 기능은, 치리회의 회원권 및 치리회에 속한 위원회, 이사회, 대행기관 및 다른 부서 회원권에서 참여와 포괄성의 원칙이 반영되도록 치리회를 지도하고, 교회의 의사 결정에서 효과적인 대표를 보장하는 것이다.

- 8.2 교회의 치리회들은 회원들의 풍부한 다양성이 전적으로 반영되도록 참여와 포괄성에 관한 교회의 결단을 이행할 책임이 있다. 모든 치리회는 보다 개방적이고 포괄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하고, 민중적 배경을 근거로 차별해왔던 과거의 행동 양식을 시정해야 한다.

미국내 민중계 회원들(아프리카계, 히스패닉계, 아시아 혈통과 본토 아메리카 장로교인들)이 교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전적으로 참여하고 접근하는 것이 보장되어야 하며, 민중계 코커스를 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

민중회원 참여와 대표는 대표위원회에 의해 보장되어야 한다(8.1).

- 8.3 총회 중앙협의회는 8.2 명시된 다양성과 포괄성의 원칙과 일치되게, 교단 민중 코커스와 협의하고 입력정보를 받아들여야 하고, 그러한 협의에 필요한 경비의 준비금을 마련해야 한다. 그와 같은 협의 목적은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민중교회와 목회 지원의 우선순위 결정,
민중교회 개발을 위한 교단적 전략 개발,

역사적으로 아프리카계 미국인과 타민중 그룹의 필요를 위해 운영되어 왔던 학교와 기타기관의 기금과 운영상 필요를 보장하는 방법을 추구하는 일.

- 8.4 민중 교육기관은 민중교회 지도력을 개발했던 주요 원천이 되어왔다. 총회 중앙협의회는 민중교회 지도력의 시급한 필요와 일치되게, 총회가 대학과 고등교육을 통한 교육에 대한 책임과, 역사적으로 아프리카계 미국인과 타민중 그룹의 필요를 제공해온 장로교 신학교들의 운영상, 개발상 필요를 충족하는데 책임을 수행하는 방법을 총회에 제안해야 한다.

제9조 여성의 대표, 참여와 조직

- 9.1 G-9.0105에 의해 당회의 각 상회 치리회에 대해 요구되는 대표위원회는 치리회의 회원권 및 치리회에 속한 위원회, 이사회, 대행기관 및 기타 부서의 회원권에서 참여와 포괄성의 원칙이 반영되도록 치리회를 지도하며, 교회의 의사 결정에서 여성과 다수인종과 민중그룹이 공정하게 대표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 9.2 9.3에 기술된 대로 프로그램들이 체계화될 때까지는 양 교단의 각 인정된 여성그룹에서 선출된 대표위원들과 협의 하에, 총회 중앙협의회가 두 교단에 있는 각급 여성 프로그램들과 기구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준비금을 마련해야 한다.
- 9.3 양 교단의 각 인정된 여성 그룹들에 의해 선출된 일단의 대표자 그룹은 회집하여 프로그램과 기구를 개발하고, 이러한 제안들은 대표자들이 대표한 그룹들에 의해 승인되어야 한다. 그런 승인은 각 여성그룹의 집행위원회에 의해 총회 중앙협의회에 보고되어야 한다. 그 그룹은 총회에 매년 보고해야 하고, 그들의 임무는 6년 내에 완수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10조 신학교육기관

- 10.1 재연합 교단은 신학교육기관들에 대해 지속적인 책임을 진다. 이 기관들은 안수직 목회를 위한 남녀와 다른 전문직 교회 지도자의 소명을 준비시키며, 전체교회 지도자들을 위한 강력한 신학적 자원센터를 제공할 책임을 떠맡고 있다.
- 10.2 미국 남장로교의 신학기관들:

Austin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Austin, Texas,

Columbia Theological Seminary,

Decatur, Georgia,

Louisville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Louisville, Kentucky,²

Presbyterian School of Christian Education,

Richmond, Virginia,

²이 신학교들은 미국 연합장로교와 공동으로 운영된다.

Union Theological Seminary in Virginia,
Richmond, Virginia,

미국 연합장로교의 신학기관들:

Dubuque Theological Seminary,

Dubuque, Iowa,

Johnson C. Smith Seminary, of the Interdenominational

Theological Center, Atlanta, Georgia,

Louisville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Louisville, Kentucky,³

McCormick Theological Seminary,

Chicago, Illinois,

Pittsburgh Theological Seminary,

Pittsburgh, Pennsylvania,

Princeton Theological Seminary,

Princeton, New Jersey,

San Francisco Theological Seminary,

San Anselmo, California,

이 기관들은 그들의 현 이사회와 정관과 설립허가 및 경영안을 가지고 재연합 교단으로 들어와 지속되어야 한다.

- 10.3 재연합 당시에 이 기관들과 관련된 치리법정이나 사법법원에 의해 주어진 현 재정지원 방침을 연합교단이 지속해야 한다. 치리회들이 재연합 이전 연도에 할당한 유사한 총계 비율로 각 신학기관들이 지급받도록 하기 위해, 신학기관에 대한 대회와 총회의 재정지원 수준이 지속되어야 한다.
- 10.4 재연합 교회의 첫 총회에서 신학기관 특별위원회가 총회의 한 위원회로서 수립되어야 한다. 특별위원회는 22명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11명은 교단 전체에서 (총회의 특별위원회를 공천하고 선출하는 절차에 따라)총회에서 선출되어야 한다. 전술한 11개 기관의 이사회들에서 각각 한명씩의 대표자를 동 위원회에 대표위원으로 선출해야 한다. 특별위원회는 첫 총회의 총회장이나 총회장의 지명자가 개회해야 하고, 그런 다음 자체적으로 위원장을 선출해야 한다. 총회 중앙협의회의 예산에서 자금 조달을 해야 하고 중앙협의회 직원이 지원해야 한다.
- 10.5 특별위원회는 신학교육기관과 재연합교회 치리회기관의 관계를 검토하고 치리회기관의 신학교육 자금 조달체계를 연구해야 한다. 현 교육기관들에 대한 지속적인 재정 보조안을 세우야 하며, 특히 흑인장로교 구역을 유일하게 담당하는 Johnson C. Smith Seminary 신학교 개발의 필요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쏟아야 한다. 특별위원회는 총회에 매년 보고해야 한다. 동 위원회는 재연합 교회 총회의 6년차 개회나 그 이전에, 신학 교육기관들이 치리회기관들을 통해 자금을 조달 받는 방식에 대한 건의 사항과 함께 최종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³이 신학교는 미국 남장로교와 공동으로 운영된다.

- 10.6 미국 연합장로교의 신학교 협의회와 미국 남장로교의 신학교 교육위원회는 그들의 기능과 회원권을 보유하고 지속되어야 한다. 공석이 생길 경우에는 회원권 범주에 적절한 절차를 사용하여 결원을 채워야 한다. 협의회와 위원회는 신학교 교육기관의 특별위원회 건의안에 대해 총회의 결의가 나올 때까지, 신학교 교육기관의 공동 관심사를 위해 협력적으로 일한다.

제11조 은급, 연금, 보험, 복지후생, 지원, 구제 프로그램들

- 11.1 미국 남장로교와 미국 연합장로교의 연합이 완성되고 나서, 미국 남장로교의 연금과 구제 이사회와 미국 연합장로교의 은급이사회는 그들의 책임이 11.3에 명시된 법인체로 인계되기까지는 각자 설립조항에 따라 분리된 법인체로서 기능을 지속해야 한다. 이 법인체들이 분리된 조직체로서 존속하는 동안, 이사회 회원권은 두 교단의 재연합 당시에 조직된 그대로 동결되어야 한다. 단 이사회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재연합 교회 총회에서 새이사를 선출할 수 있다. 재연합 당시 효력을 가진 계약책임의 이행이나 다른 절차에 중단이 있어서는 안 된다.

- 11.2 두 교단을 재연합하기로 두 총회가 최종 표결을 하고 나서, 미국 남장로교의 연금과 구제 이사회와 미국 연합장로교의 은급이사회는 가능한 한 신속하게, 다음 사항들을 개발하여 재연합 교회 총회에 제안해야 한다:

- a. 미국 남장로교와 미국 연합장로교의 현 은급제도와 복지제도, 그리고 지원구제 프로그램을 대체하는 새 통합 플랜과 프로그램들;
- b. 연금과 구제이사회 현 연금과 구제기금 및 보험기금에 대해, 그리고 기금을 따로 예비해 둔 목적이 철저히 지켜지도록 확인하는 은급이사회 현 은급, 재단, 보조, 시설과 장비와 특정 신탁기금을 형평하게 적용하는 프로그램.

- 11.3 새 플랜들과 프로그램들이 재연합 교단 총회에 의해 승인될 때, 이 것들은 민간설립 규정에 의거하여 설립된 법적 책임을 가진 법인체에 의해 관장되어야 하며, 이 법인체는 이러한 플랜과 프로그램에 대한 행정업무 외에는 다른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미국 남장로교회와 미국 연합장로교회의 은급제도 이사회와 구제프로그램 책임을 떠맡는다. 이 법인체 이사회의 이사들은 재연합교회의 총회에 의해 선출되어야 한다.

기존 기금의 형평 적용 프로그램에 대해 재연합 교회 총회의 승인을 받은 다음, 그러한 기금은 법적 필수 요구사항이 충족됨과 동시에 곧 바로 이전 문항에서 명시한 법인체의 관리 하에 두어야 한다.

- 11.4 새 플랜과 프로그램이 발효할 때까지는 두 교단의 기존 플랜과 프로그램들이 수정없이 지속될 것이다. 모든 회원들은 재연합 되기 전에 속한 플랜으로 계속할 것이다. 단, 새 안수목사, 새 평신도 직원, 그리고 교회의 시무처를 바꾸거나 고용기관을 바꾸는 사람들의 경우, 참여 플랜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때 고용기관과 개인이 같은 플랜에 동의해야 하고, 선택 플랜의 봉급과 필수적인 부과금에 대해서도 동의해야 한다.

새 통합 플랜들과 프로그램들은 재연합 교회의 모든 목사들과 평신도 직원의 모든 회원들이 참여한 현 플랜과 프로그램에 대해 적절한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새 은급 플랜과 복지후생 플랜들이 일단 운용된 다음에는, 어떤 새 회원도 이전에 존속한 플랜에 가입할 수 없으며, 새 플랜이 발효된 날짜 다음에는 월급과 관련하여 징수된 부과

금은 이전에 존속하던 플랜으로 징수될 수 없다.

각 연금과 은급 기금은 모든 법적 의무사항과 일치되게 계약의무를 이행함과 동시에 발생하는 전 자산 최종분배에 목적을 두고, 그 사용을 회원들, 활동회원과 은퇴 회원의 회원 그리고 그들의 유족들이 독점적 사용을 위한 보험 회계학적으로 튼튼한 기반 위에서 관리되어야 한다

제12조 에큐메니컬 관계

12.1 교단 재연합 전에 한 쪽 교단과 관계된 교단들과 재연합 교회가 일차적으로 관계를 지속한다면, 재연합교회의 총회가 에큐메니컬 관계를 확정해야 한다.

제13조 자산을 가진 지교회의 교단 이적 절차

13.1 본 합의서 조항의 취지는 미국 남장로교와 미국 연합장로교회를 미국장로교(PCUSA)로 조직하는 재연합에만 적용하는 것이며, 교회 재산에 관한 소유권 원칙은 교회법과 민사법에 의해 설립된 대로, 이전 교회에서나 재연합 교회에서나 어떤 형태로도 변경이나 축소나 무효화되지 않는다.

13.2 연합이 완성된 후 18개월 동안은 어떤 지교회도 이적할 수 없다. 단 총회가 허가한 경우는 예외다. 재연합 교단에 남기를 원치 않는 회원이나 제직이나 목사들은 G-10.0102r, G-10.0302b(1), G-11.0103n에 명시된 대로, 어느 때라도 다른 교단이나 특정 교회와 연합할 수 있다.

13.3 연합이 완성된 1년 후, 이전에 미국 남장로교 교단에 속했던 지교회는 다음 조건을 충족할 때 이적할 수 있다:

a. 교회의 당회는, “미국장로교회(PCUSA)의 _____(이름)는 스스로 선택한 다른 개혁신교단으로 이적을 요청할 것인가?”의 문제를 논의하는 목적으로 공동의회를 소집해야 한다. 그러한 회의소집에 대한 정당한 공고가 연속적으로 두 주일날, 교회의 정기 주일예배 시에 강단에서 구두로 전달되어야 하고, 첫번 공고는 회의가 소집되기 적어도 10일 전에 되어야 한다. 요구되는 정족수는 다음과 같다:

회원수가 100명 이하일 경우 정족수는 회원의 1/4; 또는

회원수가 100명 이상일 경우, 25명이나 회원의 1/10 중에서 더 많은 숫자이다.

b. 관할 노회가 공동의회에서 교인들과 회합을 가질 수 있도록 특별위원회를 임명한다.

c. 그 회의에서 어떤 목적으로나 어떠한 종류의 표결도 하지 않는다.

d. 이적문제 고려의 목적으로 공동의회가 소집된 날짜로부터 적어도 6개월이 지난 후, 그러나 12개월이 넘지 않은 기간 내에 당회가 특별 공동의회를 소집한다.

e. 그러한 회의 소집에 대한 정당한 통보가 적어도 회의 개최되기 30일 전에 전 교인들 에게 우송되어야 하고, 연속 두 주일날, 교회의 정규 주일예배 시에 강단에서 구두로 공고되어야 하며, 첫번 쨰 구두 공고는 적어도 회의 개최 10일전에 발표한다. 노회위원회가 그 회의에 발언권을 가지고 참석하게 한다.

회의 소집 양식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미국장로교의 _____(이름)는 ‘타 개혁신교단으로 이적을

요청할 것인지 요청하지 말 것인지?’를 숙고하고 결정하기 위해 20____년 ____월 ____일자 (오전 또는 오후) ____시에 _____(장소)에서 특별공동회의를 소집한다. 이 특별회의의 소집의 근거와 권위는 합의조항 제13조에 있다. 이 합의조항은 미국 남장로교와 미국 연합장로교가 한 교회로 다시 합쳐서 미국장로교(PCUSA)를 세우기로 합의를 체결한 연합계획의 일부이다.

이 취지의 정족수는 정식으로 등록되고 확인된 활동회원의 1/3 보다 적어서는 안한다. 것처럼 중대한 사안의 결정은 전체 교인의 의사를 진정하게 반영시킬 만큼 충분히 큰 그룹에 의해 의결되게 하도록 촉구한다. 토의 후, 다음의 단언적 질문을 비밀투표에 부친다:

미국장로교(PCUSA)의 _____ 교회가 타개혁신단인 _____(으)로 옮길 것을 요구할 것인가?

이적을 요구한다 _____ 이적을 요구하지 않는다 _____

만일 출석한 투표 교인의 2/3가 교단이적을 요구하면, 이 개체교회는 본 합의서 제13조의 특별조항에 의해 이적될 것이며, 기존의 압류 처분이나 채무 책임과 함께 동 교회의 전재산을 보유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장로교의 지교회로서 회원권을 반환해야 될 것이다.

- f. 10일 내에 패자 쪽의 어느 누구라도 관할 노회에 보낸 공동의회 서면통보 규정이나 투표과정이나 투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럴 경우 노회는 이슈가 된 문제들을 검토해야 하고, 이의 제기가 인정되면 새로운 공동의회를 소집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 g. 만일 미국장로교 교단으로부터 이적 찬표를 던진 사람들로부터 이의 제기가 접수될 경우, 그 이의 제기는 노회에 의해 인정되지 않으며, 그러한 교회는 미국장로교의 회원교회로서 존속해야 한다. 이의 제기가 이적 반대표를 던진 사람에 의해 접수되고 노회가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그러한 교회는 타 개혁신단으로 이적되어야 하며, 부동산의 보유가 (압류처분이 채무가 있을 경우 이와 함께) 허락되어야 한다.
- h. 본 정관에 의해 제기된 모든 이의는 노회 권한이 최종적이다.

13.4 연합의 완성으로부터 8년이 지난 후에 재산을 가지고 교단 이적을 청원할 경우, 그러한 청원은 정치형태의 적절한 규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

제14조 재연합 실행 절차

14.1 재연합한 두 교회의 총회들이 찬성 투표로서 공식질문 1을 승인할 때, 두 교단의 노회들은 다음 해 2월에 회의를 개최하고 그 사안을 숙고해야 한다.

공식질문 1:

결 의: 총회는, 합의서와 합의조항(G-1.0500)에 정의된 대로 미국장로교 헌법을 구성하는 재연합 제안의 계획 하에서, 그리고 이 결의와 결부되어 있거나 필수적으로 함축되어 있으며, 또한 언급에 의해 그 일부로서 병합된 모든 기타 문서와 수반 절차들과 더불어, 미국 연합장로교의 총회와(미국 남장로교총회) 완전한 조직적 연합을 하는 것을 승인하며 노회들에게 추천한다.

14.2 각 노회는 다음의 공식 질문 2에 대한 결의를 2월 말 이전에 그 노회가 속한 총회의 서기에게 보고해야 한다. 표결 보고는 총회서기가 제공한 투표용지를 사용한다. 연합노회들은 그들의 표결을 양 총회 서기들에게 보고해야 한다.

공식질문 2:

결 의: _____의 노회는, 합의서와 합의조항(G-1.0500)에 정의된 대로 미국장로교 헌법을 구성하는 재연합 제안의 계획 하에서, 그리고 이 결의와 결부되어 있거나 필수적으로 함축되어 있으며, 또한 언급에 의해 그 일부로서 병합된 모든 기타 문서와 수반 절차들과 더불어, 미국 연합장로교의 총회와(미국 남장로교와) 완전한 조직적 연합을 하도록 조언하며 동의(승인 함)한다.

- 14.3 연합하는 두 교단들의 필수적 숫자의 노회들이 공식질문 2에 승인하면, 연합하는 두 교단들의 총회들은 다음의 공식질문 3을 승인해야 한다:

결 의: 총회는, 합의서와 합의조항(G1.0500)에 정의된 대로 미국장로교 헌법을 구성하는 재연합 제안의 계획 하에서, 그리고 이 결의와 결부되어 있거나 필수적으로 함축되어 있으며, 또한 언급에 의해 그 일부로서 병합된 모든 기타 문서와 수반 절차들과 더불어, 미국 연합장로교의 총회와(미국 남장로교총회) 완전한 조직적 연합을 하는 것을 최종적으로 승인한다.

그런 다음 각 총회의 총대들이 공동회의 장소에 회집하여 미국장로교(PCUSA)의 총회를 개최한다. 재연합하는 교회 총회들의 모든 총대들은 재연합된 교회에서 총회의 총대가 되어야 하며, 동 총회는 재연합하는 양 총회의 적절하게 예정된 안건의 모든 업무에 대해, 그리고 재연합에 관한 정치형태의 요구사항에 따라 동 총회에 제기되는 모든 업무에 대해, 적절히 조치를 취할 권한을 위임받아야 한다.

- 14.4 재연합하는 총회의 두 서기는 재연합된 교회의 임시 서기가 되어야 하며, 그들은 재연합 계획 합의서 4.1에 명시된 대로, 총회 위원회들의 임명과 회원권 계획을 작성하고 수립하며, 적절한 업무 위임에 대한 건의 사항을 재연합된 교회 총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작성하고 수립한다.

- 14.5 총회가 가장 먼저 할 일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의식을 거행하고 주님의 만찬을 집행하는 것이어야 한다. 총회장 선출은 주님의 만찬이 끝나고 나서 처음 개최되는 총회에서 초반 안건으로 처리해야 한다.

부록 C

표준 에큐메니컬 선언 지침서(참조 G-5.0203):

공식 본문

합의 약정서

미국복음주의 루터교회

미국장로교

미국개혁교회

그리스도연합교회

간에

공동소명에 입각한
완전교류에 관해 체결

제209차 총회(1997년)에서 승인

제210차 총회(1998년)에서 선포

공식 본문 합의약정서

합의 약정서
미국복음주의 루터교회,
미국장로교,
미국개혁교회,
그리스도연합교회
간에
공동소명에 입각한
완전교류에 관해 체결

서 문

1997년 개혁전통을 가진 네 교단들이 역사적 중요성을 지닌 에큐메니컬 제안을 결의하기로 했다. 이것은 시기적으로 교회가 현대 사회에서 일치의 복음을 선포할 긴급성의 점증에 비추어 지난 32년 이상 발전해 온 교리적 일치를 반영하는 것이다. 확인된 교리적 일치에 비추어, 교회의 일치를 향한 가시적 증거를 하려는 열망과 하나님의 선교에 다 함께 참여하도록 부름을 들으면서 다음이 제안되었다:

즉, 미국복음주의 루터교회(Evangelical Lutheran Church in America), 미국장로교(Presbyterian Church (U.S.A.)), 미국개혁교회 (Reformed Church in America) 및 그리스도연합교회(United Church of Christ)는 *공동소명(Common Calling)*과 본 *합의약정서(A formula of Agreement)* 채택을 바탕으로 상호 완전교류를 하고 이를 선언한다. 이로써 각 교단은 다른 세 교단과 완전 교류에 들어가며 이를 확인한다.

“완전교류”(full communion)란 용어는 여기서 네 교단이 아래와 같은 일을 한다는 특별한 의미로 이해된다:

- 서로의 교회에서 복음이 올바르게 전파되고, 성례전이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되게 집행되고 있다고 인정한다;
- 우리 교회들의 삶과 신앙을 잘못된 것으로 서로 비방해온 우리의 역사적 관행을 지금 철회한다;
- 계속하여 상대교회의 세례를 서로 인정하고, 완전교류 회원들 간에 서로의 교회에서 집행하는 주님 만찬에 참여하도록 권고한다;
- 상대 교회의 다양한 목회사역을 인정하며, 말씀과 성례전 목사들의 질서있는 상호 교환 규정을 마련한다;

- 교단들의 현 조직 내에서 적절한 협의와 의사결정의 경로를 수립한다;
- 신앙에 대한 공동 이해를 더욱 분명하게 하고, 전도·증거·봉사의 공동 표현을 촉진하기 위해, 지속적인 신학적 대화를 하기로 결단한다;
- 신앙에 대한 공동 이해를 명확하게 하고, 전도와 증거와 봉사에 대한 공동 표현을 조장하기 위해, 지속적인 신학적 대화를 하기로 결단한다;
- 복음 아래서 삶을 함께 할 것이며, 상호확인과 권고는 상대방을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신뢰관계의 기초가 되게 할 것을 서약한다.

이 문서는 <공동소명: 현대북미개혁교회들의 증언>에 논리정연하게 표현된 교리적 함의를 수용하며, 그 문서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함의협정서*의 목적은 완전교류를 체결하는 기본원칙으로서 상호확인과 권고의 상호보완성에 대해, 그리고 *공동소명*에 기술된 그러한 결정에 함축된 의미를 명확하게 하는데 있다.

*공동소명*은 루터-개혁교회 신학대담위원회(1988-1992)의 보고서로서, 1962년¹ 시작된 그 절차가 지속되어 왔다. 그 보고서 안에는 “미국 북음주의루터교회, 미국장로교, 미국개혁교회 및 그리스도연합교회가 서로 완전 교류를 하고 있다고 선언한 만장일치의 권고사항”이 있다(*공동소명*, 66-67). 이어, 완전교류가 신학적대담의 연구와 함께 개발되어 실행될 수 있는 7개 권고안이 나온다(*공동소명*, p. 67). 그 결과로서 완전교류에 대한 요구가 4개 교단에 제시된 것이다. 각 교단 내의 회의에서 완전교회 선언에 대한 표결은 1977년에 있을 예정이다.

상호확인파 권고 (Mutual Affirmation and Admonition)

1차 루터교회-개혁교회 대화에서 일찍이 확인된 개념으로서 신학적 대화에 대한 이해의 기틀이 되었다. 그 대화의 참석자들은 “진리의 왜곡 가능성을 방지하려는 노력의 결과로서, 관련 교리들에 다양한 강조가 초래되었으며, 이것은 서로 상호모순적이 아니라 실제로 보완적이라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었다(*Marburg Revisited*, 서문). 동 신학적 대화의 참석자들은 이러한 통찰에 함축된 의미들을 재발견하고 숙고했으며, 이를 네 교단간의 완전교류에 대한 권고의 기초로 보았다. 상호확인파 상호권고의 보안성이라는 이 획기적인 개념은, 교회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여받은 하나님의 구속적 은혜를 증거하는 상호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 서로 화해할 수 없었던 개혁교회들의 여러 전통들을 서로 관련시키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다.

¹북미 루터교회-개혁교회 대담의 연혁에 대한 요약은 *공동소명* pp.10-11에서 참조한다. 제1차 대화(1962-1966년)의 결과는 *마르부르크의 재방문(Marburg Revisited)* (Augsburg, 1966)에 발표되었다. 제2차 대화는 1972-1974년에 개최되었다. 이의 간추린 보고서는 *An Invitation to Action* (Fortress, 1983)의 pp.54-60에 발표되었다. 제3차 대화는 1981년에 시작되어 1983년에 종결되었으며, 이것은 *An Invitation to Action*의 책에 발표되었다. 제3차 대화에 이어, “신학적 대화(Theological Conversations)”의 모임이 1988-1992년에 개최되었고, 이에 대한 그 보고서로서 <공동소명: 현대 북미 개혁교회들의 증거> (Augsburg, 1993)가 출간되었다. 더 나아가, 루터교회-개혁교회 대화에 참석한 북미 참석자들은, 1973년 유럽 개혁교회들간의 일치선언문으로서, *An Invitation to Action*, pp.61-73에 발표된 Leuenberg Agreement와 루터교 세계연합 국제공동위원회와 세계 개혁교회연맹의 보고서(1985-1988)인 *Toward Church Fellowship* (LWF and WARC, 1989)에서 발견된 신학적 사고에 관심을 집중하게 되었다.

이 개념은 루터교회-개혁교회 관계에 대해 세가지 본질적인 국면을 인정하는 기틀을 제공한다. (1) 각 교회들은 그 삶의 바탕을 그리스도의 정통적 신약성서의 전통에 둔다; (2) 이들 교회들의 핵심 전통들은 다같이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에 속한다; 그리고 (3) 이들 교회들이 역사적으로 주고받은 논쟁(give-and-take)은 묵과할 수 없는 근본적인 상호비방을 초래했으나, 이는 “우리의 공동 고백인 하나의 복음에 대해 다양한 증거로서” 이해되어야 한다. (*공동소명*, p. 66). 서로를 이해하는 하나의 인식이 전개되었고, 이것은 새로운 빛으로 16세기 논쟁에 현대적 통찰력을 던져주었다.

우리의 공동 고백에 나타나는 신학적 다양성은 복음(상호확인)의 완전 적절한 증언에 필요한 상호보완과, 모든 신학적 접근이 복음의 부분적/불완전한 증언(상호권고)이라고 바로 잡아주는 각성을 제공한다(*공동소명*, p. 66).

“상호확인과 권고”라는 실용적인 원리는 전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분야에서 상호 고양과 교정의 과정을 허용하는 가운데, 합의서 확인을 허용하였다. 서로 공유하고 추구하는 믿음의 일치를 더욱 명백하게 하기 위해 지속적인 신학적 고찰과 대화를 고취하는 가운데, 각 전통은 다른 전통에 대해 “교정적 증거”를 가져온다. “상호확인과 권고”의 원리는, 잔류하는 상이점들을 공동 고백인 하나의 복음에 대한 다양한 증거로서 보는 것이다. 재래적 사고방식은 불일치의 선언에 들어있는 일치의 기반을 가려지게 한 반면, 새 개념은 잔류하는 상이점들에 대해 부조화의 범위까지라도 반드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확실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내재하는 일치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잔류하는 상이점들은 교회분열의 요소가 아니다.

상호확인과 권고의 개념은 중대한 성과로 이어지며, 두 개념은 네 교단들이 상호 연결되는 관계를 설명해준다. 상호 보완의 원리와 수반되는 해석양식에서 분명해지는 것은 이들 교단들이 완전교류에 들어감에 있어서,

- 고유한 전통적 고백서 성격과 교회적 성격에 타협의 여지가 조금도 없다고 간주하지 않는다;
- 상대 교단들의 고백서 성격과 교회적 성격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전면적으로 인정한다;
- 중요한 상이점들에 대해서는 완전교류 관계 안에서 솔직하고 분명하게 표명할 의도이다;
- 명백한 상이점들이 서로의 교단 안에서, 그리고 완전교류의 관계 안에서 충만한 교회로 상호 성장할 기회가 되도록 허용한다.

근본적 교리 합의 (A Fundamental Doctrinal Consensus)

신학적 대담(theological conversations)에 참여한 회원들은 완전교류의 필수조건들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일을 맡았다. 그들은 루터교회 고백서 언어를 차용했다: “교회의 참 일치는 복음의 가르침과 성례전의 집행에 관한 것으로 충분하다”(satis est consentire) (*Augsburg Confession*, 7장). 신학적 합의는 완전교류를 위한 현 제안의 기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정당성, 성례전, 목회, 교회와 세계를 포함한다. 지속적인 다양성 문제는 더 이상 “교회 분열” 요소로 보아서는 안 되며, 신학적 대담에서는 다음의 표제로 다루어졌다: 정죄, 그리스도의 현존, 그리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

제1차 대화(dialogue)의 참석자들은 의롭게 됨(Justification)의 문제 대해, “각 전통마다 죄의 용서와 생명의 새롭게 됨이 포함되는 복음의 전체성 보존을 추구했다”는 점에 동의했다(Marburg Revisited, p. 152). 제3차 대화의 회원들은 의롭게 됨(Justification)에 관한 공동선언문을 통해, “...루터교회와 개혁교회들은 둘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행위에 관한 복음 속에 뿌리를 내리고 이를 생활지침으로 삼으며, 그것을 선언하고 고백한다”(An Invitation to Action, p. 9). 그들은 더 나아가, “두 전통 다, 믿음만으로, 은혜에 의해, 의롭게 된다는 말로 이 복음을 고백한다”고 선언했으며, “의롭게 됨과 관련하여 우리를 갈라놓는 본질적 문제는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An Invitation to Action, pp.9-10).

루터교와 개혁교는 세례문제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포로가 된 인간들을 구원의 교제로 받아들여시고 그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다는 사실에 동의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공동체, 새로운 신앙생활, 매일의 회개, 그리고 제자직에 부름으로 체험된다(참조 Leuenberg Agreement, III.2.a.). 각 대화와 신학적 대담에서 주의 만찬에 예수님 임재의 중심교리가 주목을 받았다. Marburg Revisited(마르부르크의 재방문)의 개요선언문은 다음을 주장하며 합의점을 반영한다:

종교개혁 시대에 개혁교와 루터교가 주의 만찬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속행위로 보고 이해했을 때 동 교회는 둘 다 복음의 의도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공동 의도에도 불구하고 상이한 용어와 개념들이 사용되었고... 이것은 상호불신과 오해로 이어졌다. 이러한 용어들과 개념들의 차이들이 적절하게 해석될 때는 상호 모순적이라기 보다는 상호 보완적일 때가 많다(Marburg Revisited, pp.103-4).

제3차 대화는, 루터교나 개혁교의 어느 쪽도, 주의 만찬에 그리스도가 어떻게 임재하시며, 받아들여지는지 설명하는 선언은 하지 않았으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성찬상의 주인이시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전적으로 임재하시고 성찬에서 그가 받아들여진다” [재강조 삽입] 고 단언했다고 결론을 지었다(An Invitation to Action, p. 14).

목회 주제는 제3차 대화에서만 고찰되었다. 루터교회와 개혁교회를 갈라야 할 본질적 사유가 없다는 사실에 동의하는 가운데, 그 대화는 이렇게 확인했다:

우리 전통의 목회는, 구원은 그리스도 한 분으로 족하며, 목회는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을 향하는 것이다. 목회는 말씀의 전례와 성례전의 집례가 중점이 되며, 오직 믿음과 은혜와 성경을 통해서만 그리스도의 혜택이 계시된다는 확인에 기초한다 (An Invitation to Action, p. 24).

그 대화는 이어 모든 세례인들이 그리스도의 종의 사역에 참여할 책임을 언급하고, “안수 목회자들에 대해, 말씀의 전례와 성례전을 통해 은혜를 중재하는 도구로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고 지적했고, “말씀이 참되게 전파되고 성례전이 올바르게 집행되도록” 적절한 감독의 필요성에 대해 주장했다(An Invitation to Action, pp. 26, 28, 31).

제1차 대화는 교회와 세상의 주제를 아주 중요한 연구 주제로 간주했다. 그 대화는 차이점들을 고찰했고, 교정의 필요성을 주목했으며, 교회가 현재 처해있는 세계가 근본적으로 달라져 있음을 주목했다. “개혁 신학에 기독교 윤리의 공동 복음적 근거가 있다”고 동의하는 가운데(Marburg Revisited, p. 177), 그 대화는 교회와 세상, 율법과 복음, “두 왕국,” 그리고 그리스도의 주권의 관계에 관한 칼빈과 루터의 상이한 “강조점”을 되풀이해서 언급했다. 그 대화에서 발견한 것은, “율법과 복음사이의 관계에 대한 서로 다른 공식은 한편으로는 율법주의 오류를 타파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믿음만을 강조하는 도덕폐기론(antinomianism)의 오류를 타파하려는 공동 우려에 의해 자극받았다”는 것이다. 크리스찬 삶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역할에 관한 차이점들이 여전히 남아 있지만, 그 대화는 “이것을 분열의 요소로 간주하지 않았다”(Marburg Revisited, p. 177). 더 나아가,

20세기 세계가 급격히 변화하는 것에 비추어, 현재 루터교-개혁교 증거를 확정적 요인으로 만드는 가운데, 그들이 16세기에 취한 입장과 선택들을 방어하거나 수정하는 것은 부적절하게 간주되었다. 따라서,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의 선언”에 관한 신학적 대화는, 개혁교회와 루터교회의 다른 “강조점들”을 목회적 섬김과 교회의 증거에 도전하는 “상호 보완적이고 고무적인” 차이점들이라고 확인했다. “진행 중인 ‘의롭게 됨(justification과 정의)’에 관한 토론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의식이다. 우리의 전통들은 하나님의 자비하신 약속을 분별하고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 서로를 필요로 한다”(A Common Calling, p. 61).

강조점들의 차이 (Differing Emphases)

정죄(The Condemnations)

종교개혁 시대의 정죄는 하나님 말씀을 보존하고 보호하려는 시도였다; 따라서 그 정죄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그러나 현대의 교회적 상황 때문에, 그러한 정죄로 교회를 계속 분열시켜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 공동소명의 상호확인과 상호권고의 개념은 정죄 언어를 극복하는 방안을 제공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우위와 성례전 은사에 대한 공동 이해로서 서로 강조점이 다른 것을 허용한다. 공동소명은 *Leuvenberg Agreement*(로이엔베르크 합의)를 지지하여 다음과 같이 인용한다. 즉. 교리적 합의 결과로서 고백문서에 표현된 정죄는 서로 찬동하는 교회들의 현대 교리적 입장에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Leuvenberg Agreement, IV.32.b). 신학적 대답은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우리는 오늘의 과제가 분리와 배제의 관점을 지적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동역자 교회들이 복음의 진리에 대한 자신들의 솔직한 우려점을 말하고 듣고 진지하게 받아들이며, 우리 자신의 신앙 에큐메니컬 공동체의 정체성에 통합될 수 있도록 공동언어를 찾는 데 있음을 확신하게 되었다(A Common Calling, p. 40).

정죄의 주요한 초점은 주님의 만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문제였다. 루터교인과 개혁교인들은 성례전에 대한 그들의 공동 이해에서 하나님 말씀은 타협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할 필요성을 느낀다. 따라서 그들은 주님의 만찬의 특정 국면에 대해 협력 교회들 간에 합의점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답에 의해 다루어진 문제들을 상기하는 가운데 루터교인과 개혁교인들은 그러한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주의 만찬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약속의 말씀으로, 떡과 포도주와 함께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신 그의 살과 피 안에서 자신을 나누어주신다. 따라서 그는 떡과 포도주를 받은 모두에게 무제한적으로 자신을 내어주신다; 신앙인은 구원의 주의성찬을 받고, 불신자는 심판의 주의성찬을 받는다(Leuvenberg Agreement, III.1.18).

우리는 그의 살과 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류하는 것을 먹고 마시는 행위로부터 분리할 수 없다. 이러한 행위로부터 분리하여 주의 만찬에 그리스도의 임재하시는 방식에 참여하는 것은, 주의 만찬의 의미를 모호하게 할 위험이 있다(Leuvenberg Agreement, III.1.19).

그리스도의 임재(The Presence of Christ) :

제3차 대화는 이미 달성한 합의에 바탕을 두고, 성례전의 신비에 대한 이해를 보다 깊게 하기를 추구했다.

우리 개혁신교인들과 루터교인들은 주의 만찬에 관하여 갖고 있는 공통점들에 대해 감사하는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단들은 성례전 신비를 전적으로 풍요하게 인식의 깊이를 더해 가기 위해 계속 성장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한다(*An Invitation to Action*, p. 14).

신학적 대담에 가입한 회원들은, 16세기로부터 내려오는 고백적 진술들(confessional formulations)을 공동언어와 조화시켜서...“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모든 통찰력, 확신, 관심을 정당하게 평가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음을 인정했다(*A Common Calling*, p. 49). 그러나, 이 신학적 대담은 지속적인 차이에 대해 주의 만찬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다양성으로 인정했다. 제3차 대화의 전통에 따라, 그들은 이런 차이들이 교회분열의 요소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이라고 확인하면서, 자신들의 선조가 고백했던 신앙과는 다른 견해와 확신에 대해 존중하였다. 양 교회는, “주의 만찬의 문체에서 개혁전통은 같은 뿌리에서 나온 것이고 목적도 동일하다고 함께 말할 수 있다. 즉 용서, 권능부여,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주시려고 친히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만찬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는 것”이라고 한다. 루터교회와 개혁신교회는 이렇게 동의한다:

주의 만찬에서, 부활하신 예수그리스도는 그의 약속의 말씀으로, 떡과 포도주와 함께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신 그의 살과 피 안에서 자신을 나누어 주신다. 그는 그것으로 죄의 용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새로운 신앙의 삶을 위해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 그분은 우리가 그의 지체의 일부임을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체험하게 하신다. 그분은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봉사할 수 있게 힘을 실어주신다. (공식 원문은 “*Er starkt uns zum Dienst an den Menschen*,”이며, 이는 모든 인류에게”라고 번역할 수 있다) (*Leuenberg Agreement*, II.2.15).

우리가 주의 만찬을 축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그를 통해 세상과 자신을 화해시키신 그리스도의 죽음을 선포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을 기뻐하면서, 우리는 영광 속에서 장차 오실 주님을 기다린다 (*Leuenberg Agreement*, II.2.16).

주의 성찬에서 찾을 수 있는 상호보완성과 신학적 함의와 함께, 성찬례 집전의 함축적 의미도 인정되며, 이것은 개혁신교회들의 전통을 대표한다.

우리 개혁신교단 교단들은 각기 성찬식을 거행하는 방식에서 많은 중요한 요소들을 공유한다. 그러나 우리가 분열되고 수세기를 거치는 동안, 집례에 관한 특징적 차이들이 교단 별로 개발되었고, 이런 것들로 인해 상대 교단에서 축하하는 만찬에 참여하면 거부하게 느끼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차이들은 여러 분야에서 판별된다. 즉, 성례전 양식과 성례전의 세목에서, 집전의 언어적 해석에 있어서, 주의 만찬에 대해 우리가 체험하는 감정적 양상에서, 그리고 주의 만찬에서 우리가 찾는 교회/개별 회원들의 삶과 선교임무에 대한 함축성에서 차이가 드러난다...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차이들이 기독교 신앙 안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다양성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우리의 확신을 재천명한다. 우리의 양 교단은, 우리의 다양한 성례전 전통을 음미하면서 성장할 필요를 느끼며, 그 안에서 서로 풍요하게 되는 것을 발견한다고 주장한다. 동시에 우리는 주의 만찬의 신비에 대한 우리 공동 체험과 표현을 더욱 깊게 하는 방향으로 성장할 필요가 있다 (*An Invitation to Action*, pp.16–17).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God's Will to Save):

루터교회와 개혁신교회는 하나님 은혜의 구원하시는 힘이 자신들의 신앙과 삶의 중심에 있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구원을 오직 하나님 은혜에만 의존하며 인간 협력에 있지 않다고 믿는다. 이러한 공동 믿음에 불구하고 두 전통을 분리해온 이슈 가운데 예정론이 있다. 루터교회와 개혁신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의 주권에 대한 믿음의 실천 방식에서 서로 강조하는 방식이 다를지라도, “모든 문화적 낙관주의나 비관주의에 대항하여 하나님의 무조건적 구원의 뜻이 전파되어야 한다”고 동의한다(*A Common Calling*, p. 54). 주목되는 것은 “과거의 논쟁을 초월하면서 루터교회와 개혁신교회가

공동 예정론에 대해 증언하는 공동언어가 신앙적 저서와 우리 교단들 내의 공식/비공식적 선언문 속에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A Common Calling*, page 55). 두 전통은 교리적 균일성을 고집하기 보다는, 자신의 전통이 논쟁에서 생겨났다는 것, 현 신학적/교회적 정체성은 그러한 논쟁에서 형성되었다는 점을 기꺼이 인정한다. 교회를 분열시켰던 그러한 분야들에 대한 근본적 교리합의 이상의 것을 요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체성을 향해 나아가는 공동의 여정을 함께 나누어 온 그러한 기독교인들의 신앙을 부인하는 것과 같을 것이다. 만일 우리가 거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사를 우리의 분열에 의해, 세상에 공동 증거하는 일을 박탈하게 된다면 더 한층 큰 비극이 일어날 것이다.

완전 교류에 대한 구속력 있는 효과적인 결단
(The Binding and Effective
Commitment to Full Communion)

공동소명에 입각하여 최고수준의 *합의약정서*를 공식 채택함으로써 교회들은 강력한 상호 결단을 한다고 인정한다. 그들은 상호 공약과 약속을 하고 있다. 동 교회들은 양방적인 전면 결단이 진지한 의도와 각성과 헌신을 포함한다는 것을 인식한다. 그들은 단순한 공식 결의 이상의 훨씬 더 큰 범위로 결속하고 있다; 그들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은사와 변화와의 관계에 있다.

동 교회들은 이러한 의도의 선언이 자신들의 자아 이해, 생활/활동 방식, 자신들의 교회구조, 그리고 전체 교회적 특성에까지 도전할 수 있음을 알고 있다. 동 교회들은 새로운 관계의 중심에서 완전 교류에 들어가기 위해, 스스로의 역량에 관한 타당한 우려를 억누르기로 스스로 결단한다.

동 교회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들이 공동소명에 전적으로 결단한다는 것, 신앙과 교리에 관해 앞서 기술한 상호 확인을 공약하며 변함없이 공약할 수 있다는 것, 공동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상호 확인과 권고를 실천하고 받아들이기로 결단한다고 선언한다. *합의약정서*는 “가시적 일치 목적이나, 교회일치의 관심과 세계 투쟁의 참여에 관심을 연합하는 단일 에큐메니컬 운동을 원점으로 돌리는 것은 이제 불가능하다”고 에큐메니컬 확신에 응답하고 있다(“완전한 코이노니아로 가는 과정: 신앙과 직제에 관한 제5차 세계대회의 메시지”, 1983). 그리고 성 바울이 우리 모두에게 상기한 대로,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고 그는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살전5:24).²

² 미국복음주의 루터교회:

미국복음주의 루터교회(ELCA)가 이들 교단들(미국장로교, 미국개혁교회, 그리스도연합교회)과 완전교류를 맺기 위해서는, 최고 입법기관인 1997년 교단 총회(Churchwide Assembly)에서 2/3 찬성표가 요구될 것이다. 이어서 헌법과 정관에서도 완전교류를 맺기로 결정한 총회의 구속력 있는 결의안에 순응되도록 적절하게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복음주의 루터교회 (ELCA) 헌법과 정관은 비루터교회들과 완전교류를 맺는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는다.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가장 근접한 유사 추론(analogy)은 ELCA의 헌법이나 정관이 수정에 있다고 본다. 동 헌법은 그러한 수정 절차를 제공한다(제22장). 둘 다의 경우에서 출석/투표권 회원의 2/3 표결이 요구되었다.

미국장로교(PCUSA):

미국장로교의 총회에서 통과됨과 동시에 완전교류가 선언되고, 그 영향은 장로교 *규례서*와 본 *합의약정서*에 일치되게 전 교단에 파급될 것이다. 이는 총회의 과반수 투표와 노회들 안에서 과반수 투표, 그리고 노회들의 과반수 투표를 의미한다. 미국장로교는 헌법과 정치, 제직들과 재정 및 행정규칙을 가진 조직으로서의 삶을 규율 한다. 이들은 선교임무의 도구이지, 그 자체로서 목적은 아니다.

다양한 직제들이 복음을 섬기나, 어느 직제도 배타적인 타당성을 주장할 수 없다. 장로교 정치체제는 모든 목회 회원들의 책임을 인정하고, 교단 내의 모든 개체교회들과 유기적 관계를 유지한다. 동 교단은 교회적/세속적 권력 야심에 의한 착취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고자 한다. 각 교회 직제는 그것을 화해 선교를 위해 더욱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런 개혁에 대해 반드시 개방적이어야 한다(“1967년도 신앙고백,” *신앙고백서*, p.40).

미국장로교는 장로와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의 노회들로 구성된 대표제에 의해 치리된다. 이러한 치리기관들을 당회, 노회, 대회, 그리고 총회라고 부른다(*규례서*, G-9.0100).

교회의 모든 치리기관들은 교회의 본질에 의해 연합되며, 이 헌법이 부여하는 책임과 권리와 권한을 같이 공유한다.

치리기관들은 개별적이고 독립적이거나, 어느 한 기관의 행동은 전체교회 행동을 대표한다는 점에서 상호 연관되어 있다. 각 치리회의 관할권은 헌법에 명시된 조항에 의해 제한되며, 각 노회의 행동은 차상급 노회의 검토에 종속된다.

미국개혁교회:

미국개혁교회(RCA)는 General Synod에서 통과되면서, 완전교류를 선포하며, 그 효과는 전체 교회적으로 파급될 것이다. 즉 기독교일치 전권위원회가 *교회규례서(Book of Church Order)*에서 부여한 책임과 일치되게, 그리고 *함의약정서*에 기술된 대로 완전교류가 의도될 수 있게 되도록 일을 추진하고 감독하는 절차를 진행한다.

교회일치 전권위원회는 1997년 완전교류에 대한 표결을 앞두고 General Synod와 교단을 자문해왔다. 동 전권위원회는 *함의약정서*와 관련 제안들을 모두/어느 것이나 General Synod에 제시하고, 미국개혁교회가 미국복음주의 루터교회와 미국장로교 및 그리스도연합교회와 완전교류를 한다고 선언할 수 있게 효력이 발생하도록 추구할 것이다.

미국개혁교회(RCA) 헌법은 에큐메니컬 관계에 대한 책임을 General Synod에 부여한다(교회규례서, 제1장, 5부, 2조, 5항). 에큐메니컬 소명에 충실하기 위해 General Synod는 동 교단의 기독교 일치 전권위원회에게 타기독교 교단의 최고치리회나 총회와 통신관계 및 협력관계 관련 결정을,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관한 모든 사안들을 주제로” 교단간의 대화에 참여하는 결정을 주도하고 감독하는 권한을 부여한다.

RCA 헌법은 “현재 진행 중인 에큐메니컬 개발국면을 교단에 알리고, 에큐메니컬 참여와 관계에 관해 교회를 자문하는” 책임을 기독교일치 전권위원회에 부여하고 있다(*교회규례서*, 3장 1부 5조 3항).

General Synod에 의해 권한을 받은 기독교일치 전권위원회는 1962년 이래 지금까지 RCA에 대화와 대담 상대자들을 지정하였다. 동 위원회는 모든 보고를 접수했고, 결정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General Synod에 교회의 투표와 시행 제안을 제시했다.

그리스도연합교회:

그리스도연합교회(UCC)는 1997년 General Synod의 투표에 의해, 미국복음주의루터교회, 미국장로교, 그리고 미국개혁교회와 완전교류를 하는 제안에 결의를 할 것이다. 이 투표는 General Synod에 대해 법적 구속력이 있으며, 지방 교회들과 협회들 및 대회들에 의해 수락되고, 그리스도연합교회 헌법 제14, 15, 16항에 개요된 계약정치체제(conventantal polity)와 일치되게 시행한다.

UCC는 “지방교회, 협회, 대회, 그리고 General Synod”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스도연합교회의 헌법과 정관은 에큐메니컬 삶의 책임을 UCC의 총무와 총회장과 더불어 회장 General Synod에 맡기고 있다. 동 헌법 제7조는 General Synod에 특정 권한을 부여한다. 이 권한들에 다음이 포함된다:

- UCC와 에큐메니컬 조직들, 세계 고백단체 조직들, 기타 초교파 조직들과 관계를 결정한다(7조, 45h).
- 타 교단들과 대화를 장려하고, 적절하다면 그들과 공식연합을 지향하면서 그들과 교섭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자문한다(VII, 45i).

UCC 정치체제에서 General Synod의 권한은 헌법의 구절을 사용하자면, 절대로 “대회나 협회나, 또는

지방교회의 자치권을 침범”하지 않는다. 지방교회 자치권은 “고유한 권한이며, 그 자체 결정에 의해서만 수정이 가능하다(IV, 15).” 그러나, 자치권에 대해 “크리스천의 상호 배려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의 맥락에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IV, 14). 이러한 그리스도론적이고 전통적인 자치권의 이해는 교회 자치권에 관한 논의에 이어 즉각 나오는 헌법 구절에 명백하게 표현되어 있다. UCC의 지방교회는 성도의 교제 안에서, 자체 교회와 사역과 확장에 관해 하나님께 받은 책임이 있듯이, 성도의 교제 안에서 지방교회 복지와 필요와 포부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받은 책임이 있다. 크리스천의 상호배려에서, 그리고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에서, 한 교회와 많은 교회는 공동의 크리스천 체험과 책임을 분담한다(IV, 14). General Synod나 대회 또는 협회에 의해서, 또는 General Synod나 대회 또는 협회로부터 나오는 결정이나 조언에 대해 각 지방교회는 최고의 경의로서 대한다(IV, 16).

부록 D

에큐메니컬 일치 성명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들의 가시적 표시

표준 에큐메니컬 성명서
제211차 General Assembly (1999) 승인
제212차 General Assembly (2000) 공표
(G-5.0203)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들의 가시적 표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들’의 회원이 되는것은 참여 교회들이 다음과 같은 가시적 표시들을 통해 서로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한다:

1.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인 교회에 대한 진정한 표현으로써 상호 인정. 구체적으로 말하면, 참여 교회들이 상대방 교회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로 공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 말씀과 성령으로 창조하시고 구속하시고 성결케 하시는 한 분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 구세주시고 육신을 입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주님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
- 신앙의 궁극적인 표준이자 규칙이 될뿐 아니라,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것으로서 전통에 대해 증언하고 전통이 그것에 대해 증언하는 성경에 대한 성실성;
-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제정된 두 성례전인 세례와 주님의 만찬에 성실히 참여하려는 결단;
- 하나님의 복음전도 및 예언자적 선교와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의 통치에 대한 결단;
- 성령이 교회에 명백하게 부여한 목회사역을 감사하게 받아들임.

2. 하나의 세례 안에서 회원들의 상호 인정. 이는 또한 모든 신자들이 공동의 사제직을 함께 나누며 그로부터 하나님이 안수 받을 교인들을 부르신다는 목회직의 인정을 함축하고 있다.

3. 안수 사역의 상호 인정. 구체적으로 말하면, 참여 교회들이 서로의 안수 목회직이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 은사의 도구로서 주어진 것이며, 이러한 목회직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실하고자 하며, 성령의 내적인 부름과 더불어 그의 몸된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의 위임을 받았다고 공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한 인정은 2007년까지 상호 화해사역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써 나타난다(‘교회연합협의회 제18차 총회 보고서’의 제5항 규정에 기술됨).

4. 각 교회가 사도신경과 니케아신경에 표현되어 있는 대로, 성경과 전통에 대한 사도적인 믿음을 확인하고, 자신들의 삶과 선교에서 사도적인 신앙의 증거를 하고 추구한다고 상호 인정.

5. 의도적이고 규칙적으로 성만찬을 축하 하는 규정. 이것은 성례전이 교회 삶의 중심에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주님의 만찬을 함께 축하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성을 표시한다. 기독교인들이 그들의 모든 다양성 안에서 주님의 만찬의 한 자리에 모일 때, 그들이 그리스도와 교류하고 있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교류하고 있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기독교인들이 하나의 성례전에 함께 참여할 수 없거나 참여하고 싶지 않을 때, 그들은 서로 반대한다는 입장임을 증언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과 인간 공동체의 깨어짐을 가시적으로 나타낸다.

6. 정규적이고 의도적 차원에서 그리스도 선교, 특히 인종주의 타파에 함께 간여. 교회는 예배, 복음선포, 전도, 교육을 통해,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 평화와 사랑을 구체화시키는 행동으로서 그리스도 선교에 참여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는 교회들’의 결단은 이 모든 것을 포함하며, 이렇게 함으로써 마음과 정신이 변화될 수 있다. 그러나, 참여 교회들은 미국이 사회와 교회 자체 내에서 삶을 왜곡시키는 백인 특권제도에 도전함으로써 ‘인종주의 철폐’에 관한 강력한 부름(‘교회연합협의회 제18차 총회 보고서’, 제 6항에 그 이유 개요)을 또한 인정한다.

7. **교회 안에서 총체적 일치를 증진하기로 의도하고, 인종, 나이, 성별, 장애형태, 성적지향, 계급을 바탕으로 한 모든 소외와 배타적 행위에 반대하기로 의도하는 결단.**

8. **현재 진행 중인 신학적 대담의 절차.** 그러한 대담은 구체적으로 다음을 시도한다:

- (1) 인종주의 반대 입장을 보다 설득력 있게 하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들’의 인종차별에 대한 인식을 높인다;
- (2) 사도적 신앙에 대한 공유 증거를 강화하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들’에 의해 확인된 신학적 논점을 명확하게 한다;
- (3)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들’에 의한 안수 목회직에 대해 상호 화해의 기초를 마련한다.

9. **협약의 의사 결정을 위한 적절한 책임체제와 적절한 방안.** 새로운 관계의 표시가 효력을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들간에 상호책임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항들이 마련되어야 하지만, 이러한 취지로 개발된 구조는 유연성이 있어야 하고, 상황 적응성이 있어야 한다 (교회연합협의회 제18차 보고서의 제 9항에 기술). 현재 진행 중인 그러한 조직 구성과는 별도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들’은 중대한 이슈를 제기하기 위해서나 공동 관심사에 대해 함께 증거하기 위해, 수시로 회의를 회집할 수 있다.

이러한 가시적 표시에 의해 표현된 관계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라고 이해하고 있지만, 이는 조직의 통합이 아니며, 교단들 간의 다양성 안에서의 연합이다. 관계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이들 교회들의 삶은 전에 없었던 가시적인 방식으로 서로 얽히게 될 것이다. 관계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들 관계는 우호적인 공존이나 협약의 관계가 아닌, 그리스도 사랑을 능동적으로 구현하고 그 사랑으로 서로 연결되는 구속력 있는 공동체 관계가 될 것이다.

부록 1

공식 문서

연합교회협의회 제18차 총회 보고서

1. 서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낡은 것은 모두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나니,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의 사역을 주셨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하나님 자신과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들의 죄를 세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고린도 후서 5:17-20)

나는 결코 피곤치 않네.

나는 출발한 곳으로부터 너무 멀리 왔다네.

그 어느 누구도 이 길이 쉬우리라 얘기해주지 않았네.

주님이 나를 버려 두기 위해 이렇게까지 멀리 데려왔으리라 믿지 않네.

(“나는 결코 피곤치 않네.” 아프리카계 미국인 복음성가, 가수 커티스 브르웰, 1978년, 세가스 음악회사 발행, 허가를 받고 사용함).

1999년 1월 20-24일 세인트 루이스에서 교회연합협의회(COCU) 제18차 총회에 모인 우리 교회연합협의회 회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적인 연합으로 가는 길에 대해 항상 확신이 있었거나 우리 여정의 속도를 항상 견뎌왔던 것이 아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채워지지 않은 도전들과 놓쳤던 기회들의 짐을 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 드리기는, 그 여정을 외로히 가지 않으며, 우리가 여정을 함께 하는 중에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자라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또 성경에서 얻은 자신감을 가지고 이 길을 걷습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이며, 세례도 하나이고, 하나님 아버지도 한 분이시며,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도다” (에베소서 4:6). 우리가 나타내고자 하는 연합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해 증거하고 함께 공의를 행하기 바라면서, 우리가 받은 이 선물에 대한 응답으로써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일치를 주셨으나, 안타깝게도 우리 모두는 사회의 인종적인 불공평에 참여하였으며, 그 결과 우리 자신들을 서로 갈라지게 해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백인 특권을 영속화시키는 사회제도 안에서 우리의 많은 교회들이 자신들의 편안에만 안주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것은 서로에 대한 사랑이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었음을 표시합니다. 우리는 또 신학적 견해 차이가 교회 분열을 초래하도록 허용하였습니다. 우리가 저질은 이러한 죄를 하나님과 우리 형제 자매들 앞에서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 선언서에 들어있는 권고안들이 우리 복음 사명에 충실함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치된다 할지라도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음을 압니다. 우리는 보다 깊게 인정하고 화해하기 위해 함께 일하면서, 서로를 향해 보다 큰 인내와 관용을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우리 형제 자매들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 자신의 이익을 버리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서로간에 존중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또한, 고통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정의를 베풀어야 할 책임이 있고, 우리 주님의 복음을 선포할 능력이 있으며 이를 저지하는 것들은 과감히 버려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보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다른 사람들을 우리 자신처럼 여기는 어려운 작업을 반드시 해내야 합니다.

앞서 언급한 아프리카 아메리칸 복음 성가의 가사는 우리가 불확실한 미지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힘이 함께 계신다는 심오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연합협의회 우리 동역자들은 불확실성과 망설임에 대해, 심지어 절망에 대해서까지도 많이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없는 사랑으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홀로 투쟁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또한 압니다.

II. 배경

1988년 교회연합협의회(COCU) 제17차 총회는 계약교류 교회를 구성하는 계획서로서 *계약 교류의 교회들: 연합 그리스도 교회* 문서를 승인했으며, 이를 9개 회원 교회들에게 권고하고 다음의 3개 공식 결의를 취하도록 했다:

1. 다른 참여 교회들과 계약교류에 들어가는 확정적인 합의서로서, 이를 가능케하는 충분한 결의를 포함하여, 이 문서를 승인한다.

2. COCU의 회원 교회들, 그리고 이 합의를 유사한 방식으로 승인하는 여타 교회들과 새로운 관계를 맺고자 하는 기꺼운 용의를 선언한다.

3. 목회사역의 화해와 이 문서에 명시된 계약교류 준비에 필요한 절차들 및 과정들을 스스로 확인하는 작업을 시작한다.

“계약 과정”을 설계함에 있어서 제 17차 총회는, “참여 교회들이 두 문서, 곧 *COCU 합의서와 계약 교류의 교회들*에 들어있는 협의 제안에 대해 숙고하고 결의를 하고 나서, 교회연합협의회가 권고안에 대한 교회들의 결의를 신중히 심의하고, 그에 따라 그 다음 단계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것이 세인트 루이스에서 모임을 가졌던 COCU 제18차 총회가 한 일이었고, 총회의 초점이었다. 우리는 전체 아홉(9) 회원 교회들로부터 보고서를 접수했으며, 전체 회원 교단들 가운데 일곱(7) 회원 교회들(African Methodist Episcopal Church, African Methodist Episcopal Zion Church, Christian Church (Disciples of Christ), Christian Methodist Episcopal Church, International Council of Community Churches, United Church of Christ, United Methodist Church)만이 계약관계 제안에 대해 공식 결의를 취했고, 그리고 계약관계 절차에 더욱 고려할 필요가 있는 여러 논점과 관심사들을 확인하는 일을 하였다.

미국장로교는 계약관계로 들어가는 제안을 총회 수준에서 승인하였다. *미국장로교 헌법*에서 필요한 수정을 실행하고자 추구하던 과정에서, 노회들은 감독제와 계약 관계협의회들 및 치리회 장로 역할에 관한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감독사역에 관련하여 요구되는 수정안을 부결시켰다.

감독교회에서 제18차 총회로 보낸 장문의 보고서는, 감독교회가 계약 교류에 들어갈 “준비가 안된” 상태를 선언하고, *COCU 합의서*와 두 문서에 대해 수많은 의구심을 표명했다고 선언한 1994년 연차총회의 결의에 대해 자세하게 해명하였다. 이 보고서는 또한 COCU 절차에 앞으로 감독교회의 참여를 알리는 5개 지침 원리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배경을 갖고서, 우리는 세인트 루이스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분별하고자 노력했다. 교회들의 결의와, 기도하는 가운데 이루어진 우리 대화의 신중한 고찰을 통해 몇가지 광범위한 확인들을 신속히 하기에 이르렀다:

1. 현재 가능한 교류의 모든 표시들에 대해 가시적 표명을 함으로써, 가까운 장래에 협의회 교회들 사이에서 새로운 관계가 이룩되기 갈망한다;

2. 그 새로운 관계 내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함께 하는 보다 확실한 인식을 향해 나아가길 갈망한다;

3. 우리가 함께 사는 삶의 중심 표시로서 인종적 정의에 대한 결단하길 갈망한다.

다음의 권고사항이 우리 교회들의 결의, 본 총회의 노력과, 그리고 이러한 근본적 확인에서 나오기를 바란다.

III. 권고 사항

교회연합협의회 제18차 총회는 참여 교회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즉, 참여 교회들이 공식결의에 의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들’로 불리울 새로운 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동의하고, 2002년에 있을 ‘크리스찬 일치를 위한 기도 주간’ 중에 공식 선언과 예전을 통해 이 새로운 관계를 함께 개시한다.¹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교회의 삶에 필수적인 수많은 것들에 대한 일치를 가시적으로 표현할 것이며(제 4항에 개요됨), 공동체 회원들까지도 소속 교회와 타 교회들과 더불어 이 일치 안에서 교회가 성장하기를 추구할 것이다.

제18차 총회는 COCU에 참여하는 모든 교회들이 2002년에 새로운 관계에 들어갈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소망한다. 그러나 만일 그렇게 할 수 없는 교회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이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신 그러한 일치가 전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지속적인 관계의 동역자 교회로서 참여할 수 있게 초대될 것이며(제5항 참조), 다음과 같은 관계의 표시들을 가능한 한 많이 표현할 수 있도록 격려받을 것이다. 그외 다른 교단들도 이러한 기준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는 교회들과 관련될 것들을 갖도록 초대될 것이다.

IV.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들의 가시적 표시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들’이 된다는 것은 참여 교회들이 다음과 같은 가시적 표시들을 통해 서로 맺는 관계를 표현한다:

4.1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인 교회에 대한 진정한 표현으로써 상호 인정.* 구체적으로 말하면, 참여 교회들이 상대방 교회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로 공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 말씀과 성령으로 창조하시고 구속하시고 성결케 하시는 한 분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 구세주이시고 육신을 입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주님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
- 신앙의 궁극적인 표준이자 규칙이 될 뿐아니라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것으로서, 전통에 대해 증언하고 전통이 그것에 대한 증언하는 성경에 대한 성실성;
-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제정된 두 성례전인 세례와 주님의 만찬에 성실히 참여하려는 결단;
- 하나님의 복음전도 및 예언자적 선교와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의 통치에 대한 결단;
- 성령이 교회에 명백하게 부여한 목회사역을 감사하게 받아들임.

4.2 *하나의 세례 안에서 회원들의 상호 인정.* 이는 또한 모든 신자들이 공동 사제직을 함께 나누며 그로부터 하나님이 안수 받을 교인들을 부르신다는 목회직의 인정을 함축하고 있다.

4.3 *안수 사역의 상호 인정.* 구체적으로 말하면, 참여 교회들이 서로의 안수 목회직이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 은사의 도구로서 주어진 것이며, 이러한 목회직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실하고자 하며, 성령의 내적인 부름과 더불어 그의 몸된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의 위임을 받았다고 공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한 인정은 2007년까지 상호 화해사역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써 나타난다(제5항에 기술).

4.4 *각 교회가 사도신경과 니케아신경에 표현되어 있는 대로, 성경과 전통에 대한 사도적인 믿음을 확인하고, 자신들의 삶과 선교에서 사도적인 신앙의 증거를 하고 추구한다고 상호 인정.*

4.5 *의도적이고 규칙적으로 성만찬을 축하 하는 조항.* 이것은 성례전이 교회 삶의 중심에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주님의 만찬을 함께 축하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를 표시한다. 기독교인들이 그들의 모든 다양성 안에서 주님의 만찬의 한 자리에 모일 때, 이는 그들이 그리스도와 교류하고 있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교류하고 있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기독교인들이 하나의 성례전에 함께 참여할 수 없거나 참여하고 싶지 않을 때, 그들이 서로 반대 한다는 입장임을 증언을 하며, 그리스도 몸과 인간 공동체의 깨어짐을 가시적으로 나타낸다.

4.6 *정규적이고 의도적 차원에서 그리스도 선교, 특히 인종주의 타파에 함께 간여.* 교회는 예배, 복음선포, 전도, 교육을 통해,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 평화와 사랑을 구체화시키는 행동으로서 그리스도 선교에 참여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들’의 결단은 이 모든 것을 포함하며, 이렇게 함으로써 마음과 정신이 변화될 수 있다. 그러나, 참여 교회들은 미국이 사회와 교회 자체 내에서 삶을 왜곡시키는 백인 특권제도에 도전함으로써 ‘인종주의 철폐’에 관한 강력한 부름(제 6항에 그 이유 개요)을 또한 인정한다.

4.7 *교회 안에서 총체적 일치를 증진하기로 의도하고, 인종, 나이, 성별, 장애형태, 성적지향, 계급을 바탕으로 한 모든 소외와 배타적 행위에 반대하기로 의도하는 결단.*

4.8 *현재 진행중인 신학적 대답의 절차.* 그러한 대답은 구체적으로 다음을 시도한다:

1. 인종주의 반대 입장을 보다 설득력 있게 하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들’의 인종차별에 대한 인식을 높인다;
2. 사도적 신앙에 대한 공유 증거를 강화하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들’에 의해 확인된 신학적 논점을 명확하게 한다;
3.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들’에 의한 안수 목회직에 대해 상호 화해의 기초를 마련한다.

4.9 *협의와 의사 결정을 위한 적절한 책임체제와 적절한 방안.*

새로운 관계의 표시가 효력을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들 간에 상호책임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항들이 마련되어야 하지만, 이러한 취지로 개발된 구조는 유연성이 있어야 하고, 상황 적응성이 있어야 한다(제 9항에 기술). 현재 진행 중인 그러한 조직 구성과 별도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들’은 중대한 이슈를 제기하기 위해서나 공동 관심사에 대해 함께 증거하기 위해, 수시로 회의를 회집할 수 있다.

이러한 가시적 표시들에 의해 표현된 관계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라고 이해하고 있지만, 이는 조직적 통합이 아니며 교단들 간의 다양성 안에서의 연합이다. 관계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이들 교회들의 삶은 전에 없었던 가시적인 방식으로 서로 얽히게 될 것이다. 관계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들 관계는 우호적인 공존이나 협의의 관계가 아닌, 그리스도 사랑을 능동적으로 구현하고 그 사랑으로 서로 연결되는 구속력 있는 공동체 관계가 될 것이다.

V. 우리가 추구하는 보다 충분한 일치 표시

새로운 차원의 가시적인 결단으로 들어가는 우리의 상호관계가 아직은 충분히 완성되지 않았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들’로서 공유하는 것 보다 더욱 깊이 있는 은사의 공유로 특정을 이룬 함께 사는 삶의 강렬함을 앞으로 추구해 갈 것이다. 우리는 각 참여 교회들의 안수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관련되는 하나의 사역이 될 수 있게 하는—이미 시작 되었으나 아직 그것의 완성을 이루지 못한 화합의 절차를 추구하고 있다. 우리는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이 절차를 완성시키는 방식들을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했음을 인정한다. 감독 받는 목회는 특별한 관심을 필요로 하는데, 그렇게 함으로 개별적, 집합적 감독 받는 교회들과 역사적 감독(bishop) 계승을 하는 교회들이 보편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일치의 방편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한 목적을 촉진하기 위해, 본 총회는 *COCU 내의 아홉(9)개 회원교회 대표자 회의를 가까운 장래에 개최할 것과 목회의 화합의 의미를 명확하게 할 것을 동 집행위원회에게 지시한다.* 그러한 의미의 명확성은 교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들’로서 출범하려고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들’ 안에서 함께 사는 삶에서 이러한 화합의 논점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식이 드러날 것을 희망한다. 전적인 목회의 화합은 남은 과제의 해결과 더불어, 2007년 ‘크리스찬 일치를 위한 기도 주간’ 시기까지 달성하고 선포하는 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이다.

우리는 확장일로에 있는 우리 서클에 미국개혁신교회와 미국 복음주의루터교회가 포함되리라는 희망을 품어보는데 이들 교회들은 공식 자문 참여자들이기도 한다. 우리는 보다 넓은 서클 안에서 대화를 추구하는데, 이들은 로마 카톨릭교회, 정교회들, 오순절교회들, 성결교회, 침례교회들, 그리고 기타 역사적 흑인교회들과 토의하는 일을 포함한다.

한층 더 확대된 서클에서, 우리는 선의와 동정적 주장을 하는 모든 사람들 및 운동권과 협력하는 것 처럼 유대교와 회회교, 기타 현존하는 종교들과의 대화를 추구한다. 우리는 많은 핵심 서클들이

다양한 차원에서 우리와 합의하고 제휴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음을 안다. 우리는 인류의 일치를 위한 하나님의 뜻의 징표와 방편들을 추구하고, 우리는 정의와 평화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현된 그 화해의 표현으로서 창조 질서의 지속성을 함께 추구하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유에 편재 하시며, 더 이상 인간 손으로 신전을 지을 필요가 없는 시기가 중국에는 올 것이라고 고백하는 가운데, 전인류 가족이 온전하게 화해하기를 갈망한다.

VI.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들의 특징으로서 제도적 백인 특권제도 철폐 투쟁 서약

인종차별의 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들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분열적인 이슈이다. 본 총회가 이 새로운 관계를 규정짓는 주요 특징을 인종정의를 위한 투쟁이라고 말하는데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백인 특권에 의해 대표되는 자만죄의 지속적 실상은 그들의 힘과 편견에 기초하고 있다. 만일 유럽계 미국인들이 제도적 백인 특권에 의해 야기된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평등에 대한 장애의 철폐 투쟁에 능동적인 참여를 꺼리고 자신들이 누려온 특권의 일부를 기꺼이 포기하기를 원치 않는다면, 아프리카계 미국인 교회들과 회중들과 교인들은 유럽계 미국인 교회들과 회중들과 교인들의 상대자로서 일치의 부르짖음에 진실성이 있다고 완전히 믿기가 힘들 것이다.

둘째, 만일 이 공동체의 백인 교인들이 부당한 제도에서 취득한 부당한 이득을 비판없이 받아들임으로써 흑인 교인들에게 충만한 삶을 부인하는 부당한 사회질서에 침묵의 공범자로 남아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들’ 안에 참된 기독교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없다. 제도적 백인 특권은 정의에 대한 복음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최종적인 분석에 따라서, 우리 안에서 이 악의 세력이 도전받지 않고 존재하는 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들’ 안에서 참된 공동체가 이룩될 수 없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들’ 안에서 우리가 장려해야 할 것은 단순한 교리적 기독교 이념이 아니라, 실존적 신앙이어야 한다. 그러한 신앙은 생동하는 상호 책임의 표시들을 요구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러한 책임의 표시들은 경건한 선언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그 표시들은 백인 특권 철폐에 대한 명시적 목적을 가진 구체적인 결의여야 한다. *특별히 언급하자면, 우리는 교회들이 교회연합협의회 제18차 본회의에 의해 승인된 “크리스찬 결단과 인종주의 타파 결의 선언”에서 제시한 행동을 하도록 권고한다. 우리는 또한, 미국의 제도적 백인특권의 작용과 파급효과를 공동 후원으로 분석 연구한 안을 채택하도록 권고한다.*

보상적 정의는 인종불평등 문제에서 고려될 수 있는 또 하나의 접근 방법이다. 우세한 백인 교회들은 과거 수세기 동안의 노예 노동 또는 다른 형태의 인종에 기반을 둔 경제착취의 직접적인 결과로서 축적된 부를 바탕으로 형성된 자본구조의 수혜자들이다. 그 결과로 인한 권리 침해는 보상적 정의를 요구하는데 여기에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공동체와 기관들을 강화시켜서 교회와 사회에 지속적으로 공헌하도록 자산을 공유하는 것을 포함한다. *따라서 우리는, 불평등 관련 사항들을 조사하고 향후 결의를 건의하고 이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들’의 회원들이 함께 모여 미래의 결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회들이 각자 교단 내에서 인종적 정의목회의 책임자들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도록 권장한다.*

하나의 참된 공동체로 되기 위해 정진하는 교회들의 한 그룹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들’은 반드시 아프리카계 미국인에게 가하는 억압의 지속적인 파급 효과를 다루어야 한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직면해 있는 가장 명확한 악의 조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종 분석으로서 우리의 관심사는 반드시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당면하는 억압과 사회적 소외를 근절하는 것이어야 한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들’이 기독교 공동체라고 선언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단순히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선언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듯 우리가 우리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능동적인 노력을 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나타내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삶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삶을 보다 풍요하게 하는 구체적이고 희생적인 결의에 참여함으로써만 가능하다.

VII. 지역 및 지방 생활을 위한 관련 사항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들’ 안에서 우리가 일체감으로 사는 것은 교단 차원과 특히 개체 교회 차원에서 주도력과 창조성을 발휘하는 것을 요구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체감을 가시화시키는 성공 여부는, 그러한 주도력이 우리가 교회를 이룩하려는 방식의 일부가 되느냐에 달려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들’ 안에서 우리는 우리가 교회를 구상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선교를 하는 방식으로, 우리 동역자들을 포함시키는 훈련을 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 모든 참여 교회들에 대한 역사와 신학과 정치체제를 우리의 신학교에서 가르치도록 하고, 목회후보생들이 타 교단들에 대한 지식을 보여주도록 한다;
- 한 개체교회의 선교나 사법행정조직에 관해 주요 결정을 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들’ 안에 있지 않은 다른 개체교회들이나 사법행정조직과 대화를 포함한다;
- 목회자들과 평신도들이 말씀과 성례전의 선포와 연구에서 보다 쉽게 공유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공통의 성구집이 사용되도록 한다;
- 각 지역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들’의 개체교회들은 인종주의 타파에 대한 공동 참여를 결정하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들’의 출범과 함께 모이도록 한다;
- 정기적으로 성례전을 함께 나누는 절차가 각지역에서 일어나게 한다;
- 안수식이 거행될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들’에 소속한 사람들의 출석과 참여가 있게 한다;
- 그 교회들의 중고등부와 청년부가 에큐메니컬 구성에 참여할 것과, 에큐메니컬 단체의 참여와 공동 프로젝트에서 에큐메니컬 리더쉽을 제공하도록 권한을 갖게 제안한다.

개체교회들과 사법행정조직들은 우리의 단결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끊임 없는 돌봄과 창조성을 장려할 것이다:

- 정기적인 합동 선교와 프로젝트;
- 합동 예배, 설교자 교환, 세례식과 취임식 및 의사결정을 하는 핵심 그룹에 교회 대표자들의 출석;
- 교회와 사회의 인종주의에 반대하는 우리의 합동 투쟁에 대한 빈번한 평가;
- 전체 참여 교회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들’에 대하여 가르치는 교육 프로그램;
- 동역 교회 회중의 삶에 대표 회원들의 참여.

본 총회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들’을 출범하면서 각 개체교회들이 어떤 창조적인 활동을 지역 단위로 실시하도록 강조하는 뉴스레터의 제공을 집행위원회에 요청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들’이 제4항에 열거된 가시적 표시들을 실천하기 바라는 많은 연방교회, 연합교회, 유니온교회 및 협력 목회회중(에큐메니컬 협력목회)의 증언들을 듣게 되리라고 희망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들’에게 우리가 헌신한다고 해서 타 교단들과의 합동목회를 배제한다는 의미는 절대 아니다. 그러나, 회원 교회들은 회원들 서로 간에 삶과 선교활동을 함께 하는 특별한 부름을 받은 것을 확실하게 인정한다.

VIII. 시 행

교회 연합협의회 회원교회들은 각자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방식으로 이 보고서에 들어있는 권고안들에 대해 응답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리는 여덟(8)개 참여 교회들이 제4항에 열거된 “가시적 표시들”의 대부분에 대해 이미 공식적으로 승인했음을 인지한다.

새로운 관계가 공식 출범하도록 하기 위해, 총회는 교회연합협의회의 집행위원회에게 다음과 같이 지시한다.

1. 모든 참여 교회들을 대표하는 대표자 회의를 개최하여, (a) 권고안을 수용하는 계획서를 공

유하고, (b)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들’의 출범을 위해 전국적, 지방적, 지역적 단위로 함께 준비하고, (c) 시행을 더욱 촉진시킬 책임자들을 임명한다.

2. 2002년 1월에 출범할 수 있도록 적절한 준비에 필요한 자금 제공을 교회들에게 요청한다.

3. 새로운 관계 출범을 축하하는 적절한 예식을 위한 조항을 작성한다.

IX. 상호 권한과 책임 체제

교회들에 의해 수립된 새로운 관계가 예배와 증거와 봉사의 새로운 공동생활로 교회들을 초대한다. 이 공동 생활은 상호 권한과 책임의 체제에 의해서 전국적, 지방적, 지역적 표현들에 의해 운영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것들은 교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가시적 방식들을 장려하고 조정할 것이다. 교회들이 공동 생활의 새로운 표현을 하게 되면서, 그것들은 공동 의사 결정과 상호 노력을 용이하게 할 것이다. 우리 교회들은 미래를 구상하면서, 우리는 청소년들과 젊은이들이 교회안의 리더쉽과 의사 결정 체제에서 그들의 위치를 확보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는 우리의 비전을 수행해 가도록 힘을 결단을 해야한다.

우리는 다음의 원칙들이 이러한 새로운 체계를 형성하는 지침이 될 것으로 이해한다:

다양성 상호권한과 책임 체제는 지역 교회와 문화적 상황에 따라서 지역 별로 다를 수 있다. 그 목표는 지역적 상황과 그 지역 교회들이 개입하고 있는 특정 과제들에 적절한 형태를 제공하는 것이다.

포괄성 그 체계는 공동생활을 함께 하는 교회들의 다양성과 풍부함이 반영된 체계여야 한다. 공동생활의 특정 지역과 표현에 있어서, 이러한 것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들’만이 아니라 광범위한 동역 교회들까지도 포함한다. 그 목표는 모든 교회들이 공동생활과 증거에서 상호 간에 책임을 지도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가시성 그 체계는 기독교인들과 교회들이 그들 사이에 새로운 관계가 사실상 존재한다고 인정하고 주장할 수 있는 체계여야 한다. 물론 교회에 관료 체제를 새로이 만드는 것이 교회에 도움을 주는 것은 아니다. 그 목표는 그들의 새로운 관계에 대해 충실하고 지속적인 표현을 가능하게 하는 충분한 방안을 제공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원칙들에 비추어, 이 새로운 관계에서 회원 교회들을 섬기는 최상의 체계가 분명히 정의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신속하게 시행전략대회를 회집할 것을 권고한다. 이 대회에는 집행 위원회와 회원 교단들의 핵심 지도자들을 포함할 것이다.

X. 보다 폭넓은 관계들

교회연합협의회는 그 초기부터, 폭넓은 에큐메니컬 운동의 틀 안에서 교회의 가시적 일치를 추구하고자 목표하고 있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들’은 조직 되면서부터, 연합된 교회들 및 연합하고 있는 교회들 사이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고 공표하고 있다. 동 조직은 그 연합의 경험을 통해 그리스도 교회의 본질과 세상에 대한 증거에 관해 이들 교회들과 함께 나누기를 희망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들’은 회원 교단들이 세계의 다양한 기독교 교단들과 맺고 있는 연결과, 회원 교단들이 지역, 지방, 전국 단위의 에큐메니컬 기관들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인정한다.

교회연합협의회는 양방 관계나 그 이상의 관계에서 공동생활의 표현을 함께 해온 여러 교회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African Methodist Episcopal, African Methodist Episcopal Zion, Christian Methodist Episcopal 교회들 간에 논의, United Methodist Church, the Christian Church (Disciples of Christ)-United Church of Christ Partnership 간에 논의들이 포함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들’은, 전체적으로 교회를 풍요케 하는 요소들로서, 이러한 지속적 관계를 환영하며 이런 관계를 통해 기독교 생활과 신앙의 특정 국면을 이해함으로 발생하는 성장을 환영한다.

일부 교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들’에 속하지 않은 비회원 교회들과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성공회와 미국 복음주의루터교회 사이에 제안된 협약, 그리고 그리스도연합교회와 미국장로교와 미국개혁교회와 미국 복음주의루터교회 사이의 완전교류 관계가 바로 그런 경우이다. 이들 교회들은 그들이 가져올 은사의 기대감으로 인해 환영 받는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일치를 보다 가시적으로 표현하고자 끊임없이 탐구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다고 자처한다. 우리는 보다 넓고 깊은 공동체로서 그 길을 걸어가기로 갈망한다. 미국 복음주의루터교회와 미국개혁교회가 우리 가운데 있는 일부 교회들과 이해와 공동생활에서 이룩한 특별한 성장을 인정하는 가운데, 우리는 그러한 교회들이 우리의 여정에 합류하도록 정식 초대장을 보내는 시기가 무르익은 것으로 생각하며, 집행위원회로 하여금 이를 신속하게 실행할 수 있는 방식을 심의하도록 제안한다.

우리의 가시적 일치 탐구에 대해 로마카톨릭교회가 헌신적으로 지원을 제공해준 데 대해 정식으로 사의를 표하며, 우리가 새로운 차원으로 공동생활을 탐구하는 가운데, 협조하고 서로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기회를 찾을 것으로 희망한다.

송 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들’로서 우리의 새로운 관계에 대해 희망과 환희를 기대하면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린다.

“아멘! “가로되 아멘! 축복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 요한계시록 7:12

부록 1에 대한 각주(註)

1. ‘기독교인 일치성을 위한 기도 주간’은 그러한 축하를 위해 상징적으로 적절한 시기이다. 특히 마틴 루터 킹 목사 생일이 전국 공휴일로서 이 주간에 거행된 이래로 더욱 그러하다. 지방과 지역적 축하행사는 지역적 맥락에 보다 적절할 경우, 추후 거행할 수도 있다.

부록 2

인종차별 타파를 위한 기독교인 결단과 결의 요구

다음은 제18차 교회연합협의회(COCU) 대표자들이 아홉(9)개 회원 교단들에게 결의를 촉구하는 내용이다. 공동 증거와 공동 봉사는 에큐메니컬 조직체를 나타내는 두 개의 표시이다. COCU 회원 교회들은 회원 교회들 내에서, 회원 교회들 간에, 모든 교회들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인종차별 타파운동의 필요에 대해 관심의 초점을 맞추면서, 특별히 이 결단의 삶을 살기로 선택하였다.

교회연합협의회는 교회의 일치가 창조와 구속에 표현되어 있는 하나님의 은사라는 것을 명백하게 한다. 이 일치는 교회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전 인류 공동체와 전 창조계를 위해서도 주어졌다. 이 것은 전 인류를 위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으로 내어주신 선물이다. 이러한 이유로 교회는 하나님께서 전 인류를 위해 의도하신 친교와 정의의 징표이자 도구가 되기로 부름 받은 것이다.

이러한 진실이 COCU에게 특정한 방식으로 가시적 교회 일치를 탐구하도록 지시한다.

- 이는, 교회가 신앙과 성례전과 목회에서 일치감을 추구하는 것과, 교회와 인간 공동체 내에서 인종주의를 극복하는 투쟁과의 사이에 논박할 수 없는 연결고리가 있음을 암시한다.
- 이는 참된 진리는 포용적이라는 것과, 교회와 사회 생활 내에서 인종적 정의를 요구한다는 것을 함축한다.
- 이는 인종주의와 모든 억압 권력에 반대하는 우리의 예언적 증거가 이러한 교회들의 성실성을 일차적으로 시험하는 것임을 내포한다.

인종주의를 타파하는데 있어서, 교회연합협의회 제18차 총회는 아홉(9)개 회원 교회들에게, 그들이 해방의 일치와 화해의 일치에 결단하도록 촉구한다. 이 일치는 복음서에 제공된 일치이며, 그러나 이들 교회 생활과 조직에서 아직은 완전하게 구현하지 못한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COCU 교

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들’이 되기를 추구하면서, 우리 자신과 사회를 변화시키려는 결단을 하고있다.

미국의 인종 관계에는 무언가 크게 잘못되어 있다. 미국의 전통과 문화적 관습에 깊게 침투된, 가장 현저한 악의 하나는 인종차별주의다. 특정 민족 그룹에 대해 유전적, 문화적 열등성을 간주하는 편견과/또는 그룹의 민족적 정체성을 이유로 그들의 전인성을 배제하거나, 박탈하고 종속시키는 관습이다.

인종 차별주의는 이와 같이 우리의 관습과 제도에 깊숙이 배어있으므로, 여기에서 도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참으로 지배 그룹의 일원으로 있는 한 그 제도의 혜택을 완전히 피할 수 없고, 피지배 그룹의 일원으로 있는 한 억압의 의도를 벗어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인종주의는 힘에 관한 것이다—정치, 경제, 사회 또는 교회적 특권을 보존하고자 하는 지배 그룹의 의도에 의한 힘의 남용이며, 그 결과적 일어나는, 피지배 그룹에 가하는 기회의 박탈이다.

현 사태와 추세를 되돌리기 위한 중대한 주도권을 취하지 않은 한, 인종주의, 특히 백인의 인종적 우월감은 “전체를 위한 자유와 정의”를 참되게 실현하는 사회를 꿈꾸는 국가적, 교회적 열망을

더럽힐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인종차별주의와 백인특권주의 죄를 타파하는데 새롭게 결단하도록 정부와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호소한다. 이 투쟁에는 우리 나라와 교회들의 도덕적 고결성과 신뢰감이 걸려있다. 특히 COCU 회원 교회들에게는 그 일치가 인종적 결속을 구현하지 않고 인종 평등과 공명정대함에 대한 핵심적 공적 증거를 내놓지 않는다면, 가시적 일치를 바라는 우리의 추구는 부적절하며—사실은 사기이다. 그 교회들은 COCU 회원 교회들에 의해 구상된 교회연합협의회를 통해서 이 결단을 함께 구체화 시켜 가야한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화해를 요구하는 기독교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인종주의는 악마적이고 멸받을 죄이다. 인종주의는 각 사람의 창조에 부여된 하나님의 형상을 부인하는 것이고, 세례를 통해 각 사람이 새로운 창조에 들어서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들’이 되기를 갈망하는 교회연합협의회 회원 교회들이 어떻게 하면 인종주의를 타파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참되게 보편적이고 참되게 복음적이며 참되게 개혁된 교회로서, 인종주의 반대투쟁을 통해 가시화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모든 교회들을 있게 하시고, 일하게 하도록 부르시는 사실을 통찰하고, 그 부르심에 대한 효과적인 응답을 지금 방해하는 것들을 고려해볼 때, 본 제18차 총회는 우리의 회원 교회들에게 다음의 아홉(9)개 전략적 결단을 설정하게 하고 이러한 결단을 함께 시행하도록 호소한다:¹

1. *계속적으로 인종주의 반대론의 설득력 있는 신학적 주장을 떠나간다.* 인종주의가 교회를 피난처로 찾거나 위안처로 구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알려진 진리를 부인하는 일이다. 주님은 우리를 소외된 신앙 공동체로 갈라놓은 그 벽을 허물으신다(에베소서 2:13-14). 교회가 모든 사람들에 대해 동등한 차원에서 완전히 개방되어 있지 않은 한, “참되게 보편적”인 교회가 될 수 없다. 우리가 추구하는 교회는 따라서 하나님 창조계의 다양성 안에서 일치를 나타내는 예언적 표징으로서 모범이 되고 또한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 교인들은 정규적으로 그리고 설득력있게 이 주장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
2. *우리 회원 교회들 가운데서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인종주의 타파를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들과 발의안들에 관한 정보를 알아내고 명칭을 붙이고 공유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들’의 2002년 출범을 앞두고 대비하는 성실한 첫 걸음으로서, 이러한 정보를 수집하고 여기서 얻은 지식에 비추어 더 한층 결의를 취할 수 있게 하는 협의 대회의 조직 가능성이 탐사되어야 한다.
3. *마틴루터 킹 목사 기념일과, 이와 유사하게, 제도적 변화로 이끌어 대화할 적절한 기회를 갖는다.* 교회들 내부와 그들 사이에서, 전체 공동체 회원들 안에서 인종간 대화를 장려하고 가능하게 한다. 대화가 적절하게 계획될 때, 이는 정의와 화해를 위해—의심과 공포와 적의감을 줄이고, 상호존중과 이해를 증진시키는데 있어서—없어서는 안 될 도구가 될 수 있다. 마틴 루터 킹 목사 기념일과 ‘크리스찬 일치성을 위한 기도 주간’ 사이의 연결은 인종주의와 우리의 일치 추구에 관한 관심을 증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잠재력이 있다.
4. *사회 윤리 기강을 진지하게 받아드리는데, 그 이유는 그러한 기강이 요구하는 신중한 토론과 뉴앙스 있는 구별은 효과적인 주창에 걸림돌이 되는 단순화 선동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

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소수계 보호법의 선호 형태들에 대한 적절한 방어는 부분적으로는 분배와 보상정의에 대한 건전하고 섬세한 해석에 달려있다. 사회윤리는 인종주의 반대 전략에 필요한 깊이를 가져올 수 있다.

5. *예배가 인종주의를 반대하는 의도적 증거가 되게 하고 복음의 충만함이 반영되게 한다.* 예배는 때로 인종분리와 억압의 도구가 되기도 한다. 성찬식은 신학적 장벽에 의해서 분리될 뿐만 아니라, 교회 내부와 교회들 사이의 인종분리에 의해서도 일어난다. COCU의 회원 교회들은 공동 성찬식을 추구하는 가운데, 반드시 예전적 자원과 관행을 평가하고, 인종적 민감성과 포용성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6. *인종주의 역학과 인종 정의의 요구에 관한 강력한 기독교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한다.* 특별히 가정 교육과 관련하여, 인종주의를 반대하고 인종평등을 지지하는 일관성 있는 증거가 되도록 예전적 자원 등 교육 자원들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7. *교회 조직과 정치체제와 프로그램에 박혀있는 인종차별 관념을 발굴하기 위해 자체검열 활동을 벌일 것과, 우리의 개선을 측정하는 목표 설정을 한다.* 변화의 대상을 제공하는 가운데, 이러한 자체 감사를 실행하는 것은 인종 차별적 불법성을 극복하고 인종화해를 진전시키기 위해 필수적이다. 이것은 교회들 사이의 상호 책임과 권고와 확인의 맥락에서 아주 효과적으로 이룩될 수 있다.
8. *옹호운동을 통해 인간의 평등권을 위한 투쟁을 벌이기로 한 교회의 결단을 새롭게 한다.* 민권의 의제를 계속 추구하는 가운데, 네(4)가지 정의 도구가 특별히 우리 시대에 적절해 보인다: (1) 연방민권법 보존과 강화, (2) 인종주의에 의해 초래된 불균형과 박탈을 해결하기 위한 핵심적 소수계 보호법의 지속화, (3) 주택, 의료, 영양, 고용, 기타 중요 필수 조건들을 포함하는 경제적 권리 방어 (4) 형사 재판제도의 개혁.
9. *새 이민 및 문화 그룹에 대한 회원 교회들의 수용능력과 대응력에서 인종차별 관련 이슈에 대처하는 자원을 개발한다.*

이 “인종차별 타파 결단과 결의 요구”에 대한 첫 행보로서, 제18차 총회 대의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들’이 되는 필수 요소로서, 우리 나라와 교회 안의 인종주의 타파의 공동결단을 능동적으로 추구하기로 결속하였다.

인종주의 타파는 보통 만만한 난제가 아니다 - 이를 근절시킨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실현가능성이 없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이것은 개인들의 사고 개조와 교회의 전면 변화가 함께 요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투쟁에 대해 희망을 품고 끈기를 가질 충분한 이유가 있다 - 가장 주요하게는 하나님께서 인종적 결속을 위한 새로운 가능성을 끊임없이 창조하시고 계시기 때문이다.

인종주의를 극복하고 보다 의도적인 일체감으로, 그리스도 교회의 보편성을 실천하는 삶을 살기로 한 COCU 교회들의 결단은 하나의 약속이고 기도이다. 이것은 우리를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공된 구속으로, 교회의 본질을 향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 안으로 안내할 것이다. 이들 아홉(9)개 교회들의 이러한 결단 안에서, 그리스도 연합의 교회들이 되고자 하는 추구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의 일치에 표시되고 예고이다.

이 보고는 1999년 1월 24일, 미주리 주 세인트 루이스 시에서 개최된 교회연합협의회 제18차 총회의 아홉(9)개 교단 대의원들의 만장일치 표결에 의해 채택되었다.

- 부록 2에 대한 각주 -

1. 이 아홉(9)개 결단은 “인종주의 철폐: 인종적 정의의 일치 추구 전략”에 상세히 기술되어있다. 이 문서는 COCU 제18차 총회의 기본 자원 문서로서, 1998년 7월/10월판 *Mid-Stream* Vol. 37, Nos.3-4에 발표되어 있다. 집행위원회는 그 문서를 회원 교단들에게 연구와 실행에 사용하도록 추천한다.

부록 E

미주한인장로회와 미국장로교 간의 계약관계

인준받은 에큐메니컬 성명서
제 218 차 총회(2008 년) 승인
노회들의 다수 표결에 의해 승인
(G-5.0203)

미주한인장로회 와 미국장로교 간의 계약관계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각듯히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였습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아버지시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입니다.” 에베소서 4:1-6 (표준새번역)

I. 역사적 관계

미국장로교(PCUSA)와 미주한인장로회(KPCA)는 개혁전통에 공통적인 뿌리를 두고 이에 헌신하는 교단들이다. 두 교회 간에 흐르는 정서적 유대감은 양 교회 선교 역사의 유산이다. 한국의 개신교는 1885년 미국장로교 선교사들이 파송됨으로써 시작되었다. 지난 세기동안 한국에서 장로교회는 고난의 어려운 경험을 겪고서도 경이적인 성장을 이룩한 바 있다. 한국의 장로교회는 한국과 아시아에서 뿐만 아니라 전세계 선교와 에큐메니칼 운동의 참된 동반자가 되었다.

1960년대 중반, 미국 이민법이 바뀌고 수많은 한국인들에게 미국 이민 문호가 열렸으며, 이로써 한인장로교에 새 역사의 장이 시작되었다. 유감스럽게도 미국장로교는 많은 수의 한인장로교인들을 영접하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일부 한인들이 미국장로교로 합류했으나, 다른 일부는 미국 내에서 독자적으로 한인장로회를 세워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코리안-어메리칸 장로교회들로 조직된 이러한 그룹들은 각기 그들의 고유한 은사와 부름을 통해 미국에서 장로교의 증거사역의 성장과 개발에 기여를 해 왔다.

수년에 걸쳐 양 교단 지도자들이 비공식적으로 상호 협력을 해오다가, 미국장로교의 제 204차 총회(1992년)와 미주한인장로회의 17차 총회(1992년)에서 PC(USA)와 KPCA 간에 장로교협력 합동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허락했다. 지난 30여년간 동 합동위원회는 목회사역, 교육, 세계선교, 평화, 정의, 화해, 교회 정치제도 분야에 초점을 두어왔다. 지금 특별히 주목되는 점 가운데 하나는 미국에서 출생하고 교육을 받은 코리안 어메리칸들이 우리 교회들을 이민 중심적 목회로부터 벗어나 미래 세대를 위한 사역을 지향하도록 제시하는 기회인 것이다. 합동위원회는 PC(USA)와 KPCA 간에 관계를 정립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다.

합동위원회는 하나님께서우리를 부르시어 PC(USA)와 KPCA 간에 보다 긴밀한 유대관계를 지향하게 하고, 두 교단 간의 계약관계를 선포하도록 양 총회에게 요구한 사실을 믿는다. 계약관계는 교회와 선교의 삶에서 공식적인 상호결단을 확립한다. 계약관계의 본질은 핵심신학 원칙에 기초를 둔 상호관계에 이르게 하는 부름이다.

II. 상호 인정과 화해

A. 세계개혁교회연맹에 가입한 개혁전통의 교단들로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 복음이 전파되고 성례전이 올바르게 집행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 실천되고 있는 교회들임을 서로 인정한다.

B. 세례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교회에 속한다는 표징이다. 성경말씀 대로,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이다”(엡 4:5). 그러한 목적으로 우리는 서로의 교회 세례를 인정하고 서로의 교회 교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로 환영한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기 희생적 사랑의 길을 보여주셨고, 우리가 이 사랑을 기억하고 생명의 빵을 먹고 구원의 잔을

마시도록 주님의 성찬 예식을 주셨다는 것을 인정한다. 우리는 교회의 모든 장소에서 주님의 성찬을 함께 나누도록 격려한다.

C.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모든 제자들에게 복음의 사역을 맡기셨으며, 사랑, 의로움, 평화, 정의의 길에서 그를 따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안수는 교회의 특정한 목회 사역을 하도록 남녀를 선별해 내는 행위이다. 우리는 이러한 목회 사역자들을 집사, 장로,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라고 밝히고 지칭한다. 우리는 교회와 세상에서 봉사하도록 사람들을 불러서 선별하는 일이 그리스도의 선교 때문임을 인정한다. 우리는 상호간에 교회의 목사, 장로와 집사 안수의 진정성을 인정한다.

D. 교회는 하나님의 소명을 세상에서 달성하는 삶을 산다. 교회는 자체를 위한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사역을 증거하고, 교회의 삶과 증거의 모든 분야에게 복음, 정의와 화해를 위한 변화를 일으키는 힘을 증거하는 일을 추구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치의 은사가 교회의 증거를 강화 시킨다. 교회의 분열이 교회 선교를 파괴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분파는 교회의 메시지와 선교로부터 관심을 흩어지게 한다. 우리는 우리들 교회의 선교가 개체 교회의 지원, 자원과 지도자 개발, 국내 및 세계 선교의 분야에서 협력하며 사역하기로 결단 함으로써 강화된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III. 계약의 결단

A. 우리는 기도, 대화와 지속적인 협력사업을 통해 서로를 지지하기로 서약한다. 우리는 상호 확인과 권고를 통해, 성실한 관계를 갖으며, 거기에서 기쁨을 함께 누리며, 시련을 나누며, 이 계약을 강하게 하는데 목표를 두고 불일치를 함께 다루기로 서약한다. 우리는 우리들 교회의 증거를 확인하도록 노력하며, 교정이 필요할 때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기 위해 사랑이 담긴 말을 한다.

B. 우리는 상호 교회의 목회의 진정성을 인정하면서, 질서있는 목사교환의 절차를 개발하기로 서약한다. 이 조항은 누가 노회원이 되며 교회의 사역에 부름 받을지를 허락하는 일을 노회가 결정한다는 원칙에 좌우될 것이다. 이 절차는 목사들이 다른이의 교회에서 목회 분담을 하도록 허용하고 목사들의 이명 절차와 목사들의 이중 교단 가입을 위한 절차를 확인하게 할 것이다. 이 절차는 무흠한 목사들에게만 적용될 것이며, 양방의 교회 정치제도에 의거한 권징의 절차를 포함할 것이다.

C. 우리는 하나의 가족이요, 우리 회중들이 공통의 뿌리를 갖고 있음을 인정한다. PC(USA)와 KPCA 소속의 많은 한인들은 한국에 뿌리를 두고 있다. 우리는 질서있는 개체교회 이명의 절차를 개발하기로 서약한다. 이 절차는, 실행할 수 있다면, 개체교회들이 목회사역을 공동으로 분담하고 이중 교단 가입을 취하도록 장려할 것이다. 우리는 양 교회의 증거를 강화시키는 절차를 개발하는 것이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분열에 기여하지 않기로 서약한다. 이 절차는 양 교단의 교회 정치제도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개발될 것이다.

D. 우리는 공동 선교에서 많은 공통점이 있음을 인식한다. 우리는 다음의 선교 분야에서 함께 사역할 것과 다른 사역의 분야들이 나타날 것을 위해 기도하기로 서약한다: 커리큘럼 개발; 2 세와 청소년/청년의 목회; 개체 교회 지원과 지도자 개발; 여성 지도자 및 자원 개발; 세계 선교와 세계 내의 정의와 화해의 분야.

IV. 결의의 동기 부여

A. 이 계약은 양 교단의 적절한 경로를 통해 양방 총회로 전달되어 2008년까지 결의되도록 할 것이다.

B. 양방의 총회는 계약관계를 체결하고 이 계약을 가능하게 하는 필수적 헌법 수정을 하도록 요청할 것이며, 노회로 보내 재가를 받도록 할 것이다.

C. 노회의 재가를 받을 때, 계약관계가 수립될 것이며, 공식적인 계약관계를 경축하는 예배의식은 2010년까지 거행될 것이다.

D. 계약실행위원회가 설립되어 계약 맺는 절차를 구체화하고 지원하며 우리로 이 계약을 완전히 지키도록 할 권고안을 만들 것이다.

V. 미래를 위한 기도

우리는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만민의 주님이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나이다. 당신께서는 장로교 선교사들의 사역을 통해 한국에 복음을 보내셨나이다. 성령의 권능을 통해, 이 어려운 시련 가운데서도 한국인들의 믿음을 양육 하셨으며, 저희들은 한국에서와 미국의 한인장로교인들 가운데서 교회의 성장을 목격하였나이다. 저희들은, 인간적 제약 때문에 분리가 있었다 하여도, 당신께서 친히 저희 두 교회를 통해 계속 사역하시고 계심을 알고 있나이다. 당신께서는 저희들의 문화, 관습 및 언어의 차이를 받아들이시고 저희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게 하셨나이다. 당신께서 이번 기회에 저희들을 보다 긴밀한 관계로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미주 한인장로교회와 미국장로교회 사이에 지금부터 여러 세대에 걸쳐 계약관계에 들어가고자 하오니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축복 내리시옵소서.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에게, 교회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도록 있기를 비나이다. 아멘.”

에베소서 3: 20 -21 (표준새번역)

부록 F

한국어 어휘

한국어 어휘

Korean Glossary

A

1. Active Member	1. 활동교인
2. Administration	2. 행정
3. Administrative Commission	3. 행정전권위원회
4. Administrative Manual of Operations	4. 행정 운영 지침서
5. Administrative Review	5. 행정적 검토, 평가, 검열
6. Administrative Staff	6. 행정 직원
7. Administrator	7. 행정 책임자
8. Admission to the Lord's Table	8. 성찬 참여 허락
9. Admission to membership	9. 회원 가입
10. Adult Members	10. 성인 회원
11. Advent	11. 강림절
12. Advisory Committee on the Constitution	12. 헌법자문위원회
13. Affiliate member	13. 관련교인
14. Affirmation of Faith	14. 신앙의 확인
15. Affirmative Action	15. 소수계보호법/차별철폐 조치
16. Agency	16. 대행기관
17. Allegation of Offense	17. 범법 혐의
18. Amend	18. 수정/개정하다
19. Amendment	19. 수정/개정(안)
20. Annual Consultation	20. 연례 협의
21. Annual Report	21. 연례 보고서
22. Annual Review	22. 연례 검토
23. Answer to Protest	23. 항의에 대한 답변
24. Appeals	24. 상소(문)/항소(문)
25. Appellant	25. 상소인/항소인
26. Appellee	26. 피상소인/피항소인
27. Approval	27. 승인
28. Article of Agreement	28. 합의조항
29. Associate Pastor	29. 부목사
30. Audit	30. 감사
31. Automatic termination	31. 자동 해직/해임

B

- | | |
|---------------------------------|--------------|
| 32. Ballot | 32. 투표용지 |
| 33. Baptism | 33. 세례 |
| 34. Baptized Member | 34. 세례회원 |
| 35. Benefits | 35. 혜택 |
| 36. Bereaved | 36. 유가족 |
| 37. Bible | 37. 성경 |
| 38. Bicameral System | 38. 양원/이원 제도 |
| 39. Unicameral System | 39. 일원/단원 제도 |
| 40. Book of Confessions | 40. 신앙고백서 |
| 41. Book of Order | 41. 규례서 |
| 42. Bounds of Presbytery | 42. 노회 구역 |
| 43. Briefs | 43. 적요서 |
| 44. Budget of Particular Church | 44. 지교회 예산 |
| 45. building | 45. 건물 |

C

- | | |
|---------------------------------------|-------------------|
| 46. Call to Ordered Ministries | 46. 직제사역자 청빙 |
| 47. Called Meeting | 47. 임시회의 (특별회의) |
| 48. Candidacy | 48. 후보생(자) 자격 |
| 49. Candidates | 49. 후보자들/후보생들 |
| 50. Candidates for the Teaching Elder | 50. 교역장로(목사) 후보생 |
| 51. Cases | 51. 사건/사례 |
| 52. Catechisms, Larger and Shorter | 52. 대·소 요리문답 |
| 53. Censures of Church | 53. 교회의 책벌 |
| 54. Certificate | 54. 자격증(서)/인정증(서) |
| 55. Certified | 55. 인정된/유자격 |
| 56. Chaplain | 56. 기관목사 (원목, 군목) |
| 57. Charge | 57. 권면, 고발, 죄과 |
| 58. Child Abuse | 58. 어린이 학대 |
| 59. Choir | 59. 찬양대 |
| 60. Christian Nurture | 60. 크리스천 양육 |
| 61. Church | 61. 교회 |
| 62. Church Discipline | 62. 교회 권징 |
| 63. Church government | 63. 교회 정치 |
| 64. Church Officers | 64. 교회 직분자 |
| 65. Church Orders | 65. 교회 규례 |
| 66. Church Polity | 66. 교회 정치조직/체계 |

67. Church Power	67. 교회 권한
68. Church Property	68. 교회 재산
69. Church School	69. 교회 학교
70. Church Unions	70. 교회 연합
71. Church Vocations	71. 교회 소명/직책
72. Church Year	72. 교회력
73. Citations	73. 소환장
74. Civil Jurisdiction	74. 민사 관할권
75. Civil Marriage	75. 민사법 결혼
76. Civil Proceedings	76. 민사 (소송) 절차
77. Clerk	77. 서기
78. Commission	78. 전권위원회
79. Commissioners	79. 총대/전권위원
80. Commissioning	80. 파송/위임
81. Committal	81. 하관/매장
82. Committee	82. 위원회
83. Committee on Ministry	83. 목회위원회
84. Committee on Preparation for Ministry	84. 목회후보생위원회
85. Committee of Representation	85. 대표위원회
86. Communion	86. 성찬/찬교
87. Community	87. 공동체
88. Compensation	88. 보수
89. Complaint	89. 고소/불만
90. Confessional Statement	90. 신앙고백문
91. Confirmation	91. 확인/인준/입교
92. Congregation	92. 개체교회/회중
93. Congregational Meeting	93. 공동의회
94. Conscience	94. 양심
95. Constituency	95. 구성계층
96. Constitution of the Presbyterian Church (U.S.A.)	96. 미국장로교 헌법
97. Constitutional Questions	97. 헌법적 질문
98. Co-Pastor	98. 동사목사
99. Corresponding Member	99. 객원회원
100. Correspondence	100. 교신/통신
101. Corporation	101. 법인체
102. Council	102. 공의회
103. General Assembly	103. 총회

- 104. Synod
- 105. Presbytery
- 106. Session
- 107. Counsel
- 108. Covenant Relationship
- 109. Creeds and Confessions

- 104. 대회
- 105. 노회
- 106. 당회
- 107. 변호인
- 108. 언약/계약 관계
- 109. 신조와 신앙고백

D

- 110. Daily Worship
- 111. Deacons
- 112. Board of Deacons
- 113. Death
- 114. Deletion
- 115. Delinquency
- 116. Deposition
- 117. Designated Pastor
- 118. Directory for Worship
- 119. Disciplinary Cases
- 120. Accuser
- 121. Accused
- 122. Charge
- 123. Counsel
- 124. Disciplinary Committee
- 125. Enforcement
- 126. Investigating Committee
- 127. Preliminary Hearing
- 128. Preliminary Procedure
- 129. Prosecution of Case
- 130. Renunciation
- 131. Temporary Exclusion
- 132. Vindication
- 133. Discipline
- 134. Dissent
- 135. Dissolution of Pastoral Relations
- 136. Dissolving Active Relation of Deacon or Elder
- 137. Dissolving Church
- 138. Diversity
- 139. Doctrine

- 110. 매일 예배
- 111. 집사
- 112. 집사회
- 113. 사망
- 114. 삭제
- 115. 비행, 직무태만
- 116. 증언녹취, 조서/공술
- 117. 임명목사
- 118. 예배모범
- 119. 징계사건, 권징사건
- 120. 고소인
- 121. 피소인
- 122. 공소, 고소, 고발
- 123. 변호인
- 124. 징계위원회
- 125. 집행
- 126. 조사위원회
- 127. 예심/ 예비청문회
- 128. 예비절차
- 129. 사건의 공소/기소
- 130. 파기, 포기(선언)
- 131. 임시 정직
- 132. 결백입증
- 133. 권징/징계
- 134. 반대(자)
- 135. 목회관계 해소
- 136. 집사나 장로의 직무직 해소
- 137. 교회해산/해체
- 138. 다양성
- 139. 교리

E

140. Ecclesiastical Jurisdiction	140. 교회 관할권
141. Ecumenical Commitment	141. 에큐메니컬 참여/범기독교 운동 참여
142. Ecumenical Statements	142. 에큐메니컬 선언
143. Educator	143. 교육사
144. Elders	144. 장로
145. Election	145. 선출/선거
146. Election of Pastors (or Associates)	146. 목사(또는 부목사)의 선출
147. Election of Trustees	147. 재단이사의 선출
148. Emerita or Emeritus, Pastor	148. 명예목사
149. Enforcement of Judgment	149. 판결의 집행
150.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150. 평등 고용기회
151. Evidence in Remedial/ Disciplinary	151. 교정/징계사건에서 증거
152. Examination	152. 시취/고시/심사
153. Exceptions	153. 예외(조항)
154. Executives	154. 행정책임자
155. Ex-Officio	155. 직책상/당연직
156. Extraordinary Inquirer or Candidates	156. 특례적 지망생이나 후보생

F

157. Family worship	157. 가족(가정)예배
158. Fasting & Thanksgiving	158. 금식과 감사
159. Federated Congregation	159. 연방교회
160. Filing a Complaint	160. 고소제기
161. Filing Deadline	161. 접수시한
162. Final Assessment	162. 최종평가
163. Finance	163. 재무, 재정
164. Financial Review	164. 재정 검토
165. Floor Nomination	165. 즉석 공천, 회의장 공천
166. Form of Call to Pastor	166. 목사청빙 양식
167. Forms of Worship	167. 예배 형식
168. Freedom of Conscience	168. 양심의 자유
169. Full Communion	169. 완전 교류
170. Full Organic Union	170. 완전한 조직적 연합
171. Funeral	171. 장례

G

172. General Assembly (GA)	172. 총회
173. General Assembly Mission Council (GAMC)	173. 총회 선교사역부
174. Manual of Operations	174. 운영지침서
175. Gifts of the Spirit	175. 성령의 은사
176. Giving	176. 봉헌, 헌금
177. Governing Bodies	177. 치리회(기관)
178. Government, Church	178. 교회 정치
179. Government, Form of	179. 정치형태

H

180. Head of the Church	180. 교회의 머리
181. Healing Services	181. 치유예배
182. Higher Council	182. 상위 공의회
183. Lower Council	183. 하위 공의회
184. Holy Spirit	184. 성령
185. Holy Week	185. 성 주간
186. Honorably Retired Teaching Elder	186. 명예 은퇴 목사
187. Household Worship	187. 가족(가정) 예배
188. Hymnals and Song Books	188. 찬송가와 성가집

I

189. Immigrant Congregations	189. 이민교회
190. Inclusive Language	190. 포괄적 언어
191. Inclusiveness	191. 포괄성
192. Incorporation	192. 법인체 조직
193. Individual Worship	193. 개인 예배
194. Ineligibility	194. 부적격
195. Infants	195. 유아
196. Inquirer	196. 지망생
197. Inquiry	197. 문의/지망
198. Installation	198. 위임/취임
199. Instruction	199. 지침/지시/가르침
200. Interfaith	200. 종교 상호관계
201. Interim Supply	201. 임시 설교자
202. Interpretation	202. 해석/해설
203. Irregularity	203. 변칙/오관

J

204. Joint Congregational Witness	204. 선교를 위한 교회연합
205. Judgment of Court	205. 법원의 판정/판결
206. Judicial Case	206. 사법사건(사례)
207. Judicial Commission	207. 사법전권위원회
208. Judicial Process	208. 사법절차
209. Jurisdiction	209. 관할권/교직권
210. Jurisdiction of Council of the Church	210. 교회 공의회의 관할권
211. Jurisdiction of Judicial Process	211. 사법절차 관할권
212. Justice	212. 정의

L

213. Laboring Outside Bounds	213. 노회구역 밖에서 사역/목회
214. Laying on of Hand in Ordination	214. 안수식에서의 안수
215. Lectionary	215. 성구집
216. Lent	216. 사순절
217. Liturgical Calendar	217. 예식 월력
218. Local Congregation	218. 지교회/회중
219. Lord's Day	219. 주일
220. Lord's Supper	220. 성(만)찬
221. Administration	221. 집례

M

222. Manual of Administrative Operations	222. 행정운영 지침서
223. Marriage	223. 결혼
224. Mediation	224. 중재
225. Members, Church	225. 교인/회원
226. Active Member	226. 활동교인
227. At-large Member	227. 일반/보통 회원
228. Affiliate Member	228. 관련교인
229. Baptized Member	229. 세례교인
230. Minimum Compensation	230. 최저 사례
231. Minister of the Word and Sacrament	231. 말씀과 성례의 목사
232. Ministry	232. 목회/사역
233. Committee on Ministry	233. 목회위원회
234. Committee on Preparation for Ministry	234. 목회후보생(준비)위원회
235. Minutes	235. 회의록
236. Mission	236. 선교, 사명, 사역
237. Moderator	237. 의장/사회자

- 238. Motion to Dismiss
- 239. Music in Public Worship
- 240. Mutual Forbearance

N

- 241. New Church Development
- 242. Nominating Process
- 243. For Deacons & Ruling Elders
- 244. For Pastor
- 245. Non-geographic Presbyteries
- 246. Nonresident Member
- 247. Notice of Appeal
- 248. Notice of Meeting

O

- 249. Oaths Administered to Witness
- 250. Obligation
- 251. Offense
- 252. Offerings
- 253. Openness
- 254. Ordered Ministry
- 255. Ordering Worship
- 256. Ordination
- 257. Ordination to the Ordered Ministry
- 258. Ordination for the Teaching Elders
- 259. Ordination of Deacons and Ruling Elders
- 260. Organic Union
- 261. Organizing of a Congregation
- 262. Original Jurisdiction in Judicial Process
- 263. Oversight
- 264. Overture

P

- 265. Parity
- 266. Parliamentary Procedure
- 267. Participation
- 268. Particular Church
- 269. Federated Church
- 270. Union Church

- 238. 기각 동의, 해산 동의
- 239. 공중예배 음악
- 240. 상호관용
- 241. 새 교회 개척 (개척교회)
- 242. 공천 절차
- 243. 집사와 사역장로(장로)를 위한
- 244. 목사를 위한
- 245. 비지역노회
- 246. 타지역거주 교인/회원
- 247. 상소 통보
- 248. 회의 통보

- 249. 증인에게 선서시킴
- 250. 의무(사항)
- 251. 위반/범법
- 252. 헌금
- 253. 개방성
- 254. 직제사역
- 255. 예배 순서
- 256. 안수(식)
- 257. 직제사역자의 안수(식)
- 258. 교역장로(목사) 안수(식)
- 259. 집사와 사역장로(장로) 안수(식)
- 260. 조직적/기구적 연합
- 261. 개체교회 조직
- 262. 사법절차에 관한 원 관할권
- 263. 감독
- 264. 헌의(안)

- 265. 동격(동등)
- 266. 회의진행 절차
- 267. 참여
- 268. 개체교회
- 269. 연방교회
- 270. 연합교회

271. Partner in Mission	271. 선교동역자
272. Pastor	272. 목사/담임목사
273. Call	273. 목사 청빙
274. Election	274. 목사 선출
275. Pastoral Care	275. 목회적 돌봄
276. Pastoral Counseling	276. 목회 상담
277. Pastoral Relations	277. 목사(목회)관계
278. Associate Pastor	278. 부목사
279. Co-Pastor	279. 동사목사
280. Designated Pastor	280. 임명목사
281. Dissolution of Relationship	281. 관계의 해소
282. Pastor	282. 담임목사
283. Temporary	283. 임시 (잠정)
284. Peace	284. 평화
285. Pension Plan	285. 연금 플랜
286. Per Capita Funds	286. 상회비
287. Permanent Judicial Commission	287. 상임사법 전권위원회
288. Personal Worship	288. 개인예배
289. Polity, Church	289. 교회 정치(운영)제도
290. Power	290. 권한
291. Prayer	291. 기도
292. Preaching	292. 설교
293. Preparation for Ministry	293. 목회/사역 준비
294. As a Ruling Elder and Deacons	294. 치리장로(장로)와 집사로서
295. As a Teaching Elder	295. 교역장로(목사)로서
296. Presbyteries' Cooperative Committee on Examinations	296. 노회 목사후보 고시위원회
297. Presbytery	297. 노회
298. Pretrial	298. 심리(재판) 전의
299. Principles of Administration	299. 행정의 원리
300. Principles of church Order	300. 교회규례 원칙
301. Principles of Presbyterian Government	301. 장로교 정치원리
302. Private Judgment	302. 개인 판단/사적 소견
303. Privilege	303. 특권
305. Profession of Faith	305. 신앙고백
306. Property	306. 재산
307. Prosecuting Committee	307. 기소(징계)위원회
308. Prosecution of Call	308. 청빙절차 시행

309. Protest

Q

310. Quorum

R

311. Racial Ethnic Congregation

312. Rebuke

313. Reception of Member

314. by Certificate

315. on Profession of Faith

316. on Reaffirmation of Faith

317. Recognition

318. Reconciliation

319. Record of Proceedings

320. Records of a Council

321. References

322. Reformed Church

323. Rehabilitation

324. Remedial Case

325. Removal from Membership

326. Removal from Ordered Ministry

327. Renunciation of Jurisdiction

328. Representation

329. Committee on Representation

330. Representative Government of Church

331. Responsibilities

332. Restoration

333. Review

334. Roll of Members

335. Ruling Elders

S

336. Sacraments

337. Scripture

338. Sentence

339. Separation of Church & State

340. Sermon

341. Service for the Lord's Day

309. 향의(서)

310. 정족수

311. 소수민종교회

312. 견책

313. 교인/회원 가입

314. 이명증서로

315. 신앙고백으로

316. 신앙 재확인으로

317. 인정, 치하/표창

318. 화해

319. 회의진행 기록

320. 공의회 기록

321. 조회/참조, 위임/위탁

322. 개혁교회

323. 회복, 복권

324. 교정사건

325. 회원 이명/제적

326. 직제사역에서 제적/제명

327. 관할권 파기/포기선언

328. 대표

329. 대표위원회

330. 교회의 대의 정치

331. 책임(사항)

332. 복직/복권

333. 평가, 검토

334. 교인명부

335. 사역장로(장로)

336. 성례전

337. 성경

338. 판결

339. 교회와 국가 분리

340. 설교

341. 주일 예배

- | | |
|---|-----------------------|
| 342. Service of Witness to the Resurrection | 342. 장례식 |
| 343. Service for Evangelism | 343. 전도예배 |
| 344. Service for Wholeness | 344. 치유예배 |
| 345. Service of Acceptance and Reconciliation | 345. 용납과 화해예배 |
| 346. Service of Welcome and Reception | 346. 환영과 입교예배 |
| 347. Session | 347. 당회 |
| 348. Sexual Abuse | 348. 성적 비행/학대 |
| 349. Sexual Misconduct Policy | 349. 성적비행 방지정책 |
| 350. Special Meetings | 350. 특별회의 |
| 351. Staff | 351. 직원 |
| 352. Standing/Permanent Committee | 352. 상임/영구위원회 |
| 353. Standard Ordination Examinations | 353. 정규 안수고시 |
| 354. Stated Clerk | 354. 정서기 (노회, 대회, 총회) |
| 356. Stated Meeting | 356. 정기회의 |
| 357. Statute of Limitation | 357. 효력기한 한정 법령 |
| 358. Stay of Enforcement | 358. 집행유예 |
| 359. Stewardship of Resources | 359. 자원의 청지기직 |
| 360. Supervised Rehabilitation | 360. 감독/상담하에 회복/복권 |
| 361. Supper, Lord's | 361. 성찬/주의 만찬 |
| 362. Synod | 362. 대회 |
| T | |
| 363. Teaching Elder | 363. 교역장로(목사) |
| 364. Temporary Exclusion | 364. 임시 정직 |
| 365. Temporary Pastoral Relationships | 365. 임시 목회 관계 |
| 366. Term of Ordered Ministry | 366. 직제사역의 임기 |
| 367. Termination of Censure & Restoration | 367. 책벌 종결 및 회복 |
| 368. Terms of Call | 368. 청빙조건 |
| 369. Testimony | 369. 증언 |
| 370. Tithes | 370. 십일조 |
| 371. Title | 371. 직함/등기 |
| 372. Transcript | 372. 사본/등본 |
| 373. Trials | 373. 재판/심리 |
| 374. Trustees | 374. 재단이사 |
| U | |
| 375. Union Church | 375. 연합교회 |
| 376. Union Presbyteries | 376. 연합노회 |
| 377. Unity | 377. 일치 |
| 378. Unity in Diversity | 378. 다양성 속의 일치 |

- 379. Unity of Church
- 380. Universal Church

- 379. 교회의 일치
- 380. 보편(세계)교회

V

- 381. Validated Ministries
- 382. Verbatim Recording
- 383. Vindication
- 384. Vocation, Christian
- 385. Voters

- 381. 인정된 목회
- 382. 축어적 기록 (말 그대로의 기록)
- 383. 결백 입증
- 384. 크치스찬의 소명/사명/직업
- 385. 투표자

W

- 386. Waiver
- 387. Wholeness
- 388. Witness
- 389. Worship

- 386.. 포기/보류/잠정
- 387. 치유
- 388. 증인
- 389. 예배

성서적 언급의 색인¹

장로교 정치제도의 기초

제 1 장

- F-1.0201 a. 앱 1:20, 21; 시 68:18
- b. 시 2:6; 단 7:14; 앱 1:22, 23
- F-1.0301 c. 골 1:18; 앱 4:16; 고전 1:18
- F-1.0302a d. 시 2:8; 계 7:9
- F-1.0402 e. 겔 43:11, 12

제 2 장

- F-2.02 a. 1967 년도 신앙고백, 서문 9.03
- F-2.03 b. 니케아 신조 1.3, 바르멘 신학 선언 8.01, 8.06
- F-2.04 c. 스콧 신앙고백서 3.08;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6.062, 6.065
- d. 제 2 스위스 신앙고백 5.108, 5.109;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061, 4.065; 소요리문답 7.033; 대요리문답 7.180
- e.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6.001, 6.006, 6.007
- F-2.05 f. 스콧 신앙고백서 3.02, 3.13, 3.14;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011, 4.047, 4.117, 4.121; 제 2 스위스 신앙고백 5.074; 대요리문답 7.295, 7.299
- g.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006, 4.036; 제 2 스위스신앙고백 5.036; 소요리문답 7.004; 대요리문답 7.262
- h. 스콧 신앙고백서 3.01;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026, 4.027, 4.028; 제 2 스위스 신앙고백, 5.029, 5.030, 5.031;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6.008, 6.024, 6.025, 6.026, 6.027, 6.030, 6.117; 소요리문답 7.008, 7.011, 7.012; 대요리문답 7.124, 7.128, 7.129, 7.130, 7.300, 7.302, 7.303, 7.305; 1967 년도 신앙고백 9.03
- i.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006; 제 2 스위스 신앙고백 5.015;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6.024, 6.037, 6.105; 1967 년도 신앙고백 9.15, 9.16, 9.17, 9.50; 간추린 신앙고백 10.3
- j.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079;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6.058, 6.190; 대요리문답 7.148, 7.303
- k.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027
- l.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014, 4.037; 간추린 신앙고백 10.3
- m. 1967 년도 신앙고백 9.15; 간추린 신앙고백 10.3
- n. 스콧 신앙고백서 제 7 장; 제 2 스위스 신앙고백 5.058;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6.021, 6.095, 6.193
- o. 제 2 스위스 신앙고백 5.058;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6.181, 6.192; 소요리문답 7.20; 대요리문답 7.189, 7.191
- p. 스콧 신앙고백서 3.05, 3.14, 3.25;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094, 4.095; 소요리문답 7.215; 대요리문답 7.218, 7.300
- q. 스콧 신앙고백서 3.14

제 3 장

- F-3.0107 a. 행 15:1-32 를 보고 참조
- F-3.0108 b. 마 18:15-18; 고전 5:4, 5
- F-3.02 c. 행 15:1-29; 16:4 (하단 주 6)

정치 형태

제 1 장

- G-1.0101 a. 행 2:41, 47
- G-1.0103 b. 히 8:5
- c. 갈 1:21, 22; 계 2:1
- G-1.0402 d. 히 8:5; 갈 6:16

제 2 장

- G-2.0102 a. 답전 3:1; 엡 4:11, 12
- b. 답전 5:17
- c. 빌 1:1
- d. 벧전 5:1; 딤후 1:5; 답전 5:1, 17, 19
- G-2.0201 e. 빌 1:1; 답전 3:8-15
- f. 행 6:3, 5, 6
- G-2.0301 g. 고전 12:28
- h. 답전 5:17; 롬 12:7, 8; 행 15:25
- G-2.0501 i. 램 3:15
- G-2.0604 j. 답전 4:14; 행 13:2, 3

제 3 장

- G-3.0105 a. 고전 14:40
- G-3.0108a b. 행 15:22-24
- G-3.0109b(5) c. 행 20:17; 6:2; 15:30
- G-3.0201 d. 고전 5:4
- e. 히 13:17; 살전 5:12, 13; 답전 5:17
- G-3.0201c f. 살전 5:12, 13; 살후 3:6, 14, 15; 고전 11:27-33
- G-3.0202f g. 행 15:2, 6
- G-3.0203 h. 행 20:17
- G-3.0301 i. 행 6:1, 6; 9:31; 21:20; 2:41, 46, 47; 4:4; 15:4; 11:22, 30; 21:17, 18; 6:1-7; 19:18-20; 고전 16:8, 9, 19; 행 18:19, 24, 26; 20:17, 18, 25, 28, 30, 36, 37; 계 2:1-6
- j. 행 15:1-6; 고전 14:26, 33, 40
- k. 엡 6:18; 빌 4:6
- G-3.0301c l. 행 15:28; 고전 5:3
- G-3.0304 m. 행 14:26-27; 행 11:18
- G-3.04 n. 장로교 총회에서 예증된 교회정치의 지지의 증거는 대회 총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지지한다는 확증이며, 따라서 제 10 장[원문 표기 11 장]에서 언급된 성서구절 반복이나 다른 추가 언급은 불필요하다. (1888 미국장로교회 정부형태 제 10 장)
- G-3.0402 o. 행 15:10; 갈 2:4, 5
- G-3.0501 p. 행 15:1-29; 16:4

제 5 장

- G-5.04 a. 행 21:17, 18; 행 6; 행 15:2, 3, 4, 6, 22
- G-5.05 b. 행 15:5, 6

제 6 장

- G-6.03 a. 1967 년도 신앙고백; 서문 9.03; G-2.0200 참조

예배모범

제 4 장

- W-4.4003b a. 답후 3:16; 엡 2:20
- W-4.4003c b. 답후 1:13
- W-4.4003e c. 뱀전 5:5
- W-4.4004a(1) d. 행 6:5, 6
- W-4.4006b(2) e. 약 1:21; 히 13:17
- W-4.4006b (3) f. 고전 9:7-15
- g. 살전 5:12, 13
- W-4.4006c h. 행 13:2, 3
- i. 답전 4:14
- W-4.4006d j. 답후 4:1, 2
- W-4.4006e k. 갈 2:9; 행 1:25
- W-4.4006f l. 막 4:24; 히 2:1

¹ 헌의안 01-58 에 부응하여, 총회 사무처는 성서적 언급이 포함되어 있는 정치형태의 이전 판들을 검토하였다. 현재 판의 정치형태의 대부분이 지난 판들에 있었던 조항들이 그대로 들어있다는 것이 분명하였다. 이 검토 후에, 헌법지원부서에서는 정치형태의 이전 판들과 현재 판의 내용을 자세히 비교하였다. 그런 다음에, 정치형태의 이전 판들에서 성서적 언급을 취하여 현재 판에 삽입하였다. 이들 성서적 언급은 215 차 총회 (2003) 중에 출판된 판에 처음 표기되었다.

색 인

본 색인의 참조는 항목번호에 대한 것이다.

(역자주: 원문대로 영어 알파벳 순서를 따랐으며, 머리 항목에는 영문과 한글 번역을, 그리고 항목내의 소항목은 한글 번역만을 실었다)

Acceptance and Reconciliation, Services of 용납과 화해예배	W-4.8000
Accountability to Presbytery for Worship 예배와 관해 노회에 책임을 짐	W-1.4008
Accused—Rights 피소인의 권리	D-10.0203 c
Accuser, Rights to Petition if Charges Not Filed 고소인, 고소가 접수되지 않았을 때, 청원하는 권리.....	D-10.0303
Active Member: 활동교인:.....	G-1.0402
Acts of Commitment and Recognition 결단과 인정의 행위.....	W-3.3502–.3504 W-3.3701 W-3.5503–.5504 W-4.2006
Acts of Recognition 인정의 행위	W-3.3502 W-3.3504 W-4.7000
Administration (See also Principles of Administration), Defined 행정의 정의 (참조 “행정의 원리”).....	G-3.0106
Administrative Commissions 행정전권위원회.....	G-3.0109 b
Administrative Leave When Sexual Abuse Is Alleged 성적 비행 혐의가 있을 때 행정적 직위정지	D-10.0106
Administrative, Manual of Operations 행정운영지침서.....	G-3.0106
Administrative Review 행정적 검토/평가.....	G-3.0108
Administrative Staff: 행정직원 참여와 대표 원칙하에서 선출	G-3.0110
행정책임자의 선출과 종결의 방법	G-3.0110
Administrator, Teaching Elder Called to Labor as 교역장로가 행정책임자로 사역할 때.....	G-3.0306
Admission to the Lord’s Supper: 성찬에 참여 세례교인	G-1.0401 G-1.0404
세례받은 자녀들의.....	G-1.0404 W-2.4011 b W-4.2002
Advent, Season of 강림절.....	W-3.2002 a
Advisory Committee on the Constitution 헌법자문위원회	G-6.02
Advisory Handbooks 자문핸드북	G-3.0106
Advocate in Disciplinary Process 권징절차에 있어서의 변호인	D-10.0203 a, b
Affiliate Member 관련교인	G-1.0403 G-3.0204 a
Affirmation in Place of Oath 선서 대신에 확약.....	D-14.0302 b
Affirmation of Faith (See also “Creeds and Confessions”) 신앙의 확인 (참조 “신조와 고백”)	W-3.3500 W-4.10004
Allegations of Offense 범법 혐의	D-10.0101

Alternative Forms of Resolution 해결의 대안 방안들.....	D-2.0103 D-10.0202 h(1-4) D-10.0301
Amending Action of Administrative Commission 행정전권위원회의 조치 수정.....	G-3.0109 b
Amending the Constitution: 헌법의 개정	
신앙고백서.....	G-6.03
규례서.....	G-6.04
헌법자문위원회를 거쳐야 함.....	G-6.04
개정할 수 없는 조항.....	G-6.05
특별 조항.....	G-6.06
Annual (or Biennial) Review 연례 (혹은 2년마다) 검토.....	G-3.0108 a
Annual Review of Pastor's Terms of Call 목사 청빙조건의 연례 검토.....	G-2.0804
Apostles' Creed a Part of the Constitution 헌법의 일부로서의 사도신경.....	F-3.04
Appeals: 상소	
서면 통보의 내용.....	D-8.0202 a-f D-13.0202 a-f
상임사법전권위원회의 결정.....	D-8.0404 a-f D-13.0404 a-f
정의.....	D-8.0101 D-13.0101
징계와 교정사건에 있어서의 효력.....	D-8.0103 D-13.0104
징계사건의 상소절차에 있어서 서류접수.....	D-13.0200
교정사건의 상소절차에 있어서 서류접수.....	D-8.0200
근거.....	D-8.0105 a-g D-13.0106 a, b
청문.....	D-8.0403 D-13.0403
청문 통보.....	D-8.0401 D-13.0401
기록.....	D-8.0203 a-g D-13.0303 a-g
서면통보 제출 시한.....	D-8.0201 D-13.0201
상소인과 피소인의 적요서 제출 시한.....	D-8.0304 부터 D-8.0305 까지 D-13.0304 부터 D-13.0305 까지
주도할 (시작할) 사람.....	D-8.0102 b D-13.0102
철회.....	D-8.0104 D-13.0105
Appellant: 상소인	
허락된 시간내 제출못할 때 상소 포기.....	D-8.0304 c D-13.0304 c
30 일내 상소 통지를 전달.....	D-8.0201 D-13.0201
Appellee Shall File Response Within Thirty Days 30 일내에 피소인은 응답을 제출.....	D-8.0305 D-13.0305
Appropriate Language 적절한 언어.....	W-1.2002

Approval of Presbyteries on Constitutional Amendment 헌법개정 의 노회 승인.....	G-6.03
	G-6.04
Architecture 건축 양식	W-1.3021-3024
	W-1.4004 g
“Are to be,” as a Term defined in the Preface 서문에 “이어야 한다”라고 정의된 용어	서문
Art Forms and Worship: 예술 형태와 예배	
댄스.....	W-1.2001
	W-1.4004 i, j
	W-1.4005 a (5)
	W-2.1005 b
	W-2.2008
	W-3.4002
드라마.....	W-1.2001
	W-1.3034 (2)
	W-1.4004 j
	W-1.4005 a(5)
	W-2.2008
	W-3.4002
총체적.....	W-1.3034 (2)
	W-1.4004 i, j
	W-1.4005 a(5)
	W-3.5102
	W-3.5302
음악 (참조 “공중예배에 있어서 음악”).....	W-1.4004
	W-1.4005
Associate Pastor: 부목사	
위임된 목사의 목회관계	G-2.0504 a
당회원.....	G-3.0201
차기 담임목사 혹은 동사목사가 될 수 없음	G-2.0504 a
한가지 예외.....	G-2.0504 c
안수와 위임.....	W-4.4000
	W-4.4006
목회관계.....	G-2.0504
목회관계가 담임목사의 목회관계와 상관없음	G-2.0504 a
청빙조건.....	G-2.0804
Assurance of God’s Pardon 하나님의 용서의 확신.....	W-3.3301 (d)
	W-3.3507
At-Large Member (See also “Member-at-Large”) 보통 회원 (참조 “Member-at-large”).....	G-2.0503 b
Audit (See “Financial Review”) 감사 (참조 “재정 감사”)	
Authentic Language 진솔한 언어	W-1.2005
Baptism: 세례	
기름 부음과.....	W-3.3607
성례전으로서.....	W-1.3033 (2)
	W-2.3008
	W-3.3601
대 위임명령에 대한 응답으로서	W-2.3001
기관목사와 타 교역장로의 집례	W-2.3011 b
자녀들과.....	W-2.3008 b
	W-2.3014
	W-2.4011
	W-3.3602
	W-3.3603

교회 책임.....	W-2.3013
신조와.....	W-3.3603 (a), (d)
세례받이나 연못.....	W-1.3024
침례.....	W-3.3605
예식에 포함된.....	W-3.3603 부터 W-3.3608 까지
유아 (참조 “세례, 어린이들”)	
예수와.....	W-2.3001
안수와.....	W-3.3607
성만찬과.....	W-2.3009 W-3.3608
의미.....	W-2.3002-3008 W-3.3601 W-3.3602 W-3.3605
방식.....	W-3.3605
부모의 책임과.....	W-2.3014
물 붓기.....	W-3.3605
설교와.....	W-3.3602
준비.....	W-6.2001 a
신앙고백과.....	W-2.3008
재확인.....	W-2.3009
단 한 번 받음.....	W-2.3009
기록.....	W-2.3011 a(4)
보관할 기록부.....	G-3.0204 b
세례교인 명부.....	G-3.0204 a
성경과.....	W-3.3602
순서.....	W-3.3603 부터 W-3.3608 까지
주일예배와.....	W-3.3502 W-3.3600
당회의 책임과.....	W-2.3011 W-2.3014
성령과.....	W-2.3001 W-2.3004 e
후원자와.....	W-2.3013
물 뿌림.....	W-3.3605
삼위일체적 형식.....	W-2.3010 W-3.3606
세례받는 이의 이름 사용.....	W-3.3606
물과.....	W-3.3605
회중의 환영과.....	W-3.3608 W-4.2001
집례하는 장소.....	W-2.3011
예배중 위치.....	W-3.3602
유효한 세례.....	W-2.3010
자녀를 소개할 사람.....	G-1.0404 W-2.3014

Baptized Members: 세례교인

정의.....	G-1.0401
---------	----------

성만찬에 참여할 권리 부여받음	G-1.0401
당회가 보관하는 세례 기록부	W-2.4011
명부	G-3.0204 b
명부	G-3.0204 a
Benefits Plan of PC(USA) 미국장로교의 혜택플랜	
참여의 명시	G-2.0804
청빙에 명시된대로 교역장로의 참여	G-2.0804
Bible: Confessions Subordinate to 성경: 신앙고백은 부차적임	F-2.02
Biennial General Assemblies: 격년제 총회	
총대들	G-3.0501
규례서에 대한 개정 제안	G-6.04
진행절차와 결의의 보고 및 검토	G-3.0108 a
Body of Christ, Church as the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F-1.0301
Book of Confessions, The: 신앙고백서:	
개정방법	G-6.03
교회 헌법의 일부	F-3.04
Book of Order: 규례서:	
개정방법	G-6.04
교회 헌법의 일부	F-3.04
Briefs: 적요서	
상소인	D-8.0304
상소인	D-13.0304
피상소인	D-8.0305
피상소인	D-13.0305
Broken Relationships, Pastoral Care and 깨어진 관계와 목회적 돌봄	W-6.3008
Budget of Council 공의회 예산	G-3.0113
Budget of Particular Church, Approval of, by Session 개체교회의 예산에 대한 당회의 승인	G-3.0205
Calendar (See also “Church Year”) 월력 (참조 “교회력”)	W-3.3616e.(1)
Call to Certified Christian Educator 유자격 기독교 교육사 청빙	G-2.1103
Call to Ordered Ministry 직제사역자 청빙	G-2.0103
Call, to Pastor: 목사 청빙	
교회관할권밖의 사역에 청빙할 때	G-2.0503
목사 청빙위원회의 선출	G-2.0802
위임예배	G-2.0805
최소의 청빙조건	G-2.0804
타 교단의	G-2.0505
미국장로교의 혜택플랜에 참여	G-2.0804
목사의 공식	G-2.0801
노회와 협의해야 함	G-3.0307
절차	G-2.0803
청빙조건	G-2.0804
위임 요구로 간주	W-4.4006
Called Meetings (See “Special Meetings”) 임시회의 (참조 “특별회의”)	
Calling of the Church 교회의 소명	F-1.03
Calling to Ordered Ministries in the Church, Gifts Bestowed on Those Called 교회 직제사역자에의 소명, 소명받은 자에게 부여된 은사들	G-2.0104
Candidates for the Teaching Elders (See “Preparation for Ministry”) 교역장로 후보생 (참조 “목회 준비”)	G-2.06

Cases: 사건	
징계사건, 정의.....	D-2.0203
교정사건, 정의.....	D-2.0102
Catechisms, Larger and Shorter: 대·소요리문답	
헌법의 일부.....	F-3.04
Censures of Church: 교회의 책벌	
정도.....	D-11.0403 e
교역장로의 임시정직 혹은 제적 통지를 총회서기에게 보고.....	D-12.0101
견책.....	D-12.0104 g
~을 수반한 견책.....	D-12.0102
~을 수반한 견책.....	D-12.0103
직제사역 혹은 회원권의 제적.....	D-12.0105
감독 상담하에 복권.....	D-12.0104b
임시 정직.....	D-12.0104
종료.....	D-12.0104 h
Certificate: 증명서	
관련교인.....	G-1.0403
이명.....	G-1.0303 b
Certification 자격 증명.....	G-2.1101
Certified Church Service 유자격 교회 봉사.....	G-2.11
기독교 교육사.....	G-2.1103
형태들.....	G-2.1101
노회 책임.....	G-2.1103 b
명부.....	G-3.0104
기술과 훈련.....	G-2.1103 a
발언권과 투표권.....	G-2.1103
Challenge to Findings of PJC Moderator and Clerk: 상임사법 전권위원회 위원장과 서기의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	
징계사건의 상소.....	D-13.0302 a
교정사건의 상소.....	D-8.0302 a
교정사건.....	D-6.0306 a
Chaplain, Teaching Elder Called to Labor as 기관 목사로서 사역토록 청빙된 교역장로.....	G-3.0306
Chaplains Authorized to Celebrate the Sacraments: 기관목사에게 성례전 집례 권한 부여	
세례.....	W-2.3011 b
성만찬.....	W-2.4012 b
Charge: 권면:	
안수와 취임시 교인에게.....	W-4.4006 f
안수와 취임시 담임목사 혹은 부목사에게.....	W-4.4006 f
Charges, in discipline 고발, 권징에 있어서.....	D-10.0101
	D-10.0400
Child Abuse—Report Required 어린이 학대 - 보고해야 함.....	G-4.0302
Children: 어린자녀들	
세례받은 자의 성만찬 참여.....	G-1.0401
세례와.....	W-2.3008
	W-2.3014
	W-3.3602
	W-3.3603
목회의 돌봄과 가르침을 받음.....	G-1.0401
가정예배와.....	W-5.7002
총체적.....	W-3.1004

성만찬과.....	W-2.4011
교회의 교인.....	W-4.2002
	G-1.04
Choir (See “Music in Public Worship”) 찬양대 (참조 “공중예배의 음악”)	
Christ: 그리스도	
홀로 교회를 다스리고 부르고 가르치고 사용하심	G-2.0101
교회의 머리	F-1.02
일생생활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	W-1.1003 c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완전한 응답	W-1.1003 b
Christian Nurture 크리스천 양육	W-6.2000
	W-6.2005
Christian Year (See also “Church Year”) 크리스천 절기 (참조 “교회력”).....	W-5.5002
	W-5.7003
Christmas, Day and Season of 성탄일과 계절	W-3.2002 b
Church: 교회	
그 고백.....	F-2.00
그 회원.....	G-1.0303
그 선교.....	F-1.01
그 직제사역.....	G-2.0102
그 일치.....	F-1.0302 a
그 사도성.....	F-1.0302 d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F-1.0301
그리스도의 권위.....	F-1.0201
그 보편성.....	F-1.0302 c
그리스도가 존재토록 부르심.....	F-1.0202
그리스도가 준비시킴.....	F-1.0202
그리스도가 그의 생명을 줌.....	F-1.0203
그리스도가 희망임.....	F-1.0204
그리스도가 기초임.....	F-1.0205
해체 혹은 없어진 교회:	
교인.....	G-3.0301 c
재산.....	G-4.0205
재정.....	G-3.0113
하나님의 선교.....	F-1.01
교회의 위대한 목적.....	F-1.0304
거룩함.....	F-1.0302 b
법인체 조직.....	G-4.0101
표지.....	F-1.0302
회원.....	G-1.04
선교/사명.....	F-1.01
직제사역.....	G-2.0102
법인체 혹은 재단이사의 권한.....	G-4.0101
재산.....	G-4.02
개혁했고 항상 개혁하고 있음.....	F-2.02
개체교회의 명부.....	G-3.0204 a
재단이사.....	G-4.0101
일치.....	F-1.0302 a
보편적.....	F-3.0101 b
Church Censures (see also “Censures of Church”) 교회 책벌 (참조 “교회의 책벌”).....	D-12.0100

Church Finances: 교회 재정	
Annual financial review required 연례 재정검토 요구.....	G-3.0113
Session's responsibility 당회의 책임.....	G-3.0205
Treasurer elected by session 회계는 당회에 의해 선출.....	G-3.0205
Church Location 교회 위치.....	G-3.0303 b
Church Officers (See "Ordered Ministry"; see also "Deacons," "Ruling Elders," "Teaching Elders") 교회 직분자 (참조 "직제사역", "집사," "사역장로," "교역장로")	
Church Power: 교회 권한	
양심을 속박할 수 없음.....	F-3.0107
목회적이며 선언적.....	F-3.0107
공권력의 도움없이.....	F-3.0101 b
Church Property: 교회 재산	
선교의 도구로서.....	G-4.0201
분열중인 교회.....	G-4.0207
재산에 관한 결정.....	G-4.0202
해체 혹은 없어진 교회.....	G-4.0205
규정에의 예외조항.....	G-4.0208
신탁으로 보관.....	G-4.0203
매각, 저당, 임대.....	G-4.0206
당회의 권한에 종속됨.....	G-4.0101
재단이사.....	G-4.0101
헌법에 어긋난 사용시.....	G-4.0204
Church Treasurer: 교회 회계	
당회에 의해 선출.....	G-3.0205
당회의 감독하에 일함.....	G-3.0205
Church Unions: 교회 연합	
교단에 의한 조직적 연합.....	G-5.03
개체교회 (참조 "교회의 선교적 연합").....	G-5.05
Church Year: 교회력	
총체적.....	W-1.3013
	W-3.2002
	W-3.2003
성구집과.....	W-2.2003
계절과 날들.....	W-3.2002 a-g
	W-3.2003
	W-3.5301
	W-5.5002
Churches: 교회들	
연방교회.....	G-3.0109 b
통신관계에 있는.....	G-5.0201
Citations 소환장.....	D-11.0201
만일 피고가 출두하지 않으면.....	D-11.0202 b
이차 소환.....	D-11.0202 a
소환장 전달.....	D-11.0202
Civil Marriage, Recognition of 민사법에 의한 결혼 승인.....	W-4.9006
Civil Powers and Religion 민사 권한과 종교.....	F-3.0101
Civil Proceedings, Concurrent with Investigating Committee Work 민사 사법 절차, 조사위원회의 일과 동시적.....	D-10.0401a

Clerk: 서기	
절차상 의무	D-11.0601
공동의회의	G-1.0505
당회, 노회, 대회, 총회의	G-3.0104
결정을 보고	D-11.0700
책임	G-3.0104
Commission of Council: 공의회의 전권위원회	
행정적	G-3.0109 b
사법적	G-3.0109 a
위원	D-5.0000
위임	G-3.0109
상임사법전권위원회	D-5.0101-.0105
노회나 대회는 상임사법전권위원회를 임명해야 함	D-5.0000
정족수	D-5.0101
크기	D-5.0204
노회, 대회, 총회를 위한	G-3.0109 b
당회를 위한	D-5.0101
당회를 위한	G-3.0109
Commissioned Lay Pastor: (See “Commissioning Ruling Elders to Particular Pastoral Service”) 평신도 목회자 (참조 “평신도 목회자 위임/파송”)	
Commissioners: 총대	
총회에 보내는	
각 노회에서 보내는 숫자	G-3.0501
정족수에 필요한 숫자	G-3.0503
노회에 보내는	G-3.0301
대회에 보내는	G-3.0401
Commissioning (See also “Confirmation and Commissioning”):	
위임/파송 (참조 “입교와 파송”)	
세례와	W-2.3006
주일예배와	W-3.3101 (8)
제자직의 특별한 행위	W-3.3503 (c)
제자직의 특별한 행위	W-4.3000
Commissioning Ruling Elders to Particular Pastoral Service:	
평신도 목회자의 위임/파송	
위임/파송	G-2.1002
비밀 보장	G-4.0301
시취	G-2.1002
직무	G-2.1001
세례를 집행할 수 있음	G-2.1001
성만찬을 집행할 수 있음	G-2.1001
인정된 목회를 할 수 있음	G-2.1001
결혼식을 주례할 수 있음	G-2.1001
유효 기간	G-2.1001
대답해야 할 질문	W-4.4003
훈련, 시취, 위임	G-2.1002
Commissioning Service 위임/파송식	G-2.1003
감독	G-2.1004

Commitment and Recognition, Acts of 결단과 인정의 행위.....	W-3.3502-.3504 W-3.3701 W-4.2006
Committal, Service of 하관식.....	W-4.10006
Committee of Counsel Defined 변호인단의 정의.....	D-6.0302
규칙에 따라 제공.....	D-6.0302 a
봉사하지 못할 자.....	D-6.0302 b
Committee on Ministry: (See “Pastor, Counselor, and Advisor to Teaching Elders and Congregations”) 목회위원회: (참조 “교역장로와 회중에 대한 목회자, 상담자, 조언자”)	
Committee on Preparation for Ministry (See “Pastor, Counselor, and Advisor to Teaching Elders and Congregations”; see also “Preparation for Ministry”) 목회후보생위원회 (참조 “교역장로와 회중에 대한 목회자, 상담자, 조언자”; “목회를 위한 준비”)	
Committee on Representation 대표위원회.....	G-3.0103
Committees of Council 공의회 의 위원회.....	G-3.0109
정의.....	G-3.0109
Communion: 성찬/교류	
완전교류.....	G-5.0202
성만찬 (참조 “주의 만찬”).....	W-2.4000
Community: 공동체	
크리스천 예배와.....	W-1.1005 W-2.6001
인류를 위한 광범위한 사역.....	W-1.3012 (2) W-3.3505 W-7.0000
Compassion, Ministry of 구호 사역.....	W-7.3000
Compensation 보수.....	G-2.1103 b G-3.0303
Complaint: 고소	
동일한 수준의 공의회를 상대.....	D-6.0202 a
답변.....	D-6.0303
변호인단.....	D-6.0302
정의.....	D-6.0102
피고의 의무.....	D-6.0304
피고용인이 제출할 수 있음.....	D-6.0202 a,b
비행의 교정을 요청한 후에만 서류 접수.....	D-6.0102
기각 동의.....	D-6.0303
사전 심리 절차.....	D-6.0307 부터 D-6.0310 까지
심리 전의 절차.....	D-6.0305
진술서.....	D-6.0301
집행유예.....	D-6.0103 a
서류접수 시한.....	D-6.0103 a
심리 적요서의 내용.....	D-6.0306
서류 접수자와 피소인.....	D-6.0202
Confessional Statements: 신앙고백 선언:	
보편적 교회의 신앙으로서.....	F-2.03

개신교 개혁의 신앙으로서	F-2.04
개혁전통의 신앙으로서	F-2.05
부차적 표준으로서	F-2.02
목적	F-2.01
Confidence and Privilege 비밀 보장과 특권	G-4.03
의무적 보고	G-4.0302
신뢰와 비밀 보장	G-4.0301
Confirmation and Commissioning 입교와 파송	W-4.2003
Congregation 개체교회/회중	G-1.01
정의	G-1.0101
교제	G-1.0102
헌법에 따라 치리	G-1.0103
선교/사역	G-1.0101
조직	G-1.02
안수와 취임시에 묻는 질문	
집사와 사역장로의	W-4.4003
교역장로의	W-4.4003
Congregational Meetings: 공동의회	
연례회의와 임시회의	G-1.0501
공동의회에 적절한 안건	G-1.0503
공동의회 소집	G-1.0502
목사 청빙을 위한	G-1.0503
사역장로, 집사, 재단이사 선출을 위한	G-2.0802
교회 재산에 관련된 사안을 위한	G-1.0503
목회관계에 관련된 사안을 위한	G-1.0503
예외를 요구하는 사안을 위한	G-1.0503
회의록	G-1.0505
의장	G-1.0504
공천과 투표 요구사항	G-2.0401
의사 절차, <i>회신판 로벌의 의사진행규칙</i>	G-3.0105
공고	G-1.0502
교역장로의 위임시에 묻는 질문	G-2.0802
정족수	W-4.4006 a-b
공동의회 서기는 당회서기임	G-1.0501
공동의회 서기는 당회서기임	G-1.0505
Conscience: 양심	
교회 공의회가 양심을 구속할 법을 제정하지 못함	F-3.0107
자유	G-2.0105
하나님만이 양심의 주인이심	F-3.0101
Constitution of the Presbyterian Church (U.S.A.): 미국장로교 헌법	
특별조항에 대한 개정	G-6.06
항상 개혁되고 있음	G-6.02
신앙고백서	F-3.04
규례서	F-3.04
정의	F-3.04

개정방법	
신앙고백서.....	G-6.03
규례서.....	G-6.04
예외.....	G-6.05
해석.....	G-6.02
개혁.....	G-6.01
Constitutional Questions, Affirmative Answer Required: 헌법 질문, 긍정적 대답 요구	
집사와 사역장로의 안수와 취임에 있어서.....	W-4.4003
교역장로의 안수와 위임에 있어서.....	W-4.4003
Continuity and Change 연속성과 변화.....	F-1.0401
Co-Pastors 동사목사.....	G-2.0504
부목사 청빙받지 못함.....	G-3.0104
예외.....	G-2.0504 a
한 목사가 떠날 때 다른 목사는 담임목사임.....	G-2.0504 c
한 목사가 떠날 때 다른 목사는 담임목사임.....	G-2.0504 a
Corporation (See also “Incorporation”) 법인체(참조 “법인 조직”).....	G-4.0101
Correspondence: 교신관계	
Churches in 교신관계에 있는 교회들.....	G-5.0201
Requirement for 요구사항.....	G-3.0501
Councils 공의회들.....	G-3.01
총회.....	G-3.05
노회.....	G-3.03
당회.....	G-3.02
대회.....	G-3.04
Councils of the Church 교회의 공의회들.....	G-3.01
선교의 집행.....	G-3.0106
행정적 검토.....	G-3.0108
일반적 검토.....	G-3.0108 a
지시된 응답.....	G-3.0108 c
특별 검토.....	G-3.0108 b
행정 직원.....	G-3.0110
연례 감사 요구됨감사.....	G-3.0113
교회 일치의 표현으로서.....	G-3.0101
양심을 구속하는 법을 만들 수 없음.....	F-3.0107
서기.....	G-3.0104
위임/파송과.....	W-4.3003
대표위원회.....	G-3.0103
위원회와 전권위원회.....	G-3.0109
정의.....	G-3.0101
적절한 보수.....	G-3.0106
공정한 고용 실행.....	G-3.0106
재정.....	G-3.0113
교회 관할권만 가짐.....	G-3.0102
포괄성.....	F-1.0403
징계사건에 있어서 심의.....	G-3.0103
보험.....	D-10.0102 b
보험.....	G-3.0112
오직 교회적 관할권만.....	G-3.0102
교회의 일치를 나타내기 위해 다른 교파와의 관계 및 활동 유지.....	G-5.01

과반수로 다스림	F-3.0205
행정지침서의 개발	G-3.0106
회의	G-3.0105
회의록과 기록	G-3.0107
사명이 형태와 조직을 규정함	G-3.0106
의장	G-3.0104
	G-3.0105
이름	G-3.0101
공천 과정	G-3.0111
운영 비용	G-3.0106
참여	G-3.0103
상회비	G-3.0106
노회	G-3.03
일반 행정 원칙	G-3.01
정의	G-3.0106
하위 공의회의 비행이나 변칙시의 절차	D-2.0202
기록	G-3.0107
하위 공의회의 기록을 차상위 공의회가 검토	G-3.0108
정규적 단계	F-3.0203
최신판 로벌 의사진행규칙에 따라 회의를 진행	G-3.0105
대표	G-3.0103
당회	G-3.02
대회	G-3.04
일치	G-3.0101
예배	W-3.6100
Counsel: 변호인	
피소인이 고용치 못할 때	D-11.0302
변호인을 대리로 세울 권리	D-7.0301
	D-10.0203 c
	D-11.0301
Counselor for accused—not testify 피소인을 위한 변호인은 증언하지 못함	D-14.0203
Court Reporter 법정 기록자	D-7.0601 a
	D-14.0303
Covenant: 계약	
공동체	F-3.01
새 교회 조직에 있어서	G-1.0201
계약의 삶	F-1.01
Creeds and Confessions: 신조와 신앙고백:	
세례와	W-2.2009
	W-3.3502
	W-3.3603(a),(d)
총체적	W-2.2009
성만찬과	W-2.2009
주일예배와	W-3.3501
Daily Worship (See also “Service of Daily Prayer”): 매일 예배 (참조 “매일 기도회”)	
훈련	W-1.3012
	W-5.2000
총체적	W-3.2001

기도와	W-5.4000
성경과	W-5.3000
Deacons: 집사	
집사회	G-2.0202
정의	G-2.0201
해소	G-2.0405
선출	G-2.0401
시취	G-2.0402
안수와 취임	G-2.0403
사역을 위한 준비	G-2.0402
직제사역에서 해제	G-2.0406
관할권의 파기	G-2.0407
사임	G-2.0405
책임	G-2.0201
당회에 의한 감독	G-2.0202
임직 기간	G-2.0404
당회의 권위하에	G-2.0202
Death (See also “Services on the Occasion of Death”): 사망 (참조 “장례식”)	
사망시의 돌봄	W-6.3006
명부에서 이름 삭제	G-3.0204
Deletion of Name of: 이름 삭제	
다른 교회로 간 교인	G-3.0204
관할권의 파기시	G-2.0407
	G-2.0509
Delinquency: 비행	
정의	D-2.0202 b
고소의 진술	D-6.0301
교정사건의 주제	D-6.0102
Deposition, Testimony Taken by 조서에 의해 취해진 증언	D-7.0205
	D-14.0304
Designated Pastor 임명 목사	G-2.0805
Desire to be Restored to Ordered Ministry 직제사역에 복권되기 원함	G-2.0507
Directory for Worship: 예배 모범	
Its authority 그 권위	W-서문
What it is 그 내용	W-서문
Disability: 신체 장애	
신체장애자를 포함	F-1.0403
Disciplinary Cases: 징계사건	
피소인의 권리	D-10.0203 c
고소 접수	D-10.0404
고소 양식	D-10.0403
공의회 심문	D-10.0102
변호인	D-7.0301
	D-10.0203
정의	D-2.0201
징계위원회 심문	D-10.0103
판결의 집행	D-11.0801

개인적 그리고 자책으로	D-10.0102 c
문서 진술	D-10.0102 c
주도 (시작)하는 방법	D-10.0101
조사위원회	D-9.0101
	D-10.0103
	D-10.0201
	D-10.0402
노회 회기 사이에 지명	D-10.0201 b
교역장로의 소속노회가 아닌 노회에 통보	D-10.0105
당사자는 미국장로교와 피소인임	D-10.0402
검토의 청원	D-10.0303
정족수	D-5.0204
범위	D-10.0204
	D-10.0405
예비 청문회	D-13.0307
예비 절차	D-10.0100
심리전 이의 제기	D-10.0204
심리 전의 협의	D-10.0405
사건의 기소	D-10.0402
특별징계위원회에 혐의 통보	D-10.0103
과기의 결과	D-3.0106
임시 정직	D-12.0103
고소 접수의 시간 제한	D-10.0401
계류 중 이명 금지	D-10.0105
결백 입증 요구	D-9.0101
Discipline (See also entire Rules of Discipline): 권징 (참조 “권징조례 전부”)	
목회적 돌봄과 감독의 경위	D-2.0101
매일 예배와	W-1.3012
정의	D-1.0101 부터
	D-1.0102 까지
	D-2.0101
사법 절차	D-2.0100
목적	D-1.0101
Dismissal: 퇴거/해산	
교인	G-3.0204
교회	G-3.0301
Dissent: 반대	
정의	G-3.0105
반대할 때	G-3.0105
Dissolution of Pastoral Relations: 목회관계의 해소	
해소 후의 활동	G-2.0905
회중의 요청에 의해	G-2.0903
담임목사, 동사무사, 혹은 부목사의 요청에 의해	G-2.0902
노회의 결의에 의해	G-2.0904
Dissolving Church: 교회 해체:	
노회의 권한	G-3.0301
재산	G-4.0205
Dissolving Relation of Deacon or Ruling Elder: 집사 혹은 사역장로의 관계 해소	
당회에 의해	G-2.0405
거주지 변경이나 신체장애 시	G-2.0405

Diverse Language 다양한 언어	W-1.2006
Diversity 다양성	F-1.0403
Doctrine: System of, received and adopted by all persons in ordered ministry 교리: 모든 직제사역자들에 의해 받아들여지고 채택된 교리 체계	W-4.4003
Duties of Presbytery and Session in Inquiry and Candidacy 지망생과 후보생 과정에 있어 노회와 당회의 의무.....	G-2.0605
Easter, Day and Season of 부활주일과 계절	W-3.2002 f
Ecclesiastical Jurisdiction (See also “Jurisdiction of Councils of the Church”): 교회적 관할권 (참조 “교회 공의회들의 관할권)	F-3.0102
공유하는 권한.....	F-3.0208
Ecumenical Commitment 에큐메니컬 참여.....	G-5.01
에큐메니시티	G-5.0101
완전한 조직적 연합.....	G-5.03
종교간 관계	G-5.0102
타 교단과의 관계	G-5.02
통신관계	G-5.0201
에큐메니컬 선언서.....	G-5.0203
완전 교류.....	G-5.0202
세속 기관들.....	G-5.0103
Education (See also “Christian Nurture”): 교육 (참조 “크리스천 양육”)	
노회의 책임	W-1.4009
당회의 책임	W-1.4007
Educator (See also “Teaching Elder”) 교육자 (참조 “교역장로”).....	G-2.1103
교역장로,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를 지칭하는 이름	G-2.0501
Elders (See “Ruling Elders”) 장로 (참조 “사역장로”)	
Election of Deacons and Ruling elders: 집사와 사역장로의 선출	
교인의 투표에 의해	G-2.0102
공동의회 소집	G-2.0401
제한된 임기를 위해 선출	G-2.0404
선출 규정	G-2.0401
당회의 시취.....	G-2.0402
안수와 취임.....	G-2.0403
사역을 위한 준비	W-4.4000
공동의회 절차.....	G-2.0402
공동의회에서 투표자격을 가진 자	G-2.0401
공동의회에서 투표자격을 가진 자	G-1.0501
Election of General Assembly Nominating Committee 총회 공천위원회의 선출.....	G-3.0111
Election of Pastor Nominating Committee 목사 청빙위원회의 선출	G-2.0802
Election of Pastors (or Associates): 목사 (혹은 부목사)의 선출	
목사 청빙위원회	G-2.0802
청빙 절차.....	G-2.0803
타 교단 교역장로의 청빙	G-2.0505
위임 예배.....	G-2.0805
목회 관계.....	G-2.0504
임시 목회 관계.....	G-2.0504 b
청빙 조건.....	G-2.0804
Election of Trustees 재단 이사의 선출	G-4.0101

Employee—Standing to file remedial complaint 피고용인 - 교정사건을 접수할 수 있는 위치	D-6.0202 a, b
Enforcement of Judgment 판결의 집행	D-11.0801
상소 계류중 직제사역의 직분 행사를 금지	D-11.0801
Entry to Membership 회원 가입	G-1.0303
Epiphany, Day of 현현절	W-3.2002 c
Equitable Compensation 적절한 보수	G-3.0106
Evangelism: 전도	
전도 사역	W-7.2000
전도 예배 (참조 “전도를 위한 예배”)	W-3.5500
Evangelist 전도자	G-3.0306
Evidence in Remedial or Disciplinary Cases (See also “Testimony in Remedial or Disciplinary Cases”): 교정 혹은 징계사건에 있어서의 증거 (참조 “교정 혹은 징계사건에 있어서의 증언”)	
정의	D-14.0101
종류	D-14.0101
새로이 발견된 증거	D-14.0501
죄과의 입증	D-11.0401
고발의 입증	D-7.0402
Examination: 시취/고시	
안수 후보생의	G-2.0607
집사와 사역장로의	G-2.0402
노회 가입을 위한 교역장로의	G-3.0306
Exceptions: 예외	
교회 재산 규정에 대한	G-4.0208
차기 위임 목사로서 청빙에 대한	G-2.0504 c
안수에 필요한 요구조건의 면제에 대한	G-2.0610
Executives: 행정 책임자	
선출	G-3.0110
종결	G-3.0110
Faith and Practice, Connection Between 신앙과 실천의 연결	F-3.0104
Faith, Reaffirmation of 신앙의 재확인	G-1.0303
Families and Worship 가족과 예배	W-5.7000
Fasting 금식	W-1.2003
	W-1.3013
	W-5.5003
Federated Congregation 연방교회	G-3.0109
Filing a Complaint (See also “Complaint”) 고소 접수 (참조 “고소”)	D-6.0200
Filing Deadlines: 접수 시한	
비행의 고소	D-6.0202
변칙의 고소	D-6.0202
사법사건에 있어서 최종 판결	D-7.0402 c
Filing of Charges 고발의 접수	D-10.0401
Filings in Appeal Process for Disciplinary Case 징계사건에 대한 상소절차의 접수	D-13.0200
Filings in Appeal Process for Remedial Case 교정사건에 대한 상소절차의 접수	D-8.0200
Final Assessment 최종 평가	G-2.0607
Finance, of Councils 공의회회 재정	G-3.0113
Financial Review (Full) Required 재정 검토(완전한) 필요	G-3.0113

Floor Nominations 즉석 공천	G-2.0401
Forms of Worship (See also “Ordering Worship”) 예배 형식 (참조 “예배 순서”).....	W-3.1000
Foundational Statements 기초 선언문.....	F-3.03
Freedom of Conscience 양심의 자유	G-2.0105
Full communion 완전 교류.....	G-5.0202
“Full Faith and Credit” Clause “완전 신뢰와 신용” 조항	D-3.0105
Full organic union 완전한 조직적 연합.....	G-5.03
Funerals (See also “Services on the Occasion of Death”) 장례 (참조 “장례 예식”)	W-4.10000
Furnishings (See also “Space for Worship”) 설비 (참조 “예배 공간”).....	W-1.4004 g
General Assembly: 총회	
헌법자문위원회.....	G-6.02
대표성의 근거	G-3.0501
예산.....	G-3.0113
노회의 총대.....	G-3.0501
대표위원회.....	G-3.0103
구성.....	G-3.0501
정의.....	G-3.0501
공정한 고용정책 실시.....	G-3.0106
법인체 등록.....	G-4.0101
관할권.....	G-3.0501 a
회의.....	G-3.0105
회의록과 기록.....	G-3.0503
총회장.....	G-3.0107
총회장.....	G-3.0501
공친절차.....	G-3.0111
적어도 60 일 전에 임시회의의 소집 통보	G-3.0503
정족수.....	G-3.0503
타 공의회와의 관계	G-3.0502
총무와 행정 직원의 선정위원회의 요구사항	G-3.0110
책임	G-3.0501
직원.....	G-3.0110
Gifts of the Spirit: 성령의 은사	
예배 중에 나타남.....	W-3.1002 b
교회에서의 역할.....	W-1.1005
Giving, Christian 크리스천의 봉헌.....	W-2.5000
	W-5.5004
God: 하나님	
인간과 대면하심	W-1.1002 b
인간의 모습으로 들어오심	W-1.1002 c
주도권.....	W-1.1002 a
하나님의 영	W-1.1002 a
Governing bodies: (See “Councils of the Church”) 치리회: (참조 “교회의 공의회들”)	
Grounds for Appeal 상소의 근거	
징계사건.....	D-13.0106
교정사건.....	D-8.0105
Harm, Risk of, Knowledge of 상해 위험이 있다는 정보.....	G-4.0302
Head of the Church 교회의 머리.....	F-1.02
Healing Services 치유 예배	W-3.5402

Higher Council, Reviews Records of Lower Councils 상위 공의회 는 하위 공의회 의 기록을 검토.....	G-3.0108
Historic Principles of Church Order 교회 규례의 역사적 원리.....	F-3.01
Holy Spirit: 성령	
세례와.....	W-2.3001
	W-2.3004 e
	W-2.3010
	W-3.3604 (c)
	W-3.3606
	W-3.3607
치유와.....	W-3.5405
성만찬과.....	W-2.4005
	W-2.4007
예배 순서와.....	W-3.1002 a
설교와.....	W-2.2007
예배에서의 역할.....	W-1.1002 a
	W-1.1004
	W-2.2010
성경과.....	W-2.2007
Holy Week 성 주간.....	W-3.2002 e
Homebound—Lord’s Supper 집으로 가서 행하는 성만찬.....	W-3.3616 e
“Honorably Retired” Teaching Elder: “명예은퇴” 교역장로	
정의.....	G-2.0503 c
노회 회원권.....	G-2.0503
노회가 그렇게 지정할 수 있음.....	G-2.0203 c
Household Worship 가정 예배.....	W-5.7000
Husband Not Compelled to Testify Against Wife 남편이 아내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도록 강요될 수 없음.....	D-14.0202
Hymnals and Song books 찬송가와 성가집.....	W-1.4006
Illness, Care in 신병중인 자의 돌봄.....	W-6.3005
Immigrant Congregations, Mission Needs of, and Non-geographic Presbyteries 이민교회의 선교적 필요와 비지역노회.....	G-3.0403
Immigrant Pastors 이민은 목사.....	G-2.0505
Inclusive Language 포괄적 언어.....	W-1.2006
Inclusiveness 포괄성.....	F-1.0403
	G-3.0103
예배에 있어서:	
총체적.....	W-1.4003
	W-3.1003
성만찬과.....	W-2.4006
Incorporation: 법인체 조직:	
같은 공동의회에서.....	G-1.0503
회원.....	G-4.0102
권한.....	G-4.0101
재단이사.....	G-4.0102
Infants: Membership in Church 유아: 교회의 회원권.....	G-1.04
세례시 교인 명부에.....	G-1.0401
	G-3.0204
Initiating Appeal in Disciplinary Case 징계사건의 상소의 주도.....	D-13.0102 a
	D-13.0106 a

Inquirer, Preparation for Ministry: 지망생, 목회를 위한 준비	
안수받으면 성만찬을 집례하도록 허락됨	G-2.0606
노회와의 계약관계	G-2.0601
이명	G-2.0608
철회	G-2.0609
등록	G-2.0602
일부 교육 요구사항 면제	G-2.0610
감독	G-2.0605
목적	G-2.0603
명부에서 삭제	G-2.0609
교회에 봉사	G-2.0606
당회 책임	G-2.0605
다른 노회로 이명	G-2.0608
Inquiry by Council 공의회에 의한 심의	D-10.0102 b
Installation (See also “Call”): 취임 (참조 “청빙”)	
취임식	G-2.0805
주일예배와	W-3.3101 (8)
	W-3.3503 (b)
	W-4.4000
	W-4.4000
Installation of Ruling Elders or Deacons 사역장로나 집사의 취임	
Installation of Teaching Elder: 교역장로의 위임	
절차	W-4.4006
후보자에게 묻는 질문	W-4.4003
회중에게 묻는 질문	W-4.4006 b
교역장로에게 묻는 질문	W-4.4003
Insurance, Property and Liability 보험, 재산과 책임보증	
	G-3.0112
Interim Pastor, Associate: (See “Temporary Pastoral Relationships”) 임시 목사, 부목사: (참조 “임시적인 목회관계”)	
Interpreting the Constitution 헌법의 해석	
권위적 해석	G-6.02
	G-6.02
Investigating Committee: 조사위원회	
타 공의회로부터의 고소	D-10.0104
공의회 회기 사이에 임명	D-10.0201 b
협의, 내용 명시	D-10.0203 a, b
비용	D-10.0201 c
심의	D-10.0202
위원	D-10.0201 a
검토 청원	D-10.0303
고소인에게 제공되는 절차	D-10.0202 b
기소위원회	D-10.0202 j
범법혐의의 회부	D-10.0103
책임	D-10.0202
피소인의 권리	D-10.0203 c
결백입증을 요청시	D-9.0101 a
Irregularity, Defined 변칙, 정의	
	D-2.0202
“Is to be” as a Term Defined in the “이어야한다”는 용어의 정의	
	서문
Jesus Christ as Head of the Church (See also “Christ”)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 (참조 “그리스도”)	
	F-1.02

Joint Congregational Witness 선교를 위한 교회연합	G-5.05
Judgment of Court Suspended, Effect of Complaint Stayed 재판의 판결 보류, 고소의 효력 유예	D-6.0103
Judicial Case (See also “Appeals,” “Cases,” “Complaint,” and “References”): 사법사건 (참조 “상소,” “사건,” “고소”와 “조회”).....	D-6.0101
상소나 고소에 의해서만 번복	D-10.0101
D-8.0100	
Judicial Commission 사법전권위원회.....	G-3.0109 a
D-5.0000	
Judicial Process: 사법절차:	
공의회.....	D-2.0102
정의.....	D-2.0101
관할권.....	D-3.0101
교역장로의 소속노회가 아닌 노회에 통보	D-10.0105
사건의 유형.....	D-2.0201
Jurisdiction in Judicial Process: 사법절차에 있어서 관할권	
공의회의 관할권	D-3.0101 a-d
정의.....	D-3.0101
이명된 교역장로의.....	D-3.0104
비회원 교역장로에 대한.....	D-3.0101b(2)
파기.....	G-2.0407
교회의 해산시.....	D-3.0101 d
관할권이 종식될 때.....	D-3.0106
하위 공의회가 결정을 내리지 못할 때.....	D-3.0103
Jurisdiction of Council of the Church: 교회 공의회의 관할권	
각 공의회에 대한 정의	
총회.....	G-3.0501
노회.....	G-3.0301
당회.....	G-3.0201
대회.....	G-3.0401
교회적 관할권	G-3.0102
헌법에 의한 제한.....	F-3.0209
목회적이고 선언적.....	F-3.0107
평신도 목회자를 감독하는 노회의	D-3.0101 b
교역장로를 감독하는 노회의.....	D-3.0101 b
교인을 감독하는 당회의.....	D-3.0101 a
원천적: 당회와 노회.....	G-3.0303
D-3.0101 a, b	
비거주 교역장로에 대한.....	D-3.0101 b(2)
파기.....	G-2.0407
관할권이 종식될 때.....	G-2.0407
G-2.0509	
D-3.0106	
Justice 정의.....	W-7.1001
W-7.4002	
Justice and Compassion for All Parties in Judicial Process 사법절차에 있어서 모든 당사자들에 대한 정의와 동정심.....	D-1.0101
Language in Worship: 예배에 있어서 언어	
적절하고 진솔한.....	W-1.2005
다양한.....	W-1.2006

총체적.....	W-1.2001
포괄적.....	W-1.2006
상징적.....	W-1.2002
Laying on Hands in Ordination 안수시 손을 얹음.....	W-4.4004 b W-4.4005 b W-4.4006 c
Leadership of Worship: 예배의 지도력	
회중의 참여와.....	W-3.1003
당회의 책임.....	W-1.4004
예배 인도자.....	W-1.4003
Lectionary: 성구집:	
교회력과.....	W-1.3013
성경 봉독과.....	W-2.2003
Lent, Season of 사순절 절기.....	W-3.2002 d
Liturgical Calendar (See “Church Year”) 예식 월력 (참조 “교회력”)	
Location of Ordination 안수 장소.....	G-2.0702
Lord’s Day: 주일:	
설명.....	W-1.3011 W-3.2001
말씀의 경청과 성찬 집례.....	W-1.3011 (2)
개인적인 사용.....	W-5.5001 b
예배 (참조 “주일 예배”)	
Lord’s Supper: 성만찬	
교역장로가 집례.....	W-2.4012 c
성례로서.....	W-1.3033 W-2.4010 W-2.4011 W-3.3601
세례와.....	W-2.3009 W-3.3608
떡과.....	W-3.3610 W-3.3614 W-3.3616
평신도 목회자에 의해.....	G-2.1001 W-3.3616 e
기관목사와 가타 사역하는 교역장로가 집례.....	W-2.4012 b
자녀들과.....	W-2.4011 b
공의회와.....	W-2.4012 W-3.6102
신조와.....	W-2.2009
잔과.....	W-3.3611 W-3.3615 W-3.3616
잘 훈련받아 행함.....	W-5.5001
성찬물의 처분.....	W-3.3619
에큐메니컬 모임과.....	W-3.6205
성찬물 (떡과 잔):	
남은 것의 처분.....	W-3.3619
상위에 진설할 때.....	W-3.3609
집에서 받음.....	W-3.3616 e

성찬의 빈도.....	W-2.4009 W-2.4010 W-2.4012
초청과.....	W-3.3612
예수와.....	W-2.4001
의미.....	W-2.4003 부터 W-2.4007 까지
음악과.....	W-3.3617 (a)-(c)
신약교회와.....	W-2.4002
사적 의식이 아님.....	W-2.4010
감사 기도.....	W-3.3613
설교와.....	W-2.4008 W-2.4010
준비.....	W-3.3609
노회와.....	W-2.4012
공개적 통보.....	W-3.3609
수련회/특별모임과.....	W-3.6204
순서.....	W-3.3612 부터 W-3.3618 까지 W-3.3701 W-3.3702
치유예배와.....	W-3.5404
장례 예식과.....	W-4.10003
당회의 책임.....	W-2.4012 W-3.3616 W-3.3619
상.....	W-1.3024
병자의 심방과.....	W-2.4010
집례할 때.....	W-2.4009 W-2.4010
초청받는 사람.....	W-2.4006
받을 수 있는 사람.....	W-2.4011
잔과 떡을 분배할 사람.....	W-3.3616
잔(포도주)과.....	W-3.3611
제정의 말씀과.....	W-3.3612 W-3.3615
Loss, Care in Times of 상실했을 때의 돌봄.....	W-6.3007
Lower Council, When Fails to Act in Judicial Process 하위 치리회가 사법절차에 있어서 행동을 취하지 못할 때.....	D-3.0101
Manual of Administrative Operations 행정운영 지침서.....	G-3.0106
Marks of the Church 교회의 표지.....	F-1.0302
Marriage: 결혼	
민사법 결혼의 인정.....	W-4.9006
결혼식 장식.....	W-4.9005
전직 교역장로가 집례.....	G-2.0905
총체적.....	W-4.9000
적절치 못할 때, 교역장로는 당회와 상의.....	W-4.9002 b
결혼식 때 성만찬.....	W-4.9003
결혼식에서의 음악.....	W-4.9005
결혼식 순서.....	W-4.9004

기도와.....	W-4.9004
선포와.....	W-4.9004
주일 예배와.....	W-3.3503 (a)
당회와 결혼식.....	W-4.9002 b
	W-4.9003
교역장로와 결혼식.....	W-4.9002
	W-4.9003
결혼식의 시간과 장소.....	W-4.9003
Matter: 물질	
예수와.....	W-1.3032
선교와.....	W-1.3040
구약과.....	W-1.3031
성례와.....	W-1.3033
예배와.....	W-1.3034
Mediation 중재.....	D-1.0103
Meetings: 회의	
회중의 (참조 “공동의회”).....	G-1.05
공의회의.....	G-3.0105
총회의.....	G-3.0503
노회의 (참조 “노회: 회의”).....	G-3.0304
당회의 (참조 “당회, 회의”).....	G-3.0203
대회의.....	G-3.0405
Member-at-Large 보통 회원.....	G-2.0503 b
Members, Church: 교회 교인	
활동교인.....	G-1.0402
	G-1.0501
활동교인 명부.....	G-3.0204
관련교인.....	G-1.0403
세례교인.....	G-1.0401
세례교인 명부.....	G-3.0204
이명증서.....	G-1.0303
삭제.....	G-3.0204 a
활동교인으로 가입.....	G-1.0303
신앙고백, 신앙의 재확인, 이명증서에 의해 받아들임.....	G-1.0303
Membership: 회원권	
분류.....	G-2.0503
노회의.....	G-3.0306
Membership in Congregation: 교회 회원권	
활동교인.....	G-1.0402
관련교인.....	G-1.0403
세례교인.....	G-1.0401
분류.....	G-1.04
교인(회원) 가입.....	G-1.0303
의미.....	G-1.0301
목회.....	G-1.0304
비회원 참여자.....	G-1.0404
기타 참여자.....	G-1.0404
제적.....	G-3.0204 a
	D-12.0104 b
과기된.....	G-3.0204

제적후 복권.....	D-12.0200
당회가 보관하는 명부.....	G-3.0201
환영과 개방성.....	G-1.0302
Membership Roll, Session 교인 명부, 당회.....	G-3.0204 a
Minimum Compensation: 최저 사례	
유자격 기독교 교육사.....	G-2.1103 b
목사.....	G-3.0303
Minister of the Word and Sacrament: (See Teaching Elders)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 (참조 “교역장로”)	
Ministry of the Church and Worship 교회의 목회와 예배	W-6.0000
	W-7.0000
Ministry, Preparation for: 목회를 위한 준비	
후보생의 정의.....	G-2.0604
협의와 지도.....	G-2.0605
노회의 의무.....	G-2.0605
당회의 의무.....	G-2.0605
지방생의 정의.....	G-2.0603
계약관계.....	G-2.0601
교단에 봉사.....	G-2.0606
Minutes (See also “Records” of a Council”): 회의록 (참조 “공의회의 기록)	
상임사법전권위원회의 서기는 재판기록을 보관함	D-7.0601
각 공의회는 보관해야 함.....	G-3.0107
노회의.....	G-3.0305
재판시 진행기록의.....	D-7.0601
당회의.....	G-3.0204
대회의.....	G-3.0406
Mission Emphasis, Services 선교강조의 예배.....	W-3.5601
Mission of the Church 교회의 선교.....	F-1.01
노회.....	G-3.0301
당회.....	G-3.0201
대회.....	G-3.0401
총회.....	G-3.0501
선교와 예배.....	W-1.1001
	W-1.1004
	W-1.2006
	W-1.3040
	W-2.4007
	W-2.5002
	W-2.6000
	W-3.3505
	W-4.3000
	W-4.5000
	W-6.2003
	W-7.0000
Mission of the Congregation 개체 교회의 선교.....	G-1.0101
Moderator: 의장	
권위.....	G-3.0104
각 공의회에 의해 선출.....	G-3.0104
평신도 목회자가 당회를 사회할 수 있음.....	G-2.1001
노회, 대회, 총회의 의장의 임무.....	G-3.0104

동사 목사가 있는 교회의	G-3.0104
공동의회회의	G-1.0504
총회의	G-3.0501
목사가 부재시 당회의	G-3.0104
위임목사가 없을 시 당회의	G-1.0504
직제사역의 임기 동안 노회원으로 등록된 사역장로 노회장	G-3.0301
Motion to Dismiss 기각 동의	D-6.0303
Music in Public Worship: 공중예배의 음악	
찬양	W-2.2008
	W-3.3101 (3)
	W-3.3501
찬양대	W-2.1004
	W-3.3501
회중 찬송	W-2.1003
	W-3.3501
찬송가와 성가집	W-1.4006
찬송가	W-2.1003
	W-2.2008
성만찬과	W-3.3617
	W-3.3618
결혼식과	W-4.9005
음악 리더와 목사와의 관계	W-1.4005 b
목사의 책임	W-1.4005 a(4)
선포와	W-2.2008
시편	W-2.1003
	W-2.2002
	W-2.2008
주일예배와	W-3.3101 (3)
	W-3.3301(b),(c)
	W-3.3401 (c)
	W-3.3501
매일 기도회와	W-3.4003
	W-3.4004
장례예식과	W-4.10004
당회의 책임	W-1.4004 i
	W-1.4005
영가	W-2.2008
Mutual Forbearance 상호 관용	F-3.0105
New Church Development 새 교회 개척	G-3.0301 b
New Evidence 새로운 증거	D-14.0500
New Immigrant Pastors 새 이민 목사	G-2.0505
New Members: 새 교인	
교인 영접 예배	W-4.2004
주일예배와 영접	W-3.3101 (8)
	W-3.3502
Nominating Process 공천 절차	G-3.0111
목사의:	
회중에 의한 선출	G-2.0802
노회와 협의해야 함	G-2.0803
현장 즉석공천의 기회	G-2.0401
Non-geographic Presbyteries 비지역노회	G-3.0403

Nonmembers Entitled to Care of Church 비회원 교인도 교회의 양육을 받을 권리가 있음.	G-1.0404
Notice of Appeal: 상소의 통보	
효력	D-8.0103
30 일 내에 공의회에 제출해야 함	D-8.0201
Notice of Meetings (See “Time Limit for”) 회의의 통보 (참조 “시간 제한”)	
Nurture, Christian (See also “Christian Nurture”) 양육, 크리스천의 (참조 “크리스천 양육”)	W-6.2000
Oaths Administered to Witnesses (See also “Affirmation”) 증인에게 행하는 서약 (참조 “확약”).....	D-14.0302
Offense Defined 범법 정의.....	D-2.0203 b
Offering: 봉헌	
떡과 잔	W-2.4005 b,c
	W-3.3507
집사가 보조할 수 있음	G-2.0201
물질 봉헌	W-1.3034
	W-2.5003
	W-3.3507
기도회와	W-3.5302
그리스도에게 응답	W-2.5001
헌신	W-2.5000
주일예배와	W-3.3101 (6)
	W-3.3507
치유를 위한 예배와	W-3.5404
영적 은사	W-2.5002
십일조	W-2.5003
	W-3.3507
	W-5.5004
One-Third Vote Required to Stay Enforcement of Action Complained Against 고소사건의 집행유예에는 투표 1/3 이 요구됨	D-6.0103 a
Openness: 개방성	
부름받음	F-1.04
	F-1.0302
	F-1.0404
Ordered Ministries of the Church 교회의 직제사역	G-2.01
Ordered Ministry: 직제사역:	
개혁신앙과 정체의 본질적인 것을 고수함	G-2.0105
	W-4.4003 c
그리스도로부터의 권위	G-2.0101
회중에 의해 선출	F-3.0106
	G-2.0102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선물	G-2.0101
은사와 자격	G-2.0104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는 양도할 수 없는 선출권	G-2.0102
성경에 순종하고 신앙고백에 부합하여 살아야 함	G-2.0104 b
사역을 하도록 안수	G-2.0102
직제사역에서 제적	D-12.0105
관할권의 파기	G-2.0407
사법절차에 미치는 영향.....	D-3.0106
사임 (사역장로와 집사)	G-2.0405

복권:	
제적 후.....	D-12.0202
회원권에.....	D-12.0203
양식.....	D-12.0203
직제사역에.....	D-12.0202
양식.....	D-12.0202
직제사역의 임기 (사역장로와 집사).....	G-2.0404
Ordered Ministry, Commissioning, and Certification: 직제사역, 위임, 인증	
부름받음.....	G-2.0103
은사와 자격.....	G-2.0104
직제사역자.....	G-2.0102
Ordering Worship: 예배 순서	
교회 학교 예배와.....	W-3.5202
문화적 다양성과.....	W-3.1003
형식과 자유.....	W-3.1002 a
안내.....	W-3.1001
	W-3.1002 b
결혼식과.....	W-4.9004
안수식과.....	W-4.4000
기타 주일예배와.....	W-3.5103
수련회에서 예배.....	W-3.6201
주일예배와.....	W-3.3000
전도예배와.....	W-3.5502
용납과 화해예배와.....	W-4.8003
환영과 가입예배와.....	W-4.2000
장례 예식과.....	W-4.10004
특별한 경우와 인정과.....	W-4.1000
성령과.....	W-3.1002
Ordination for the Teaching Elder (See “Preparation for Ministry”) 교역장로 안수 (참조 “목회를 위한 준비”)	
Ordination of Deacons and Ruling Elders: 집사와 사역장로 안수	
관계의 해소.....	G-2.0405
선출 규정.....	G-2.0401
시취.....	G-2.0402
대표성을 가진 공천위원회에 의한 공천.....	G-2.0401
공부와 준비 기간.....	G-2.0402
선출된 사람들은 당회에 의해 교육받고 시취받음.....	G-2.0402
회중에게 묻는 질문.....	W-4.4004 a
당회의 책임.....	G-3.0201
직제사역의 임기.....	G-2.0404
Ordination Service 안수식.....	W-4.4000
Ordination to the Ministry 사역에의 안수.....	G-2.0102
Ordination to the Ordered Ministry: 직제사역에의 안수	
전 교회의 행위.....	G-2.0701
정의.....	G-2.0102
총체적.....	W-4.4000
예배순서와.....	W-4.4000-.4005c
타 교단의 교역장로 인정.....	G-2.0505

주일예배와.....	W-3.3101 (8) W-3.3503 (b)
Organic Union with Other Bodies, How Effectuated 다른 교단과의 조직적 연합이 효력을 가지려면	G-5.03
Organizations Within a Church Under the Session 당회의 감독을 받는 교회안의 조직들....	G-3.0201c
Organizing of a Congregation: 개체교회의 조직:	
전권위원회에 의해	G-3.0109
노회의 권위에 의해	G-1.02
조직 계약.....	G-1.0201
Original Jurisdiction in Judicial Process: 사법절차에 있어 원 관할권	
노회의	D-3.0101 b
당회의.....	D-3.0101 a
대회의.....	D-3.0101 c
교인들에 대한.....	D-3.0101 a
교역장로에 대한.....	D-3.0101 b
당회가 결정하지 못하는 교회에 대해 노회가 관할권을 가짐.....	G-3.0303 e
Other Denominations, (See “Ecumenical Commitment”) 타 교단들 (참조 “에큐메니컬 참여”)	
Other Sunday Services 기타 주일예배와.....	W-3.5101 W-3.5400 W-3.5500
Parity of Ruling Elders in Councils 공의회에서 사역장로의 동격	G-2.0301 G-3.0301 G-3.0401 G-3.0501
Participation, Full, of Persons 회원들의 전적인 참여.....	F-1.0403 G-2.0401 G-3.0103
Participation in Worship: 예배에 참여	
어린이들과.....	W-3.1004
문화적 다양성.....	W-3.1003
당회의 격려하는 책임.....	W-1.4004
예배 인도자.....	W-1.4003
예배에 참여자.....	W-1.4003
Parties in Cases of Process: 절차상 당사자들	
피소인과 미국장로교가 원 당사자임	D-10.0402 b
고소 사본	D-10.0405
변호인을 가질 권리.....	D-7.0301
심리에 동석하는 위원들의 정당성에 대해 도전할 수 있음.....	D-10.0203 c
증인에 대한 대질 심문.....	D-11.0402
판결 심의는 비공개적으로 해야 함.....	D-14.0302
증인은 피소인의 면전에서 심문받음.....	D-11.0403 D-14.0304
Parties in Remedial Cases 교정사건의 당사자들.....	D-6.0201
Pastor: 목사	
예배모범:	
노회에 대한 책임.....	W-1.4008
찬양대 지휘자.....	W-1.4005 b
당회.....	W-1.4006

세례에 대한 책임.....	W-2.3011
성례.....	W-3.3602-3608
장례 예식.....	W-4.10003
대안과 임의 선택.....	W-4.10005
하관예식.....	W-4.10006
예식의 형식과 순서.....	W-4.10005
에큐메니컬 성찬에 참여.....	W-3.6205
예배의 요소.....	W-2.0000
성만찬:	
교역장로가 집례.....	W-2.4012 c
	W-3.3612 부터
	W-3.3618 까지
말씀과.....	W-2.4008
특별한 경우.....	W-2.4010
결혼: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W-4.9002 b
준비.....	W-4.9002 a
예식.....	W-4.9000
특별한 책임.....	W-1.4005 a
말씀 선포.....	W-3.3401
주일예배.....	W-3.3000
예배순서 작성.....	W-2.0000
청빙.....	G-2.0803
보수.....	G-3.0303
청빙을 위한 공동의회.....	G-1.0502
	G-1.0503
	G-2.0802
	G-2.0805
임명된.....	G-2.0805
관계의 해소:	
해소 후.....	G-2.0905
공동의회.....	G-2.0901
노회에 의해 해소.....	G-2.0901
노회 결정.....	G-2.0904
교인에 의해 주도될 수 있음.....	G-2.0903
목사, 동사목사, 혹은 부목사에 의해 주도될 수 있음.....	G-2.0902
선출 (참조 “목사의 선출”).....	G-2.0802
전직 목사의 목회적 봉사.....	G-2.0905
당회를 소집하는 권한을 가짐.....	G-3.0203
위임된 목사 관계.....	G-2.0504 a
공동의회의 의장.....	G-1.0504
당회원 2인의 요청이 있을 때 당회를 소집해야 함.....	G-3.0203
청빙위원회.....	G-2.0802
Pastor, Counselor, and Advisor to Teaching Elders	
and Congregations 교역장로와 교회에 대한 목회자, 상담자, 조언자.....	G-3.0307
책임.....	G-3.0307
Pastor, Election of: 목사의 선출	
위임식.....	W-4.4006
공천위원회의 선출.....	G-2.0802
노회와 협의해야 함.....	G-2.0803

공고하여야 함.....	G-1.0502
청빙 조건.....	G-2.0504
Pastoral Care 목회적 돌봄.....	W-6.1003
	W-6.3000
Pastoral Counseling 목회 상담.....	W-6.3003
Pastoral Relationships: 목회 관계	
위임된 관계	
부목사.....	G-2.0504 a
	G-2.0805
동사목사.....	G-2.0504 a
	G-2.0805
담임목사.....	G-2.0504 a
	G-2.0805
임시.....	G-2.0504 b
Peace: 평화	
평화의 인사 교환.....	W-2.6001 b
	W-3.3301 (e)
	W-3.3507
	W-3.3702
	W-4.2007
화해조성의 사역.....	W-7.4003
Pentecost, Day of 오순절.....	W-3.2002 g
Per Capita Funds to Pay Operating Expenses 운영비 지불을 위한 상회비 기금.....	G-3.0106
Permanent Judicial Commissions: 상임사법전권위원회	
비공개 회의.....	D-11.0306
총회 상임사법전권위원회의 결정은 권위를 가짐.....	G-3.0501 c
당회 이상의 각 공의회에 의한 선출.....	D-5.0101
공석을 채움.....	D-5.0104
총회의 위원.....	D-5.0101
부적격한 기간.....	D-5.0105
정족수 미달.....	D-5.0206
지난 6 년간의 위원 명단 보관.....	D-5.0206 b
회의.....	D-5.0203
위원, 변호인으로서.....	D-7.0301
권한.....	D-5.0202
노회의 위원.....	D-5.0101
교회 정치의 원리.....	F-3.02
정족수.....	D-5.0204
미달일 때.....	D-5.0206
부족할 때.....	D-5.0206
공의회에 의한 경비 지불.....	D-5.0206 c
책임.....	D-5.0202
대회의 위원.....	D-5.0101
위원의 임기:	
총회에서.....	D-5.0102
노회와 대회에서.....	D-5.0103
Personal Worship, Daily Worship and 개인예배, 매일예배와.....	W-1.3012
	W-5.2000

Petition for Review: 검토를 위한 청원	
상임사법전권위원회	D-5.0204
고소가 접수되지 않았을 때 검토의 청원	D-10.0303
검토의 범위	D-10.0204
	D-10.0303 c
당회가 시행하지 않을 수 있음	D-10.0201
Place of Ordination 안수의 장소	G-2.0702
Plea in disciplinary cases 징계사건에 있어서 탄원	D-11.0402 d
Polity, Church (See “Presbyterian Polity”) 정치, 교회 (참조 “장로교 정치”)	
Power (See “Church Power”) 권한 (참조 “교회 권한”)	
Prayer: 기도	
경배의 기도	W-2.1002
	W-3.3301 (c)
세례와	W-3.3604
기도의 중심성	W-2.1001
고백의 기도	W-2.1002
	W-3.3301 (d)
	W-3.3506
내용	W-2.1002
공의회 회의와	G-3.0105
	W-3.6103
매일 예배와	W-1.3012
	W-5.2001
	W-5.4000
행동으로 나타낸	W-1.1005 b
	W-2.1005
	W-3.5403
	W-6.3011
모임	W-3.5301
중보의 기도	W-2.1002
	W-3.3506 (a)–(c)
주일과	W-1.3011 (2)
예배 중 주기도문의 위치	W-3.3506
결혼과	W-4.9004
회의	W-3.5301
음악과	W-2.1003
	W-2.1004
안수와	W-4.4001 a
	W-4.4004 b
	W-4.4005 b
	W-4.4006 c
목사의 책임	W-1.4005 a(3)
준비	W-2.6001 c
하나님의 주도권에 대한 응답	W-1.2001
주일 예배와	W-3.3101 (2)
	W-3.3301(a)(c)(d)
	W-3.3401 (a), (d)
	W-3.3506
매일 기도회	W-3.4000
전도예배와	W-3.5502

치유예배와.....	W-3.5403
용납과 화해예배와.....	W-4.8003
장례 예식과.....	W-4.10004
당회의 책임.....	W-1.4004 c
	W-3.5301
간구의 기도.....	W-2.1002
	W-3.3506 (d)-(i)
감사의 기도.....	W-2.1002
	W-3.3506
Preaching: 설교	
세례와.....	W-3.3602
설교의 중심성.....	W-2.2001
	W-2.2007
매일예배와.....	W-1.3012
	W-3.4002
	W-3.6102
교역장로의 안수와 위임식에서.....	W-4.4001 b
주일과.....	W-1.3011 (2)
성만찬과.....	W-2.4007
	W-2.4010
목사의 책임.....	W-1.4005 a
	W-2.2007
기도회와.....	W-3.5302
노회의 위임.....	W-2.2007
주일예배와.....	W-3.3101 (1)
	W-3.3401
장례 예식과.....	W-4.10004
전도예배와.....	W-3.5502
치유예배와.....	W-3.5404
당회의 책임.....	W-1.4004
예배 공간과.....	W-1.3024
하나님의 말씀과.....	W-2.2007
Prehearing Proceedings in Appeal of Disciplinary Case	
징계사건의 상소에 있어 예심 진행 절차.....	D-13.0300
Prehearing Proceedings in Appeal of Remedial Case	
교정사건의 상소에 있어 예심 진행 절차.....	D-8.0300
Preliminary Procedure, Initiation of 예심 절차의 개시.....	D-10.0101
Preliminary Questions: 예심 질문	
징계사건의 상소.....	D-13.0302 a
교정사건의 상소.....	D-8.0302 a
교정사건.....	D-6.0306 a
Preparation for Ministry as a Ruling Elder and Deacon	
사역장로와 집사로서의 사역을 위한 준비.....	G-2.04
	G-2.0402
Preparation for Ministry as a Teaching Elder: 교역장로로서의 사역을 위한 준비.....	G-2.06
청빙.....	G-2.0803
준비.....	G-2.0607
후보생.....	G-2.0604

청빙에 응할 준비가 되었다고 인정함	G-3.0301
요구사항	G-2.0607
노회와 계약관계	G-2.0601
최소한의 기간	G-2.0602
이명	G-2.0608
철회	G-2.0609
고시 요구사항 (치루어야할 고시)	G-2.0607
고시 요구사항의 면제	G-2.0610
지방생	G-2.0603
안수:	
장애인 후보자의 포함에 특별한 배려	W-4.4004 b
	W-4.4005 b
	W-4.4006 c
감독	G-2.0605
절차	G-2.06
목적	G-2.0601
안수시에 대답해야 하는 질문	W-4.4003
	W-4.4005
노회의 환영	W-4.4005 c
삭제	G-2.0609
계약관계에서 교회 봉사	G-2.0606
당회 책임	G-2.0605
시간 요구사항	G-2.0602
이명	G-2.0608
Presbyterian Government, Principles of 장로교 정치의 원리	F-3.02
과반수 투표로 결정	F-3.0205
공의회로 모임	F-3.0203
공의회는 총체적 권위	F-3.0209
장로들에 의한 치리	F-3.0202
하나의 교회	F-3.0201
공의회에 의해 안수	F-3.0207
검토와 통제	F-3.0206
공유되는 권한	F-3.0208
그리스도의 뜻	F-3.0204
Presbyterian Polity: 장로교 규례	
기본 원리	F-3.02
	F-3.03
그리스도의 권위	F-1.0201
기초	F-1.01
구성요소	F-3.04
Presbyters, Government by 장로들에 의한 정치	F-3.0202
Presbytery: 노회	
연례감사는 필수적임	G-3.0113
지방생과 후보생을 위한 조직체로서	G-2.06
교역장로와 교회들을 위한 조직체로서	G-3.0307
공의회로서	G-3.0101
책임	G-3.0301
사역장로에게 성만찬을 집행하도록 위임함	G-3.0301 b
예산	G-3.0113

대표위원회	G-3.0103
구성	G-3.0301
교역장로에 대한 원 관할권을 가진 공의회	D-3.0101 b
후보생과 지망생과의 계약관계	G-2.0601
정의	G-3.0301
당회에게 모이도록 지시	G-3.0203
목회관계 해소	G-3.0301 a
안수를 위해 후보생 시취	G-2.0701
행정 책임자와 직원	G-3.0110
일반 선교 예산	G-3.0113
이명된 교역장로나 후보생에 대해 그들이 다른 공의회에서 받아들여질 때까지 관할권을 가짐	D-3.0104
법인체로 조직됨	G-4.01
성만찬과	W-2.4010
	W-2.4012
당회가 권한을 행사하지 못할 때 원 관할권을 가짐	G-3.0303 e
교역장로직에서 해제	G-2.0507
회의	G-3.0105
	G-3.0304
회원권	G-3.0306
최소 규모	G-3.0301
회의록과 기록	G-3.0107
	G-3.0305
공천 절차	G-3.0111
교역장로를 안수	G-3.0301 c
당회의 원 관할권	G-3.0303 e
교역장로와 교회에 대한 목회자, 상담자와 조언자	G-3.0307
참여의 원칙 교수	G-3.0103
정족수	G-3.0304
기록	G-3.0305
당회와의 관계	G-3.0303
대회와 총회와의 관계	G-3.0302
교회의 대표들	G-3.0301
책임	G-3.0301
	W-1.4009
	W-2.4010
지망생과 후보생과	G-2.0605
평신도 목회자	G-2.10
사역장로 대표	G-3.0301
임시회의	G-3.0304
직원	G-3.0110
타 교단에서에서 영입한 교역장로	G-2.0505
청빙조건	G-2.0804
재단이사	G-4.0101
인정된 목회	G-2.0503
Pretrial Challenges 심리(재판)전 이의신청	D-10.0204
Pretrial Conference, Purpose of 심리 전 협의의 목적	D-6.0310
Pretrial Procedures 심리 전 절차	D-6.0301 부터
	D-6.0310 까지

Principles of Administration: 행정의 원칙	
공의회에 대한 책임	G-3.0106
정의	G-3.0106
운영지침서	G-3.0106
선교가 형태를 결정함	G-3.0106
조직	G-3.0106
Principles of Church Order: 교회 규례의 원리	
교회 권한	F-3.0107
집단적 판단	F-3.0102
교회적 권징	F-3.0108
사람들에 의한 선출	F-3.0106
견해의 차이 인정	F-3.0105
직제사역자	F-3.0103
개인적 판단의 권리	F-3.0101
진리와 선	F-3.0104
Principles of Inclusiveness 포괄성의 원칙	
	F-1.0403
	G-3.0103
Principles of Presbyterian Government 장로교 정치의 원리	
	F-3.02
Private Judgment Universal and Unalienable 보편적이고 양도할 수 없는 개인적 판단	
	F-3.0101 b
Privilege: 특권	
평신도 목회자	G-4.0301
교역장로	G-4.0301
Procedure in Trials 심리(재판) 절차	
	D-8.0000
Profession of Faith, to Membership in the Church 신앙고백, 교인이 되기 위한	
	G-1.0301
	W-4.2003
Property (See “Church Property”) 재산 (참조 “교회재산”)	
Prosecuting Committee: 기소위원회	
조사위원회에 의해 지명	D-10.0202 j
사건을 기소함	D-10.0202 j
Protest: 항의	
정의	G-3.0105 b
공의회에 의한 답변	G-3.0105
접수될 수 있는 때	G-3.0105
기록될 수 있는 때	G-3.0105
Psalms (See also “Music in Public Worship”) 시편 (참조 “공중예배 음악”)	
	W-2.1003
Public Profession of Faith (See also “Profession of Faith to Membership in Church”) 공적 신앙고백 (참조 “교인이 되기 위한 신앙고백”)	
	W-4.2003
Questions, Constitutional 질문, 헌법적	
	W-4.4003
Quorum of: 정족수	
공동의회	G-1.0501
총회	G-3.0503
상임사법전권위원회	D-5.0204
노회	G-3.0304
당회	G-3.0203
대회	G-3.0405

Racial Ethnic Congregations, Meeting Mission Needs of, and Non-geographic Presbyteries 소수민종교회, 선교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비지역노회 조직	G-3.0403
Reaffirmation of Faith: 신앙의 재확인	
세례와.....	W-2.3009 W-3.3701
교인으로 받아들임	G-1.0303 W-3.3502 W-4.2004 W-4.2005
주일예배와.....	W-3.3502
전도예배와.....	W-3.5504
개신의 특별한 때와	W-4.2006
Rebuke: 견책	
교회 책벌	D-12.0102
감독하에 복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견책	D-12.0103
Receives Ecumenical Statements 에큐메니컬 선언문의 접수	G-5.0203
Reception of Members (See under “Members, Church, Received”) 교인의 영접 (참조 “교인, 교회, 영접함”)	
Reception of New Members, Services of (See “New Members”) 새 교인의 영접예배 (참조 “새 교인”)	
Recognition, Acts of: 인정 (치하)의 행위	
주일예배와.....	W-3.3502 W-3.3504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	W-4.7000
Recognizing Civil Marriage 민사법 결혼의 인정.....	W-4.9006
Reconciliation, Ministry of 화해의 목회	W-7.4004
Record of Proceedings, Defined 회의 진행 기록, 정의	D-13.0303
Records of a Council (See also “Minutes”): 공의회 회의 기록 (참조 “회의록”)	
사법 진행 절차의	D-11.0601 D-14.0303
소유권.....	G-3.0107
보존	G-3.0107
당회가 보관하는 특별 기록	G-3.0107
References: 위탁/위임/조회	
정의	D-4.0101
상위 공의회 회의 의무	D-4.0201
하위 공의회 회의 의무	D-4.0103
적절한 내용	D-4.0102
Reformed, Always Reforming 개혁했고 항상 개혁중에 있음	F-2.02
Reformed Church 개혁교회.....	F-1.0303
Registers to Be Kept by Session 당회가 보관할 기록부	G-3.0204 b
Rehabilitation (Supervised) 복권/회복 (감독하에).....	D-12.0103

Relations with Other Denominations: 타 교단과의 관계	
교신하고 있는 교단들	G-2.0503
	G-5.0201
안수의 인정	G-2.0505
Release from Exercise of Ordered Ministry: 직제사역에서 해제	
집사	G-2.0406
사역장로	G-2.0406
교역장로	G-2.0507
Remedial Cases: 교정사건	
변호인단	D-6.0302
고소의 정의	D-6.0102
변호인	D-7.0301
결정(판결)	D-7.0402 c
정의	D-2.0202
주도 방법 (시작하는 방법)	D-6.0101
관여된 당사자	D-6.0201
재판 절차	D-7.0000
집행유예	D-6.0103
Removal from Relationship 관계에서 제명	G-2.0609
Removal from Ordered Ministry, as Censure 책벌로서 직제사역에서 제명	D-12.0101
	D-12.0105
Removed Teaching Elder: 제명된 교역장로	
회복 (복권)에 필요한 조건	D-12.0200
회복 방법 (조기 회복)	D-12.0103 h
강단이 공석임을 선언	D-12.0103 e
	D-12.0104 e
직제사역에서 제적	D-12.0105
Renunciation of Jurisdiction (a Ruling Elder, Deacon) 관할권의 파기 (사역장로, 집사)	G-2.0407
Renunciation of Jurisdiction (a Teaching Elder) 관할권의 파기 (교역장로)	G-2.0509
Report Child Abuse to Authorities 어린이 학대를 당국에 신고	G-4.0302
Representation 대표	G-3.0103
Representative Government of Church 교회의 대의 정치	G-2.0102
Represented by Counsel 변호인에 의해 대표됨	D-7.0301
	D-11.0301
Rescinding Action of Administrative Commission 행정전권위원회의 조치를 무효화	G-3.0109
Residence, Change of, by Member: 회원/교인의 거주지 변경	
교역장로를 관할권에 종속시킴	D-3.0101 b(2)
교인의 책임	G-3.0204
당회의 책임	G-3.0204
Resignation of Ruling Elder or Deacon 사역장로나 집사의 사임	G-2.0405
Responsibilities of Each Council: 각 공의회의 책임	
총회	G-3.0501
노회	G-3.0301
당회	G-3.0201
대회	G-3.0401
Restoration: 복직(복권)	
복직을 위한 청원	D-12.0201
공의회의 복직 권한	D-12.0103 h

충분히 만족할 때, 공의회가 결정할 수 있음	D-12.0103 g
제적(제명) 후, 회원권에	D-12.0105 d
제적(제명) 후, 직제사역에	D-12.0203 c
Restoration of Ordained Persons Released from Exercise	
of Ordered Ministry 직제사역에서 해제된 안수직분자의 복권	G-2.0406
	G-2.0507
Retirement 은퇴	G-2.0503 c
Retreats, Worship at 수련회에서의 예배	W-3.6200
Retroactive Prosecution 소급하여 기소	D-10.0401 a
Review (see Administrative Review) 검토 (참조 행정적 검토)	
Right to Be Represented by Counsel 변호인에 의해 대표될 권리	D-11.0301
Rights of Accuser in Disciplinary Process 징계사건에서 고소인의 권리	D-10.0202 b
	D-10.0203 a
<i>Robert's Rules of Order, Newly Revised</i> 새로 개정된 로버트 회의 규칙	G-3.0105
Roll of Members: 교인 명부	
활동교인	G-3.0204
관련교인	G-3.0204
세례교인	G-3.0204
Rolls and Registers to be Kept by Session 당회가 보관할 명부와 기록부	G-3.0204
Ruling Elder 사역장로 (장로)	
정의	G-2.0301
해소	G-2.0405
선출	G-2.0401
교육과 시취	G-2.0402
제한된 임기를 위한 선출	G-2.0404
성만찬, 집례하도록 위임	W-3.3616 e(3)
지망생 혹은 후보생일 때	G-2.0606
당회의 동의로 사임	G-2.0405
안수와 취임	G-2.0403
공의회에서 교역장로와 동일한 권한	G-2.0301
사역을 위한 준비	G-2.0402
안수시 질문	W-4.4003
보관되어야 할 기록부	G-3.0204 b
직제사역의 직분에서 해제	G-2.0406
관할권 파기	G-2.0407
	D-12.0104
사임	G-2.0405
책임	G-2.0301
성경적 근거	G-2.0301
임직기간	G-2.0404
Sacraments (See also "Baptism" and "Lord's Supper") 성례전 (참조 "세례" 와 "성만찬")	
헌신과 인정의 행위와	W-3.3701
상징과 징표로서	W-1.3033(2)
	W-3.3601
주일과	W-1.3011(2)
물질과	W-1.3033(1)
주일예배와	W-3.3600

당회의 책임	W-1.4004b
예배 공간과	W-1.3024
하나님의 말씀과	W-1.1004
Scripture: 성경	
세례와	W-3.3602
장로교 정치의 기본	F-1.0401
그리스도의 뜻	F-1.0203
중심이 됨	W-2.2001
회중의 봉독	W-2.2006
	W-3.3401(b)
매일 예배와	W-1.3012(2)
	W-5.3000
성구집과	W-2.2003
성만찬과	W-2.4007
	W-2.4010
목사가 선택할 책임	W-1.4005a(1)
	W-2.2002
	W-2.2005
개인 예배와	W-2.2004
	W-5.3000
기도회와	W-3.5302
설교와	W-2.2007
공중 봉독과 경청과	W-2.2006
봉독의 범위	W-2.2002
교독	W-2.2006
주일 예배와	W-3.3101(1)
	W-3.3301(b)
	W-3.3401
매일 기도회와	W-3.4002
전도예배와	W-3.5502
치유예배와	W-3.5404
장례 예식과	W-4.10004
연구	W-5.3002 b
번역본	W-2.2005
Seasons (See also “Church Year”) 절기 (참조 “교회력”).....	W-3.2000
Self-Offering 헌신	W-2.5000
Sentence (Judicial): Forms of 선고 (사법적) 양식	D-12.0000
Sermon (See “Preaching”) 설교 (참조 “Preaching”)	
Service Books 예식서	W-1.4006
Service for the Lord’s Day: 주일 예배	
주일 예배시에 세례	W-3.3101 (4)
	W-3.3502
	W-3.3602 부터
	W-3.3608 까지
위임/파송	W-3.3101 (8)
	W-3.3503 (c)
	W-4.3003
	W-4.4000

취임	W-3.3101 (8) W-3.3503 (b) W-4.4000
성만찬	W-3.3101 (5) W-3.3609 부터 W-3.3619 까지
결혼	W-3.3503 (a)
선교의 관심	W-3.3505
안수	W-3.3101 (8) W-3.3503 (b) W-4.4000
장례 예식과	W-4.10003
특별한 경우와 인정과	W-4.1001
순서의 제안	W-3.3200 부터 W-3.3700 까지
삶과 목회에 있어서 전환기와	W-3.3101 (8) W-3.3504
포함된 것	W-3.3101
Service of Daily Prayer: 매일 기도회	
리더쉽과	W-3.4005
순서	W-3.4004
기도와	W-3.4003
성경과	W-3.4002
인도할 자	W-3.4005
Service of Ordination 안수식	W-4.4000
Services for Evangelism 전도예배	W-3.5500 W-7.2002
Services for Mission Emphasis 선교를 강조하기 위한 예배	W-3.5601
Services for Wholeness 치유예배	W-3.5400
성만찬과	W-3.5404
순서	W-3.5602
Services of Acceptance and Reconciliation 용납과 화해 예배	W-4.8000
Services of Welcome and Reception: 환영과 가입예배	
세례	W-4.2001
환영과 인정	W-4.2007
타 교인들의	W-4.2004
모두에 의한 재확인	W-4.2005
갱신과 새 결단	W-4.2006
주의 상(성찬상)에	W-4.2001
Services on the Occasion of Death: 장례 예식	
하관식	W-4.10006
전임 교역장로의 집례	G-2.0905
총체적	W-4.10000
성만찬과	W-4.10003
음악과	W-4.10004
순서	W-4.10004
계획과	W-4.10002
기도와	W-4.10004

설교와.....	W-4.10004
시민적, 우정적, 혹은 군대의식.....	W-4.10005
성경과.....	W-4.10004
교역장로와.....	W-4.10003
장례 예식 거행 장소.....	W-4.10003
	W-4.10005
Session: 당회	
노회에 대한 책임.....	W-1.4008
당회와 예배모범	
노회에 대한 책임.....	W-1.4008
특별적인 세례.....	W-2.3011 a
양육 자료 승인.....	W-6.2006
설교 준비.....	W-2.2007
말씀 봉독과 설교 준비.....	W-2.2001
기타 주일예배 결정 권한.....	W-3.5101
매일 기도회 결정 권한.....	W-3.4005
선교보고 예배 결정 권한.....	W-3.5601
성만찬 결정 권한.....	W-2.4012
수련회 등에서.....	W-3.6204
어떤 경우에.....	W-2.4010
세례:	
교인이 아닌 부모의 요청.....	W-2.3011
	W-2.3014
책임.....	W-2.3012
어린이와 예배.....	W-3.1004
성령의 나타나심에 대한 상담.....	W-3.1002 b
교역장로가 결혼을 주례하지 않고자 하는 결정에 조언.....	W-4.9002 b
개인예배의 습관을 가지도록 격려.....	W-5.1004
목사와 공동 책임.....	W-1.4006
성만찬:	
장례와.....	W-4.10003
성찬물 (떡과 잔)의 처분.....	W-3.3619
분배 방법.....	W-3.3616
책임.....	W-2.4012 a
특별한 경우들.....	W-2.4010
포도주의 사용.....	W-3.3611
결혼.....	W-4.9003
주일예배 순서.....	W-3.3201
예배를 위한 목사의 책임.....	W-1.4004
	W-1.4005 a
기도회.....	W-3.5301 p
설교와.....	W-2.2007
새 교인 영접.....	W-4.2003
	W-4.2004
예배에 있어서 교육의 책임.....	W-1.4007
양육 프로그램에 대한 책임.....	W-6.2005
예배를 위한 책임.....	W-1.4004
전도예배.....	W-3.5501
치유예배.....	W-3.5402
장례 예식.....	W-4.10002

교인들의 신앙갱신의 의식을 나눔	W-4.2006
평화의 표징:	
총체적.....	W-2.6001 b(2)
성례와.....	W-3.3702
주일예배와.....	W-3.3301 (e)
	W-3.3507
	W-6.3009
죄와 용서, 돌봄	
예배 공간:	
배치.....	W-1.3024
초대교회와.....	W-1.3023
예수와.....	W-1.3022
구약과.....	W-1.3021
당회의 책임.....	W-1.4004 g
예배모범에 나오는 용어들	Preface
새 직제사역자들의 환영.....	W-4.4004 d
성찬상에 어린이들을 환영	W-4.2002
공의회에서의 예배.....	W-3.6101
연례 감사는 필수적	G-3.0113
서기.....	G-1.0505
구성.....	G-3.0201
동사목사의 경우 당회장	G-3.0104
교인들에 대해 원 관할권을 가진 공의회	D-3.0101 a
재정.....	G-3.0113
	G-3.0205
집사들과 연합회의	G-3.0204
기록의 보관.....	G-3.0204
성만찬 거행에 있어서의 권위	G-3.0201 b
교인 명부에서 이름 삭제	G-3.0204
목사 부재시의 회의	G-3.0104
회의:	
일박 원칙.....	G-3.0105
임시회의와 정기회의	G-3.0203
당회장이 소집시 모임.....	G-3.0203
노회의 지시가 있을 때 모임	G-3.0203
사역장로 두 사람이 요청할 때 모임	G-3.0203
교인 명부.....	G-3.0204 a
회의록.....	G-3.0204
당회장.....	G-3.0104
교회에 위임목사가 없을 때	G-3.0201
위임목사가 할 수 없을 때	G-3.0201
담임목사와 부목사가 투표할 수 있음	G-3.0201
담임목사가 당회장임	G-3.0201
정족수.....	G-3.0203
회의의 합리적인 통보.....	G-3.0203
기록.....	G-3.0107
	G-3.0204
기록부.....	G-3.0204 b
다른 공의회와의 관계.....	G-3.0202

책입	G-3.0201
예배에 관하여 (참조 위의 “당회와 예배모범”)	
사역을 위한 준비를 하는 사람들을 도와줌	G-2.0605
보관해야 할 명부와 기록부	G-3.0204
정기당회는 적어도 분기별로	G-3.0203
Sexual Abuse: 성적 비행:	
혐의가 있을 때 행정적 휴직	D-10.0106
정의	D-10.0401 c
목회적 조사	G-3.0109
고소에 대한 시간 제한	D-10.0401 b
Sexual Misconduct Policy 성적 비행 방지 정책	G-3.0106
Sign of Peace: 평화의 표시:	
총체적	W-2.6001 b(2)
성례와	W-3.3702
주일예배와	W-3.3301 (e)
	W-3.3507
Sin and Forgiveness, Care in 죄와 용서, 돌봄	W-6.3009
Space for Worship: 예배 공간	
배치	W-1.3024
초대교회와	W-1.3023
예수와	W-1.3022
구약과	W-1.3021
당회의 책임	W-1.4004 g
Special Groups, Worship of 특별한 그룹의 예배	W-3.5700
Special Meetings: 임시회의	
개체교회	G-1.0501
총회	G-3.0503
노회	G-3.0304
당회	G-3.0203
대회	G-3.0405
Special Occasions and Recognitions 특별한 경우와 인정	W-4.1000
Special Services of: 특별한 예배	
용서와 화해	W-4.8000
책벌과 복권	W-4.6000
제자직의 특별 수행을 위한 위임/파송	W-4.3000
장례 예식	W-4.10000
전도	W-3.5500
결혼	W-4.9000
선교 보고	W-3.5600
안수와 취임	W-4.4000
프로그램 설명	W-3.5600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의 치하	W-4.7000
사역의 전환	W-4.5000
환영과 영접	W-4.2000
치유	W-3.5400
Spirit (See “Holy Spirit”) 영 (참조 “성령”)	
Sponsors, baptismal 세례 후원자	W-2.3013

Staff: 직원	
평등 고용의 실천	G-3.0106
종결	G-3.0110
중결	G-3.0110
Stated Clerk (See also “Clerk”) 정서기 (참조 “서기”)	G-3.0305
Stated Meetings: 정기회의:	
총회의	G-3.0503
노회의	G-3.0304
당회의	G-3.0203
대회의	G-3.0405
Statute of Limitations (See “Time Limit for”) 효력기한 한정 법령 (참조 “시간 제한”)	
Stay of Enforcement 집행유예	D-6.0103
판결이나 조치후 45 일 이내에 접수	D-6.0103 a, d
달성 방법	D-6.1300 a
일시적	D-11.0801
일시적	D-6.0103 c
Stewardship 청지기직	W-5.5004
	W-5.5005
	W-7.5000
Stewardship of Resources 자원의 청지기직	G-3.0106
당회가 청지기직에 대해 교인들에게 도전	G-3.0201
Supervised Rehabilitation 감독하에 복직(복권)	D-12.0103
Symbol: 상징	
세례	W-2.3004
신약과	W-1.2004
구약과	W-1.2003
예배에서 사용	W-1.2002
Symbolic language in worship 예배에서 상징적 언어	W-1.2002
Synod: 대회	
연례 감사는 필수적	G-3.0113
대표위원회	G-3.0103
구성	G-3.0401
비지역노회의 조직	G-3.0403
공정한 보수	G-3.0106
행정책임자와 직원	G-3.0110
평등 고용 실행	G-3.0106
일반 선교비 예산	G-3.0113
법인체 조직	G-4.0101
회의	G-3.0405
총회가 지시할 때 모임	G-3.0405
회원권	G-3.0401
회의록과 기록	G-3.0107
회의록과 기록	G-3.0406
적어도 세 개 이상의 노회	G-3.0401
공천 절차	G-3.0111
노회 참여	G-3.0401
정족수	G-3.0405
총회와의 관계	G-3.0402
노회와의 관계	G-3.0403
축소된 기능	G-3.0404

책임	G-3.0401
임시회의	G-3.0405
재단이사	G-4.0101
Teachers to Be Sound in the Faith 신앙이 건실한 교사	F-3.0105
Teaching Elder, Censured: 교역장로, 책벌받은	
직제사역에서 제명되었을 때, 지교회의 교인이 됨	D-12.0105 d
두 소환장을 무시했을 때의 절차	D-11.0202
임시정직의 책벌 후의 복직	D-12.0200
Teaching Elder of Other Denominations, Transfer of 타 교단 교역장로의 이명	G-2.0505
Teaching Elders: 교역장로 (목사)	
성만찬 집례	W-2.4012 c
부목사로서	G-1.0503
	G-2.0504
기관목사로서	G-3.0306
동사목사로서	G-2.0805
임명목사로서	G-2.0504
담임목사로서	G-2.0504
	G-2.08
교사로서	G-3.0306
세례 집례	W-2.3011
분류	G-2.0503
청빙과 위임	G-2.08
찬양대 지휘자와	W-1.4005 b
비밀 보장	G-4.0301
정의	G-2.0501
인정된 목회 사역	G-2.0503 a
사역하지 않을 때	G-2.0508
명예 은퇴한	G-2.0503 c
다른 교단에서 가입	G-2.0505
위임목사 관계	G-2.0504 a
성만찬 집례	W-2.4012 c
삶의 방식	G-2.0104
결혼과	W-4.9002
	W-4.9003
어떤 상황에서는 본인의 의사와는 반대로 직제사역에서 제명됨	D-12.0104
보통회원	G-2.0503 b
노회 회원	G-2.0501
	G-3.0301
면직이나 직분 박탈시 지교회의 교인으로 됨	D-12.0105 d
새 이민 교역장로에 대한 안수의 인정	G-2.0505 a
다른 교단의	G-2.0505
일반적으로 사역하고 있는 노회에서 회원권을 보유 하도록 요구됨	G-3.0306
예외	G-3.0306
안수와	W-4.4000
목회 관계	G-2.0504
에큐메니컬 성만찬에 참여	W-3.6205
적절한 은사를 소유	G-2.0104
설교와	W-2.2007
노회와	G-2.0502
원 관할권을 가진 노회 공의회	D-3.0101 b

직제사역에서 해제된 후의 복직을 위한 절차	G-2.0507
자격	G-2.0104
교역장로로서의 사역에서 해제	G-2.0507
관할권 파기	G-2.0509
어린이 학대를 신고할 의무	G-4.0302
예배에 있어서의 책임	W-1.4005
	W-1.4006
임시정직의 책벌 후의 복권	D-12.0103 g,h
직제사역의 직분 행사에서 해제된 후의 복직	G-2.0507
명예 은퇴	G-2.0503 c
목회의 전환기와	W-4.5000
가입할 때까지 전에 있던 노회의 관할권하에 있음	D-3.0104
인정된 목회:	
기준	G-2.0503 a
설명	G-2.0503 a
미국 밖에 있는 교단에서 봉사할 때	G-3.0306
Temperature of Records 기록의 보존 온도	G-3.0107
Temporary Exclusion: 임시 정직	
교회 책벌	D-12.0104
투표권이나 직제사역의 직분을 갖지 못함	D-12.0104 e
직제사역의 사역 금지	D-12.0104 d
Temporary Membership in Presbytery 노회의 임시 회원권	G-2.0506
Temporary Pastoral Relationships 임시적인 목회관계	G-2.0504 b
통상적으로 차기 위임목사로 청빙될 수 없음	G-2.0504 b
Temporary Stay of Enforcement 일시적 집행유예	D-6.0103
How obtained 달성 방법	D-6.0103 a
Term of Ordered Ministry: 직제사역의 임기	
헌법자문위원회	G-6.02
서기	G-3.0104
총회 상임사법전권위원회	D-5.0102
의장	G-3.0104
사역장로와 집사	G-2.0404
Termination of: 종결	
행정책임자와 직원	G-3.0110
정서기	G-3.0104
Termination of Censure and Restoration: 책벌과 복권	
복권 신청	D-12.0201
공의회의 복권 권한	D-12.0103 h
충분히 만족시, 공의회가 결정함	D-12.0201
책벌이 견책일 때	D-12.0102
책벌이 임시 정직일 때	D-12.0103 b
Terms of Call: 청빙 조건	
Annually Reviewed 매년 검토함	G-2.0804
Minimum requirements 노회가 정하는 최저기준	G-2.0804
Testimony in Remedial or Disciplinary Cases (See also “Evidence in Remedial or Disciplinary Cases”): 교정 혹은 징계사건 에서의 증언 (참조 “교정 혹은 징계사건에서의 증거”)	
증언 조서에 의해	D-14.0304
정의	D-14.0101
남편이 아내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도록 강요당하지 않음	D-14.0202

종류	D-14.0101 부터 D-14.0402 까지
새 증거, 피소인이 새 재판을 요구할 수 있음	D-14.0501
새로이 발견된	D-14.0501
한 공의회가 다른 공의회를 위해 증언 청취	D-14.0304 a
기록	D-14.0303
공의회나 사법전권위원회의 기록의 허용	D-14.0401
증언 거부는 책벌을 받을 수 있음	D-11.0203
한 공의회가 받은 증언은 다른 공의회에서 유효함	D-14.0402
아내가 남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도록 강요당하지 않음	D-14.0202
Three-Fourths Vote Required: ¾의 투표가 요구됨	
부목사를 차기 담임목사로 청빙하고자 할 때	G-2.0504
노회에서 특례적 후보생에게 예외를 허락하고자 할 때	G-2.0610
Time Limit for: 시간 제한	
규례서의 개정안은 총회 전 (120 일)에 접수되어야 함	G-6.04 a
상임사법전권위원회의 위원장과 서기의 조사 결과에 대한 항의	
징계사건의 상소	D-13.0302 a
교정사건의 상소	D-8.0302 a
교정사건	D-6.0306 a
징계사건에서 혐의의 접수	D-10.0401
지방생의 지교회에서의 회원권 (6 개월)	G-2.0602
상소의 통보 (30 일)	D-13.0201
고소의 통보 (30 일)	D-6.0202 a
총회의 임시회의 (60 일)	G-3.0503
당회의 임시회의 (합리적으로)	G-3.0203
집행유예	D-6.0103 a, d
민사 소송이 이미 시작된 경우	D-10.0401 a
Time of Worship: 예배 시간	
매일 예배	W-1.3012 W-3.2001
총체적	W-1.3010
주일	W-1.3011 W-3.2001 W-5.5001 b
당회의 책임	W-1.4004 f
Time Requirement for Inquiries and Candidates	
지방생과 후보생에게 요구되는 노회의 양육기간	G-2.0602
Tithes (See also “Offering”) 십일조 (참조 “헌금”)	W-2.5003
Transcript (See also “Verbatim Transcript”) 등본 (참조 “축어적 구두 등본”)	D-7.0601 D-13.0700 b
Transfer of Covenant Relationships 계약관계의 이전	G-2.0608
Transitions in Life and Ministry: 삶과 목회의 전환기	
전환기 중의 돌봄	W-6.3010
총체적	W-4.5000
주일예배와	W-3.3101 (8) W-3.3504 W-4.5002
Treasurer 회계	G-3.0205

Trials: 심리 (재판)	
징계사건에 있어 결정 (판결)의 공고.....	D-11.0403 d
당사자와 증인의 소환.....	D-11.0201
	D-11.0202
시행.....	D-7.0303
교정 혹은 징계사건에 있어 심리를 시행할 사람.....	D-7.0101
	D-11.0101
변호인.....	D-11.0301
교정사건에 있어서의 결정 (판결).....	D-7.0402 c
실격과 이의 제기.....	D-7.0401 (b)(1)
집행.....	D-11.0801
회람이 보통 허락되지 않는 자료.....	D-11.0303
절차의 질문은 위원장이 결정함.....	D-7.0303 a
진행절차의 기록.....	D-11.0601
서기의 의무.....	D-11.0701
투표.....	D-11.0403 a, b
결정이 최종 판결이 될 때.....	D-11.0403 a
증인의 소환.....	D-11.0201
	D-11.0202 a, b
증인, 증언의 거부.....	D-11.0203
Trust and Love 신뢰와 사랑	G-1.0102
Trustees: 재단이사	
총회의.....	G-4.0101
법인체 교회의.....	G-4.0101
지교회의.....	G-1.0503
	G-4.0101
당회의 감독.....	G-3.0201
노회의.....	G-4.0101
대회의.....	G-4.0101
법인체 조직이 안된 교회의.....	G-4.0101
Truth: 진리	
진리와 의무.....	F-3.0104
진리와 선.....	F-3.0104
Two-Thirds Vote Required: 2/3 의 투표가 요구됨	
후보생에게 요구되는 고시의 면제.....	G-2.0505
신앙고백서의 개정시 노회의.....	G-6.03 d
연합 노회.....	G-5.0402
Types of Cases (See also “Cases”) 사건의 유형 (참조 “사건”)	D-2.0200
Union Churches:(See “Joint Congregational Witness”)	
연합 노회 (참조 “선교를 위한 교회 연합”)	
Union, Full Organic 완전한 조직적 연합	G-5.03
Union Presbyteries 연합노회	G-5.04
헌법적 권위.....	G-5.0401
연합계획.....	G-5.0402
Unity in Diversity 다양성 속의 일치	F-1.0403
Unity of Church: 교회의 일치	
정의.....	F-1.0302
에큐메니컬 선언문.....	G-5.0101

Validated Ministries 인정된 목회.....	G-2.0503 a G-3.0306
평신도 목회자의.....	G-2.1001
Verbatim Recording 축어적 기록 (말 그대로의 기록).....	D-11.0601 a
당사자들이 보류하지 않는 한 재판에서 요구됨.....	D-14.0303
Verbatim Transcript 축어적 기록 등본.....	D-11.0601 a
요청하는 당사자가 비용 부담.....	D-11.0601 f
Victim Impact Statement 피해자 영향 진술서.....	D-11.0403 e
Vindication, Request for 결백입증 요청.....	D-9.0101
예비 절차에서.....	D-9.0101
Visitation of the Sick: 병든자의 심방	
총체적.....	W-6.3005
성만찬과.....	W-2.4010
Visitors, Welcome of 방문자의 환영.....	W-2.6001 a(2)
Vocation, Christian 크리스찬의 소명.....	W-5.6000 W-6.2003
Voluntary Acts of Repentance 자발적 회개의 행위.....	D-12.0103 d D-12.0104 c
Voters, Qualifications in Judicial cases 투표자, 사법사건에 있어 서의 자격.....	D-7.0402 D-11.0403
Voting, Special Provision (See “One-Third Vote,” “Two-Thirds Vote,” “Three-Fourths Vote”) 투표, 특별 규정 (참조 “1/3 투표,” “2/3 투표,” “3/4 투표”)	
Waivers 포기, 보류.....	G-2.0610
Weddings (See also “Marriage”) 결혼식 (참조 “결혼”).....	W-4.9000
Welcoming (See also “Services of Welcome and Reception”) 환영 (참조 “환영과 가입예배”).....	W-4.2000
Wholeness, Services (See also “Services for Wholeness”) 치유예배 (참조 “치유를 위한 예배”).....	W-3.5400
Wife Not Compelled to Testify Against Husband 아내가 남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도록 강요당하지 않음.....	D-14.0202
Witness to the Resurrection, Service of (See also “Services on the Occasion of Death”) 부활을 증거하는 예배 (참조 “장례 예식”).....	W-4.10000
Witnesses: 증인	
소환.....	D-11.0202
신빙성.....	D-14.0205
공개된.....	D-10.0406
심문.....	D-14.0301
당회원이거나 상임사법전권위원회의 위원.....	D-14.0305
선서나 약속 실시.....	D-14.0302
증언 거부.....	D-7.0204 D-11.0203
Women, Eligible to Hold Ordered Ministry 여성, 직제사역의 직분을 맡은 자격 있음.....	G-2.0101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	
선포의 형식.....	W-2.2008
말씀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W-1.1003 c W-1.2002 c W-1.2004 b
주일과.....	W-1.3011 (2)부터 W-3.3700 까지
경청할 교인의 책임.....	W-2.2010

설교	W-1.1004
	W-2.2007
성례	W-1.1004
	W-3.3601
성경	W-1.1004
	W-2.2001
Work, Worship and 일과 예배	W-5.6003
Worship: 예배	
세상에서의 교회의 사역	W-7.0000
신앙공동체 안에서의 사역	W-6.0000
개인적 제자직	W-5.0000
일	W-5.6003
예술적 표현	W-1.3034 (2)
찬양으로서	W-7.7000
설명	W-1.1001
요소	W-2.0000
하나님의 주도권	W-1.1002 a
	W-1.2001
성령과	W-1.1002 a
예수 그리스도와	W-1.1003
	W-1.1004
언어	W-1.2000
순서	W-3.0000
목사의 책임	W-1.4005
당회의 예배에 대한 책임	W-1.4000
찬송가의 선택	W-1.4005 a, b
당회의 책임	W-1.4004
Written Decision of Permanent Judicial Commission: 상임사법전권위원회의 서면 결정	
징계의	D-11.0403 c
	D-13.0405 c
교정의	D-7.0402 c
	D-8.0404 c

